

사회보장 분야 사각지대 축소 및 부적정지출 관리 방안 연구

- 긴급 지원을 중심으로

강지원

최혜진·황안나·조동훈·김주리·강창희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연구진

연구책임자	강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최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황안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조동훈	한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주리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연구원
	강창희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연구보고서 2021-41

사회보장 분야 사각지대 축소 및 부적정지출 관리 방안 연구 - 긴급 지원을 중심으로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인 이태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쇄처 고려씨엔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ISBN 978-89-6827-839-6 93330
<https://doi.org/10.23060/kihasa.a.2021.41>

발|간|사

2020년 3월 전 세계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이다. 감염병의 특성 상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두기가 시행되었고, 집합적으로 혹은 일대일 대면으로 이뤄지는 모든 활동들은 일시에 멈췄다. 많은 사람들이 휴업과 폐업 등으로 소득의 감소를 경험했으며, 학교와 직장뿐만 아니라, 카페·식당·학원 등 대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는 “잠시 멈춤” 혹은 “셧”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견고하게 쌓아올린 줄 알았던 한국형 복지모델은 한계를 보여주었다.

시장소득으로 인한 불평등을 공적 이전소득을 통해 감소시켜왔지만, 시장소득의 상실에 대한 대응은 미흡하였다. 특히 정부의 감염병 지침으로 지침에 따라 영업금지 및 영업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업종일지라도 사회안전망은 그들을 지켜줄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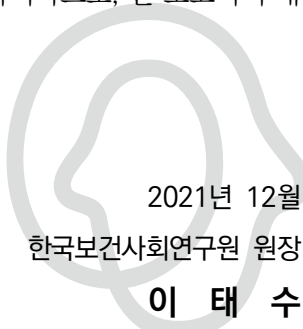
한편, 2004년 이후 저소득·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유아교육 및 보육, 방과후 돌봄, 장애인활동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이 순차적으로 도입되었고, 지난 20여년간 사회서비스는 대상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보편적 서비스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사상 초유의 감염병 앞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이용과 재가 서비스 모두 제한되었다. 이로 인해 돌봄 부담은 가족으로 전가되었고, 특히 여성에게 귀결되었다.

안타깝게도 기후변화로 인한 신종 감염병의 출현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이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염병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 및 감소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와 함께 유사시에 발생할 수 있는 대인서비스의 공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것이다. 나아가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여 선별적인 공공부조와 시장친화적인 사회서비스를 구축하며 발전한 한국형 복지모델이 감염병과 같은

사회적 재난에 대응하는 새로운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우리는 특히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이뤄진 긴급 지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 앞에서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와 이를 보완하는 긴급 지원이 이뤄졌지만 필요한 지원과 혜택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가 없는지, 다른 편에서는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와 긴급 지원 간에 부적정지출이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6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사회보장 분야 사각지대 축소와 부적정지출 관리 방안 연구”의 6년차 연구이다. 그동안 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사회보장 분야 사각지대 및 부적정지출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틀을 마련하고, 이를 개별 제도에 적용함으로써 대상 선정 기준 및 급여 수준, 전달체계 부족 등으로 인한 사회보장 제도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찾는 한편, 정보시스템의 활용 등을 통해 사회보장 급여의 부적정지출 관리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보고서는 강지원 부연구위원의 책임으로 본원의 최혜진 부연구위원과 황안나 전문연구원과 한림대학교 조동훈 교수, 중앙대학교 강창희 교수,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김주리 연구원(영국 브리스톨대학교 박사과정 수료)이 연구진으로 참여하였다. 이 연구와 관련하여 유익한 의견을 주신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과 김태완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익명의 평가위원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힌다.



2021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목 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bstract	1
요 약	9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7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0
제2장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25
제1절 사회적 재난과 위기 대응	27
제2절 경제위기와 사회안전망	36
제3절 코로나19와 정책 대응	46
제4절 긴급 지원 분석틀	68
제3장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조사개요 및 기초분석	73
제1절 선행연구	75
제2절 조사 개요	83
제3절 기초 분석	91
제4절 소결	104
제4장 코로나19와 종사상 지위	107
제1절 분석 개요	109
제2절 종사상 지위별 생활 변화	114
제3절 고용취약계층과 긴급 지원	121

제4절 심층분석	136
제5절 소결	147
제5장 코로나19와 연령집단	151
제1절 분석 개요	153
제2절 연령집단별 생활 변화	157
제3절 연령집단과 긴급 지원	173
제4절 심층분석	179
제5절 소결	204
제6장 코로나19와 고용 지위 변화	207
제1절 분석 개요	209
제2절 증상상 지위 변화와 생활 변화	222
제3절 증상상 지위 변화와 긴급 지원	231
제4절 심층분석	237
제5절 소결	253
제7장 가계동향조사를 통해본 코로나19와 긴급 지원 영향	257
제1절 분석 개요	259
제2절 분석 내용 및 방법	269
제3절 분석결과	274
제4절 소결	282



제8장 결론 및 정책 제언	285
제1절 결론	287
제2절 정책제언	293
참고문헌	307
부록	321
[부록 1] 선행 조사 문항 비교	321
[부록 2]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표	328
[부록 3]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한 분기별 분석 예시	347

표 목차

〈표 2-1〉 코로나19와 메르스 피해 현황 비교	34
〈표 2-2〉 재해대책 추경안 편성 연혁	35
〈표 2-3〉 재해대책 추경안 편성 연혁	35
〈표 2-4〉 국제금융위기 시 긴급 생계 지원	45
〈표 2-5〉 고용보험기금 사업	47
〈표 2-6〉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내용	49
〈표 2-7〉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실적	49
〈표 2-8〉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2020.12.30. 개정 후)	52
〈표 2-9〉 한시 생계지원 적용 기준	53
〈표 2-10〉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규모별 지원액	58
〈표 2-11〉 2020년 연간 코로나19 대응 관련 추경별 주요 재정지원 현황	60
〈표 2-12〉 중앙정부 1차 및 2차 긴급재난지원금 비교	61
〈표 2-13〉 일자리 관련 사업주 지원 요약	63
〈표 2-14〉 저소득·돌봄취약계층 관련 지원 요약	64
〈표 2-15〉 고용 취약계층 관련 지원 요약	64
〈표 2-16〉 서울시와 경기도 주민 대상 긴급 지원 비교	66
〈표 2-17〉 충청남도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금 개요	66
〈표 2-18〉 4개 시·도 코로나19 경제 대응 전략	67
〈표 3-1〉 선행 연구의 조사 개요	80
〈표 3-2〉 선행 연구의 조사 문항 비교	81
〈표 3-3〉 조사 개요	83
〈표 3-4〉 조사 내용	86
〈표 3-5〉 선행 연구와 조사항목 비교	87
〈표 3-6〉 1단계 표본 추출 내역(성, 연령 및 지역 층화비례추출)	89
〈표 3-7〉 응답자 특성 : 전체	91
〈표 3-8〉 응답자 특성 : 고용취약계층	92
〈표 3-9〉 코로나19 전후 가계지출의 변화 및 부담	94



〈표 3-10〉 코로나19 전후 소득 변화와 연령	95
〈표 3-11〉 소득감소와 종사상 지위	96
〈표 3-12〉 소득감소와 종사상 지위 변화	97
〈표 3-13〉 자영업자의 소득 변화	98
〈표 3-14〉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 비율	98
〈표 3-15〉 자영업자의 지출 항목 비교	99
〈표 3-16〉 돌봄 부담의 증가를 대처한 방법	101
〈표 3-17〉 코로나19 관련 긴급 지원에서의 복지소외계층(사각지대)	102
〈표 3-18〉 코로나19 관련 긴급 지원의 정책별 부정수급 인식 정도	103
〈표 4-1〉 종사상 지위별 집단 구분	113
〈표 4-2〉 종사상 지위별 가구소득 분포(2020년)	114
〈표 4-3〉 종사상 지위별 개인 소득 분포(2020년)	115
〈표 4-4〉 종사상 지위별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의 변화	116
〈표 4-5〉 종사상 지위별 소득이 줄어든 이유(1순위)	118
〈표 4-6〉 종사상 지위별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의 변화	119
〈표 4-7〉 종사상 지위별 코로나1 이후 생활 변화	120
〈표 4-8〉 개인소득감소여부 결정요인 분석: 전체 근로자 표본	122
〈표 4-9〉 자영업자 매출 감소여부 결정요인 분석	123
〈표 4-10〉 특수고용 종사자 소득감소여부 결정요인 분석	124
〈표 4-11〉 자영업자 매출 및 이윤 감소 결정요인 분석	125
〈표 4-12〉 코로나19 이후 부담되는 지출 결정요인 분석: 자영업자(다항로지분석)	127
〈표 4-13〉 긴급 지원제도 정책 선호 결정요인 분석: 자영업자(다항로지분석)	129
〈표 4-14〉 긴급 지원제도 정책수혜 대상 우선순위 분석: 다항로지분석	131
〈표 4-15〉 긴급 지원제도 집행 주체별 우선순위 분석: 저소득층 대상 분석	133
〈표 4-16〉 긴급 지원제도 집행주체 우선순위 분석: 직접적인 피해자 대상 분석	134
〈표 4-17〉 긴급 지원제도 집행주체 우선순위 분석: 전 국민 대상 분석	135
〈표 4-18〉 긴급 지원 사각지대 인식 결정요인 분석	137

〈표 4-19〉 긴급 지원 사각지대 인식 결정요인 분석: 자영업자(1)	138
〈표 4-20〉 긴급 지원 사각지대 인식 결정요인 분석: 자영업자(2)	139
〈표 4-21〉 긴급 지원 사각지대 인식 결정요인 분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0
〈표 4-22〉 긴급 지원 부정수급 인식 결정요인 분석	142
〈표 4-23〉 긴급 지원 부정수급 인식 결정요인 분석: 자영업자(1)	144
〈표 4-24〉 긴급 지원 부정수급 인식 결정요인 분석: 자영업자(2)	145
〈표 4-25〉 긴급 지원 부정수급 인식 결정요인 분석: 특수고용종사자	146
〈표 5-1〉 연령집단 구분	156
〈표 5-2〉 연령집단별 1인가구 비중	156
〈표 5-3〉 연령집단 소득 분포	158
〈표 5-4〉 연령집단별 중상위(현재 기준)	159
〈표 5-5〉 연령집단별 소득 변화	160
〈표 5-6〉 연령집단별 소득 변화: 청년(19-34세)	162
〈표 5-7〉 연령집단별 소득 변화: 장년가구(35-49세 이상)	163
〈표 5-8〉 연령집단별 소득 변화: 중년가구(50-64세 이상)	165
〈표 5-9〉 연령집단별 가구소득이 줄어든 이유(1순위)	166
〈표 5-10〉 연령집단별 코로나19 전후 소비 변화: 소비지출	167
〈표 5-11〉 연령집단별 코로나19 전후 소비 변화: 비소비지출	168
〈표 5-12〉 연령집단별 코로나 이후 가장 부담되는 지출 비교	169
〈표 5-13〉 연령집단별 부채변화	170
〈표 5-14〉 연령집단별 부채증가 이유	171
〈표 5-15〉 연령집단별 코로나19 이후 생활 변화	172
〈표 5-16〉 연령집단의 긴급 지원 수급률	174
〈표 5-17〉 연령집단별 긴급 지원금 사용처	175
〈표 5-18〉 연령집단별 긴급 지원 사각지대 인식	176
〈표 5-19〉 연령집단별 코로나19 전달체계 및 급여에 대한 인식	177
〈표 5-20〉 연령집단별 부정수급 인식	177



〈표 5-21〉 연령집단별 부정수급 인식경로	178
〈표 5-22〉 회귀분석 변수 설명 및 측정	180
〈표 5-23〉 가구소득 감소 영향요인 분석: 연령집단	182
〈표 5-24〉 개인소득 감소 영향요인 분석: 연령집단	183
〈표 5-25〉 연령집단의 부채 증가 영향요인 분석	185
〈표 5-26〉 연령집단별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경제적 어려움 증가	187
〈표 5-27〉 연령집단별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나와 가족의 건강상 문제 발생	188
〈표 5-28〉 연령집단별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가족 돌봄의 부담 증가	190
〈표 5-29〉 연령집단별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우울감 증가	191
〈표 5-30〉 연령집단별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주변사람들과의 갈등 증가	193
〈표 5-31〉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	195
〈표 5-32〉 긴급복지지원금	197
〈표 5-33〉 소상공인 지원	198
〈표 5-34〉 실업 및 고용 관련 제도	199
〈표 5-35〉 사각지대	201
〈표 5-36〉 부정수급	203
〈표 6-1〉 종사상 지위 변화 정의 및 측정	214
〈표 6-2〉 코로나 이전 종사상 지위별 집단 구분 결과	218
〈표 6-3〉 종사상 지위 변화 집단별 인적·지역 특성 비교	219
〈표 6-4〉 종사상 지위 변화 집단별 평균 연령, 가구원 수 비교	220
〈표 6-5〉 종사상 지위 변화 집단별 가구 구성 비교	221
〈표 6-6〉 종사상 지위 변화 집단별 현재 사업장 규모 분포 비교	222
〈표 6-7〉 종사상 지위 변화 집단별 소득 변화	224
〈표 6-8〉 가구소득이 줄어든 이유 1순위	225
〈표 6-9〉 코로나 전후 종사상 지위 변화 집단별 지출 변화	226
〈표 6-10〉 종사상 지위 변화 집단별 코로나 이후 가장 부담되는 지출 비교	227
〈표 6-11〉 종사상 지위 변화 집단별 부채변화	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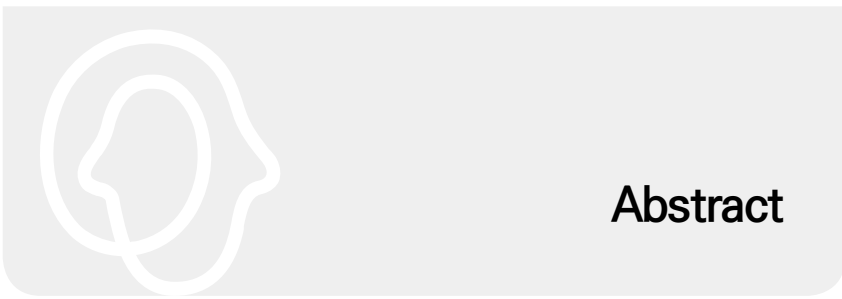
〈표 6-12〉 집단별 부채증가 이유	229
〈표 6-13〉 코로나19 이후 생활 변화	230
〈표 6-14〉 긴급 지원 유형별 수급 비율	232
〈표 6-15〉 긴급 지원 사용처	233
〈표 6-16〉 긴급 지원 사각지대 인식	234
〈표 6-17〉 코로나19 지원금에 대한 평가	235
〈표 6-18〉 부정수급 인식	236
〈표 6-19〉 회귀분석 변수 설명 및 측정	238
〈표 6-20〉 종사상 지위 변화 영향요인 분석(기준집단: 내부 유지)	240
〈표 6-21〉 소득감소 여부 영향요인 분석	242
〈표 6-22〉 부채 증가 여부 영향요인 분석	244
〈표 6-23〉 우울감 및 스트레스 증가 여부 영향요인 분석	246
〈표 6-24〉 긴급 지원 수급 여부 영향요인 분석	248
〈표 6-25〉 긴급 지원 사각지대 응답 여부 영향요인 분석	250
〈표 6-26〉 긴급 지원 관련 부정수급 인지 여부 영향요인 분석	252
〈표 7-1〉 2020년에 시행된 각종 지원정책들	268
〈표 7-2〉 처치의 구분	270
〈표 7-3〉 1분기와 통합 2~4분기 기준, 가구의 소득, 소비 및 세부 소비항목의 연도별·분기별 변화	276
〈표 7-4〉 1분기와 통합 2~4분기 기준, 주요 세부 소비 항목의 연도별·분기별 변화	277
〈표 7-5〉 1분기와 통합 2~4분기 기준, 주요 세부 소비 항목의 연도별·분기별 변화: 교육수준별 표본	280
〈표 7-6〉 2020년 정부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 추정치(이중변동법1) 요약	283
〈표 8-1〉 사회적 위험 비교	293
〈표 8-2〉 재난 비교	294
〈표 8-3〉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 기준	297
〈표 8-4〉 청년 대상 임대주택 공급 실적	303
〈표 8-5〉 청년가구 주거비 부담	304
〈부표 3-1〉 1분기와 2분기 정부지원금이 세부 소비항목에 미친 영향 비교	347



〈부표 3-2〉 1분기와 3분기 중 소비 항목의 연도별 분기별 변화	348
〈부표 3-3〉 가구소득의 분위별 이중변동 ¹ 추정치: 가구주 학력 대졸 이상 가구	349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 개요	22
[그림 2-1] 적격성과 수급 여부 기준의 사각지대와 부정수급 유형	68
[그림 2-2] 긴급 지원의 사각지대 및 부적정지출 분석틀	70
[그림 2-3] 긴급 지원의 부적정지출 분석틀	71
[그림 3-1] 코로나19 이후 가구소득의 변화	93
[그림 3-2] 2020년 한 해 긴급 지원 수급 비율	100
[그림 3-3]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100
[그림 4-1] 취업자 및 실업자 현황	110
[그림 4-2] 산업별·직업분류별 고용 현황	110
[그림 4-3] 종사상 지위별 고용 현황	112
[그림 4-4] 종사상 지위 고용 증감	112
[그림 4-5] 코로나19 전후 개인 및 가구소득감소 금액	117
[그림 6-1] 종사상 지위 변화 요약	216
[그림 8-1] 아동돌봄안전망	302



Abstract

Identifying Gap and the Improper spending in Covid19 emergency relief packages

Project Head: Kang, Ji-won

1. Background

This research is a six-year study on "Reducing Blind Spots in the Social Security Field and Plans for Managing Improper Expenditure,"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of Health and Social Affairs(KIHASA) as a mid-term project since 2016. Our institute has developed a monitoring (social security monitoring) framework for managing blind spots and improper expenditures in the social security system and applied it to the income security and social service system.

In 2021, the social security monitoring framework was applied to emergency assistance in response to COVID-19. In this study, emergency support refers to various cash and in-kind packages provided b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response to unemployment and closure, income reduction, and the gap in care due to COVID-19.

There are three main reasons emergency support was selected as a target of analysis. First, COVID-19 affected everyone regardless of their income and wealth, but it had a more profound effect on chronically ill, vulnerable groups with lack

Co-Researchers: Choi, Hye-jin, Hwang, Anna, Cho, Dong-hun, Kim, Juri, Kang, Chang-hui

2 사회보장 분야 사각지대 축소 및 부적정지출 관리 방안 연구-긴급 지원을 중심으로

of care (infants, children, disabled, older people), and vulnerable workers (young people, uninsured). The government is expanding and restructuring the existing social security system to take action on emergency support for COVID-19.

Second, within the existing social security framework, COVID-19 response emergency support was provided in segments by each ministry and there was a limitation of not providing the support to those in need in a timely manner while providing it to those who did not need it at the same time. Of course, more appropriate support would have been possible if the COVID-19 emergency assistance recipients could have been specified according to the severity of COVID-19 while ensuring universality and urgency.

Third, our society witnessed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social security system. This is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risks that surfaced in the industrialization process and also from the new social risks that emerged during the post-industrial era. In this sense, the social safety net composed of the employment and income safety net revealed its limitations and urged interest in the care safety net. In addition, it raised doubts about the sustainability of Korea's social security system as a response system to social disasters such as the climate crisis and infectious disease.

2. Main Research Results

The study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e examined the social security system response to the social disaster triggered by COVID-19. There is no system in Korea's social security system to respond to social disasters triggered by infectious diseases. Social disasters were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local natural disasters and employment disasters and fully revealed the blind spots of the existing Korean social security system. Emergency aid due to COVID-19 is only a tinkering prescription for these blind spots and is not sustainable. Above all, because it is an emergency social disaster, it is necessary to decide whether to create a permanent system or to specify an emergency connection system

Next, through a nationwide survey, this study examined the impact of COVID-19, the supply and demand of emergency support systems, blind spots for emergency support systems, and perceptions of false claims. Based on the descriptive statistical results, an in-depth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unemployment insurance blind spots, youth, and groups with declining status in employment that were most severely hit by COVID-19.

First, an in-depth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blind spots of employment insurance, including self-employed and special types of workers. Compared to wage workers (regular workers

4 사회보장 분야 사각지대 축소 및 부정정지출 관리 방안 연구-긴급 지원을 중심으로

and temporary daily workers), the probability of personal income decrease for the self-employed and special type workers was about 30% higher and compared to manufacturing, food, and the probability of personal income was high if they were engaged in the lodging industry. Within the blind spot of employment insurance,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individual characteristics or by industry or region to which workers belong. This means that intensive assistance for some industries that are expected to suffer significant damage needs to be approached with caution.

Second, the impact of COVID-19 on age groups experiencing different labor market entry and life cycles was examined. Although the income level of young people is generally low, they do not experience much change in income before and after COVID-19. However, many young people feel burdened with housing costs and it is an important factor causing debt. In addition, the study found that young people experienced more depression, health problems, and conflicts with people around them after COVID-19.

Third, we investigated people whose occupational status in the labor market declined before and after COVID-19. The labor market status before and after COVID-19 was 52.3% for the internal retention group and 32.1% for the external retention group, an increase of 6.2%, and a decrease of 9.3%. The group that maintained their employment status in the internal labor

market experienced less deduction in income and less increase in depression or stress. On the other hand, the group with lower occupational status experienced a deduction in income and faced complex difficulties such as depression, stress, and conflict with others. This group had the lowest ratio of receiving and receiving a number of emergency assistance benefits, and negative perceptions of emergency assistance were also prevalent. In particular, the groups whose occupational status declined were the traditionally vulnerable groups in employment insurance blind spots and unstable employment situations, such as self-employed people with employees, temporary daily workers, workers in small businesses with fewer than five employees, women, and low-educated people.

Lastly, we examined the household consumption impact of emergency support for COVID-19 using the household trend survey. The national disaster relief fund was provided until April 30, 2020, and people had to spend the fund before the end of August 2020. Similarly, the disaster aid provided by some metropolitan governments had a limited expiration date from the end of July to the end of September depending on the region. Separately, the second emergency disaster fund was selectively provided to the self-employed and special types of workers. Under the assumption that households receiving government subsidies will not use their temporarily increased income immediately, an analysis of the marginal consumption

tendency of government subsidies paid in 2020 revealed that they decreased overtime to 0.421 in the second quarter, 0.399 in the third quarter, and 0.274 in the fourth quarter. However, the overall marginal propensity in the second and fourth quarters of 2020 was 0.781, indicating that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government subsidy was linked to consumption.

3. Conclusion and Implications

The analysis results suggest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we need to reexamine the social safety net of our society. Korea has established a social safety net consisting of selective public assistance and residual emergency welfare support systems based on the social insurance system. However, there is a limit to responding to social disasters through social insurance because the small business owners and platform workers who have been most directly affected by COVID-19 are in the blind spot of employment insurance. In particular, considering that the proportion of self-employed people engaged in food and retail industries is quite high, enhancing the inclusiveness of employment insurance is essential to establishing a tight social safety net.

Second, public assistance, which has to prove poverty based on income and means tests, was also insufficient in responding to social disasters. Although it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provide emergency assistance quickly without applying

through selective cash benefits and social allowances, it cannot be used as a response to a sudden disaster. Rather, the response to disasters was made through the emergency welfare support system. Although the reason for the emergency welfare assistance system was quickly expanded, it had limitations in functioning as a fundamental alternative in terms of time required for system improvement and practical 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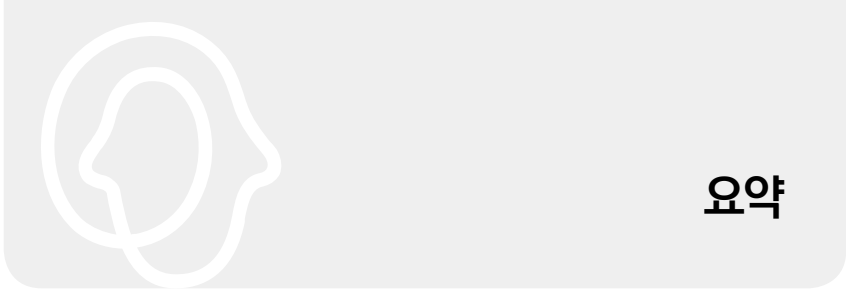
Third, our social safety net was built around the employment and income safety net based on the old social risks. Although there is a new social risk policy, it has limitations in functioning as a safety net in emergency situations such as social disasters. In particular, changes in the demographic structure, such as a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and the gap between the supply and demand for care between regions were not systematically managed. In particular, the need to establish a caring safety net was raised in that caring services directly affect the survival of infants, children,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Now is the time to push for a sustainable Korean-style welfare state considering the economic level and demographic structure. In the past two economic crises, we have steadily built a social safety net consisting of an employment safety net and an income safety net. However, there are still blind spots in the social safety net; therefore, efforts to build a tighter social safety net are still needed. At the same time, it is the mission of

our times to build a care safety net that responds to demographic changes. In this respect, COVID-19 has expanded the income-oriented social security system. It opened a new chapter in policy design to reexamine whether to reform or seek the qualitative transformation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It must respond flexibly to new social risks while responding to existing social risks.

At the same time, a disaster response system that can encompass both natural and social disasters should be established. The disaster response system needs to be built as a tertiary social safety net that systematically responds to emergencies by using the regular social security system. Since the response system centered on local natural disasters is already at a certain standard, it is necessary to add a response system for social disasters that affect the national level due to new infectious diseases, and so on. To prevent misuse of social disaster response, macroeconomic indicators, domestic growth indicators, and employment indicators, the first, second, and third safety nets should be systematically implemented. A strategy is needed to systematically implement a safety net and to ensure financial sustainability and prompt support through pre-support and post-collection methods when necessary.

*Key words: Covid-19, social disaster, emergency relief, social safety net, social care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이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6년부터 중장기과제로 수행하고 있는 ‘사회보장 분야 사각지대 축소와 부적정 지출 관리 방안’ 연구의 6년차 연구이다. 그동안 우리 원은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와 부적정 지출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사회보장모니터링) 틀을 개발하고, 이를 소득보장제도와 사회서비스제도 등에 적용하여 사각지대 해소와 부적정지출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2021년에는 사회보장모니터링 틀을 코로나19에 대응한 긴급 지원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긴급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및 폐업, 소득감소, 그리고 돌봄 공백에 대응하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 다양한 현금과 현물로 구성된 패키지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긴급 지원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코로나19는 소득과 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게 영향을 주었지만, 만성질환자와 돌봄취약계층(영유아, 아동, 장애인, 노인), 고용취약계층(청년, 고용보험미가입자)에게 더 심대한 영향을 주었다. 정부는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확대·개편하여 코로나19에 대한 긴급 지원에 대응하도록 했다.

둘째,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의 틀 속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긴급 지원이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이뤄지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때 제공되지 못한 한계와 동시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긴급 지원이 이뤄질 때도 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지원은 보편성과 시급성을 담보하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증을 고려하여 대상을 특정할 수 있었다면 보다 적정

한 지원이 가능했을 것이다.

셋째,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는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의 한계를 목격하였다. 이는 산업화 과정에서 드러난 전통적 위험과 다르고, 탈산업화 시기에 대두된 신 사회적 위험과도 다르다. 그런 의미에서 고용안전망과 소득안전망으로 구성된 사회안전망은 한계를 드러냈고, 돌봄안전망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였다. 또한 기후변화와 감염병 등으로 인한 사회적 재난에 대한 대응 체계를 별도로 구축할 것인가,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하였다.

2. 주요 연구 결과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코로나19로 촉발된 사회적 재난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대응을 살펴보았다. 한국의 사회보장체계에서 감염병으로 촉발된 사회적 재난에 대응하는 제도는 없다. 그동안 국지적으로 제기된 자연 재난과 고용재난과는 완전히 달라 사회적 재난은 기존의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온전히 보여주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지원은 이러한 사각지대에 대한 땀질 처방일 뿐 지속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비상시적인 사회적 재난이라는 점 때문에 상시적인 제도를 만들 것인지, 비상시적인 연계 제도를 명시화할 것인지 결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국 단위의 조사를 통해 코로나19의 영향과 긴급 지원제도의 수급, 긴급지원제도에 대한 사각지대와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기술 통계 결과를 토대로, 코로나19로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청년, 종사상 지위의 하락 집단에 대해 심층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자영업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포함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하였다. 임금근로자(상용직 및 임시일용직)보다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인 소득이 감소할 확률이 약 3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제조업보다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경우 개인 소득이 감소할 확률이 높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안에서 개인 특성이나 종사자가 속한 산업 혹은 지역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하는 일부 업종에 대한 집중 지원이 신중하게 접근될 필요가 있음을 뜻한다.

둘째, 서로 다른 노동시장 진입 및 생애주기를 경험하고 있는 연령 집단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청년은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으나 코로나 전후의 소득변화는 크게 경험하지 않는다. 그러나 청년 다수가 주거비 부담을 느끼며, 이는 부채를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청년은 코로나19 이후 우울감, 건강상 문제, 주변 사람과 갈등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코로나19 전후로 노동시장에서 종사상 지위가 하락한 사람들을 살펴보았다. 코로나19 전후 노동시장 지위는 내부 유지 집단 52.3%, 외부 유지 32.1%, 상승 6.2%, 하락 9.3%로 나타났다. 내부노동시장에서 고용 지위를 유지한 집단은 소득감소도 적고, 우울감이나 스트레스의 증가 수준도 낮다. 반면에 종사상 지위가 하락한 집단은 소득감소를 경험하고 우울감 및 스트레스, 타인과의 갈등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집단은 다수의 긴급 지원 혜택에서 오히려 수급 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긴급 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사상 지위가 하락한 집단은 고용원이 있던 자영자, 임시일용직, 5인 미만 영세사업장 종사자, 여성, 저학력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및 불안정 고용 상황에 있던 전통적인 고용 취약계층이었다.

마지막으로,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코로나19에 대한 긴급 지원의 가구 소비 영향을 살펴보았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2020년 4월 30일 까지 지급됐으며, 2020년 8월 말까지 사용하도록 기간을 제한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지역별로 7월 말에서 9월 말까지로 이용 기간을 제한하였다. 이와 별개로 2차 긴급재난 지원금은 자영업자와 특수형태 종사자 등에 선별적으로 지급되었다. 정부지원금을 수급한 가구는 일시적으로 증가된 소득을 즉각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2020년에 지급된 정부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을 분석한 결과, 2분기 0.421, 3분기 0.399, 4분기 0.274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0년 통합 2~4분기 전체의 한계소비성향은 0.781로 정부지원금의 상당 부분이 소비로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결론 및 시사점

이상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우리 사회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제도를 근간으로 선별적인 공공부조와 잔여적인 긴급복지지원 제도로 구성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은 영세 자영업자와 플랫폼노동자 등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으므로, 사회보험을 통한 사회재난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음식·소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용보험의 포괄성을 확대하는 것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다.

둘째, 소득과 자산 조사를 기반으로 빈곤을 증명해야 하는 공공부조 역

시 사회적 재난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선별적인 현금급여와 사회수당을 통해 긴급 지원을 신청 없이 빠르게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갑작스러운 재난에 대한 대응으로 활용할 수는 없었다. 오히려 재난에 대한 대응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서 이뤄졌다. 발빠르게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사유를 확대했으나, 제도 개선을 위한 시간 소요와 실제 활용 측면에서는 근본적인 대안으로 작용하는 데 한계를 갖고 있었다.

셋째, 우리의 사회안전망이 구 사회적 위험에 기반을 둔 고용안전망과 소득안전망을 중심으로 구축되었다. 신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재난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 안전망으로 기능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지역 간 돌봄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다. 특히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과 같이 돌봄서비스가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돌봄안전망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제 우리는 경제 수준과 인구구조를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를 추진해야 할 때이다. 우리는 지난 두 차례의 경제위기에서 고용안전망과 소득안전망으로 구성된 사회안전망을 착실하게 구축해왔다. 그러나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노력은 여전히 필요하다. 동시에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돌봄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다. 이런 측면에서 코로나19는 소득 중심의 사회보장제도를 확대·개편할 것인가, 사회보장제도의 질적 전환을 모색할 것인가를 재검토하는 정책 설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는 기존의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도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연 재난과 사회재난을 포괄할 수 있는 재난대응체계도 보다 촘촘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재난 대응 체계는 비상시적인 재난 상황에

14 사회보장 분야 사각지대 축소 및 부정정지출 관리 방안 연구-긴급 지원을 중심으로

서 상시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3차 사회안전망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지적인 자연 재난을 중심의 대응 체계는 일정 수준 갖춰져 있으므로, 신종 감염병 등으로 국가 단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재난에 대한 대응 체계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사회재난 대응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거시경제 지표와 내수 성장 지표, 고용 지표 등을 통해 사회재난을 선포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사회재난 시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1차 안전망-2차 안전망-3차 안전망을 체계적으로 구현하며, 대규모 재정투입이 필요할 때 패스트트랙으로 선-지원, 후-징수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을 마련하여 빠른 지원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재정 전략이 필요하다.

주요 용어: 코로나19, 사회재난, 긴급 지원, 사회안전망, 돌봄안전망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약칭, 코로나19)으로 인해 2020년 전(全) 세계는 유래 없는 위기 상황을 맞이하였다. 특히 경기침체와 소비 경직,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소득감소가 대두되었고, 코로나19 의심 및 확진자는 자발적·비자발적으로 격리된 기간 동안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는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일하는 방식이 변하고, 휴교 및 휴원 등으로 가족 내에서 돌봄 부담이 증가했으며, 다수의 대인서비스가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하였다.

더욱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현대 사회의 신종·변종 감염병을 비롯하여 환자가 대거 급격하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음이 드러났고,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향후에도 이러한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특히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 과정에서는 주로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초점을 맞추었으나(윤강재, 2020), 코로나19는 의심 및 확진 여부에 관계없이 소비 침체와 소득감소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긴급 지원을 위해 먼저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확대·개편하였다. 대표적으로 보건복지부의 긴급 지원제도가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에 「긴급복지지원법」을 제정하였는데, “위기상황

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힘들어진 저소득가구가 정부로부터 생계비, 의료비 등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때, 제도가 규정하는 위기 상황이란 “가구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급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이 상실되었을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경우, 화재, 가구 원으로부터 유기 또는 학대당한 경우 등”을 말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및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위기 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긴급 지원제도의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을 완화하고, 동일한 사유로 인한 지원횟수 제한을 폐지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된 긴급 지원심의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지역별 위기 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 등을 포괄하는 긴급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3월23일부터 2021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였다(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2020a; 2020b).

그러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직자, 학생 취업자, 외국인 근로자, 해외 체류 중 일시 귀국한 내국인 등 일부에서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였으며, 긴급복지 지원 수준이 감소된 소득에 대한 보전이나 코로나19 의심 및 확진자의 자가 격리 기간 중 지출되는 의료비 등에 비해서 매우 적은 금액이었다는 것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전 국민적 패닉에 대응하여 재난지원금을 도입하여 소비의 선순환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을 국회에 요구하였다. 그러나 국민들의 시급한 요구와는 달리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지급 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보편과 선별의 논란이 있었으며,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 기준과 관련하여 건강보험료와 국세청 소득자료의 논란이 있었고, 지급 방식과 관련하여 현금 지원과 지역 화폐 지원 등의 논란이 있었다.¹⁾

다음으로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긴급 지원을 위해 기존의 전달 체계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대표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과 다함께돌봄센터를 활용한 긴급돌봄 사업을 들 수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은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과 다르다. 산업화 과정에서는 완전 고용으로 인해 실업·노령·질병·장애 등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에 대한 현금 이전에 초점을 맞추고, 남성 생계부양자가 부재한 한부모가족에게 잔여적인 지원을 제공했다. 그러나 탈산업화 과정에서 완전 고용의 신화는 무너졌고,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하는 맞벌이 가구가 등장했다. 탈산업화는 제조업 중심의 사회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 구조가 재편되었음을 뜻하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의 증가와 가족 구조의 다양화, 고용의 비표준화 문제가 대두하면서 청년층과 여성, 저숙련 노동자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신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정책 대응은 사회서비스에 초점을 맞춘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위험은 모든 국민, 나아가 전 세계 시민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다만,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위험은 기존의 저소득층에게도 영향을 주었지만, 집합금지 등의 제한 조치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가 존재하며, 사회적 돌봄의 취약성으로 인한 돌봄 부담은 여성에게 강요되었다. 코로나19로 모든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되었지만, 그 영향은 고용안정성이나 소득계층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정책 대응은 구(舊)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정책 대응과 동일할 수 없으며, 신(新)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정책 대응과 동일할 수도 없다. 사회적 재난은 자연재해나 전쟁 같은 불가항력적 재난이

1)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화폐 방식을 결합하여 지역 내에서 경기가 순환되는 구조를 도려한 것이 특징이다.

아니라, 정치·경제·사회 환경과 결합돼 나타나는 사회적 위험인 것이다. 기존의 사회복지제도가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과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여 발전해왔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삶의 편리를 위해 우리가 결정했던 사회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위험(manufactured risk)'에 대응한 정책 방안으로서 긴급 지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이 연구는 사회복지 분야 사각지대 축소와 부적정 지출을 관리하는 중 장기 연구의 일환으로, 총 8개의 장으로 연구 내용을 구성하였다. 먼저 제 1장은 서론으로,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 내용 및 방법으로 구성된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 사각지대 축소 및 부적정지출 관리 방안”이라는 다년도 연구과제에서 올해 연구의 초점을 “긴급 지원”으로 선정한 이유를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제공된 긴급 지원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을 제시한다. 이는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된다. 먼저 사회적 재난에 대한 위기 대응을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검토하고, 다음으로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의 대응 방식과 한계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재난이자 경제위기로 인식된 코로나19에 대한 정책 대응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제도 분석을 통해 본 원에서 장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 사각지대와 부적정 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틀을 긴급 지원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하였다.

제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2장에서 개발된 긴급 지원의 사각지대와 부적정지출 모니터링 틀에 근거하여 전 국민 대상 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코로나19 영향과 긴급 지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선행 연구들을 고찰하고, 이를 참조하고 사각지대와 부적정지출에 대한 인식을 추가하여 조사표를 개발하였다.

조사표는 2020년에 수행된 이현주, 정은희, 김문길, 전지현(2020), 최영준 외(2020), 문혜진 외(2020), 이석원 외(2020) 등을 참조하였으며, 표본 크기는 4,000명으로 자영업자 및 플랫폼 노동자를 30% 할당하였다. 본 조사는 조사업체(Research & Research)가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 패널을 활용하였다. 단, 온라인 조사패널에 자영업자 및 플랫폼 노동자의 비중이 낮아 자영업자 및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오프라인조사를 병행하였다.

이 조사에 대한 기초분석을 통해 코로나19의 영향은 입었으나, 긴급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추정되는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와 청년, 고용지위 하락 집단에 대한 심층 분석을 제안하였다.

먼저 제5장은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와 코로나19의 영향을 살펴본다. 제6장은 코로나19로 노동시장 진입이 지연되거나 불안정한 일자리조차 사라진 청년을 심층 분석한다. 제7장은 코로나전후로 노동시장 지위가 변화한 집단(특히, 고용 지위의 악화)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제7장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과 긴급 지원 제도의 효과를 국가 수준에서 살펴보았다. 이미 2020년에 수행된 이태석 외(2020), 김을식 외(2020), 이석원 외(2020)의 연구 등에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의 한계소비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시적인 소득의 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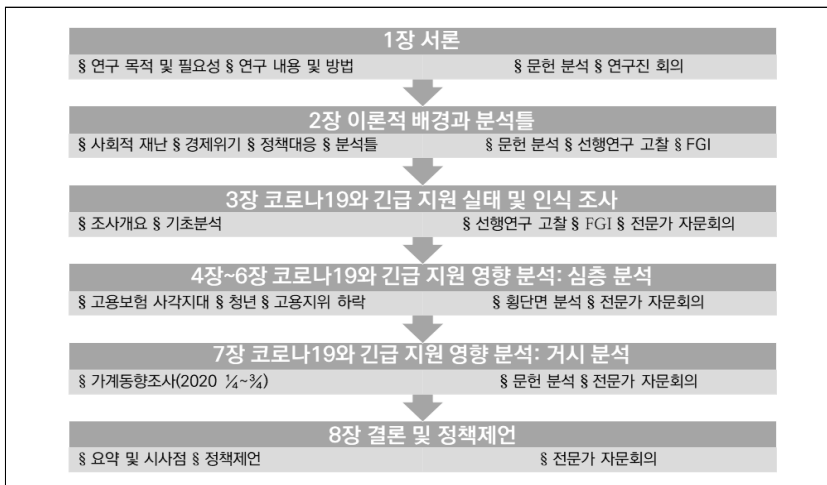
22 사회보장 분야 사각지대 축소 및 부적정지출 관리 방안 연구-긴급 지원을 중심으로

가를 즉시적으로 소비하지 않고 이연하거나 저축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재난지원금의 사용 제한인 7~9월을 분석에 포함하기 위하여 가계동향조사 2020년 3/4분기를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제8장은 긴급 지원 관리방안 및 긴급 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시점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2020년 이후 우리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 19의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신종 감염병 등 사회적 재난에 대응하는 우리의 사회보장체계의 한계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정책 대안은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먼저 메르스 이후 신종 감염병에 대한 사회적 재난이 「재난기본법」에 명시되었다는 점에서 재난지원체계에 대한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기준으로 소득안전망과 돌봄안전망의 측면에서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다.

[그림 1-1] 연구 개요



자료: 저자 작성.

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을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첫째, 문헌 분석을 실시한다. 국내 긴급 지원제도는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확대·개편을 통해서 이뤄지거나 재난지원금이라는 형식으로 새롭게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문헌 분석 역시 두 가지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확대·개편에 따른 긴급 지원은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법, 제도, 지침 분석 등을 통해 타당성과 사각지대 및 부적정지출 관리 프로세스 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재난지원금은 법적 근거와 논리적 타당성, 사각지대 및 부적정지출 관리에 대한 검토 등을 살펴보았다.

한편, 코로나19의 영향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나 긴급 지원제도는 일부 국가에서만 주요한 이슈로 대두되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국제비교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검토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 단위와 가구 단위, 소득 부문과 소비 부문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자영자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표본을 과대표집하였다.

이 조사에 대한 분석은 소득 부문과 소비 부문으로 구분하고, 전 국민과 자영자 및 플랫폼 노동자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자영자 및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온라인 조사와 오프라인 조사를 병행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와 이에 대한 정책 대응으로서 긴급 지원 제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은 주로 가계동향조사 및 고용동향 등 이차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이러한 분석은 정책의 사각지대를 발굴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나 단기

적인 정책 대응에 매몰되었다는 우려 역시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차 자료 분석과 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코로나19가 국민의 삶에 미친 영향을 실제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넷째, 가계동향조사와 같은 정기적인 통계조사와 본 연구에서 수행한 국민인식조사는 코로나19라는 쇼크(shock)에 대한 변화와 반응을 보여주는 데 적절하나, 코로나19의 영향에 대한 경중 및 민감성 등을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초점집단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섯째, 코로나19와 관련한 긴급 지원이 부처별·분기별로 다양한 방안들이 즉시성을 갖고 병렬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들이 혼재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이를 보완하였다.



제2장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 제1절 사회적 재난과 위기 대응
- 제2절 경제위기와 사회안전망
- 제3절 코로나19와 정책 대응
- 제4절 긴급 지원 분석틀

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제1절 사회적 재난과 위기 대응

1. 사회적 재난과 사회적 위험

코로나19는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사회적 재난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 이미 기든스(2009)는 후기산업사회에서 통제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위험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견했다. 예를 들면, 신종전염병의 증대, 에이즈의 확산, 오존층 파괴, 체르노빌 원자력 사고로 대표되는 원자력 재난 등이 대표적이다(진상현, 2010).

사회적 위험은 사회발달에 따라 순차적으로 오기도 하고 구 사회적위험과 새로운 사회적위험이 중첩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전근대사회에서는 홍수, 가뭄,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 발생하고, 산업사회에서는 실업, 산업재해, 장애, 대형사고, 빈곤 등 구사회적위험이 나타나며, 후기산업사회에서는 고용불안정, 중간계층의 불안정, 환경위험 등 새로운 사회적위험이 발생한다. 즉 시기에 따라 위험의 범위와 대상이 변화하며, 이러한 위험이 중첩되어 불평등이 심화되고 새로운 위험집단이 나타나는 것이다(김영란, 2018, p. 20).

위험구조의 변화와 관련하여 위험의 생산과 분배를 보는 두 개의 관점이 있다. 첫째, 누구나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위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의 민주화, 평등화다. 둘째, 계급, 젠더, 인종 등에 의한 사회적 위험 상황이 그대로 복사되어 특정계급과 집단에게 위험이 더 강화된다고

보는 위험의 계급/계층화이다. 계급/계층 불평등=위험불평등의 등식을 기반으로 위험에 대한 취약성에서 집단 간 격차를 낳는다. 위험의 계급/계층화는 위험에 취약한 사람들을 위해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이것이 복지국가의 강화로 이어진다(김영란, 2018, p. 21).

2. 재난기본법에 명시된 재난관리

우리나라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법률 제17698호, 약칭 재난안전법)」을 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1조 목적).

이 때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²⁾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한다. 이 중 사회재난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포함)·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규정하고 있다(같은법 제3조1항나목).

이 법의 제3조(정의)4호에서 재난관리란,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된다. 즉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행하는 활동을 뜻한다. 재난으로 인한 손실의 피해와 발생정

2) 자연재난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이다(같은법 제3조1항가목).

도는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재난 관리에 있어 핵심요소이다.

먼저 예방단계(Mitigation)는 위험과 관련해 재난의 부작용에 대한 완화를 뜻한다. 따라서 예방단계는 사전에 재난예방활동을 통해서 잠재적 부작용을 완전히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예방단계의 활동들은 재난 대비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예방대책을 수립하며, 각종 안전 점검 및 안전문화운동, 징후감시, 재난 위험지구관리대책 수립, 피해저감 제도개선 및 연구개발, 재난취약시설 점검·정비, 정보시스템 개선, 시설물 비상대처계획 수립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근거하여 「재난안전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제14조) 등을 운영하고,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제18조)하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제22조) 및 집행(제23조)하는 등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재난예방대책을 수립하며(제4장 재난의 예방), 각종 안전점검(제30조~32조) 및 안전문화운동(제8장 안전문화진흥)을 수립하고 있다.

대비단계(Preparedness)는 재난 및 재해로 인한 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재난 훈련들과, 국민들의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활동들을 포함한다. 대비 단계의 활동들은 재난대비 재난정보·상황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자원 동원계획 및 재난대응 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유관기관과 긴급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재난관리 대국민 홍보 및 교육 훈련, 행동 매뉴얼 정비 및 국민 행동요령을 홍보하거나 응급대응체계 및 비상연락 근무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활동들이다.

이에 근거하여 「재난안전법」에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체계화한 “국가 재난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 및 운영하고 있다(제5장 재난의 대비).

대응단계(Response)는 응급상황이나 재난이 일어난 후에 해당하는 단계로, 인명피해자들에게 수색과 구조, 대피소 운영, 의료서비스 지원, 식사지원 등 필요한 부분을 제공하는 것이다. 대응단계의 활동으로는, 재난상황보고체계 구축, 초기대응체계 확립, 유관기관 협조·지원체계 구축, 긴급구조, 이재민대책 및 대책본부 구성·운영, 재난 예·경보 신속 전파, 민·관 협력체계 구축, 비상단계 근무, 사고수습기구 운영, 2차 재난방지 대책 수립, 긴급수송, 구조구급 의료지원, 청소·방역활동 실시, 비상급수 및 생필품 보급, 시설물 응급복구, 이재민 수용 및 구호물자 공급, 지자체 및 관계행정기관의 대응대책 조정 및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 법에서는 제6장 재난의 대응을 통해 재난사태의 선포(제36조)와 응급조치(제37조), 위기경보의 발령(제38조), 위험구역의 설정(제41조), 응급부담(제45조), 긴급구조(제49조~제57조)를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복구단계(Recovery)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감소를 위한 모든 활동들을 수행하는 단계이다.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가 정상 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단계를 말한다. 따라서 복구단계의 활동들은 재난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 피해배상(보상), 자원봉사단 활용, 항구적 복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피해조사, 재난복구비용 지원대책(대상, 기준, 비용산정,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다.

이 법에서는 제58조(재난피해 신고 및 조사)부터, 비용 부담의 원칙(제62조), 손실보상(제64조), 치료 및 보상(제65조), 국고보조 등의 지원(제66조)과 복구비 등의 선지급(제66조의 2)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이 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기금(제67조)을 적립하고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중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

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제68조).

3. 메르스를 통해 본 사회재난 대응

코로나19는 사회재난이다. 따라서 사회재난을 포함하는 재난관리의 측면에서 긴급 지원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메르스감염병에 대한 대응 체계를 통해서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2000년대 이후 우리는 다양한 감염병을 경험하였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인 “사스(SARS)”와 중증호흡기증후군인 “메르스”, 코로나19 모두 코로나바이러스가 원인이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사람과 동물에서 흔히 나타나는 감기바이러스 중 하나이다. 문제는 변종이 발 생겨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변이되기 쉽다는 점이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사스, 메르스와 확실한 차이가 있다. 치사율은 사스나 메르스보다 낮지만, 전염력 및 전파속도는 훨씬 더 높기 때문이다(장인선, 2020).

사스는 중국에서 2002년 12월말에 처음 등장하여 2013년 7월에 종식됐으며, 메르스는 2012년 중동에서 시작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다가 2015년 5월에 우리나라에 전파되었고, 그 해 12월에 종식되었다(보건복지부, 2015). 사스와 메르스의 영향으로 2013년 「재난기본법」에 감염병이 추가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난기본법」은 자연재해와 사회재해를 모두 포괄하고 있으나,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전 과정에서 자연재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자연재해는 비교적 국지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점검 등의 예방 노력이 중요했던 것이 사실이고, 재난안전기관리금의 최저적립액을 기준으로 일정 수준 안전관리에 할당하기로 했던 전략이 유효했다.

그러나 사스와 메르스를 경험하면서 감염병은 사회 재난의 중요한 위협 요인으로 등장했다. 실제로 메르스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 재난에 대한 정부의 재난관리와 관련한 첫 번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메르스를 경험하면서 우리 사회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재난에 대응한 조직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고, 감염병 환자의 발견과 역학조사, 진단검사 및 격리병상, 위기소통과 확진확자 발생시 정보 공개 등과 같은 기본적인 매뉴얼이 구축되었다. 이에 더해 집중관리병원에 대한 방역 조치, 지역사회 메르스 대응, 감염병 환자의 치료와 지역 사회 진료, 사후 지원과 보상체계의 마련 등이 메르스 백서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보건복지부, 2015).

메르스에 대한 지원과 보상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뤄졌다. 첫째, 메르스 감염 유행으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① 진료비 지원, ② 확진환자·유가족·격리자 대상 심리지원, ③ 메르스 격리자 긴급 생계 지원, ④ 메르스 감염 사망자 장례지원이 이뤄졌다. 둘째, 메르스환자를 치료, 진료, 격리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뤄졌다.

특히 메르스 격리자에 대한 긴급 생계 지원은 당초 긴급복지제도를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긴급복지법」은 가구원 중 회사(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지원대상이 아니며, 가구 전체가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이 가능했다. 이와 관련하여 격리자 대상 생계비 지원에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두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이후에는 긴급 생계 지원대상에서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사실상 적용되지 않았고, 개인이 아닌 가구를 기준으로 생계비가 지원되었다(보건복지부, 2015, p. 389).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앞으로 격리가 이루어질 때마다 보상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며 생계 지원을 위한

제대로 된 기준과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고(보건복지부, 2015, p. 390),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고민과 격리 및 입원 조치를 받은 개인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생계 지원 외에 돌봄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생활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5, p. 393).

한편,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은 그 규모를 파악한 후 손실보상 대상과 기준 마련, 손실보상 규모 산출과 관련한 법적 검토와 협의를 위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다. 이에 정부는 메르스 치료병원, 노출자 진료병원, 집중관리병원 및 발생·경유 의료기관에 개산급³⁾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손실보상액을 산정한 후 최종 지급하였다(보건복지부, 2015, p. 391).

메르스 백서를 통해 살펴본 바는 다음의 세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메르스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재난에 대응하는 보건의료체계 및 긴급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둘째, 감염병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개인과 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이 이뤄졌고, 긴급복지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별도의 생계 지원을 실시하였다. 셋째, 메르스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의 병상 이용 제한과 확진자 등 발생으로 폐쇄된 병원에 대한 손실 보상이 개산급 방식으로 선제적으로 이뤄진 후 사후에 손실보상액을 결정하고 집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를 가진다. 첫째, 확진으로 인한 가족 단위 생계 지원은 이뤄졌으나, 그들의 자녀 등에 대한 돌봄은 지역 사회에 전가되었다. 특히 부부 모두 확진자로 자가 격리되었을 때 자녀에 대한 돌봄은 사적 체계로 전가되었다. 둘째, 사회재난에 대한 대응에 있어 긴급복지법이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이고 임의적인 지

3) 개산급이란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렵셈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메르스(의심) 환자를 치료, 진료 및 격리한 실적과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폐쇄한 병상 수 등을 기준으로 투입한 자원을 계산하여 산정하였다.

원 체계로 대응했다. 셋째, 생계지원과 손실보상 모두에서 대상 선정 기준과 지원액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사후 정산이 충분하지 않았다.

4. 코로나19와 재난관리

코로나19는 코로나바이러스(CoV)가 비말(飛沫) 등을 통해 사람과 동물에 감염되어 발열·기침·호흡곤란·폐렴 등을 유발하는 증상이라는 점에서 감염병에 해당한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의 요구는 「국가재정법」상 편성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때 관련이 깊은 편성요건은 “대규모 재해”와 “경기침체·대량실업의 발생 또는 발생 우려”이다. ‘재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근거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한정되는데, 메르스 사태 이후 2015년 12월 15일 법 개정을 통해 사회재난이 포함되었다.

다음으로 “대규모” 요건은 메르스와 비교할 때 확연하게 드러난다. 메르스는 2015년 5월 20일에 발병하여 7월8일까지 확대되었다. 이에 비해 코로나19는 2020년 1월 20일에 최초로 확진되었고, 2021년 현재까지 종료되지 않은 상태이다.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 모두 이미 2020년에 메르스를 초과하였다.

〈표 2-1〉 코로나19와 메르스 피해 현황 비교

구분	집계기간	확진자 수	사망자 수
코로나19	237일 (2020.1.20.~9.13.)	22,285명	363명
메르스	69일 (2015.5.20.~7.8.)	186명	38명

주: 코로나19는 2020년 9월 14일 10시를 기준으로 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0).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p. 24.

이 밖에도 재해 관련 추경(안)으로 2002년·2003년·2006년 태풍 및 집중호우, 2015년 감염병·가뭄·장마, 2019년 미세먼지 및 산불 관련 추경(안) 등을 살펴볼 수 있다.

〈표 2-2〉 재해대책 추경안 편성 연혁

(단위: 조 원)

연도	관련 재해	피해규모	추경안	규모
				재해관련
2020(3차)	코로나19	코로나19: 280명 사망 (2020.6.20. 기준)	35.3	35.3
2020(2차)			7.6	7.6
2020(1차)			11.7	11.7
2019	미세먼지 강원산불	미세먼지: 특정 곤란 강원산불: 재산피해 1,291억원	6.7	2.2
2015	중동호흡기증후군 가뭄 및 장마	메르스: 38명 사망	11.8	3.3
2006	7월 집중호우 태풍 예위니아	집중호우: 재산피해 18,344억원 웨위니아: 재산피해 55억원	2.2	2.1
2003(2차)	태풍 매미	매미: 재산피해 42,225억원	3.0	3.0
2002	태풍 루사	루사: 재산피해 51,479억원	4.1	3.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0).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p. 24.

코로나19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기침체·대량실업의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요건도 충족한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를 비교할 수 있다. 이들 세 시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2-3〉 재해대책 추경안 편성 연혁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세계금융위기	코로나19
실질성장률 감소	△ 13.0%p	△5.0%p	△3.3%p
취업자 수 감소	△151.4만명	△2.9만명	△27.4만명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0).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pp. 25-26.

제2절 경제위기와 사회안전망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비교된다. 한국에서는 외환위기와 세계금융위기를 함께 비교하는 반면, 해외에서는 세계금융위기에 보다 초점을 맞춘다. 물론 두 번의 경제위기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번의 위기에 대한 원인과 결과보다는 두 번의 경제위기에 대한 정책 대응으로써 사회안전망의 도입과 확충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어떻게 작용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1. 1997년 외환위기와 사회안전망의 대응

사회안전망이란 모든 국민을 실업, 빈곤, 재해, 노령, 질병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김경혜, 2009; 김상균, 최일섭, 최성재, 조흥식, 김혜란, 2005). 일반적으로 1차 사회안전망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노령·질병·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을 통해 사전에 대비하고 위험을 분산시키는 사회보험으로 구성되며, 2차 사회안전망은 1차 안전망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공공부조로 구성된다. 3차 안전망은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자에게 최소한의 생계 및 건강 유지 지원을 위한 장치로 긴급 구호 등을 들 수 있다(국정신문, 2002).

우리나라는 1차 사회안전망으로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5대 사회보험이 도입되었으며, 2차 사회안전망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도입되었다. 또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지

원하는 긴급복지와 재난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다.

가. 실업대책과 고용보험의 확대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는 등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공적보험(公的保險)으로, 1995년 7월1일부터 시행되었다(고용보험법 제정, 1993.12.27.). 도입 당시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인 의미의 실업급여 사업을 포함하여 모성보호,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적극적 의미의 노동시장정책까지 포함하여 사회보장제도로 여겨졌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로 고용보험은 도입된 지 2년 6개월 후에 위기에 직면하였고, 이로 인한 다양한 제도 변화를 경험하였다. 외환위기는 국내기업의 부실 심화 및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부족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 투자 위축 및 국내 주식 매도로 인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임금근로자 고용이 대폭 감소하고, 그중에서도 상용직 일자리가 가장 많이 감소했다. 특히 40대 장년층, 남성을 중심으로 고용이 위축되었다(황수경 외 2010, p. 17).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1998년 한 해 동안 총 4차례 실업대책을 수립하였다. 특히 실업대책의 핵심은 공공근로와 실업자직업훈련, 저소득실업자생계보호이다. 그러나 황수경 외(2010, p. 151)는 “공공근로 사업은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참여하는 문제와 비생산적인 사업 추진,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로 인한 중소기업의 인력 역류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실업자 직업훈련은 부실 훈련, 훈련 상담 및 선발 체계 미흡, 훈련수당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 참가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또한, 저소득실업자생계보호 사업은 다양한 사업들이 독립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이중 수혜와 과소수혜의 문제를 나타냈다(황수경 외, 2010, p. 151).” 황수경 외(2010)는 당시 실업 대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대량실업을 모두 제도적 틀을 갖춘 상태에서 접근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제도적 틀에 포함되어 있는 계층에 대한 정책과 제도로 포괄되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정책으로 구분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전직실업자와 신규실업자의 구분, 실업급여대상자와 비대상자의 구분, 생계유지가능실직자와 영세실직자를 구분해서 대상별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실업자 특성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결여된 상태에서 추진되면서 그 취지가 현실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점도 많았다(황수경 외, 2010, p. 151).”

1997년 외환위기는 한국경제 사상 초유의 대량 실업을 유발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구조도 크게 바꾸어놓았다. 또한 실직, 실업, 전직 등 고용 사정 변동에 기인하는 빈곤 인구는 전체 빈곤 인구의 7.3% 정도로 추정되었고, 여기에 고용불안 계층의 증가와 임금의 전반적 감소 등으로 빈곤 인구를 큰 폭으로 증가시켰다(황수경 외 2010, pp. 143-145).

나. 생산적 복지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 시기 정부는 「생산적 복지」의 확충과 중산·서민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였다. 주요한 정책 대응은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생산적 복지의 이념에 따라 전통제조업·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와 IT, 문화·환경 등 신산업의 육성을 통해 20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였다. 셋째,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최저임금제, 임금채권보장법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적용하였다. 넷째,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한도 인상, 대출금리 인하, 주택 구입·전세자금 지원 한도 확대 등을 시행하였다. 다섯째, 급여생활자의 세금부담을 경감(2.6조 원)하고, 금융소득종합과제 재 실시 등을 통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였다(재정경제부, 2001, p. 11). 이 중 눈에여겨볼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과 증산층까지 포함하는 생활 안정 대책이다.

1997년 경제위기와 급격한 경기침체로 인해 국민의 소득은 줄어들고 고용기회는 감소하였다. 특히 경제위기의 비용이 모든 소득계층에 균등하게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에게 더욱 가중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였다. 즉 갑작스러운 경제위기로 인한 대량의 실업과 실업자의 빈곤화를 방지할 각종 사회안전망의 취약에 따라 국민 생활의 최저선, 혹은 국민복지의 기본선을 보장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1999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었고,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강신욱, 허선, 정호원, 2004, p. 14).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이 법은 ‘보충성’과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즉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스스로 생활을 유지·향상하기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 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또한 부양의 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수급자로 선정되면 가구 특성에 따라 급여를 받는 구조로 설계되었

다(김교성, 2017, p. 162).

이로 인해 기초생활 수급 자격 기준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인 가구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한정되었다. 반면에 소득이 없으나 자산이 있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 절대빈곤층의 상당수는 제도에서 배제되었다(김경혜, 2009, p. 32).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고, 1차 안전망인 사회보험 제도를 다각적으로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의 기본 틀은 구축하였으나, 여전히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하였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빈부격차가 회복되지 않고, 빈곤층이 확대되고 있어 빈곤층의 기본적인 생계보장과 탈빈곤을 위한 정책 강화가 중요한 화두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3년 경제사회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서민·중산층 생활안정대책을 확정하였다(보건복지부, 2003). 이는 총 8개 과제로 제시됐는데, ① 서민중산층 생활안정대책 추진방안(재경부), ② 서민생활 물가안정 대책(재경부), ③ 서민금융 내실화 방안(재경부), ④ 서민·중산층 교육비 지원대책(교육부), ⑤ 저소득층 보호 내실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대책(복지부), ⑥ 청년 및 취약계층의 고용안정대책(노동부), ⑦ 서민·중산층의 창업 및 경제활동 활성화 대책(산자부), ⑧ 서민주거생활안정대책(건교부)이다.

이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는 사회안전망의 내실화, 저소득계층과 장애인의 빈곤 예방 및 자립 지원, 고령화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복지서비스 확충, 노숙자 등 취약계층 보호 대책 등을 발표하였다.

2.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사회안전망의 대응

가. 고용안전망

1997년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는 국내기업의 부실과 금융 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이 원인이 되어 국지적으로 발생했지만,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두 위기는 모두 금융위기에서 비롯되어 신용경색과 금융시스템의 불안이 위기를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노동시장의 반응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황수경 외, 2010, p. 16).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의 여파가 40대 장년층과 남성의 고용 위기를 경험했다면, 2008년 세계금융위기는 여성과 청년층 고용에서 타격이 컸다. 또한 고용 위기의 충격은 고용 형태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는데, 외환 위기는 임금근로자 고용이 대폭 감소하고 그중에서도 상용직 일자리가 가장 많이 감소했지만, 세계금융위기에서는 비임금근로자와 임시·일용직에서 고용 감소폭이 현저하였다(황수경 외, 2010, pp. 16-18).

이러한 차이로 인해 두 번의 위기에 대한 정책 대응 역시 상이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환위기 시 우리나라는 대량 실업이 발생했기 때문에 공공근로와 실업자직업훈련, 저소득 실업자 생계 보호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반해 세계금융위기 시에는 대량 실업이 발생하지 않아 고용 유지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다.

2008년 당시 세계 경제 장기 침체 전망에 따라 해외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인력감축을 계획하거나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은 정리해고와 같은 고용조정을 시행하지 않았다. 고용유지지원금이 매우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을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2008년 세계금융위기 당시 고용유지지원금은 약 7개월 후 고점에 도달한 이후 예년과 같은 진정국면으로 전환되는데 8~10개월 정도 소요되었다(주무현, 2010).

고용유지지원제도는 고용주가 생산·매출 감소에 따라 곧바로 고용조정을 시행하지 않고, 근로자 고용을 유지할 때 지급 임금의 일정액을 지원하는 단기적이고 한시적인 고용장려금 조치이다. 따라서 기업에는 인건비 보조에 의한 경상경비 절감으로 경기변동에 한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한다. 또한 근로자는 실업 상태에서 받을 실업급여를 고용계약을 유지한 상태에서 임금 형태로 받기 때문에 부분실업급여로 실업 지연효과와 소득보전효과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고용유지지원제도가 고용주의 경영 부담을 더는 반면, 근로자는 기업의 고용조정에 따른 비자발적 실업을 회피할 수 있어 일정 기간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고용유지지원금이 구조조정을 부분적으로 지연하여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윤동열 외, 2021).

주무현(2010)은 고용유지지원제도의 고용유지 효과는 고용유지일 수 기준에서 10인 미만 영세소기업에서 가장 크고,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거의 미미한 것을 밝혔다. 고용유지지원제도는 고용유지와 임금 보전을 통해 경기 악화의 낙하산 효과가 작용했다고 평가한다. 또한 고용 위기 국면에서 고용유지지원제도의 전달체계는 행정업무 처리 과정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특정 지역 또는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러기식 전달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소득안전망

2008년 세계금융위기는 취약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산층까지도 포함하는 위기 상황이라는 인식에 근거하여, 사회안전망은 중산층까지 폭넓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김태완, 전지현(2009)은 세계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① 최저 보장, ② 일자리 창출, ③ 사회통합을 제안하였다. 먼저 최저보장을 위해서 '체계적·포괄적·예방적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는 중산층 붕괴 방지를 위한 사회보험을 보완하고 긴급 지원제도를 확충하며, 빈곤층에 대한 최저 소득보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장애연금 등을 보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다음으로 인구 특성별(근로계층, 노인, 아동 등)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사회복지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근로계층에 대해서는 생계보장과 일자리의 연계를 강화하고,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서는 생계보장과 의료, 사회서비스를 강화하였으며,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 교육, 사회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특히 김태완 외(2009)는 경제위기 시에 빈곤층뿐만 아니라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차상위계층 및 중산층에 대한 지원은 예방적인 빈곤대책으로서 그 의미가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가입률이 낮고, 비정규직근로자나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안정적인 고용과 임금을 전제로 하는 국민연금·고용보험에 대한 접근 자체가 제한되어 있어 1차 안전망에서 사각지대가 만연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역시 빈곤인구 중 약 30%만을 포괄하고 있어 빈곤의 사각지대가 넓게 분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김태완 외, 2009, p. 29).

정부는 경기침체로 서민·취약계층의 고용과 소득이 줄어드는 등 생계 여건이 크게 악화되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문(2009년 2월)”을 통해 정부와 기업이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명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① 서민 생계부담 지원, ② 물가 불안 사전 차단, ③ 일자리 나누기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마련하였다(노사정위원회, 2009).

이를 위해 추경예산을 활용하여 경제위기로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생계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생계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생계 지원사업을 마련하며, 실직가정·체불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및 무담보 소액 대출 지원을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대학등록금 등 가계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소득·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강화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09). 이에 대한 추경예산은 약 6조 원으로 편성되었고, 국회 추경(안)은 4월 중 통과하였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긴급 생계지원이다. 실직·휴폐업 등으로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비수급 저소득층 120만 가구(260만 명)에게 맞춤형 생계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7만 가구(12만 명) 추가하고, ② 실직·휴폐업 등으로 저소득층으로 전락한 계층에 대한 긴급복지 대상자를 3만 가구(8만 명) 추가하며, ③ 생계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근로능력·재산상태 등을 감안한 한시적 맞춤형 사업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이때 노인·장애인·중증질환자 등 근로능력이 없는 계층에게는 소액 생계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게는 공공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임금의 일부를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재산이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재산 보유자에게는 보유주택 등을 담보로 생계비를 저리 용자로 지원하기로 했다.

〈표 2-4〉 국제금융위기 시 긴급 생계 지원

구분	지원대상 ¹⁾	지원내용	소요예산	지급형태
한시생계 구호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근로능력 50만 가구 (110만명)	평균 20만원, 6개월	5,385억원 (국고 4,181억원)	현금
희망근로 프로젝트	최저생계비 120% 이하 소득, 근로능력 40만 가구 (86만명)	월 83만원, 6개월	2.6조원 (국고 2조원)	현금 50% 상품권 50%
자산담보 부용자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일정재산 ²⁾ 보유 20만 가구(44만명)	평균 5백만원 (상한 1천만원)	1,300억원 (전액 국고) 이차보전 등	대출

주: 1) 지원대상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제외됨.

2) 재산 85~200백만 원

3) 용자조건: 3%, 2년 거치 5년 상환(총 용자 1조 원)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09). 민생안정 긴급 지원 대책. p. 5.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210374에서 2021.11.10. 인출.)

요약하면, 지난 두 차례의 경제위기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우리의 사회안전망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하였고, 역설적으로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사회안전망의 도입과 확충에 상당한 재정이 투입되었다면, 2008년 세계금융위기 당시에는 잔여적인 3차 사회안전망을 활용하여 긴급하게 대응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세계금융위기 당시에는 외환위기 이후 계속 문제가 된 고용불안정과 소득불평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보다 정책 대상을 근로가능과 근로불가능으로 식별하고, 근로가능계층은 공공일자리를 통한 재정 지원을, 근로불가능계층의 일부에 대해서 긴급 지원이 이뤄졌다.

물론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하여 대량 실업을 예방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 다만, 국제금융위기에 대한 정책 대응이 유동성 위기로 인한 대출금 한시 유예와 이차보전 등의 대책에 초점을 맞춰져, 위기가구 중 기초생활보장 가구를 제외했으며, 민생안정 긴급 지원대상 선정이 매우 잔여적인 형태로 이뤄졌다.

제3절 코로나19와 정책 대응

본 절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정책 대응을 사회안전망과 긴급 지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사회안전망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용안전망과 소득안전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두 번의 경제위기와 달리 감염병으로 인해 추가된 돌봄안전망을 추가하여 살펴본다.

다음으로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한 경제지원을 금융지원과 민생 지원으로 구분한다. 이때, 금융지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창업기업(스타트업), 중소기업, 중견·대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주로 대출, 보증, 신용회복, 투자 촉진, 유동성, 자금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민생지원은 일반국민과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 전기요금, 긴급재난지원금, 내수 보완 방안 등으로 구성된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11.29.인출). 본 연구에서는 민생지원 중 개인과 가족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다.

1. 코로나19와 사회안전망의 대응

가. 고용안전망

고용보험은 이번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 이는 실업급여나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실적에서도 드러난다. 즉 실직한 임금근로자 178만 명에게 고용보험료 12조2,000억 원이 지급되었는데, 이는 2018년과 2019년의 약 2배와 1.5배에 해당한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도 77만3,000명에 대한 지원금 2조3,000억 원이 7만2,000개 기업에 지급되었다. 이 사업은 2019년에 1,000억 원도 지급되지 않았다.

고용보험은 크게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사업으로 구성된 의무지출 사업

과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구성된 재량지출 사업으로 분류된다. 2017년 결산과 2020년 수정예산을 기준으로 고용보험기금 사업을 살펴본 결과,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창출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에서 연평균 증가율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고용보험기금 사업

(단위: 억 원)

구분		2017 결산	2020 수정	연평균증가율
고용 창출 및 훈련	고용유지지원금	518	7,963	98%
	고용창출장려금	3,209	15,782	49%
	고용장려금(용자)	597	216	-22%
	건설근로자고용지원금	74	106	9%
	직업정보지원	86	104	5%
	고용동향조사분석	45	50	3%
	고용전산망관리(정보화)	415	356	-4%
	고용서비스지원	1,170	215	-35%
	지역고용촉진지원	1,293	81	-50%
	세대간상생고용지원	359	134	-22%
	청년내일채움공제(고보)	763	5,033	60%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5,809	3,155	-14%
	실업자 및 근로자능력개발지원	6,726	8,180	5%
	중소기업능력개발지원	2,313	1,191	-15%
	기타 능력개발지원	198	180	-2%
	한국산업인력공단능력개발지원	1,996	4,200	20%
	한국폴리텍대학능력개발사업지원	1,132	1,028	-2%
	고용보험징수관리	283	387	8%
	능력개발용자지원(용자)	541	428	-6%
	소계	28,265	48,787	15%
고용 안전망 확충	실업급여	52,394	97,752	17%
	자영업자실업급여	32	50	12%
	실업크레딧지원	176	274	12%
	소계	52,601	98,077	17%
고용 평등 증진	일·가정양립지원	11,473	18,850	13%
	고령자고용촉진지원	1,082	916	-4%
	일터혁신컨설팅지원	113	236	20%
	소계	93,534	166,866	16%

주: 2017년 결산 자료와 2020년 수정예산(안)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연평균증가율을 산출함.

자료: 1) 고용노동부. (2019).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 세종: 고용노동부.

2) 고용노동부. (2021).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세종: 고용노동부.

본 연구는 국제금융위기 시 효자 노릇을 했던 고용유지지원금을 증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정부는 휴직자 증가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휴직기업·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을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다(2020년 5월).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휴직과 무급휴업·휴직으로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휴업은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총 근로시간의 20/100 이상 초과해서 단축할 때 해당한다. 휴업 조치에 따른 지원금도 고용위기지역·고용위기업종에 대해서는 지원조건 완화와 지원 금액 증액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고용위기지역 기업은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의 9/10를 지원하고, 1일 7만 원 한도에서 최대 180일 동안 지급한다. 이와 달리 무급휴업·휴직은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하지 않아 근로시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도 피보험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1일 6만 원 한도에서 최대 180일까지 지급한다.

또한 2020년 3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노사가 고용유지에 합의하고,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로 인해 임금이 감소했을 때 임금감소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노·사 합의 고용유지지원제도도 함께 시행되었다. 2021년 상반기부터 코로나 백신 보급이 확대되면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경기회복 가능성이 전망되지만, 항공업계 등은 경영난에 시달렸다. 이에 정부는 2021년 6월 종료 예정이었던 항공업계 유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3개월 연장하여 항공업계는 인건비 부담을 덜게 되었다.

〈표 2-6〉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내용

일자리 사업	지원내용	인원
고용유지지원금	(유급) 휴업수당의 2/3~9/10 지원 (무급) 평균임금의 50%×180일 지원	50만명
무급휴직신속지원 프로그램	1개월(특별고용지원업종 제한 없음) 유급휴업 후 무급휴직시 월 50만원×3개월 지원	32만명
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 (무급휴직노동자 고용안정지원)	지자체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 노동자에게 월 최대 50만원×2개월 지원	11.8만명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0).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1)- 사업재개, 신규창출, 채용- 정책정보포털 POINT.

(https://policy.nl.go.kr/search/searchDetail.do?rec_key=SH2_PLC20200250754에서 2021.10.20. 인출.)

〈표 2-7〉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실적

구분		사업장 수	지원인원	예산
2020년	지원실적	7.2만개소	77.3만명	2조2,779억원 (2018년 대비 34배)
	업종규모별 사업장 분류	- 제조업(29.8%), 도매 및 소매업(19.3%), 숙박 및 음식점업(9.3%) 등 - 10인 미만 사업장(77.9%), 1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15.8%) 등		
2021년 (5.18. 기준)	지원실적	3.6만개소	25.2만명	1조7,449억원 중 5,992억원 집행(34.3%)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일자리정책평가과. (2021).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 및 제14차 고용위기대응반 개최. (2021.05.25.)-② 코로나19 대응 고용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 심의자료.

이와 함께 정부는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일하는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생활 안정 및 재취업 지원 등 보편적 고용안전망을 제공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의 사업주 신고 기반의 임금근로자 중심에서 소득에 기반을 둔 모든 취업자에게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것을 뜻한다. 특히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등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하고, 임시·일용직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 및 적용방안을 수립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 적용할 예정이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나. 소득안전망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역시 앞에서 다룬 두 차례의 경제위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 증가를 막기 위해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하였고, 실업자에 대해서는 공공일자리 지원과 실업급여를 통해 소득감소를 완화하고자 하였다. 이것이 1차 사회안전망인 고용안전망의 역할이라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2차 사회안전망인 공공부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으로 인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였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전인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사용되어 60년간 유지된 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7년 11월부터 매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했으며, 2022년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원래 계획이었던 2022년보다 앞당겨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하였다(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2021).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로 2020년 12월까지 약 17만6천명이 새롭게 수급자로 책정되었으며, 2021년 추가 기준 완화 및 10월 폐지로 약 23만 명(약 20만 6천 가구) 이상의 저소득층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게 될 전망이다. 향후 생계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하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수급할

수 있다. 단, 생계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기준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2021).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외에 보건복지부는 3차 안전망으로 긴급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긴급복지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긴급복지지원법」제1조). 이 법에 따른 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므로,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동법 제3조).

긴급복지지원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⁴⁾, 위기상황이 증명되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소득 상실 등으로 생계가 어려우나 고용보험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들에 대해 긴급복지 기준을 2020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했다가, 이를 다시 2021년 3월까지로 연장했다. 완화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기 사유에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등을 포함했다. 둘째,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했다⁵⁾. 셋째, 지원 기간 제한을 완화했다.

4)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소득은 대도시 188백만 원, 중소도시 118백만 원, 농어촌 101백만 원,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다(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2020b).

〈표 2-8〉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2020.12.30. 개정 후)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급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로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 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 ② 단전된 때
 - 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가. 가구구성원 중 주소득자가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한 후 휴·폐업신고를 한 경우
 - 나. 긴급 지원 신청일 기준 휴·폐업신고기일이 12개월 이내인 경우
 - 다.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 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 ④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가구원 중 주소득자가 실직했으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실업급여가 종료되었으나 지속적인 실직 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 나. 긴급 지원 신청일 기준 실직한 날이 1개월 경과 12개월 이내이고,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 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고용보험법」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적용제의 근로자 기준의 근로시간 이상인 경우
 - 라. 부소득자의 실직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 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 ⑤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요건 생략)
 - ⑥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요건 생략)
 - ⑧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 ⑨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⑩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산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⑪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⑫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2021). 긴급복지지원법.
 (<https://www.law.go.kr/법령/긴급복지지원법>에서 2021.10.14. 인출)

5) 대도시는 3억5천만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은 1억7천만 원 이하가 되면 재산기준을 충족하게 되었다. 금융재산기준 산정시 생활준비금의 완화된 공제비율(기준 중위소득의 150%)을 적용하였다(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2020b).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가구 중 기존의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의 생계를 한시(1회)적으로 지원하는 4차 맞춤형 피해 대책의 하나로 보건복지부는 한시 생계지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다. 한시 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2019~2020년 대비 2021년(1~5월)의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 소득, 재산, 위기 사유, 중복수급 등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것. 둘째, 재산소득이 3억5천만 원 이하일 것. 셋째,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등으로 생계 곤란 등 위기 사유가 있을 것. 넷째, 기존 생계비 지원(생계급여, 긴급복지) 및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⁶⁾과 중복되지 않을 것.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원 수에 차등 없이 가구당 50만 원(1회)을 지원받는다. 2021년 추경에는 80만 가구에 4,044억 원이 편성되었다.

〈표 2-9〉 한시 생계지원 적용 기준

(단위: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기준 중위소득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연간 소득액	16,450,000	17,792,000	35,855,000	43,886,000

자료: 복지포 홈페이지. (2021). 한시 생계지원.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zzza/intgSearch/moveTWZZ01000M.do>에서 2021.03.10. 인출.)

6)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다. 돌봄안전망

코로나19가 두 번의 경제위기와 다른 점은 비말로 인한 감염의 우려로 국가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 및 영업금지 조치를 시행했다는 점이다. 이는 메르스⁷⁾와 유사하지만, 차이가 있다.

대한감염학회 등 의료전문가 단체와 국가는 사스나 신종플루와 달리 메르스는 공기전염이 되지 않아 전염력이 훨씬 약할 뿐만 아니라 치사율도 폐렴 사망률보다 크게 높은 낮은 정도(10%)로 그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견해를 나타냈다(이동훈, 김지윤, 강현숙, 2016, p. 356).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은 “나 혹은 나의 가족이 감염될 가능성”에 대해 과도하게 우려하였으며, 신종감염병에 대한 불안으로 외국인 관광액 감소, 대중교통 기피 및 외출자제, 영화·놀이공원·프로야구·박물관 등 여가활동의 자제 등으로 소비가 위축되었다(이동훈 외, 2016, p. 359). 이에 따라 정부는 메르스 피해 업종(관광, 중소기업, 수출업체 등)에 대한 시설 및 운영자금을 확대하고, 청년 등을 활용하는 돌봄일자리를 확대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다(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 예산정책과, 조세분석과, 2015).

비말로 인한 감염의 우려 때문에 직장과 가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독려했고, 집합금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학교와 학원,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사실상 제한되었다. 즉 메르스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이로 인한 피해가 특정 업종(예, 교육, 여가·문화) 혹은 소규모사업체(예,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 영향을 준 것은 같지만, 결정적

7) 메르스는 명확한 감염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중동지역에서 낙타와의 접촉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사람 간 밀접접촉에 의한 전파가 가능하고, 현재까지는 대부분 의료기관 내 감염, 가족 간 감염에 따른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정책정보-감염병위기대응-신종감염병관리-MERS, <https://www.kdca.go.kr/contents.es?mid=a20301020709>에서 2021.11.29. 인출).

인 차이는 사회 전반에 다각도로 이뤄진 사회적 거리두기이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을 가족 내 일하지 않는 구성원으로 전가하거나 저임금 일자리로 대체해왔다. 특히 저소득, 맞벌이 등 가정에서 직접 돌봄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증명될 때 비로소 사회적 돌봄을 이용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아동은 저소득층 혹은 맞벌이 가구의 아동일 때, 노인과 장애인은 저소득 혹은 기능의 상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때에만 공식적인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에 대한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두 번의 경제위기와 메르스와 다른 점은 바로 돌봄안전망의 붕괴에 있다. 그동안 사회적 돌봄으로 생활했던 돌봄 취약계층이 코로나19로 가족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가족 내 돌봄 제공이 어려운 경우 일상적인 돌봄 공백을 넘어 사회적 고립과 생존까지 위협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코로나19의 초기 발생 시기였던 2020년 1월~2월은 학교가 방학 중이었으며,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어린이집·유치원, 학교 등은 신학기 개학을 연기하고, 휴원조치를 실시하였다. 이는 학원·교습소, 사회복지시설 역시 마찬가지다. 또한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가정방문 서비스도 제한되었다.

이 시기 사회적 돌봄의 휴지로 가정 내 돌봄 부담이 가중되었고, 일부 시설이 긴급 돌봄으로 대응하였다. 가정 내 돌봄은 근로하지 않는 구성원으로 전가되었으나, 대기업·정규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하거나 재택근로,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등을 활용하여 가족 내에서 돌봄을 긴급하게 혹은 일시적으로 제공할 수 있었다. 반면에 임시일용직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 고용취약계층은 가족돌봄 휴가나 육아휴직 등의 사용이 제한되거나 필요할 때 이용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정부는 학교의 휴원 조치로 돌봄 부담이 증가한 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아동특별돌봄지원’을 추경사업에 포함하였다. 이는 “미취학 아동·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어린이집·학교의 휴원·휴업 등으로 발생한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학생 자녀에게는 ‘비대면 학습지원’으로 아동 1인당 15만원을 지급했다(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아동복지정책과, 2020).

돌봄안전망의 붕괴에 대한 현금 지원은 가계의 감소된 소득을 보충하는 데는 효과적이거나, 학교 휴원에 따른 아동 돌봄 부담을 해소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특히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에, 스쿨뱅킹 계좌가 있는 초등학생은 스쿨뱅킹 계좌로 돌봄지원을 직접 지급한 것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위험이 서로 다른 “돌봄안전망”을 “소득안전망”으로 전환한 것이다. 물론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의 휴지 기간에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시설에서 “긴급돌봄”을 시행하거나 가정 내에서 거주하는 돌봄 대상자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긴급돌봄을 시행하는 등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본연의 정책도 잊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11개 시·도⁸⁾에 설치된 사회서비스원을 활용하여 ‘2021년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을 시행하였다. 이는 ① 본인 또는 가족의 확진 등으로 가정에서 기존에 이용하던 돌봄을 받기 어렵거나, ② 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기존 돌봄인력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력이 부족하거나, ③ 간병인이 없어서 코로나19 치료병원에 입원이 어려운 고령확진자 등을 돌보기 위한 요양보호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8) 서울, 대구, 경기, 경남,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남, 전남에 설치되어 있다(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2021).

2. 코로나19와 경제지원

아래는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개인과 가족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급 지원을 정리한 것이다.

가. 중앙정부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대응 긴급 지원은 총 4차례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에 근거하여 이뤄졌다. 대상별로는 전 국민과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과 농어민, 생계위기가구, 돌봄부담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방식은 대상자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지원과 간접적인 금융지원,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유지지원으로 이뤄졌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1차 유행은 2020년 2월 중순에 시작되었지만, 3월 중순을 넘어서면서 확산세가 크게 완화되었다(여유진 외 2021, p. 30). 이에 따라 2020년 3월 17일에 이뤄진 1차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를 보강하고 고도화하였으며(2.1조 원), 코로나19 피해를 호소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회복 지원(4.1조 원)과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고용안정 지원(3.5조 원)에 집중되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지역은 방역인프라 보강 등으로 약 1.7조 원이 배정되었다(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2020).

1차 유행의 고비는 넘겼지만, 1차 추경 이후 4월 중에 고용동향 등의 통계가 발표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재난이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침체가 내수 침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2차 추경은 소득과 재산에 상

관없이 전 국민에게 가구당 일정 금액을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전국민재난지원금’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2차 추경의 수혜자는 2,274만 가구이며, 국비 12.2조 원과 지방비 2.1조 원을 포함한 총 14.3조 원이 지출되었다(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 예산정책과, 행정예산과, 복지예산과, 재정정책과, 2020).

내수 진작을 위해 일반 국민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세대주가 신청한 지급수단으로 지급⁹⁾하였다. 이는 8월31일 까지 사용 기한을 제한하였는데, 재난지원금이 저축 등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이석원 외, 2020).

〈표 2-10〉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규모별 지원액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이상
지원규모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주: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코로나19 경제지원-비상경제회의.

(<https://www.moef.go.kr/sns/2020/emgncEcnmyMtg.do?slideCnt=04&category1=infograp#05>에서 2021.07.05. 인출.)

반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약 270만 가구)은 기존 계좌정보를 활용하여 신청없이 현금으로 지급됐다.

그러나 정부의 각종 통계는 내수·수출·지역경제가 상당히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로 인한 고용 대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3차 추경은 가장 큰 규모(31.5조 원)로 이뤄졌다. 3차 추경은 일자리 창출, 구직급여, 고용유지지원금 등 노동시장 안정을 위한 예산(9.1조 원)과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와 한국판 뉴딜 등 경기회복을 위한 패키지(10.4조 원), 소상공인 등 금융간접지원(5.0조 원) 등으로 이뤄졌다. 대규

9) 지급방식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였다.

모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11.4조 원은 세입경정예산¹⁰⁾으로 편성되고, 금융 등 간접지원 및 공급에 대한 투자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8월 중순 2차 유행으로 다시 위기 상황을 맞았다. 이에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을 4차 추경으로 편성하였다.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가구를 중심으로 네 집단으로 표적화하였다. 첫째,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집합금지·제한업종 등 전체 소상공인의 87%인 294만 명에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¹¹⁾하였다. 둘째, 구직급여 수급자를 188만 명까지 확대·지원하고, 고용유지지원금(161만 명)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70만 명)에게 지원하는 등 총 220만 명에게 지원하였다.

셋째, 중학교 이하 아동 670만 명에게 돌봄과 비대면학습 지원을 제공하였다. 아동특별돌봄은 1인당 20만 원, 비대면 학습지원은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하였다. 넷째,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으로 0.4조 원을 편성하였다. 이는 생계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생계지원과 근로빈곤층에 대한 자활사업을 포함한다.

10) 코로나19로 인한 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거나 세제감면을 뒷받침하는 예산이므로 실제 지출이 아니다.

11) 일반 업종은 100만 원, 집합제한업종은 150만 원, 집합금지업종은 200만 원 등으로 차등하여 지급하였다.

60 사회보장 분야 사각지대 축소 및 부적정지출 관리 방안 연구-긴급 지원을 중심으로

〈표 2-11〉 2020년 연간 코로나19 대응 관련 추경별 주요 재정지원 현황

구분		1차 추경 (20.3.17.)	3차 추경 (2020.7.3.)	4차 추경 (2020.9.22.)
지원규모		11.7조원 (지출 10.9조원, 세입경정 0.8조원)	35.1조원 지출 23.7조원 세입경정 11.4조원	7.8조원
지원대상		1,100만명	930만명	1,330만명
소상공인	직접 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자영자 1인당150만원) 0.4조원, 94만명 (예비비 등 1.4조원)	새희망자금 3.3조원, 250만명 집합금지200/제한150 일반(매출감소) 100만원
	금융회복 지원	금융지원 3.1조원 (소상공인 자금 12조원) 고용유지지원 등 0.6조원, 65만명 재기지원·온누리상품권 등 0.4조원, 20만명	금융지원 0.6조원, 101만명 (소상공인 자금 10조원) 소비쿠폰·온누리상품권 등 2.4조원	금융지원 0.5조원, 66만명 (용자·보증 2.8조원 확대)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0.1조원, 20만명
고용취약계층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인당 150만원) 0.2조원, 51만명 (예비비 등 포함 0.7조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47만명 50만원, 신규14만명 150만원) 0.6조원, 61만명
	운전 기사			법인택시기사(1인당100만원) 0.08조원, 8만명
농어민			농수산물 할인쿠폰 등 (0.4조원, 중복)	
생계위기가구		저소득층 소비쿠폰 1.0조원, 169만가구 긴급복지, 건강보험료 경감 등 0.8조원, 575만명	긴급복지 0.05조원, 3.0만가구 주거안정지원, 소액금융 등 0.8조원, 11만명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4인가구 월100만원) 0.4조원, 55만가구(88만명)
돌봄부담가구		특별돌봄쿠폰 1.1조원, 263만명 양육부담 경감 0.05조원, 15만명		아동특별돌봄(1인당20만원) 1.1조원, 532만명 비대면학습지원, 돌봄휴가 등 0.3조원, 138만명
고용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0.6조원, 17만명	고용유지, 일자리창출 등 8.5조원, 207만명	고용유지, 청년 구직 지원 등 0.8조원, 50만명
방역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2.1조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K방역 1.0조원, 456만명	백신구매, 인플루엔자예방접종 등 0.2조원, 105만명
기타		지역경제 회복지원 1.2조원 세입경정 0.8조원	한국판뉴딜 4.8조원(1.7조원 중복) 주력산업금융지원 6.6조원 세입경정 11.4조원	이동통신요금지원 0.4조원 목적예비비 0.05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코로나19 경제지원-비상경제회의.

(<https://www.moef.go.kr/sns/2020/emgncEcnmyMtg.do?slideCnt=04&category1=infograp#05>에서 2021.07.05. 인출.)

코로나19에 대응한 추경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재난지원금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총 2차례 지급되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차 재난지원금은 피해대상을 선별하여 지원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표 2-12〉 중앙정부 1차 및 2차 긴급재난지원금 비교

구분	1차 긴급재난지원금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소득·재산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만 18~24세 미취업 청년 중위소득 75%이하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가구 (주택: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 영유아, 초·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가구
지급 내용	가구원 수에 따른 정액 (〈표 2-1〉 참조) 단, 지자체 지원금에 따라 상이함.	소상공인: 일반업종(100만원), 집합금지업종(200만원), 집합제한업종(150만원) 특고및프리랜서: 50만원1)~150만원2) 미취업청년: 50만원1)~150만원2) 저소득층: 가구원수에 따른 정액 (〈표 2-1〉과 동일) 내일키움일자리: 2개월 단기제공(월 180만원), 종료시 근속장려금 20만원 아동특별돌봄: 영유아 및 초등학생(1인당 20만원), 중학생(1인당 15만원)
지급 단위	가구	개인 혹은 가구
지급 방식	신용카드, 체크카드, 상품권 등 (사회보장급여수급가구는 현금 지급)	현금
사용 제한	8월 31일까지 사용 (업종 제한 있음)	사용 제한 없음
소요예산	14조3,000억원	5조 6500억원

주: 1)은 1차 추경 수급자에 대한 추가지급이며, 2)는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함.
자료: 여유진 외. (2021). p. 42;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 외. (2020);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 (2020)을 참조하여 저자 재구성.

2) 일자리 관련 사업주 지원

2020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는 코로나 전후 노동시장의 충격을 보여주었다. 전반적으로 2020년에는 2019년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이 전년 동월에 비해 0.5~1.0%p 낮게 나타났다. 특히 실업률에 비해 고용률의 격차가 매우 크며, 여성의 실업률 변화가 남성보다 크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근로시간이 감소하고 일시휴직자 수가 증가했다(통계청, 2020a).

여유진 외(2021)는 종사상 지위의 변화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전후 개인의 경제활동상태가 악화했는지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근로상황의 악화는 주로 단축 근로, 휴직, 실직 등의 사유로 나타났다(여유진 외, 2021, p. 333). 이러한 고용 상태의 악화가 주로 소득의 감소와 연계된다는 측면에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매우 긴급하고 중요한 과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자리와 관련하여 사업주를 지원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라 감염병으로 인해 입원·격리된 사람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와 휴직·휴업 수당,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였다. 일부 사업은 기존의 사업들을 확대·개편한 것이며(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등), 이들 사업 대부분은 신규로 도입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일자리 관련 사업주 지원은 고용노동부 관련 전달체계(예, 근로복지공단, 고용복지+센터 등)를 통해 실시하는 것이 기본이나, 코로나19의 시급성 속에서 국민연금공단 등 사회보장기관의 전달체계를 활용하거나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신청하였다.

〈표 2-13〉 일자리 관련 사업주 지원 요약

프로그램	수혜대상	신청·문의
유급휴가비용 지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된 사람에게 감염병 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국민연금공단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확대	코로나19 등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휴업·휴직 수당 지원	고용보험홈페이지 고용복지+센터
고용유지 자금 용자사업	(대상) 휴업수당(평균임금 70%) 등 지급이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 (절차)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인건비 지급 목적 확인 시 용자를 통해 휴업수당 선 지급→고용유지지원금으로 용자금 후 상환	
고용유지 협약 사업장 인건비 지원	(대상) 노사가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 (지원수준) 임금감소분의 일정비율(예, 50%)×6개월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대상) 특별고용지원업종 코로나19 영향 시기에 이직한 근로자 (지원) 최대 월 100만원×6개월(주40시간 기준) (조건) 주15~40시간 근로, 사회보험 가입	
청년 디지털일자리 창출	(분야) IT 활용 가능한 민간 일자리 (지원) 최대 월 180만원(주 40시간 기준, 최대 6개월) (조건) 주 15~40시간 근로, 사회보험 가입	
청년 일경험 지원	(대상) 코로나19 영향으로 채용여력이 부족한 사업장 (지원) 월 80만원×6개월 (조건) 주15~40시간 근로, 사회보험 가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코로나19 영세사업장 인건비 지원)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 (기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추가 지원)	3공단(건보, 연금, 복지) 및 고용복지센터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관할 고용센터

자료: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2020). 코로나19 경제지원-비상경제회의.

(<https://www.moef.go.kr/sns/2020/emgncEcnmyMtg.do?slideCnt=04&category1=infograp#05>에서 2021.07.05. 인출.)

3) 그 외

그 외 저소득·돌봄취약계층과 자영자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다음과 같다.

64 사회보장 분야 사각지대 축소 및 부적정지출 관리 방안 연구-긴급 지원을 중심으로

〈표 2-14〉 저소득·돌봄취약계층 관련 지원 요약

프로그램	수혜대상	신청·문의
특별돌봄쿠폰	아동수당(만7세미만 아동) 수급 대상자	읍면동주민센터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약 138만 가구	읍면동주민센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로서 공익활동 참여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활동비 선지급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공익활동 참여자 중 희망자 1개월분 활동비 전액(월30시간, 27만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긴급복지	위기사유에 해당되고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한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대도시 188백만원, 농어촌 101백만원 (금융) 5백만원	시군구 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

자료: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2020). 코로나19 경제지원-비상경제회의.
(<https://www.moef.go.kr/sns/2020/emgncEcnmyMtg.do?slideCnt=04&category1=infograp#05>에서 2021.07.05. 인출.)

〈표 2-15〉 고용 취약계층 관련 지원 요약

프로그램	수혜대상	신청·문의
입원치료·격리 자 생활지원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자 가운데 감염병에 방법의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	생활지원비: 읍면동주민센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정소득 이하 영 세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요건)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 및 매출 급격 감소 (지원) 월 50만원×3개월	별도 홈페이지
건설일용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 1인당 최대 2백만원 무이자 대출	건설근로자공제회
코로나19 피해점포 지원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일시 폐업점포(최대 3백 만원), 매출없이 일정기간 휴업점포(최대 1백만원)	
코로나19 폐업점포 지원	특별재난지역 폐업점포 철거비 지원(최대 2백만원)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대상) 특별고용지원 업종-무급휴직 즉시 일반업종-유급 고용조치 1개월 후 무급 휴직 (지원) 월 50만원×3개월	고용보험홈페이지 고용복지+센터

자료: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2020). 코로나19 경제지원-비상경제회의.
(<https://www.moef.go.kr/sns/2020/emgncEcnmyMtg.do?slideCnt=04&category1=infograp#05>에서 2021.07.05. 인출.)

나. 지방자치단체

전주시는 전국 최초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다(2020.3.27.). 전주시 15세 이상 인구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기본 대상으로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아동수당 수혜자,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소상공인, 차상위계층, 전북도추가지원대상 등은 중복수급을 제한하였다. 또한 전주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기준으로 1인당 52만8천원을 41,002명에게 지급하였다(이석원 외, 2020, pp. 56-59.).

기초자치단체인 전주시가 가장 먼저 지급하였으나, 서울, 경기, 충남, 경남 역시 매우 유사한 시기에 논의를 시작한 것이 사실이다. 서울은 3월 30일부터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였고, 경기와 충남, 경남은 4월 중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과 지급을 개시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경기는 보편 지원방식을 선택하고, 서울과 경남, 충남은 선별 지원방식을 선택했다. 다만, 서울과 경남은 가구소득(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을 기준으로, 충남은 코로나19의 영향(피해)을 기준으로 선별하였다. 또한 보편 방식을 선택한 경기는 개인 단위로 지급했고, 서울과 경남은 가구 단위로 지급했으며, 충남은 업체 및 가구 단위로 지급하였다. 소요예산은 경기가 1조3,642억 원으로 가장 높고, 서울 5,893억 원, 경남 1,810억 원, 충남 1,500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의 재난지원금은 <표 2-16>에 제시되어 있다. 경남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서울과 유사하나, 1인 가구 20만 원, 2인 가구 30만 원, 3인 가구 40만 원, 4인 가구 50만 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사용 일자가 2020년 9월 30일까지로 비교적 긴 편이다. 한편, 충남의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운수업체, 저소득층, 농어민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구분되었다.

66 사회복지 분야 사각지대 축소 및 부적정지출 관리 방안 연구-긴급 지원을 중심으로

〈표 2-16〉 서울시와 경기도 주민 대상 긴급 지원 비교

구분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7천 가구 (단, 중복지원 제외)	경기도민 1,362만명 (3월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 주민등록자)						
지급 내용	가구원수별 30~50만원 차등 지급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1~2인</td> <td>3~4인</td> <td>5인이상</td> </tr> <tr> <td>30만원</td> <td>40만원</td> <td>50만원</td> </tr> </table>	1~2인	3~4인	5인이상	30만원	40만원	50만원	1인당 10만원 1회 지급
1~2인	3~4인	5인이상						
30만원	40만원	50만원						
지급 단위	가구	개인						
지급 방식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1회 지급	경기지역화폐카드, 신용카드, 선불카드						
사용 제한	2020년 8월 31일까지	3개월(사용개시 문자 수신 이후) 최대 2020년 8월 31일까지 연매출 10억원 이하 주소지 경기지역 화폐 가맹점으로 한정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제외						
소요예산	5,893억원(국비 30%, 시비 70%) (사업비 5,599억, 운영비 294억원)	1조3천억원 재난관리기금(3,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원), 지역개발기금(7,000억원)						

주: 1) 서울시 중복지원 제외 대상은 코로나19 대응 정부 지원 수급 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특별돌봄쿠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자), 2020년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지원 또는 서울형 긴급복지 수급자, 청년수당 수급자.
 2) 경기도는 아동양육지원수당, 청년기본소득, 실업수당 등과 중복수령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불포함하고, 경기도 시군에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과 별도임.
 자료: 여유진 외. (2021) p. 523; 여유진 외. (2021), p. 525를 재구성

〈표 2-17〉 충청남도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금 개요

구분	소상공인	운수업체	저소득층	농어민
지급 대상	연간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10인 미만 광·제조·건설업 및 운수업, 5인미만 업종 등	운송수입금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한 업체 시내·외·전세버스, 법인 택시	건강보험 가입자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실직자 및 비정규직	도내 주소지를 둔 농업, 임업, 어업 종사자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제외
지급 내용	가구당 100만원	업체당 100만원	가구당 100만원	가구당 80만원
지급 단위	가구	업체	가구	가구
사용 제한	2020년 7월말까지			
소요예산	1,500억원(도비 760억원, 시군비 740억원)			1,320억원

자료: 여유진 외. (2021).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및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 평가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p. 527.

이 외에도 코로나19와 대응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18) 4개 시·도 코로나19 경제 대응 전략

구분	서울	경기	경남
사업주 지원	소상공인 지원 관광업 지원, 콜센터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비용 지원	소상공인 지원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 실보상금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 상환유예 및 자금지원, 고용유지 지원, 마케팅 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 원,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지원, 특별대상 (코 로나19 피해)지원
저소득층 지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노숙인 등 마스크 지원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운영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냉장고 시범 운영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
돌봄취약 계층지원	어린이집 긴급보육 강화 우리동네키움센터 긴급 돌봄 시행 결식 우려 아동 급식 제공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어르신 스마트폰 보급 중고교신입생 입학준비 금 지원	-	-
고용취약 계층지원	문화예술인 지원 청년 월세지원 청년긴급수당 요식업 종사 청년 소상공인 긴급 지원	-	청년 특별취업지원금지원 청년실직자 희망자금지원 문화예술인 창작활동준비 금 특별지원 문화예술단체 손실금 보상 지원 예술인 창작자금 대출지원 파해능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그 외	-	경기도민 대상 우울증 극복 캠페인 격리자 및 일반인 대상 심리회복 상담서비스 제 공 예식장 소비자 분쟁 중 재서비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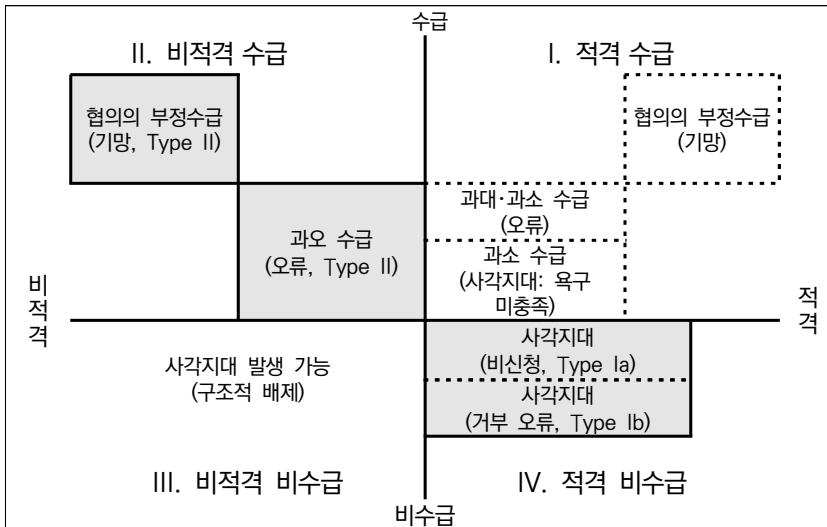
자료: 여유진 외. (2021).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및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 평가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pp. 517-521. 재구성.

제4절 긴급 지원 분석틀

1. 기존 분석틀의 수정·보완

본 연구는 다년도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보장 분야 사각지대 축소 및 부적정지출 관리 방안 연구”의 6년차 연구이다. 지금까지는 사회보장 사업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사각지대와 부적정지출의 분석틀을 마련하고(오윤섭 외, 2016; 임완섭 외, 2017), 이를 기존의 사회보장사업에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따라 노후소득과 주거급여의 소득안전망(임완섭 외, 2018; 임완섭 외, 2019)과 방과후 돌봄의 돌봄안전망(강지원 외, 2020)에 각각 수정·보완하여 적용하였다.

[그림 2-1] 적격성과 수급 여부 기준의 사각지대와 부정수급 유형



자료: 임완섭 외. (2018). 사회보장제도 수급 적격성 제고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모니터링-주거복지(주거급여 중심)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65.

다년간의 연구에서 사각지대와 부적정지출을 분석하는 틀은 복지 제공의 영역을 적격성과 수급을 기준으로 분류하고(2 by 2), 적격·수급 영역(I), 비적격·수급영역(II), 비적격·비수급 영역(III), 적격·비수급 영역(IV) 등 4가지로 구분한다(임완섭 외, 2018, p.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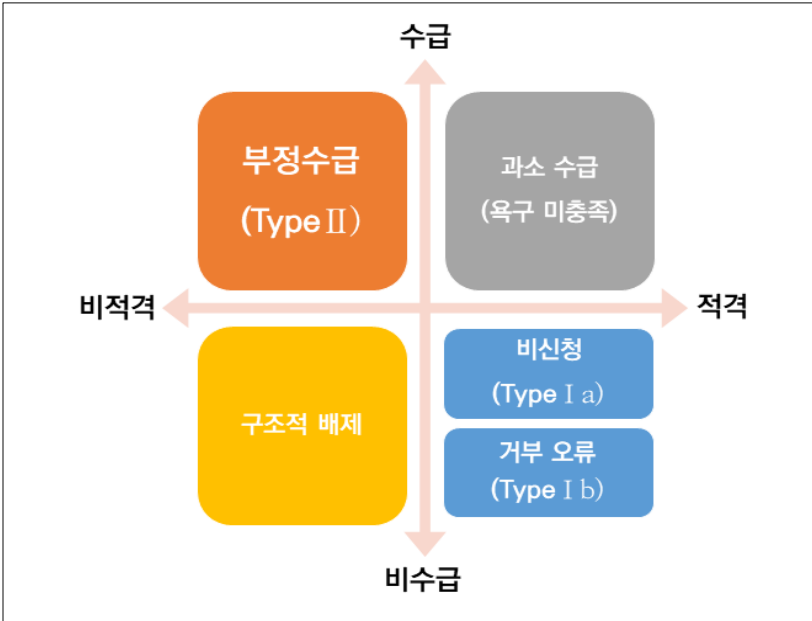
이 중 적격·비수급 영역(IV)에서 Type Ia 오류(비신청, 불완전 수급)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프로그램의 설계 상 대상 선정 기준에 적격함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Type Ib 오류(거부 오류)는 프로그램의 설계상 대상 선정기준에 적격함에도 불구하고 급여의 신청을 거부하는 사례이다. 한편, 비적격·수급영역(II)에서 Type II 오류(기망,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프로그램 설계상 적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신청하고 수급하나 경우를 뜻한다(임완섭 외, 2018, p. 63).

이러한 분석틀에 근거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소득에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자발적 기부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지원금 반납을 독려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실제로 긴급재난지원금에 적격 대상이지만 수급을 거부하고 기부를 선택한 사람이 15만 명에 달한다. 이들이 Type Ib 오류(거부 오류)에 해당한다.¹²⁾

한편, 코로나19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재난으로, 전통적인 고용안전망과 소득안전망뿐만 아니라 돌봄안전망까지 결합하는 사회적 위협으로 기존의 분석틀을 단일하게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직접 피해와 간접 피해를 구분할 수 없고, 영업 제한 및 영업금지 등을 식별할 수 없어서 ‘비적격’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

12) 2020년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 중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한 인원은 15만6천931명이고, 512억7천20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김민찬, 2021).

[그림 2-2] 긴급 지원의 사각지대 및 부정정지출 분석틀



자료: 저자 작성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코로나19 대응 긴급 지원의 사각지대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 먼저 코로나19로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 지원을 수급하지 않은 사각지대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긴급 지원을 거부한 거부 오류(Type I b)와 긴급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비신청(Type I a)으로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개인 소득 및 가구소득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긴급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에 초점을 맞춘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개인 소득 및 가구소득의 감소에 비해 불충분한 지원을 받은 사람들에 초점을 맞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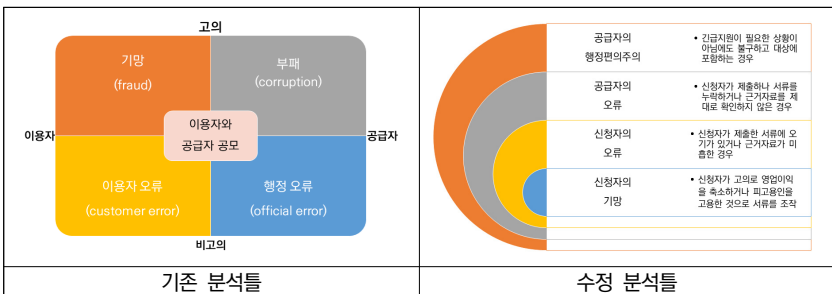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여 긴급 지원을 신청하고 수급받는 일련의 과정에서 사각지대에 대한 인식을 살펴

본다. 이때 사각지대에 대한 인식은 구조적 배제와 과소 수급, 비신청 등을 포함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한 긴급 지원의 부적정지출 분석틀은 비적격·수급영역(II)을 아우른다. 다만, 코로나19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므로 부정수급을 식별한 자료와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개인 소득 및 가구소득의 감소를 경험하지 않는 대상자에게 지급한 긴급 지원을 부적정지출로 간주한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없을지라도 간접적인 피해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존재한다. 또한 보편적인 긴급재난지원금은 개인 혹은 가족 단위에서 신청하는 별도의 절차를 갖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적정지출의 분석틀을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다만, 향후 사회재난에 대한 적정 지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망과 공급자의 행정 오류(행정 편의주의)를 기반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그림 2-3] 긴급 지원의 부적정지출 분석틀



자료: 기존 분석틀은 강지원 외(2020) 재구성.

코로나19에 대한 긴급 지원은 보편적인 지원과 선별적인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보편적인 지원에서 부적정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이때는 보편적인 지원이 적절했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반면에 선별적인 지원은 부적정지출의 발생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이는 대상자 선별을 위해 대상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근거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과정에서 신청자의 고의로 기망할 우려가 있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반면에 재정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공급자 입장에서 부적정지출은 고의적인 부패가 존재할 가능성보다는 행정 오류로 인한 가능성이 크다. 다만 코로나19와 관련한 긴급 지원에서 이러한 논의의 범주는 상당히 확대될 필요가 있다. 즉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지원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부적정지출은 세 가지 방식으로 논의한다. 먼저 코로나19 대응 긴급 지원제도를 기준으로 신청자의 기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수행한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부적정지출을 식별한다. 즉 직접적인 피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긴급 지원을 수급한 대상자의 현황과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년간의 조사와 동일하게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부적정지출에 대한 인식을 측정한다.



제3장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 조사개요 및 기초분석

제1절 선행 연구

제2절 조사 개요

제3절 기초분석 결과

제 3 장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 조사개요 및 기초분석

제1절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살펴본 연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현주 외(2020)는 가구소득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할 목적으로 2020년 4월에 전 국민 대상 전화조사와 전문가 50인에 대한 웹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변화에 관심을 기울여, 고용상태(업종)와 고용보험 가입 여부, 소득지원대상과 기간, 금액 등의 질문을 상세하게 조사하였다. 또한 저소득 및 빈곤 연구의 전문가로서의 오랜 경험에 근거하여 공적 이전 수혜 여부를 함께 측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조사가 이뤄진 시점(4월)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지원이 보편적으로 이뤄졌다고 가정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노동시장 지위 및 가족 여건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지 못했다. 따라서 보편적인 국민에 대한 소득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이 장점인 동시에 한계라고 인식된다.

최영준 외(2020)는 코로나19로 인한 광범위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 4개 기초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웹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코로나19의 영향을 '경제적인 피해, 돌봄 피해, 사회적 관계 단절 피해'로 구분하고, 이들 피해의 독립적인 영향과 결합한 영향에 관심을 가졌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조사가 이뤄진 시점

(9월)을 기준으로 3~4월의 소득감소와 5~6월의 소득감소로 조사한 부분은 코로나19의 초기 영향으로 한정된다는 아쉬움이 있다.

문혜진 외(2020)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가 서울 시민의 생활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재난긴급생활비가 시민의 소비지출과 자영업의 매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재난긴급생활비 수혜 집단과 비수혜 집단을 비교함으로써 재난긴급생활비가 수혜 대상을 적정하게 표적화하였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서울시민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소득 구간별로 지원액을 차등 지급했다. 수혜집단과 비수혜집단은 기준 중위소득에 근거하여 신청 후 선정과 탈락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미 집단 간 소득 격차를 내재한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혹은 소득감소,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수혜집단과 비수혜집단 간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소득과 소비를 이중 차분하여 분석해야 하지만, 설문조사의 한계로 집단 간 비교에 그쳤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그런데도 문혜진 외(2020)는 가구 단위 정책의 영향을 살펴보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의 소비 효과와 자영자 매출 증대 효과 등 거시경제의 효과를 동시에 아울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석원 외(2020)는 전주시의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의 효과성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전주시 거주 개인 및 가구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과 지역경제에 미친 파급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①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전설문조사를 수행하고, ②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받은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사후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③ 코로나 이전 대상 집단의 생활을 추정하기 위해 2019 전주시 사회조사

와 ④ 코로나19 이후 전주시 소비지출을 분석하기 위해 네이버 데이터랩(Naver DataLab)에서 월별로 제공하는 지역별 소비지수를 활용하였다. 이와 함께 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주관기관인 전북은행에서 발급한 지출 카드의 데이터와 ⑥ 국세청 사업자 현황 데이터, ⑦ 고용행정통계 웹 사이트에서 추출한 월별 실업급여 지급 현황 자료, ⑧ 초점집단면접조사를 통해 수집한 조사 데이터, ⑨ 언론보도 및 인터넷 게시판의 텍스트 데이터, ⑩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대상자 현황 데이터, ⑪ 거시계량분석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문혜진 외 연구(2020)와 이석원 외 연구(2020)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연구들은 재난지원금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행정데이터, 설문조사 데이터, 신용카드 이용 및 가맹점의 카드매출 데이터 등을 연계하여 연구용 데이터셋을 구축하여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여유진 외(2021)는 코로나19로 인해 가구원의 경제활동과 가구소득에 미친 다양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코로나19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전문가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한편, 가계동향조사와 국민연금 데이터베이스(DB) 등 행정자료 분석, 8개 카드사 및 신한카드 데이터, 비정형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연구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4개 광역지자체(서울, 경기, 충남, 경남)의 후원을 받았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민연금연구원, 4개 광역지자체의 소속 연구원이 협업하였다. 이는 1차와 2차 재난지원금, 4개 광역지자체의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이 연구는 본 연구가 조사를 완료한 시점에 발간되었으므로, 조사의 설계 및 조사표 구성에 참조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조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확인한 결과, 조사표의 구성 및 조사내용, 조사 결과 등에서

본 연구에 함의를 시사하고 있어 선행연구에 포함하였다.

1. 선행 조사 개요

이현주 외(2020, p.23)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2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구성비(2020년 3월말 주민등록인구 현황 자료 기준)에 따라 비례할당으로 표본을 구성하였으며, 조사 후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표집오차는 무작위 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 $\pm 2.1\%$ 수준이다. 유무선 전화조사 방식으로 2020년 4월 9일~4월 16일 기간 동안 조사하였다.

최영준 외(2020)는 경기도 4개 시(A시, B시, C시, D시)의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리서치 MS패널을 이용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변화(경제, 돌봄 등) 및 긴급재난지원금 수급에 대한 만족도, 가족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였다.

문혜진 외(2020)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신청한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모두 온라인 조사로 진행되었다. 재난긴급생활비를 신청한 서울시민 중 50만 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10개 내외의 문항을 간단하게 조사하고, 상세한 설문은 모집단인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자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 여부, 성, 연령대, 거주 자치구를 기준으로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여 표본 설계하였다. 모바일 조사의 특성상 만19세~만79세까지 조사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80세 이상 신청자는 설문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조사는 2020년 10월 20일부터 11월20일 사이에 실시했으며, 상세 설문의 유효표본은 10,000명이다(문혜진 외, 2020, p.45).

이석원 외(2020)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의 신청자에 대한 사전 조사와

지급받은 수혜자에 대한 사후 조사를 수행하였다. 먼저 코로나19가 전주 시민과 전주시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 조사를 했다. 사전 조사는 2020년 4월17일부터 7월6일까지 총 7,603명이 응답하였으나, 총 표본 중에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의 주요 선정 기준인 소득 수준과 종사상 지위의 응답이 충실한 6,370명을 유효표본으로 추출하여 분석하였다(이석원 외, 2020, p. 23).

다음으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의 효과에 대한 실증 근거를 발견하기 위해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받은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사후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20년 8월18일부터 8월21일까지 사후설문에 응답한 응답자 총 3,090명 중에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의 주요 선정기준인 소득 수준과 종사상 지위와 관련된 응답에 충실한 2,441명의 유효표본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이석원 외, 2020, p. 24).

여유진 외(2021)는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과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2020년 10월부터 11월에 걸쳐 약 40일간 대면조사를 실시하였다. 2020년 기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75세 성인을 모집단으로 하며, 2019년 집계구를 기준으로 지역과 집계구 특성(일반, 아파트)을 층화변수로 사용하였고, 각 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경기지역에서 각 1,000가구, 충남·경남지역에서 각 700가구, 그 외 지역에서 1,600가구 등 총 5,000가구를 표본 추출하였다. 최종적으로 조사 완료된 가구 수는 4,991가구이다.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가구의 일반사항과 가구원의 경제활동 상태, 가구소득 및 자산과 지출 실태, 중앙정부 및 지역별 긴급재난지원금의 수준 및 지원 방법과 만족도, 코로나19로 인한 인식 및 태도의 변화, 코로나19가 자영자 및 고용주에 미친 영향 등이다. 이 조사는 코로나19 전후를 비교하기 위해 2019년 9월 기준과 2020년 4월 기준, 그리고 2020년 9월

기준시점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여유진 외, 2021, p. 176).

〈표 3-1〉 선행 연구의 조사 개요

	이현주 외 (2020)	최영준 외 (2020)	문혜진 외 (2020)	이석원 외 (2020)
모집단	만19세 이상 성인	경기도 4개 시 만19세~69세 성인	서울시 만19세~79세	전주시 재난기본 소득 수급자
표집틀	-	한국리서치MS 패 널	재난긴급생활비 신 청한 서울시민	전주시 재난기본 소득 수급자
표집방법	지역, 성, 연령별 인구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추출	성, 연령은 지역별 인구비례할당추출	서울시 재난긴급생 활비 신청자 사전 질문 후, 성, 연령, 거주 자 치구를 기준으로 비례배분법 적용	전주시 재난기본 소득 수급자 중 사 전조사 응답자에 서 무작위 선정
표본크기	2,200명	1,213명	10,779명 (간단 38,231명)	사전: 6,370명 사후: 2,441명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 할 경우,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2.1%	무작위추출을 전 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 대허용 표집오차 는 ±2.8%	-	-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을 유무선 전화조사	구조화된 설문을 웹조사	모바일 조사 (카카오톡)	-
조사내용	일반사항 소득 및 변화 지출 및 변화 긴급 지원 인식 공적수혜여부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긴급 재난 지원금 수급 만족도 가족생활실태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생활 변화 소득및지출 변화 경제활동상태 변화	재난기본소득평가 개인 경제, 고용, 일상생활 영향
조사일시	2020.4.9~16	2020.9.17~28	2020. 10.20.~11.20	사전: 4.17.~7.6. 사후: 8.18~8.21.
조사기관	(주) 한국리서치	(주) 한국리서치	-	-

자료: 1) 이현주 외. (2020). 가구소득에 대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과 정책과제.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2) 최영준 외. (2020). 국내의 사회보장 지원정책 분석 연구. 복지국가연구센터·보건복지부.
 3) 문혜진 외. (2020).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성과평가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4) 이석원 외. (2020).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사업 효과성 평가 연구. 전주시·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표 3-2〉 선행 연구의 조사 문항 비교

	일반사항	소득	지출	인식 및 욕구	그 외
이현주 외 (2020)	성, 연령 가구원수 거주지역 직업 종사상 지위 종사자규모 고용보험가입	월평균개인소득 월평균가구원소득 개인소득변화 개인소득감소이유 가구원소득변화 가구원소득감소 이유	코로나19이후 가장 부담되는 지출 부족한 생활비 충당 방법	전 국민 소득 지원 필요성 지원대상 지원액 지원방식 지원기간 지원내용	공적 이전 수혜여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최영준 외 (2020)	성, 연령 지역(4개시군) 학력수준 종사상 지위 가구원수 월평균가구소득 기혼여부 지지정당	소득변화 재난지원금 수급현황	지출변화 지원금 사용용도	피해유형 긴급재난지원금 의 정책목표 공정성 인식 만족도 (행정, 편리)	돌봄부담대처 일가족양립 제도사용형태 가족생활 변화 가사분담 가족관계만족도
문혜진 외 (2020)	연령, 학력 가족구성 부모 동거여부 사적이전 생활비 가구원수 사회보험가입 주택보유	월평균개인소득 개인소득변화 소득원 월평균가구소득 가구소득변화 소득 충당 경제적 어려움 지원금 수혜	지출 변화 지출변동이 큰 항목 부채 변동 부채 증가 사유 지원금사용처 긴급 지원만족 도	심리및생활 변화 돌봄부담증가 돌봄대응 코로나19증상	고용형태 경제적 피해 경험
이석원 외 (2020)	성, 생년, 학력 가구원수, 직업 주택점유형태 경제활동유무 종사상 지위	소득감소 충당 월평균개인소득 (코로나전-후) 월평균가구소득 (코로나전-후)	지출조정품목 생활비 비중	코로나19영향	행복인식 자살충동 지역인식 미래 걱정
	경제활동유무 종사상 지위 직업	재난기본소득 개시월 및 가족 내 수혜자 수 국가지원수혜		정보취득경로 자격기준 신청 및 절차 추가지급선호 세금인상 견해 영업 고용 인식	행복인식 자살충동 지역인식

자료: 1) 이현주 외. (2020). 가구소득에 대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최영준 외. (2020). 국내의 사회보장 지원정책 분석 연구. 복지국가연구센터·보건복지부.
 3) 문혜진 외. (2020).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성과평가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4) 이석원 외. (2020).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사업 효과성 평가 연구. 전주시·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 조사 결과

서울시로 한정된 문혜진 외(2020)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난긴급생활비의 수혜 집단과 비수혜집단의 경제적 어려움을 비교한 결과, 코로나 19 발생 이후 가족 소득의 감소를 경험한 비율은 수혜 집단(77.7%)은 비수혜 집단(64.9%)보다 많고, 3~4월 동안 전년 대비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감소한 비율도 수혜 집단(36.5%)이 비수혜 집단(31.0%)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문혜진 외, 2020).

재난긴급생활비의 소비는 지급 이전보다 약 12%의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연 3,600만 원 이하 소득 하위 집단에서는 소비가 82.~19.8%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수혜자 집단 내 소득 상위계층에서도 소비가 증가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난 긴급생활비가 지급 이전과 다르게 지급 이후 수혜자 집단의 소비를 증가시켰고, 증가 효과는 수혜집단 내에서도 소득 하위 계층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문혜진 외, 2020).

전주시의 분석 결과 역시 유사하게 나타났다. 전주시에 거주하는 개인들 상당수가 소득 및 소비 수준의 감소를 경험하였다. 특히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일용직 등의 직군에 종사하는 개인들이 경제적 타격을 심하게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는 경제적 측면의 어려움 뿐 아니라 심리적 측면의 부정적 영향도 발생시켰다. 대표적으로 우울감, 불안, 스트레스 등 부정적 감정의 경험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자살 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는 개인도 증가하였다(이석원 외, 2020).

제2절 조사 개요

1. 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인식 및 실태 조사>는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대국민 조사를 위한 표본 추출은 일반적으로 성, 연령, 지역을 층화 비례하여 추출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긴급 지원의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해 전체 표본의 30% 이상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유의 할당하였다.

본 조사의 표본 크기는 4,000명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1.55\%p$ 로 나타났다.

(표 3-3) 조사 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전국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표본추출틀	1단계: 2021년 4월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 및 지역을 층화비례추출 2단계: 긴급 지원 관련 정책은 일반 국민대상 지원과 자영업자 대상으로 분류되는 점을 감안하여 전체 표본의 30% 이상은 고용보험 사각지대로 유의할당
표본크기	4,000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pm 1.55\%p$) - 고용보험 사각지대는 전체 조사대상의 36%인 1,440명임.
조사기간	2021. 5. 17. ~ 2021. 6. 11.
조사방법	혼합조사: 온라인 패널 조사와 개별 면접조사 병행 -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패널 조사로 진행하되, 조사 목적을 감안하여 전체 조사 대상의 10% 이상은 개별 면접(전원 자영업자) 조사를 병행하여 수행함

자료: 저자 작성

가. 조사내용

본 연구에서 〈긴급 지원 인식 및 실태조사〉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응하여 정부가 지급한 긴급 지원의 수급 실태와 도움 정도를 파악하고, 긴급 지원의 효과와 영향, 인식 등을 조사하여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 발생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2020년에 긴급하게 시행된 선행 조사들은 주로 소득의 감소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소득과 지출의 변화를 보다 중립적으로 살펴보고,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변화를 함께 고려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종사상 지위의 변화를 살펴보고, 코로나19의 영향을 자영업자에게 추가로 조사했다는 점에서도 다른 조사와 차별성이 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응답자와 가구 일반현황에 대한 문항은 일반적인 수준에서 조사하였는데, 이현주 외(2020)는 직업을 세분류 기준으로 조사하였고, 문혜진 외(2020)는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일반 문항을 추가로 살펴보았다. 또한 이현주 외(2020), 최영준 외(2020), 문혜진 외(2020)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가구 및 개인 소득의 변화와 부족한 소득의 충당 방법, 긴급 지원의 사용처 및 활용 등은 일반적인 수준에서 조사하였다. 다만, 대부분의 선행 조사들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구 및 개인 소득이 “감소”했을 것으로 가정하고, “예/아니요”로 조사하여 감소 외에는 ‘증가’와 ‘변화없음’을 식별할 수 없는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개인 및 가구소득의 변화를 보다 중립적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전후로 가계지출의 구성비 변화도 살펴보았는데,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에서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지출 항목을 살펴보

는 데 적절하다.

다음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한 긴급 지원 수혜 현황을 살펴보았다. 긴급 지원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지원하거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 상태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기도 했으며, 실업 및 고용과 관련하여 직접 지원으로 이뤄지기도 했다. 이러한 항목들은 모두 수급 여부와 수급액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한편, 일반 국민과 자영업자를 구분하여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조사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이는 가구 및 개인 소득의 감소 사유를 조사할 때 다수의 문항이 ‘임금근로자’를 기준으로 상정하여 자영업자의 코로나19 영향이 간과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본 원에서 다년간 수행하고 있는 ‘복지 분야 사각지대 및 부정수급 축소 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의 문항 중 사각지대와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조사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였다.

[그림 2-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사각지대는 ‘긴급 지원을 신청하지 않거나 긴급 지원을 거부한 사람’이다. 이와 함께 ‘긴급 지원을 수급하지는 했으나, 필요한 수준에 비해 과소 수급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측정하기 위해 코로나19 전후 가구소득의 감소와 긴급 지원의 수급 항목을 확인하고, 제도별 사각지대에 대한 인식과 본인의 사각지대 여부를 조사하였다.

[그림 2-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부적정지출은 신청자의 기망이나 오류, 공급자의 오류와 행정오류로 구성한다. 그러나 현재 개인의 기망이나 오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적정지출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다. 이를 위해 긴급 지원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인식과 인지 방식, 부정수급 정도를 조사하였다.

〈표 3-4〉 조사 내용

구분	내용
일반 현황	인구학적 특성(성별, 학력, 지역, 연령), 가족 구성 형태, 주택보유형태, 직업, 사업장 종사자 규모, 코로나 19이전과 동일한 직업 여부
코로나19 이후 가계 소득과 지출 변화	20년 기준 (가구 및 개인) 소득 및 코로나 이전과 소득 변화 여부, 가구 소득 변동 이유, 코로나19로 줄어든 소득 총당 방법, 지출 항목 구성비 (코로나 19 이전과 이후 비교), 코로나 19 이후 부담되는 지출, 코로나 19 이후 부채 변화 및 변화 이유
코로나19 긴급 지원 수혜 현황	<p>코로나 19 긴급 지원 수급 여부 및 금액: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국민: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아동돌봄쿠폰 및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 이동통신요금 지원,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 긴급복지지원금 · 소상공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휴/폐업비/임대료 자금 지원,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 · 실업 및 고용 관련: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 <p>코로나 19 긴급 지원금의 주 사용처</p>
코로나19 이후 지출 현황 (자영업자)	종사상 지위, 20년중 매출/순소득감소가 가장 심했던 시기, 코로나 19 이전과 비교한 매출/순소득 변화, 사업장 비용 항목 구성비 변화, 코로나 19 이후 부담되는 지출, 월임대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금 사용 용도, 긴급 지원제도 중 선호하는 정책
코로나19로 인한 심리 및 생활 변화	코로나 19로 인한 심리적 변화, 경제적 어려움 경험, (만 18세 이하 가족구성원 있는 경우) 돌봄 부담 증가 이유 및 대처 방안
코로나19 긴급 지원 인식	복지 소외계층 심각성 인식, 코로나 19 관련하여 정부에서 추진한 긴급 지원정책별 복지 소외계층 주관적 인식 수준, 코로나 19 긴급 지원 정책에서의 부정수급 심각도 및 인지 경로, 코로나 19 긴급 지원정책별 부정수급 심각도 인식 수준, 코로나 19 긴급 지원제도에 대한 생각, 자연적·사회적 재난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 합리성 인식, 비상시적 긴급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인식 및 지원대상의 우선순위

자료: 저자 작성

〈표 3-5〉 선행 연구와 조사항목 비교¹³⁾

조사 항목	본 연구 문항	비교 조사(특이사항)
1. 응답자 및 가구 일반 현황	성, 연령, 학력, 시도, 지역구분(동, 읍면), 가족구성 및 형태, 혼인상태, 직업(종사상 지위, 산업분류), 코로나19 이후 직업 변화, 종사자 규모, 주택 점유형태	①은 직업(산업, 직업 유형, 종사상 지위 등)을 세분류 기준으로 조사함. ③은 청년 1인가구에 대한 식별 문항을 추가함(부모 동거, 부모로부터 사적이전 등) ①, ②, ③, ④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가입 여부 조사함.
2. 코로나19 이후 가계 소득과 지출 변화	가구 및 개인 월평균소득, 코로나19전후 소득 및 지출 변화, 소득감소사유 및 충당 방법, 코로나19전후 지출항목 변화, 부담되는 지출 항목, 코로나19전후 부채 변화 및 사유	①, ②, ③의 소득 구간 상이 ③은 코로나19 이후 3~4월, 5~7월, 8~9월로 구분하여 소득과 지출 감소를 조사함.
3. 코로나19 긴급 지원 수혜 현황	일반 국민대상 지원(수급여부, 수급액) 소상공인 및 실업·고용관련지원(수급여부, 수급액)	③은 중앙정부와 서울시를 구분하여 조사함. ④는 중앙정부와 전주시를 구분하여 조사함.
4. 코로나19 이후 지출 현황(자영업자)	코로나19전후 매출 변화, 코로나19전후 비용 구성 변화, 코로나19전후 순 소득 변화, 지원금 사용처, 정책 선호	①, ②, ③, ④ 모두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구분 없음
5. 코로나19로 인한 심리 및 생활 변화 및 인식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변화, 돌봄 부담 등 대응, 긴급 지원에 대한 사각지대 인식, 긴급 지원에 대한 부정수급 인식, 비상시적인 긴급 지원의 필요성, 지원대상, 지원 주체 등 인식	①은 긴급 소득 지원의 대상자, 지원액, 지원방식, 지원기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 ②는 정치지향과 세금, 지원대상 등의 인식을 조사함. ②, ③, ④는 코로나19에 대한 행정프로세스 만족도 조사함.

자료: 1) 이현주 외. (2020). 가구소득에 대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최영준 외. (2020). 국내의 사회보장 지원정책 분석 연구. 복지국가연구센터·보건복지부.
3) 문혜진 외. (2020).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성과평가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4) 이석원 외. (2020).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사업 효과성 평가 연구. 전주시·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13) 자세한 문항별 비교표는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나. 표본 설계

표본 설계는 두 개의 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는 인구비례 층화추출로, 2021년 4월 기준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일반 국민 만 20세 이상을 본 조사의 대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2021년 4월 기준의 주민등록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 및 지역(7개 권역 기준 적용¹⁴⁾)을 기준으로 표본을 할당하였다.

2단계는 긴급 지원의 정책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유의 할당하였다. 본 조사의 주요 목적인 긴급 지원이 일반 국민과 자영업자로 구분하여 대응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종사상 지위에 따른 긴급 지원 정책과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제기되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는 2,804만 명, 취업자 수는 2,691만 명이다(통계청, 2018). 이 중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자의 25.5%, 임금근로자 중 고용보험 적용 제외(특수고용노동자 등)는 12.8%이다. 즉 고용보험의 제도적 사각지대가 38.3%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임금근로자 중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를 고용보험 사각지대로 설정하고 코로나19가 이들에게 미친 영향을 상세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유의 할당하였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근거하여 자영업과 특수고용종사자 등의 할당 비율을 30% 목표치로 잡았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금지 등으로 영업 중단 및 폐업한 자영업자가 증가하였으나 개별면접조사를 병행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하여 전체 조사 대상의 36%인 총 1,440명을 조사에 포함하였다.

14)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세종,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표 3-6) 1단계 표본 추출 내역(성, 연령 및 지역 층화비례추출)

모집단	남자					여자				
	20대	30대	40대	50대	60~64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64세
서울	752,122	735,813	755,311	748,598	1,034,098	796,412	735,793	769,360	774,385	1,252,160
인천/경기	1,254,095	1,191,800	1,416,838	1,390,602	1,554,948	1,134,802	1,119,880	1,367,594	1,360,532	1,810,663
대전/충청/세종	405,962	378,362	452,947	463,909	619,577	344,860	338,664	421,611	435,467	744,193
광주/전라	365,754	289,173	395,899	439,105	632,627	313,381	269,690	371,683	407,867	800,512
대구/경북	359,758	307,033	388,506	445,555	623,832	297,597	275,758	376,804	438,318	778,105
부산/울산/경남	557,595	501,699	628,145	678,987	925,563	474,397	464,783	605,134	679,603	1,125,493
강원/제주	157,271	128,559	172,858	195,883	279,715	128,687	119,407	163,245	183,889	338,282

표본 할당	남자					여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서울	68	68	70	68	94	74	68	70	72	114
인천/경기	114	110	130	128	142	104	102	126	124	166
대전/충청/세종	38	34	42	42	56	32	32	38	40	68
광주/전라	34	26	36	40	58	28	24	34	38	74
대구/경북	32	28	36	40	58	28	26	34	40	72
부산/울산/경남	52	46	58	62	84	44	42	56	62	104
강원/제주	14	12	16	18	26	12	10	14	16	32

자료: 저자 작성

다. 조사 방법

본 조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개별 방문 조사가 여의치 않다는 상황에 기반을 두고 사전에 동의한 전문 조사업체의 온라인 패널(Online Panel)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다만 자영업자의 긴급 지원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본 조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체 조사 대상의 일정 부분(10% 이상)은 개별 면접(Face to Face Interview)조사로 진행하여 자료를 보완하였다. 단, 개별 면접 조사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조사로만 국한되었다.

조사는 알앤알컨설팅(R&R) 주식회사에서 수행하였다.

라. 조사 일정

전체 조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선행연구 등을 취합하고 분석하고, 기존의 다양한 패널조사 등을 활용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이는 착수워크숍 및 자문회의 등을 통해 수정 보완이 이뤄졌다. 이후 설문지에 대해 조사업체와 검토회의를 갖고 온라인 조사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문항에 대한 수정 보완이 이뤄졌고,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문장 및 용어에 대한 전반적인 교열을 수행하였다. 최종적으로 수정된 조사표를 가지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의(IRB) 심의를 얻었다(제2021-016호, 2021.05.10.).

최종 조사표를 온라인으로 구현하고, 온라인 조사와 개별면접 조사를 병행하여 총 31일간 조사를 진행하였다(2021년 5월 17일 ~ 2021년 6월 11일).

제3절 기초 분석

1. 응답자 특성

전체 응답자의 특성은 아래와 같다.

〈표 3-7〉 응답자 특성 : 전체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4,000	100.0
성별	남성	1,980	49.5
	여성	2,020	50.5
연령	20대	674	16.9
	30대	628	15.7
	40대	760	19.0
	50대	790	19.8
	60대 이상	1,148	28.7
권역	서울	766	19.2
	인천/경기	1,246	31.2
	대전/충청/세종	422	10.6
	광주/전라	392	9.8
	대구/경북	394	9.8
	부산/경남/울산	610	15.3
	강원/제주	170	4.2
직업	상용직	1,491	37.3
	임시·일용직	251	6.3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404	10.1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635	15.9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400	10.0
	실업자	190	4.7
	비경제활동인구 등 기타	629	15.7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다수의 선행연구 및 조사 결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소득의 감소는 자영업자와 특수고용 등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우려에 따라 집합 금지 등의 업종 제한을 받았으며,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의 부재로 사회적 재난에 대한 대응이 부족했던 자영업자 및 플랫폼 노동자 등의 소득감소와 지출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서 온라인-오프라인(개별면접) 조사를 병행하였다.

〈표 3-8〉 응답자 특성 : 고용취약계층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1,440	100.0
조사방법	온라인	983	68.3
	개별면접	457	31.7
성별	남성	768	53.3
	여성	672	46.7
연령	20대	275	19.1
	30대	153	10.6
	40대	250	17.4
	50대	285	19.8
	60대 이상	477	33.1
권역	서울	278	19.3
	인천/경기	441	30.6
	대전/충청/세종	171	11.9
	광주/전라	154	10.7
	대구/경북	134	9.3
	부산/경남/울산	200	13.9
	강원/제주	61	4.2
직업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404	28.1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635	44.1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400	2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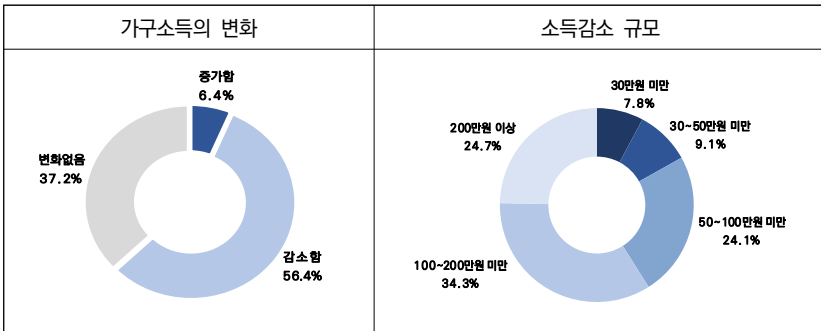
주: 본 연구에서는 종사상 지위에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의 합입.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2. 조사 결과

본 연구에서 수행한 조사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소득의 변화는 상이하다. 즉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소득이 오히려 증가(6.4%)하거나 변화가 없는(37.2%) 가구도 있다. 다만, 절반 이상의 가구에서는 소득이 감소(56.4%)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 코로나19 이후 가구소득의 변화

(단위: %)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그러나 이러한 개인 소득의 감소는 성, 지역, 가족구성, 주거 형태, 월평균 가구소득, 종사상 지위, 산업, 종사자 규모, 월평균 개인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소득의 감소액은 월평균 124만 원이며, 이는 종사상 지위(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실업자, 플랫폼노동자 순)와 월평균 가구소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의 감소액을 가구원 수로 나눈 값(49.6만 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61.2만 원)과 700만 원 이상(63.3만 원)에서 소득의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

자(70.8만 원)와 실업자(63.5만 원), 임시/일용직(56.6만 원), 플랫폼노동자(56.5만 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56.2만 원)의 소득감소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플랫폼노동자는 고용안정장려금에서 배제되고 실업급여의 수급 가능성도 낮아 사실상 가장 열악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¹⁵⁾

일반 국민은 코로나19로 가구소득이 감소했어도 줄어든 소득에 맞춰 절약하며 생활하고 있으나, 식료품비 및 주거비, 세금(사회보험료 포함), 부채상환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가구소득이 “감소”한 가구에서 “부채”가 증가(39.2%)하였으며, 부채가 증가한 1순위 사유는 “부채상환”과 “식료품비 및 주거비”, “세금 및 사회보험료” 때문으로 나타났다.

〈표 3-9〉 코로나19 전후 가계지출의 변화 및 부담

	코로나19 이전 (2019)	코로나19 이후 (2020)	현재 부담순위
① 식료품(외식비 포함)	26.53**	25.83***	1(699)
② 주거비(월세, 관리비 등)	11.48***	11.91***	2(335)
③ 교육비(보육료 포함)	5.63**	5.15	6(143)
④ 의료비	6.88*	7.56***	5(161)
⑤ 교통비	7.32	6.85	8(68)
⑥ 통신비	6.90*	6.95*	7(84)
⑦ 기타소비지출	7.83	6.45***	9(58)
⑧ 세금 및 사회보험료	8.32	8.82	3(276)
⑨ 가구 간 이전지출	4.43	4.64**	11(39)
⑩ 부채상환	5.33*	7.28***	4(247)
⑪ 저축 및 금융 투자	9.34	8.57***	10(49)

주: 1) 전체 지출을 100%로 두고 비율로 측정함.

2) 코로나19 이후 가구소득이 “감소”한 가구에 대해서 제시했으며, *는 가구소득의 변화 상태(증가, 감소, 변함없음)에 따른 차이를 나타냄.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15)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긴급 지원은 1차 50만 원, 2차 150만 원이지만, 본 연구의 조사 결과 월평균 가구원 1인당 가구소득의 감소는 82.32만 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가구소득이 감소했다는 응답을 연령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 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30대만 소득의 감소가 50% 미만으로 나타나고, 그 외 연령층에서는 소득의 감소 비중이 50%를 넘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개인 소득이 오히려 증가한 응답자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감소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중은 높지 않다. 한편, 코로나19 전후 개인 소득을 유지하는 비중은 30대와 50대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가구 소득도 3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감소의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가구 소득이 증가했다는 응답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코로나19 전후에 가구소득이 유지되는 비중은 3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0〉 코로나19 전후 소득 변화와 연령

(단위: %)

	가구 소득				개인 소득			
	증가	감소	유지	전체	증가	감소	유지	전체
20대	10.8	57.0	32.2	100.0	13.0	51.7	35.2	100.0
30대	9.9	49.4	40.7	100.0	10.4	46.2	43.4	100.0
40대	6.4	57.2	36.5	100.0	7.4	52.9	39.7	100.0
50대	5.3	57.2	37.5	100.0	4.9	54.2	40.9	100.0
60대 이상	2.9	58.5	38.6	100.0	3.1	54.1	42.8	100.0
전체	6.6	56.1	37.3	100.0	7.1	52.2	40.7	100.0
Chi	69.129***				87.468***			

주: 가구소득은 “증가, 감소, 변화없음”으로 측정한 것임.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가구소득이 감소했다는 응답을 종사상 지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73.4%), 고용원이 있는 자영자(71.9%),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65.3%)의 소득감소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소득감소 규모는 190.4만원으로 가장 컸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개인 소득이 감소했다는 응답 역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70% 넘게 나타났다. 그러나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와 임시/일용직 역시 6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 소득감소와 종사상 지위

(단위: %, 만원)

	가구소득감소			개인소득감소		
	감소비중	감소액	(표준편차)	감소비중	감소액	(표준편차)
상용직	44.1%	111.3	(110.5)	39.3%	78.2	(78.4)
임시/일용직	65.8%	119.0	(133.5)	63.1%	75.0	(67.9)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71.9%	190.4	(157.1)	71.6%	131.0	(103.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73.4%	143.7	(124.9)	71.9%	101.1	(71.6)
특고/프리랜서/플랫폼	65.3%	117.3	(103.0)	65.7%	88.6	(87.4)
실업자	50.9%	116.9	(155.5)	42.1%	74.3	(92.2)
비경제활동인구 등 기타	41.7%	99.3	(85.3)	30.3%	64.3	(59.5)
전체	53.4%	126.7	(124.2)	48.9%	88.8	(82.8)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 종사상 지위의 변화를 경험한 집단을 기준으로 가구소득 및 개인 소득의 감소를 살펴보았다. 2019년에 상용직이었다가 2020년에 상용직을 유지한 사람 중 가구소득이 감소한 비중은

83.7%이나 소득감소액은 164.8만원으로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그러나 2019년에 상용직이었다가 2020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로 전환한 사람 중 82.4%는 소득이 감소하였다. 이들의 감소폭은 171.9만원으로 가장 컸다. 한편, 상용직에서 실업으로 전환한 경우는 가구소득이 감소한 비중이 50.0%에 불과하지만, 소득감소가 컸다.

〈표 3-12〉 소득감소와 종사상 지위 변화

(단위: %, 만원)

	가구소득감소			개인소득감소		
	감소 비중	감소액	(표준편차)	감소 비중	감소액	(표준편차)
상용직	83.7%	164.8	(127.3)	84.1%	128.9	(102.0)
임시/일용직	93.5%	119.2	(127.3)	91.3%	80.0	(60.4)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82.4%	171.9	(135.8)	91.2%	135.5	(111.1)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81.3%	146.9	(100.4)	71.9%	89.6	(49.0)
특고/프리랜서/플랫폼	83.9%	96.0	(58.8)	87.1%	80.0	(55.8)
실업자	52.0%	93.1	(130.2)	20.0%	70.0	(56.1)
비경제활동인구 등 기타	50.0%	161.1	(112.0)	50.0%	111.1	(103.7)
전체	82.3%	145.6	(124.2)	80.5%	110.3	(90.9)

주: 2019년 '상용직'을 기준으로 2020년 종사상 지위의 변화를 경험한 응답자의 가구 및 개인소득감소를 살펴봄.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한편, 코로나19의 영향이 자영업자 및 특고·플랫폼 노동자에 미친 영향이 커 자영업자에 대해 추가 조사한 결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전후 종사상 지위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유지 84%)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사업장 매출은 대부분 감소했는데, 특히 고용원 유무에 따른 자영업자의 소득 변화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매출 감소로 인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전환했을 가능성이 있다.

〈표 3-13〉 자영업자의 소득 변화

변화	구분	자영업자		소상공인지원금		Total
		고용원있음	고용원없음	못받음	받음	
증가함	N	12	10	10	12	22
	%	4.5	3.3	3.8	3.9	3.9
변화 없음	N	38	46	56	28	84
	%	14.1	15.2	21.5	9.0	14.7
감소함	N	219	247	195	271	466
	%	81.4	81.5	74.7	87.1	81.5
Total	N	269	303	261	311	572
	%	100	100	100	100	100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한편, 자영업자들은 고용원 유무에 관계없이 전년 대비 매출이 54% 수준에 불과하나, 소상공인 지원금의 수혜율은 이보다 적다(51.5%). 이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전환한 경우,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하는 소상공인지원 정책대상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표 3-14〉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 비율

(단위: %)

	자영업자		소상공인지원금	
	고용원있음	고용원없음	못받음	받음
매출 감소 비율 (전년=100)	54.5	54.6	58.8	51.5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한편,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이후 가장 부담되는 지출로는 인건비(33.8%)와 임대료(36.0%)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인건비 부담은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크고(51.6%), 임대료는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43.5%). 소상공인지원금을 받지 못한 자영업자는 인건비(39.0%) 지출이 매우 크게 나타났고, 소상공인지원금을 받은

자영업자의 지출은 임대료의 부담(42.0%)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5〉 자영업자의 지출 항목 비교

지출항목	구분	자영업자		소상공인지원금		Total
		고용원있음	고용원없음	못받음	받음	
재료비	N	41	77	58	60	118
	%	14.5	22.9	20.0	18.2	19.6
인건비	N	146	63	113	96	209
	%	51.6	18.8	39.0	29.2	33.8
임대료	N	75	146	83	138	221
	%	26.5	43.5	28.6	42.0	36.0
수수료	N	10	16	9	17	26
	%	3.5	4.8	3.1	5.2	4.2
기타	N	11	34	27	18	45
	%	3.9	10.1	9.3	5.5	7.3
Total	N	283	336	290	329	619
	%	100	100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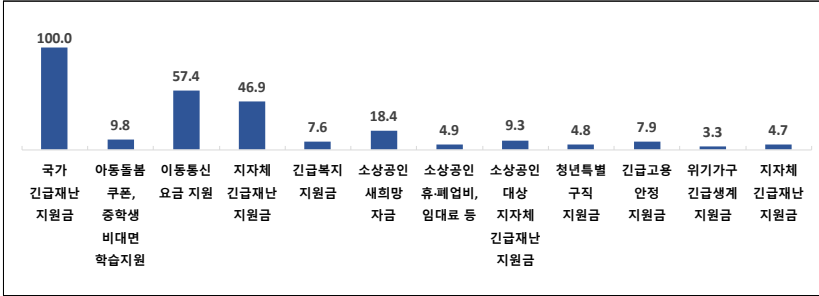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응답자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100% 받았으며, 이동통신요금 지원(57.4%),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46.9%)이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18.4%)이나 아동돌봄쿠폰(9.8%), 소상공인 대상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9.3%) 순으로 나타났다.

100 사회보장 분야 사각지대 축소 및 부정정지출 관리 방안 연구-긴급 지원을 중심으로

[그림 3-2] 2020년 한 해 긴급 지원 수급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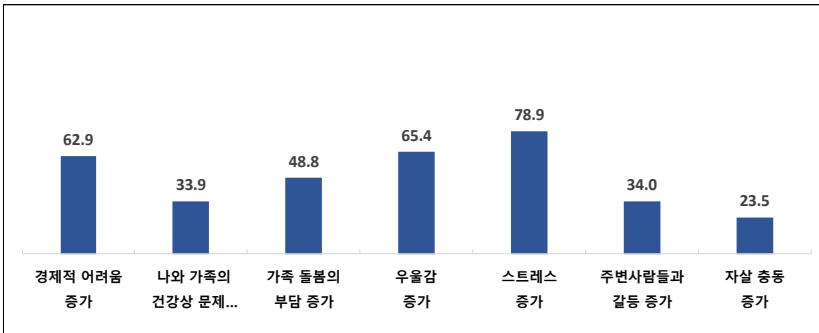


주: n=4,000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심리 및 생활 변화를 살펴보면, 스트레스 증가(78.9%)와 우울감 증가(65.4%)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적 어려움의 증가(62.9%)와 가족 돌봄 부담(48.8%)의 증가가 그 뒤를 따른다.

[그림 3-3]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단위: %)



주: n=4,000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으며, 가족 돌봄의 부담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가족에게, 늘어난 가족 돌봄의 부담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조사한 결과, 일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이 전담(38.6%)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일하는 가족 구성원이 휴가, 휴직, 유연근무, 재택근무를 활용한 경우(28.2%)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다. 반면, 시설이나 기관의 긴급 돌봄을 이용한 비율은 5.6%에 불과하다.

주의할 것은 ‘기타’ 응답자이다. 이는 자녀가 혼자 있거나 성인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형제·자매가 함께 있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표 3-16〉 돌봄 부담의 증가를 대처한 방법

(단위: 명, %)

구분	Q. (만 18세 미만 아동, 돌봄 부담 증가) 돌봄 부담의 증가를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빈도	비율
합계	604	100.0
일을 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이 돌봄을 전담	233	38.6
일을 하는 가족 구성원이 휴가, 휴직, 유연근무, 재택근무를 활용해 대처	170	28.2
부모, 형제 등 따로 사는 가족의 도움	116	19.1
돌봄이 가능한 시설/기관의 긴급 돌봄으로 대체	34	5.6
개인적으로 돌봄 종사자를 고용	5	0.9
기타	46	7.6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긴급 지원의 사각지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순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긴급 지원의 사각지대는 공적 이전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저소득층이라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26.9%).

코로나19로 인해 노동시장이 위축되고 자영업자 등의 영업을 제한됐기 때문에 근로연령 인구에서 소득감소가 크지만, 공적 이전 수급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초월해 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다수의 국민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인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대인서비스가 제한되면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나 장애인, 노인가구에 대한 재가돌봄서비스가 사각지대에 있다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한편, 집합 금지로 인한 자영업자와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진 청년에 대한 지원도 사각지대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표 3-17〉 코로나19 관련 긴급 지원에서의 복지소외계층(사각지대)

(단위: 명, %)

구분	Q. 코로나19와 관련한 긴급 지원에서 “도움이 필요하지만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소외 계층(사각지대)”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부터 7순위까지 우선순위를 기입)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누적 빈도 수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공적 이전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저소득층	851 (26.9)	448 (14.1)	450 (14.2)	363 (11.4)	337 (10.7)	314 (9.9)	403 (12.8)	3,166
돌봄이 필요한 아동·장애인·노인 가구(가정 돌봄)	787 (24.8)	685 (21.6)	433 (13.7)	374 (11.8)	390 (12.3)	334 (10.6)	163 (5.2)	3,166
시설에서 돌보고 있는 아동·장애인·노인(시설 돌봄)	327 (10.3)	519 (16.4)	662 (20.9)	466 (14.7)	490 (15.5)	465 (14.7)	237 (7.5)	3,166
사회적 거리두기로 교육 기회가 제한된 학생	216 (6.8)	269 (8.5)	305 (9.6)	521 (16.5)	493 (15.6)	576 (18.2)	786 (24.8)	3,166
경제활동 위축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진 청년	441 (13.9)	578 (18.3)	477 (15.1)	518 (16.4)	582 (18.4)	368 (11.6)	202 (6.3)	3,166
집합금지 등으로 영업을 제한된 자영업자	465 (14.8)	437 (13.8)	482 (15.2)	543 (17.2)	435 (13.7)	590 (18.6)	214 (6.7)	3,166
사회적 거리두기로 원활한 기업 운영이 제한된 고용주	79 (2.5)	230 (7.3)	357 (11.3)	381 (12.0)	439 (13.8)	519 (16.4)	1,161 (36.7)	3,166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한편 코로나19 긴급 지원과 관련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은 주로 소상공인 지원에서 높게 나타났다(60% 이상). 이는 소상공인 지원이 선별적인 대상 선정기준을 적용하였고, 피고용인에 대한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등 운영 방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3-18〉 코로나19 관련 긴급 지원의 정책별 부정수급 인식 정도

(단위: 명, %)

구분	Q. 다음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의 긴급 지원입니다. 각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부정수급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없는 편		있는 편		모름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지역 주민 대상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	1,523	38.1	2,146	53.6	331 (8.3)	4,000 (100.0)
취약계층 신청 긴급복지지원금	1,263	31.6	2,375	59.3	362 (9.1)	4,000 (100.0)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063	26.6	2,529	63.2	408 (10.2)	4,000 (100.0)
소상공인 휴·폐업비, 임대료 등 자금 지원	1,068	26.7	2,495	62.4	437 (10.9)	4,000 (100.0)
지역 소상공인 대상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	1,092	27.3	2,494	62.3	414 (10.4)	4,000 (100.0)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210	30.3	2,333	58.3	457 (11.4)	4,000 (100.0)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135	28.4	2,421	60.5	444 (11.1)	4,000 (100.0)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1,171	29.3	2,385	59.6	444 (11.1)	4,000 (100.0)
고용 안정 및 실업 관련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	1,149	28.7	2,394	59.9	457 (11.4)	4,000 (100.0)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제4절 소결

본 연구는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재난과 이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긴급 지원의 사각지대와 부정정지출의 실태를 규명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메르스 이후 신종 감염병을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하고 자연재해와 더불어 재난안전법의 관리 대상에 포함하였다. 코로나19는 사스나 메르스보다 더욱 강력하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학교는 휴업하고 학원 및 사회복지시설은 휴원하였다. 행정 명령을 통해 식당 및 헬스장, 노래방 등이 영업금지 혹은 영업 제한되었고,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일부 제조업 등도 큰 타격을 받았다.

2020년 코로나19 대응 긴급 지원 중에서 가장 눈여겨볼 것은 긴급재난지원금이다. 신청 방식이기는 하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가장 높은 수급율을 보여준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검토 단계부터 상당히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다. 대상 선정기준의 문제와 급여 수준, 급여 제공 방식 등에서 이견이 제기되었고, 원칙과 실제 적용에 많은 논의가 제기되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건전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지연되자, 선제적으로 재난지원금을 도입하였다. 이런 이유로 의도치 않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급 지원의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긴급 지원이 1회성 지원으로 종결되어야 할지, 지속적이어야 할지 등을 검토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긴급 지원의 효과성을 실증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2020년에 수행된 긴급 지원의 효과에 대한 연구 문헌들을 참조하고, 우리 원에서 다년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보장모니터링 분석틀에 맞춰 긴급 지원의 사각지대 및 부적정지출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의 조사내용과 조사 방식을 검토하고, 본 원에서 다년간 수행하고 있는 모니터링 틀을 활용하여 조사 문항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종사상 지위에서 다른 조사와 차이가 있다. 자영자와 프리랜서, 특수근로형태종사자, 플랫폼노동자 등에 대한 할당을 시도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무직보다 코로나19의 영향을 더욱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들이 어느 정도의 피해를 보았는지 증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고용보험 사각지대로, 고용보험의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한계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2장의 이론적 틀과 이에 근거하여 수행한 조사의 기초분석 결과를 토대로 세 가지 심층분석 대상을 선정하였다. 첫째, 코로나19의 영향은 연령 집단별로 차이가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에서 기초연금을 받는 고령자에게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원이 무신청 방식으로 선제적으로 이뤄졌고, 아동돌봄쿠폰과 비대면학습지원은 아동수당과 스쿨뱅킹 계좌가 있는 아동에게 신청 없이 계좌이체 방식으로 선제적으로 이뤄졌다. 즉 사회수당을 받는 공적 이전 소득자에게 사실상 보편적으로 긴급 지원이 이뤄진 것이다.

이에 비해 연령집단으로써 청년에 대한 심층분석도 필요하다. 2월 중 대학을 졸업한 청년이 노동시장 진입을 시도하는 시점(3월)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선언되었기 때문에 청년들이 느끼는 코로나19의 영향은 상당히 큰 파장을 주었다. 각종 취업박람회 취소되었고, 고용시장이 얼어붙었으며, 대면 면접에서 온라인 면접으로 전환하였다. 이들이 취업 전까지 아르바이트 및 임시일용직, 단기 취업자로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코로나19의 영향이 다른 연령집단과 다른 방식으로 작용

했을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은 종사상 지위별로 차이가 있다. 정부는 가족돌봄휴가 및 재택근무 권고 등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임금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고용장려를 통해 실업을 예방했다. 그에 반해 영업금지 및 영업 제한으로 인해 사업장 매출이 급감한 자영자 및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와 같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은 매우 지연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추정하기 어렵고, 이들에게 직접 지원을 조기에 할 수 있는 연계된 계좌도 없었기 때문이다.

본 장의 기초분석 결과 종사상 지위별로 개인 소득의 감소와 가구소득의 감소에는 차이가 있다. 특히 자영자와 특수고용형태, 프리랜서 등의 고용취약계층의 소득감소가 매우 큰 폭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사상 지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 자영자 등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마지막으로, 종사상 지위가 변화한 그룹에 대한 심층분석이 필요하다. 소득의 감소는 직장 및 사업장의 폐업과 휴업, 실직 등으로 발생한다. 물론 근무시간 조정 등으로 소득의 감소가 있기는 하지만,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만큼 큰 폭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것은 드물다.

특히 코로나19로 종사상 지위가 변한 집단은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에서 두드러진다. 먼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전환한 것은 매출의 감소를 본인의 노동력으로 메운 것이지만, 사실상 정부 지원에서는 배제되었다. 유사하게 임시·일용직이 실직 상태로 전환하는 경우, 현저히 감소한 구직급여로 생활하게 되었다.

이들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위험 앞에서 긴급 지원이 적절하게 대응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4장

코로나19와 종사상 지위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종사상 지위별 생활 변화

제3절 고용취약계층과 긴급 지원

제4절 심층분석

제5절 소결

제 4 장 코로나19와 종사상 지위

제1절 분석 개요

1. 고용 현황

세계보건기구(WHO)가 2020년 3월 11일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pandemic)을 선언했다(한영혜, 2020.). 유럽, 미국, 일본 등 각국 정부는 감염병에 대한 방역만이 아니라 경기 침체 및 생계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정책을 추진하였다(정홍준, 2020, p.1).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로 자동차부품산업과 개인 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에 기업의 폐업과 노동자의 실업이 발생하였다(윤동열 외, 2021, p. 99).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선언된 2020년 3월과 4월에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5월부터는 증가했으나, 예년 수준까지 회복하지는 못했다. 특히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있던 2021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취업자 수는 매우 급격하게 감소하였다(통계청, 2021a). 2021년 5월 이후에는 예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전과는 매우 다른 양상이다¹⁶⁾.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의 산업 및 직업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농림어업은 전반적으로 증가했으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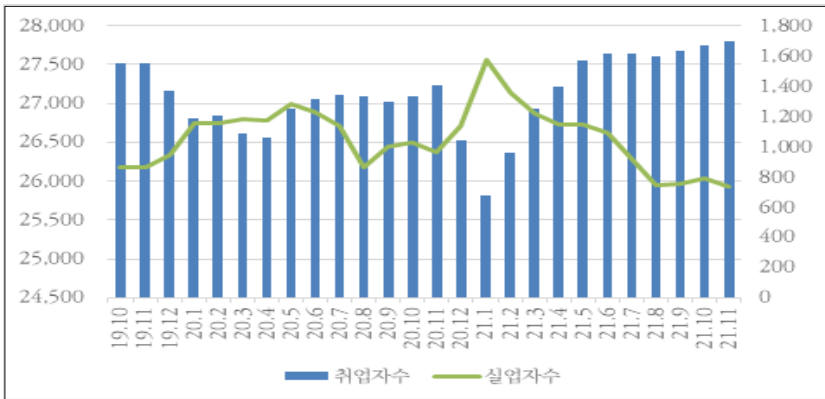
16) 2020년에 일자리가 71만개 증가했지만, 60세 이상 일자리가 38만개 이상인 반면, 19세 이하 일자리는 오히려 3만개 이상 감소하였다(통계청, 2021b).

110 사회보장 분야 사각지대 축소 및 부정정지출 관리 방안 연구-긴급 지원을 중심으로

소매·숙박음식업과 사업·개인·공공서비스의 고용이 코로나19 대유행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 있다. 유사하게 직업분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관리자과 사무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는 오히려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숙련종사자와 서비스·판매종사자는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4-1] 취업자 및 실업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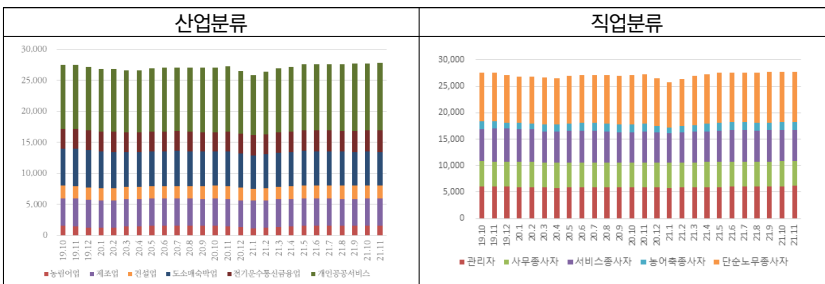
(단위: 천명)



자료: 통계청. (2021a), 2021년 11월 고용동향 원자료를 활용하여 가공함.

[그림 4-2] 산업별·직업분류별 고용 현황

(단위: 천명)



주: 산업분류는 2017년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 기준임.
 직업분류는 2018년 한국표준직업분류 7차 개정 기준임.
 자료: 통계청. (2021a), 2021년 11월 고용동향 원자료를 활용하여 가공함.

우리나라에서는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되고 난 이후 경제위기 때마다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기업의 고용조정을 지연하거나 근로자의 실업을 효과적으로 예방 또는 지연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정부는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지원하고,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장려금을 확대하는 등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대응했으며,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지정¹⁷⁾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재정지원을 실시하였다(정흥준, 2020, pp. 1-2).

그러나 정부의 신속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미 견고해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정부 대책의 사각지대를 만들었다(정흥준, 2020, p. 2). 코로나19로 인한 대량 실업 막기 위해 정부 지원은 상대적으로 대기업·상용직·고용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들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실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 제한, 영업금지 등의 행정명령으로 정상적인 근로활동을 할 수 없었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우 고용보험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들이 휴업 및 폐업을 하는 경우, 혹은 방역 대책으로 인한 영업시간 감소로 영업매출이 감소하는 경우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줄 사회보장체계가 견고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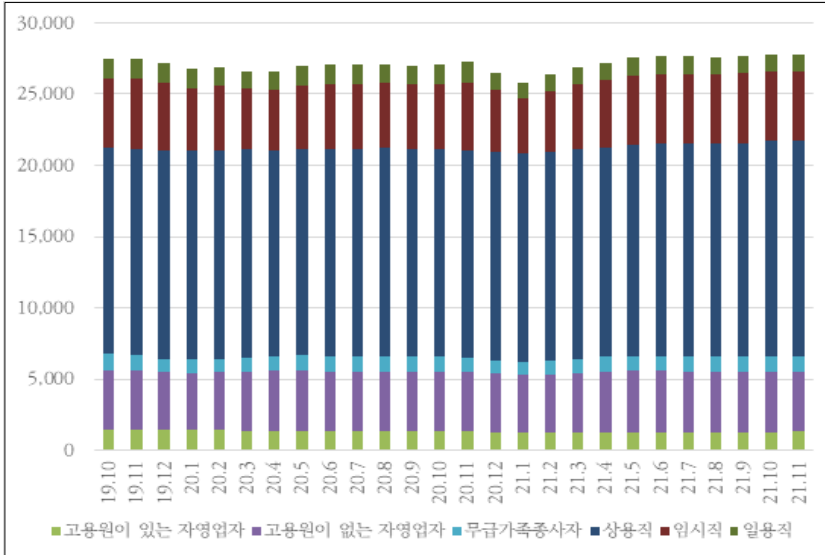
실제로 코로나19의 영향이 증폭된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경우 자영업자 및 5인 미만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감소가 전반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¹⁸⁾ 이러한 이유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고용안전망 문제가 제기되었다.

17) 1차 특별고용지원 업종에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항공운송업, 공연업이 포함되어 보험료 유예 및 직업훈련 등 사업주와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았다(정흥준, 2020, p.2).

18) 실제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라진 일자리의 78%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1b).

[그림 4-3] 종사상 지위별 고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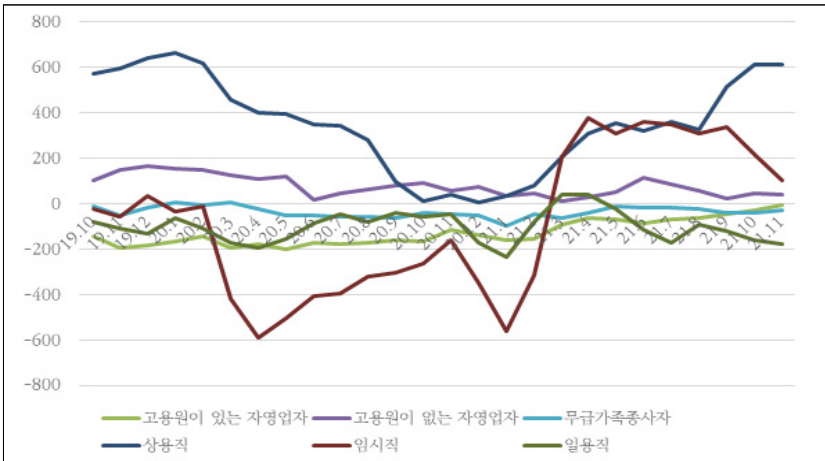
(단위: 천명)



자료: 통계청(2021a), 2021년 11월 고용동향 원자료를 활용하여 가공함.

[그림 4-4] 종사상 지위 고용 증감

(단위: 천명)



자료: 통계청(2021a), 2021년 11월 고용동향 원자료를 활용하여 가공함.

2. 고용보험 사각지대 정의

본 연구에서 종사상 지위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유사하지만, 기타종사자를 구분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종사상 지위를 비임금근로자와 임금근로자로 구분하고, 비임금근로자는 다시 자영업주¹⁹⁾와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한다. 또한 임금근로자는 다시 상용직과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로 구분한다(통계청, 2020a).

본 연구의 초점은 고용보험에서 배제된 사람들이다. 다만, 단순히 고용보험 가입 여부로 측정하지 않고, 자영업자와 기타 종사자를 조사하였다. 즉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방문교사 등)가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다. 2020년 12월 기준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전체 취업자의 24.4%이며(통계청, 2021a),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36.0%로 과다표집하였으므로, 분석 결과를 해석할 때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4-1〉 종사상 지위별 집단 구분

구분	종사상 지위	비중	사례수
임금근로자	상용직	38.8	1,731
	임시일용직	6.1	270
비임금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0.6	474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5.4	688
기타 종사자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9.9	443
그 외	실업자	4.8	216
	비경제활동인구 등 기타	14.3	636
계		4,458	100.0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19) 자영업주는 고용원의 유무에 따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구분한다.

제2절 종사상 지위별 생활 변화

1. 소득지출 변화

종사상 지위별로 가구소득 분포에는 차이가 있다. 상용직은 소득 구간별로 고른 분포를 보이며, 700만 원 이상도 18.1%로 높게 나타난다. 이에 비해 임시·일용직의 37.4%가 200만 원 미만 가구소득에 분포하고 있다. 한편 고용원이 있는 자영자의 67.7%가 가구소득 400만 원 이상에 분포하고 있으며, 700만 원 이상 소득도 21.3%로 매우 높은 비중을 보인다. 반면에 가구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도 11.8%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의 가구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데, 400만 원 미만 가구소득이 59.7%이다.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의 소득은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보이나, 상대적으로 저소득의 비중이 높다. 이는 비경제활동인구와 유사한 수준이다.

〈표 4-2〉 종사상 지위별 가구소득 분포(2020년)

(단위: %)

가구소득	상용직	임시 일용직	고용원 有 자영자	고용원 無 자영자	특고/ 플랫폼 등	실업자	비경제 활동 인구	전체
100만원 미만	0.9	14.4	11.8	22.5	16.0	29.2	15.9	11.2
100~199만원	7.5	23.0	3.2	13.5	15.3	25.9	14.3	11.5
200~299만원	15.3	18.5	7.8	11.2	13.1	16.2	15.1	13.8
300~399만원	15.4	13.7	9.5	12.5	15.3	9.7	16.2	14.0
400~499만원	16.1	12.2	13.5	14.7	10.2	5.6	11.6	13.6
500~599만원	15.8	7.4	17.5	8.9	10.2	6.0	10.7	12.6
600~699만원	11.0	5.2	15.4	10.3	12.9	1.9	4.7	9.8
700만원 이상	18.1	5.6	21.3	6.4	7.0	5.6	11.5	13.2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	749.285***							

*p<0.1, **p<0.05,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종사상 지위별로 개인 소득의 분포에는 차이가 있다. 상용직은 156만 원 이상에 89.5% 분포하고 있다. 특히 400만 원 이상 소득을 버는 상용직이 20.3%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비교적 225만 원 이하 소득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79.2%). 고용원이 있는 자영자는 86~120만 원 소득 비중도 높지만(13.9%), 400만 원 이상 소득의 비중도 31.6%로 가장 높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는 86~120만 원 소득의 비중이 24.7%로 매우 높지만, 나머지 구간에서 비교적 균등하게 나타난다. 개인 소득이 400만 원 이상인 비중도 12.6%로 상대적으로 높다.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은 225만 원 미만의 소득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51.3%)는 점에서 임시일용직과 유사하지만, 400만 원 이상의 비중은 임시일용직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표 4-3〉 종사상 지위별 개인 소득 분포(2020년)

(단위: %)

가구소득	상용직	임시 일용직	고용원 有 자영자	고용원 無 자영자	특고/ 플랫폼 등	실업자	비경제 활동 인구	전체
50만원 이하	2.3	12.2	1.7	4.8	9.0	47.2	49.8	12.9
51~85만원	1.4	16.3	2.3	7.8	10.4	13.0	7.7	5.8
86~120만원	2.9	20.4	13.9	24.7	19.9	12.5	9.7	11.6
121~155만원	3.9	9.6	3.8	7.1	10.8	6.5	5.8	5.8
156~190만원	10.4	10.7	3.8	8.1	9.9	4.2	3.6	8.1
191~225만원	13.9	10.0	8.0	8.7	9.3	4.2	4.2	9.9
226~260만원	12.1	7.8	6.8	7.6	6.5	3.7	2.5	8.2
261~295만원	9.0	2.6	5.5	4.5	4.1	1.4	2.7	5.8
296~330만원	10.4	2.6	9.3	4.9	4.1	0.9	2.8	6.8
331~365만원	7.2	3.0	7.2	4.8	2.3	0.5	1.7	5.0
366~399만원	6.2	2.2	6.1	4.2	3.8	0.9	2.5	4.6
400만원 이상	20.3	2.6	31.6	12.6	9.9	5.1	6.8	15.6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	2,159.642***							

*p<0.1, **p<0.05,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종사상 지위별로 코로나19 전후 소득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구소득은 상용직과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유지의 비중이 약 50%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고, 코로나19 전후 오히려 소득이 증가한 응답자의 비중도 상용직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고용원이 있는 자영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가 70% 이상, 특고 및 플랫폼 노동자와 실업자, 임시일용직의 가구소득감소가 60% 이상으로 나타났다. 즉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전후 가구소득이 감소하였으나, 종사상 지위별로 차이가 있는데, 자영자와 특고 등의 감소 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 역시 코로나19 전후로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52.2%). 그러나,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특고 및 플랫폼 노동자들의 개인 소득 증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자의 소득감소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의 경우 개인 소득의 감소가 가구소득의 감소보다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표 4-4〉 종사상 지위별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의 변화

(단위: %)

코로나 전후 소득 변화		상용직	임시 일용직	고용원 有 자영자	고용원 無 자영자	특고/ 플랫폼 등	실업자	비경제 활동 인구	전체
가구 소득	증가	10.5	6.7	4.0	2.8	6.1	0.9	3.9	6.6
	감소	40.5	60.0	77.0	77.8	67.9	66.7	46.2	56.1
	유지	49.0	33.3	19.0	19.5	26.0	32.4	49.8	37.3
Chi		484.279***							
개인 소득	증가	11.3	8.9	3.4	2.9	9.0	2.3	2.8	7.1
	감소	34.9	54.8	75.9	78.3	67.3	63.9	37.4	52.2
	유지	53.8	36.3	20.7	18.8	23.7	33.8	59.7	40.7
Chi		681.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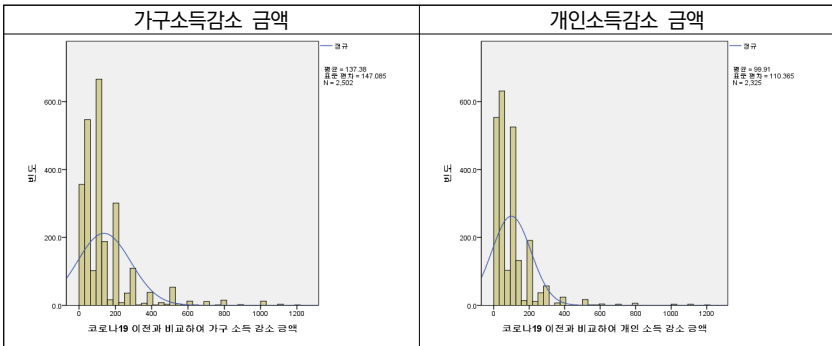
*p<0.1, **p<0.05,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코로나19 전후 개인 및 가구 소득의 감소 금액을 살펴보았다. 먼저 가구소득 감소 금액의 평균은 월 137.38만 원이고, 표준편차는 147.085로 나타났다(N=2,502). 이에 비해 개인 소득의 감소 금액은 월 평균 99.91만 원이고, 표준편차는 110.365이다(N=2,325).

[그림 4-5] 코로나19 전후 개인 및 가구소득감소 금액

(단위: 만원)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가구소득이 줄어든 이유 역시 종사상 지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상용직은 매출의 감소(32.5%)와 근로시간의 감소(32.7%)로 인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임시일용직은 근로시간 감소(38.9%)와 실직(16.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자의 71.5%는 매출 감소를,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의 74.8%는 매출 감소로 인해 가구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특고 및 플랫폼 노동자는 매출 감소(41.5%)와 근로시간 감소(26.9%)로 인한 가구소득 감소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개인 소득이 줄어든 이유 역시 유사하게 나타났다. 상용직은 매출 감소(27.5%)와 근로시간 감소(38.4%), 휴직(10.4%) 및 휴업(10.4%)으로 인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임시일용직은 근로시간 감소(46.6%)와 실직

(18.9%)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자영자는 매출 감소가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고 및 플랫폼노동자 역시 매출 감소(40.6%)와 근로시간 감소(25.5%), 실직(12.1%), 휴업(10.4%) 등으로 나타났다.

〈표 4-5〉 종사상 지위별 소득이 줄어든 이유(1순위)

(단위: %)

가구소득	상용직	임시 일용직	고용원 有 자영자	고용원 無 자영자	특고/ 플랫폼 등	실업자	비경제 활동 인구	전체
폐업	6.0	11.7	3.0	2.6	6.0	11.1	6.5	5.6
휴업	14.0	14.2	13.7	8.8	13.0	3.5	8.2	11.4
매출 감소	32.5	13.0	71.5	74.8	41.5	13.2	18.0	44.2
임대수입감소	3.0	1.2	4.4	4.1	2.3	3.5	5.4	3.6
근로시간감소	32.7	38.9	4.7	5.8	26.9	12.5	24.8	20.5
임금 체불	1.4	0.0	0.0	0.2	0.3	2.1	1.4	0.8
유급/무급휴직	6.7	4.3	2.5	0.4	2.7	4.9	8.5	4.2
실직	3.7	16.7	0.3	3.4	7.3	49.3	27.2	9.8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	1,039.073***							
개인소득	상용직	임시 일용직	고용원 有 자영자	고용원 無 자영자	특고/ 플랫폼 등	실업자	비경제 활동 인구	전체
폐업	4.1	5.4	3.3	2.2	5.4	7.2	5.5	4.1
휴업	10.4	9.5	10.3	4.8	10.4	6.5	5.5	8.3
매출 감소	27.5	10.8	71.7	79.2	40.6	7.2	13.0	44.3
임대수입감소	4.0	2.0	3.6	3.5	0.3	1.4	7.6	3.4
근로시간감소	38.4	46.6	6.9	5.6	25.5	10.9	16.4	20.9
임금 체불	0.8	0.7	0.6	0.2	0.3	1.4	0.8	0.6
유급/무급휴직	10.4	6.1	1.1	0.2	5.4	6.5	11.8	5.6
실직	4.3	18.9	2.5	4.3	12.1	58.7	39.5	12.8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	1,222.063***							

*p<0.1, **p<0.05,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자영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전후 사업장 매출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고용원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장의 매출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기준 85%). 불과 3%의 사업장에서 매출이 증가했으며, 코로나19 전후에도 매출을 유지한 사업장은 12%에 불과하다. 즉 자영업자 대부분이 코로나19 전후로 매출의 감소를 경험하였다.

한편, 사업장 매출의 감소 시기는 코로나19 유행 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20년 3월과 8월에 각각 1차 대유행과 2차 대유행이 있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는 시점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여 그 영향은 각각 2분기와 3분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6〉 종사상 지위별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의 변화

(단위: %)

코로나 전후 소득 변화		고용원 有 자영자	고용원 無 자영자	전체
매출 변화	증가	3.7	2.4	3.0
	감소	83.7	85.9	85.0
	유지	12.5	11.7	12.0
	전체	100.0	100.0	100.0
	Chi	1.492		
매출감소 시기	1분기	16.6	20.1	18.7
	2분기	37.9	32.5	34.7
	3분기	29.1	26.3	27.4
	4분기	16.4	21.1	19.2
	전체	100.0	100.0	100.0
	Chi	6.758*		

*p<0.1, **p<0.05,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사업장 매출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데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재료비와 수수료, 기타 비용은 차이가 없으나, 인건비와 임대료는 고용원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다($F=9.658^{**}$, $F=5.541^*$). 사업장의 면적은 고용원의 존재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인건비 차이를 초래한다.

2. 주관적 생활 변화

종사상 지위별로 코로나19 이후 생활 변화를 살펴보면, 모든 주관적 인식에서 종사상 지위별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은 자영자에게 3.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실업자(2.98)와 비경제활동인구(2.55)보다도 높다. 돌봄부담의 증가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자에게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2.78). 우울감 역시 고용원이 있는 자영자에게서 높게 나타나지만(2.93), 임시일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실업자, 특고 등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자는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건강 문제, 돌봄 부담, 우울감, 스트레스, 주변과의 갈등 등에서 다른 종사상 지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종사상 지위별 코로나19 이후 생활 변화

(단위: %)

	상용직	임시 일용직	고용원 有 자영자	고용원 無 자영자	특고/ 플랫폼 등	실업자	비경제 활동 인구	F
경제적 어려움	2.52	2.85	3.05	3.04	2.88	2.98	2.55	61.650 ^{***}
건강 문제 발생	2.19	2.28	2.49	2.36	2.15	2.36	2.21	13.298 ^{***}
돌봄 부담 증가	2.42	2.47	2.78	2.48	2.40	2.52	2.42	11.969 ^{***}
우울감 증가	2.66	2.80	2.93	2.79	2.74	2.79	2.69	8.260 ^{***}
스트레스 증가	2.21	2.37	2.51	2.38	2.25	2.30	2.14	11.308 ^{***}
주변과 갈등	2.21	2.37	2.51	2.38	2.25	2.30	2.14	15.397 ^{***}
자살 충동 증가	1.96	2.12	2.14	2.03	1.99	2.18	1.91	7.384 ^{***}

*p<0.1, **p<0.05,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제3절 고용취약계층과 긴급 지원

1. 소득·지출·부채 변화

본 절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소득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9년 대비 2020년 개인 소득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변화는 ‘소득 증가, 소득감소, 소득 유지’의 세 가지 형태로 물어보았으며, 소득이 감소한 응답자에게는 ‘2019년에 비해 2020년의 월평균 개인 소득의 감소 금액’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2019년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기 전’을 뜻하며, 2020년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후’를 뜻한다.

먼저, 개인 소득이 발생한 근로자 표본(3,606명)²⁰⁾을 대상으로 ‘개인 소득감소’의 결정요인을 프로비트모델(probit model)로 추정한 결과(한계효과)를 아래 <표 4-8>에서 제시하였다.

종속변수는 개인 소득이 감소했는지를 측정하는 이변수(binary variable)며, 설명변수는 응답자의 인적 특성과 지역 변수, 그리고 근로 특성들을 포함하였다. 먼저 응답자의 인적 특성은 나이, 성별, 결혼 여부와 학력 수준으로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지역 특성은 현재 본인의 거주지로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근로 특성은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와 사업장 규모, 그리고 근로자가 속한 현재 산업분류 등을 포함하였다.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는 임금근로자(상용직과 임시·일용직 포함)를 기준으로 자영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비교하였다. 근로자가 속한 산업분류는 (1) 제조업, (2) 도소매업, (3) 음식·숙박업, (4) 기타산업의 4가지 대분류로 구분하였으며, (4) 기타산업에는 출판·영상, 금융·보험 부동산업과 과

20) 이 때 근로자 표본이란, 임금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 기타 근로자를 포함한 것으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등을 제외한 집단을 뜻한다.

학·기술, 사업 지원, 임대업과 각종 서비스업 등을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 근로자보다 여성 근로자의 개인 소득이 감소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둘째, 임금근로자보다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인 소득 감소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셋째, 산업별 분포에서는 제조업보다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경우 코로나19 이후 소득감소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금융보험업과 과학기술 전문직, 각종 서비스업 종사자의 소득감소 확률은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넷째, 종사자 규모가 5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한 응답자의 소득감소가 두드러지게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섯째, 서울보다 부산/대구와 기타지역의 소득감소 확률이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4-8〉 개인소득감소여부 결정요인 분석: 전체 근로자 표본

변수내용	추정계수	표준오차
나이	0.000	0.001
여성	0.042**	0.018
결혼여부	0.028	0.021
대졸자	-0.026	0.022
자영업자	0.301***	0.024
특수고용 종사자	0.287***	0.021
종사자규모: 5인 이하	0.068***	0.024
산업변수		
도소매업	0.032	0.034
음식숙박업	0.136***	0.038
기타업종	-0.092***	0.024
지역구분		
경기/인천	-0.034	0.024
부산/대구	-0.056**	0.029
기타지역	-0.044*	0.024
Log likelihood	-2179.7344	
Pseudo R-sqs	0.1238	
표본수	3,606	

*p<0.1, **p<0.05, ***p<0.01

- 주: 1) 종사상 지위 기준그룹은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이며 제조업이 산업변수의 기본그룹임.
- 2) 지역구분의 경우 서울거주자가 기본그룹임.
- 3) 모든 추정계수값은 한계효과(marginal effects)임.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응답자가 ‘고용주(자영업자)’라고 응답한 표본(907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 대비 매출 감소 결정요인을 프로빗모델(probit model)로 추정한 결과(한계효과)는 아래 <표 4-9>와 같다.

종속변수는 자영업자의 매출이 코로나19 이후로 감소했는지를 측정하는 이변수(binary variable)며, 설명변수는 전체 근로자 분석에서 사용했던 변수들과 같고, 사업장 존속연수(year)를 추가하였다.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 여부는 성(性)외에는 상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보다 여성자영업자의 매출 감소가 더 높다는 점을 제외하면, 개인 특성과 지역 특성, 근로 특성이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 여부에 상이하게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는 보편적인 현상이었음을 뜻한다.

<표 4-9> 자영업자 매출 감소여부 결정요인 분석

변수내용	추정계수	표준오차
나이	0.001	0.001
여성	0.050*	0.025
결혼여부	-0.000	0.027
대졸자	-0.015	0.030
사업장존속연수	-0.002	0.001
종사자규모: 5인 이하	0.019	0.034
산업변수		
도소매업	0.011	0.048
음식숙박업	0.052	0.046
기타업종	-0.061	0.053
지역구분		
경기/인천	0.019	0.032
부산/대구	-0.026	0.041
기타지역	-0.041	0.035
Log likelihood	-367.1762	
Pseudo R-sqs	0.0421	
표본	907	

*p<0.1, **p<0.05, ***p<0.01

주: 1) 제조업이 산업변수의 기본그룹이며 지역구분의 경우 서울거주자가 기본그룹임.

2) 모든 추정계수값은 한계효과(marginal effects)임.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본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노동자 포함)라고 응답한 표본(443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 대비 소득감소 결정요인을 프로빗모델(probit model)로 추정한 결과(한계효과)는 아래 <표 4-10>과 같다.

종속변수는 특수고용 종사자의 개인 소득이 코로나19 이후로 감소했는지를 측정하는 이변수(binary variable)며, 설명변수는 전체 근로자표본 분석에서 사용했던 변수들과 동일하다. 즉 사업장 근속연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앞에서 분석한 자영업 표본과 마찬가지로 설명변수들 가운데 남성 근로자 대비 여성 근로자의 소득감소가 발생한 것 외에는 산업과 지역별로 매출 감소가 상이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음식·숙박업 종사자는 다른 업종에 비해 소득감소가 발생한 패턴은 보이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4-10> 특수고용 종사자 소득감소여부 결정요인 분석

변수내용	추정계수	표준오차
나이	-0.000	0.002
여성	0.090**	0.045
결혼여부	0.071	0.056
대졸자	0.007	0.056
종사자규모: 5인 이하	-0.019	0.049
산업변수		
도소매업	0.025	0.186
음식숙박업	0.021	0.116
기타업종	0.081	0.162
지역구분		
경기/인천	-0.028	0.061
부산/대구	-0.070	0.079
기타지역	0.050	0.062
Log likelihood	-273.7708	
Pseudo R-sqs	0.0226	
표본	443	

*p<0.1, **p<0.05, ***p<0.01

주: 1) 제조업이 산업변수의 기본그룹이며 지역구분의 경우 서울거주자가 기본그룹임.

2) 모든 추정계수값은 한계효과(marginal effects)임.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의 매출이나 이윤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표본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결정요인을 회귀분석으로 추정하였다. 인적 특성 변수와 관련해서는 자영업자의 매출이나 이윤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도소매업과 기타업종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해 매출이나 이윤감소의 폭이 다소 적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4-11〉 자영업자 매출 및 이윤 감소 결정요인 분석

변수내용	매출감소(%)		이윤감소(%)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나이	-0.088	0.093	-0.059	0.094
여성	2.190	1.950	1.218	1.929
결혼여부	-2.177	2.186	-2.046	2.172
대출자	0.443	2.341	2.583	2.259
기업존속연수	-0.020	0.107	-0.132	0.109
종사자규모: 5인 이하	-0.774	3.885	1.431	2.736
산업변수				
도소매업	-6.189*	3.010	-5.260	3.744
음식숙박업	-0.258	4.010	4.197	3.885
기타업종	-6.340	3.960	-6.265*	3.852
지역구분				
경기/인천	8.640***	2.970	9.304***	2.597
부산/대구	0.579	2.674	4.515	2.937
기타지역	-2.709	6.777	-1.413	2.617
R-squared	0.0639		0.0883	
표본	771		757	

*p<0.1, **p<0.05, ***p<0.01

주: 1) 종사상 지위 기준그룹은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이며 제조업이 산업변수의 기본그룹임.

2) 지역구분의 경우 서울거주자가 기본그룹임.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2. 자영업자 추가 조사 문항

본 절에서는 긴급 지원 관련 설문조사에 기초하여 정책에 대한 인식 분석을 통해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한다. 이는 자영업자에 대한 추가 조사

문항을 활용하였다. 먼저 자영업자에 대한 추가 조사에서는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부담되는 지출항목’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있다.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비용 항목(경비)은 ①재료비, ②인건비(급여, 사회보험료, 직원 복리후생비), ③임대료, ④수수료(플랫폼 이용료, 배달수수료, 카드수수료 등), ⑤기타 항목(교통통신비, 세금 등)의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전체 고용주(자영업자) 964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임대료라고 응답한 비중이 37.7%(364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재료비 26.2%(253명), 인건비 25.4%(245명), 기타 항목 7.1%(68명), 수수료 3.5%(34명) 순서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영업자에게 부담되는 지출 항목에 대한 응답 선호도와 자영업자의 다양한 특성과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해 다항로짓분석(multinomial logit analysis)을 시도하였다. 종속변수는 자영업자의 코로나19 이후 부담되는 지출 항목으로, 위에서 제시된 5가지 유형 중 4가지 유형(빈도수가 적은 기타 항목과 수수료를 통합)으로 재정리하였다.

여기서 ①번 항목인 재료비를 기준그룹(reference group)으로 정하고 설명변수(자영업자의 다양한 인적 특성과 근로형태)가 각 경비 항목 유형에 미친 ‘상대적 효과’를 다항로짓분석을 통해 추정하였다.

설명변수가 비용항목 4가지 유형에 미친 상대적 효과(relative risk ratios)를 <표 4-12>에서 제시하고 있다. 추정계수값이 1보다 크면, 기준 그룹(재료비 항목)보다 분석 그룹(다른 비용 항목)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해석한다.

설명변수들 가운데, 기혼자는 ② 인건비 항목에서 지출 부담이 높은 것으로 인식했으며, 대졸자는 ② 인건비 항목과 ④ 수수료 항목에서 지출 부담이 크다고 응답하였다. 업종별로는 기타업종에 종사하는 응답자들이 ② 인건비, ③ 임대료, 그리고 ④ 수수료 항목에서 지출 부담이 크다고 응답하였다. 그 외 업종별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4-12〉 코로나19 이후 부담되는 지출 결정요인 분석: 자영업자(다항로지분석)

	변수내용	추정계수	표준오차	
지출② 인건비	나이	0.989	0.010	
	여성	0.606**	0.128	
	결혼여부	1.965***	0.495	
	대출자	1.602*	0.391	
	종사자규모: 5인 이하	0.344***	0.102	
	기업존속년수	0.986	0.100	
	산업변수			
	도소매업	0.809	0.306	
	음식숙박업	1.031	0.419	
	기타업종	2.141**	0.828	
지역구분	경기/인천	0.847	0.239	
	부산/대구	0.945	0.299	
	기타지역	0.553**	0.148	
지출③ 임대료	나이	0.986	0.009	
	여성	1.068	0.199	
	결혼여부	0.933	0.193	
	대출자	1.162	0.252	
	종사자규모: 5인 이하	0.829	0.247	
	기업존속년수	0.976**	0.100	
	산업변수			
	도소매업	0.994	0.359	
	음식숙박업	1.584	0.598	
	기타업종	1.982*	0.746	
	지역구분	경기/인천	1.229	0.316
		부산/대구	0.747	0.227
		기타지역	0.493***	0.123
지출④ 수수료	나이	1.001	0.013	
	여성	0.718	0.191	
	결혼여부	0.640	0.184	
	대출자	1.946**	0.624	
	종사자규모: 5인 이하	0.692	0.271	
	기업존속년수	0.994	0.012	
	산업변수			
	도소매업	1.854	1.237	
	음식숙박업	2.748	1.889	
	기타업종	5.214**	3.481	
	지역구분	경기/인천	1.246	0.452
		부산/대구	1.473	0.580
		기타지역	0.724	0.256
Log likelihood		-1162.8039		
Pseudo R-sqs		0.0754		
표본		964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자영업자(소상공인 포함)에 대한 추가 질문에서 자신들에 대한 긴급 지원제도 가운데 선호하는 정책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정책 유형은 (1) 사업장 고용유지 지원(사회보험료 경감 등), (2) 영업 제한 등으로 인한 피해지원, (3) 임대료 인하 및 지원, (4) 저금리 대출 확대를 포함하는 금융지원 등의 4가지다.

전체 고용주(자영업자) 9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피해지원 정책에 답한 비중이 33.4%(322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임대료 지원 31.3%(302명), 사업장 고용유지 지원 21.4%(206명), 그리고 금융지원 13.9%(134명) 순서로 나타났다.

자영업자가 선호하는 긴급 지원제도와 자영업자의 다양한 특성과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해 다항로짓분석(multinomial logi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①번 항목인 사업장 고용유지 지원을 기준정책(reference policy)으로 정하고, 설명변수(자영업자의 다양한 인적속성과 업종별)가 각 정책에 대한 선호에 미친 '상대적 효과'를 다항로짓분석을 통해 추정하였다.

설명변수가 긴급 지원의 4가지 방식에 미친 상대적 효과(relative risk ratios)를 <표 4-13>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추정계수값이 1보다 큰 경우 기준정책(고용유지 지원) 대비 분석 그룹(다른 유형의 긴급 지원)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설명변수들 가운데 5인 미만 영세사업자의 경우 ④ 금융지원 정책을 다른 정책에 비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응답자들이 ② 영업 제한 등으로 인한 피해지원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4-13) 긴급 지원제도 정책 선호 결정요인 분석: 자영업자(다항로지분분석)

	변수내용	추정계수	표준오차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지원	나이	0.977**	0.100	
	여성	0.991	0.203	
	결혼여부	0.699	0.170	
	대졸자	0.615**	0.149	
	종사자규모: 5인 이하	0.958	0.242	
	사업체존속년수	1.001	0.010	
	산업변수	도소매업	1.517	0.570
		음식숙박업	2.994***	1.201
		기타업종	1.269	0.475
	지역구분	경기/인천	1.061	0.279
부산/대구		1.723*	0.530	
기타지역		1.883**	0.497	
입대료 인하 및 지원	나이	0.958***	0.010	
	여성	1.281	0.261	
	결혼여부	0.617**	0.149	
	대졸자	0.630*	0.156	
	종사자규모: 5인 이하	1.382	0.365	
	사업체존속년수	1.003	0.010	
	산업변수	도소매업	1.747	0.661
		음식숙박업	1.765	0.728
		기타업종	1.328	0.502
	지역구분	경기/인천	0.956	0.241
부산/대구		0.936	0.293	
기타지역		1.050	0.278	
저금리 대출 등 금융지원	나이	0.976**	0.012	
	여성	1.004	0.249	
	결혼여부	0.530**	0.150	
	대졸자	0.703	0.209	
	종사자규모: 5인 이하	2.144**	0.781	
	사업체존속년수	1.003	0.012	
	산업변수	도소매업	1.268	0.602
		음식숙박업	1.883	0.951
		기타업종	1.539	0.719
	지역구분	경기/인천	0.965	0.295
부산/대구		0.979	0.367	
기타지역		0.930	0.300	
Log likelihood		-1233.5566		
Pseudo R-sqs		0.0407		
표본		964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사적인 긴급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지원대상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사하였다. 조사에서 제시된 정책 대상 유형은 ① 저소득층, ②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대상, 그리고 ③ 일반 국민 3가지이다. 전체 표본 4,458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대상에 지원이 56.8%(2,532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저소득 지원 24.5%(1,090명), 전 국민 지원 18.8%(836명) 순서로 나타났다.

전체 표본과 근로자 표본을 각각 구분하여 이들이 선호하는 긴급 지원의 대상과 종사자의 다양한 특성과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해 다항로짓분석(multinomial logi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긴급 지원 가운데 ② 직접적인 피해를 본 대상을 기준그룹(reference group)으로 정하고 설명변수(응답자의 다양한 인적 속성과 업종별)가 각 정책 대상 유형에 미친 '상대적 효과'를 다항로짓 분석을 통해 추정하였다.

설명변수가 긴급 지원제도 대상 3가지 유형에 미친 상대적 효과(relative risk ratios)를 <표 4-14>에서 제시하고 있다. 추정계수값이 1보다 큰 경우 기준그룹(직접적인 피해 대상) 대비 분석 그룹(저소득층 혹은 전 국민 대상)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전체 표본 분석의 경우, 임금근로자 대비 자영업 종사자의 경우 저소득층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반면에 특수근로형태종사자는 전 국민 지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전체 국민에 대한 지원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근로자 표본의 경우, 업종별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5인 미만 영세사업자의 경우 저소득층 대상 지원을 다소 선호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4-14〉 긴급 지원제도 정책수혜 대상 우선순위 분석: 다항로지분분석

변수내용		전체표본		근로자표본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정책① 저소득 지원	나이	0.984***	0.003	0.977***	0.004	
	여성	0.962	0.072	0.961	0.081	
	결혼여부	0.885	0.078	0.964	0.095	
	대졸자	0.590***	0.050	0.572***	0.056	
	자영업자	1.263**	0.114	1.027	0.131	
	특수고용	0.948	0.125	0.933	0.129	
	비경활인구(실업자포함)	1.091	0.114	N/A	N/A	
	종사자규모: 5인 이하	N/A	N/A	1.220*	0.142	
	산업 변수	도소매업	N/A	N/A	1.266**	0.201
		음식숙박업	N/A	N/A	1.039	0.188
		기타업종	N/A	N/A	0.913	0.112
	지역 구분	경기/인천	1.240	0.127	1.296	0.147
		부산/대구	1.058	0.131	1.064	0.146
기타지역		1.037	0.107	1.061	0.123	
정책③ 전국민 지원	나이	0.996	0.004	0.998	0.004	
	여성	1.065	0.088	1.048	0.099	
	결혼여부	1.053	0.102	0.952	0.105	
	대졸자	0.759***	0.071	0.754**	0.084	
	자영업자	1.182	0.121	N/A	N/A	
	특수고용	1.368**	0.187	1.537***		
	비경활인구(실업자포함)	1.341***	0.148	N/A	N/A	
	종사자규모: 5인 이하	N/A	N/A	0.950	0.124	
	산업 변수	도소매업	N/A	N/A	0.741*	0.129
		음식숙박업	N/A	N/A	0.675*	0.134
		기타업종	N/A	N/A	0.624***	0.080
	지역 구분	경기/인천	0.970	0.111	0.927	0.119
		부산/대구	1.051	0.140	1.030	0.156
기타지역		1.119	0.123	1.170	0.144	
Log likelihood		-4314.6413		-3442.3043		
Pseudo R-sqs		0.0120		0.0179		
표본		4,458		3,606		

*p<0.1, **p<0.05,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앞에서 제시한 긴급 지원과 관련해서 3가지 각 지원대상에 대해 누가 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조사하였다. 지원 주체는 ① 중앙정부, ② 지방정부, ③ 민간 및 가족의 3가지로 분류하였다.²¹⁾

전체 표본과 근로자 표본을 각각 구분하여 이들이 선호하는 긴급 지원 제도의 주요 주체를 경제활동 여부와 종사자의 다양한 특성과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해 다항로짓분석(multinomial logi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긴급 지원의 주체 중 ① 중앙정부를 기준그룹(reference group)으로 정하고, 설명변수(응답자의 다양한 인적 속성과 업종별)가 각각의 정책 대상별로 주체 선호도에 미친 '상대적 효과'를 다항로짓 분석을 통해 추정하였다.

설명변수가 긴급 지원제도 대상 3가지 유형에 미친 상대적 효과(relative risk ratios)를 <표 4-15>부터 <표 4-17>에서 제시하였다. 이 역시 추정계수값이 1보다 큰 경우 기준그룹(중앙정부) 대비 분석 그룹(지방정부 혹은 민간)이 지원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영업 종사자의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추정되었으며 업종별로는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직접적인 피해를 본 대상 표본의 경우, 기혼자는 중앙이나 지방정부보다는 민간이나 가족이 지원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기타 업종별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전 국민 대상 지원 주체의 결정요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나 민간이 주체가 되길 선호하였다. 그리고 자영업자의 경우, 지원 주체로써 민간이나 가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 원래 설문조사에서는 (3) 민간과 (4) 가족을 각각 구분하였으나, 분석의 편의상 이 둘을 하나로 통합하였다.

〈표 4-15〉 긴급 지원제도 집행 주체별 우선순위 분석: 저소득층 대상 분석

변수내용		전체표본		근로자표본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정책② 지방 정부	나이	0.997	0.002	0.995	0.003	
	여성	1.072	0.071	1.070	0.079	
	결혼여부	1.216**	0.094	1.162*	0.101	
	대졸자	0.929	0.070	0.850*	0.074	
	자영업자	1.054*	0.084	1.208*	0.135	
	특수고용	1.040	0.117	1.056	0.124	
	비경활인구(실업자포함)	0.942	0.086	N/A	N/A	
	종사자규모: 5인 이하	N/A	N/A	0.885	0.090	
	산업 변수	도소매업	N/A	N/A	0.864	0.121
		음식숙박업	N/A	N/A	0.926	0.146
		기타업종	N/A	N/A	0.974	0.102
	지역 구분	경기/인천	0.895	0.080	0.918	0.091
		부산/대구	0.850	0.091	0.956	0.113
		기타지역	0.969	0.086	1.035	0.102
정책③ 민간 및 가족	나이	0.959***	0.005	0.955***	0.006	
	여성	1.140	0.130	1.246*	0.160	
	결혼여부	1.424***	0.193	1.346*	0.204	
	대졸자	0.908	0.120	0.839	0.132	
	자영업자	0.927	0.134	1.334	0.262	
	특수고용	0.848	0.169	0.885	0.183	
	비경활인구(실업자포함)	1.154	0.175	N/A	N/A	
	종사자규모: 5인 이하	N/A	N/A	0.824	0.151	
	산업 변수	도소매업	N/A	N/A	0.640*	0.161
		음식숙박업	N/A	N/A	0.418***	0.135
		기타업종	N/A	N/A	0.860	0.151
	지역 구분	경기/인천	0.709**	0.108	0.696**	0.119
		부산/대구	0.715*	0.132	0.696*	0.146
		기타지역	0.832	0.124	0.885	0.147
Log likelihood		-4002.3545		-3217.5548		
Pseudo R-sqs		0.0123		0.0157		
표본		4,458		3,606		

*p<0.1, **p<0.05,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표 4-16〉 긴급 지원제도 집행주체 우선순위 분석: 직접적인 피해자 대상 분석

변수내용		전체표본		근로자표본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정책② 지방 정부	나이	1.001	0.003	1.002	0.003	
	여성	0.921	0.060	0.919	0.068	
	결혼여부	1.154*	0.089	1.085	0.094	
	대졸자	1.199**	0.090	1.141	0.101	
	자영업자	0.717***	0.058	0.810*	0.097	
	특수고용	0.830*	0.093	0.833	0.100	
	비경활인구(실업자포함)	0.926	0.083	N/A	N/A	
	종사자규모: 5인 이하			0.988	0.100	
	산업변수	도소매업			0.732**	0.102
		음식숙박업			0.700**	0.113
		기타업종			0.902	0.094
	지역구분	경기/인천		0.069	0.746***	0.074
		부산/대구		0.078	0.720***	0.085
기타지역			0.064	0.702***	0.069	
정책③ 민간 및 가족	나이	0.963***	0.005	0.952***	0.006	
	여성	1.101	0.126	1.198	0.153	
	결혼여부	1.359**	0.183	1.356**	0.204	
	대졸자	0.849	0.111	0.818	0.125	
	자영업자	0.869	0.012	1.174	0.225	
	특수고용	0.583**	0.125	0.622**	0.139	
	비경활인구(실업자포함)	0.918	0.145	N/A	N/A	
	종사자규모: 5인 이하	N/A	N/A	0.809	0.148	
	산업변수	도소매업		N/A	0.762	0.182
		음식숙박업		N/A	0.556**	0.160
		기타업종		N/A	0.768	0.135
	지역구분	경기/인천		0.078	0.532***	0.090
		부산/대구		0.095	0.513***	0.107
기타지역			0.084	0.596***	0.098	
Log likelihood		-4013.8861		-3226.2652		
Pseudo R-sqs		0.0177		0.0253		
표본		4,458		3,606		

*p<0.1, **p<0.05,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표 4-17〉 긴급 지원제도 집행주체 우선순위 분석: 전 국민 대상 분석

변수내용		전체표본		근로자표본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정책②: 지방정부	나이	0.969***	0.004	0.967***	0.005	
	여성	1.266**	0.122	1.269**	0.134	
	결혼여부	1.196	0.136	1.235*	0.154	
	대졸자	0.667***	0.072	0.664***	0.082	
	자영업자	1.197*	0.136	1.164	0.186	
	특수고용	0.601***	0.113	0.594***	0.115	
	비경활인구(실업자포함)	0.761*	0.106	N/A	N/A	
	종사자규모: 5인 이하	N/A	N/A	1.141	0.170	
	산업변수	도소매업	N/A	N/A	0.856	0.171
		음식숙박업	N/A	N/A	0.812	0.183
		기타업종	N/A	N/A	0.912	0.137
	지역구분	경기/인천	0.847	0.112	0.812	0.117
		부산/대구	0.970	0.150	0.950	0.160
		기타지역	0.877	0.114	0.860	0.122
정책③ 민간 및 가족	나이	0.959***	0.005	0.952***	0.001	
	여성	1.257**	0.143	1.292**	0.164	
	결혼여부	1.234	0.166	1.266	0.191	
	대졸자	0.637***	0.081	0.582***	0.086	
	자영업자	1.001	0.144	1.609**	0.310	
	특수고용	0.959	0.180	1.017	0.199	
	비경활인구(실업자포함)	0.100	0.156	N/A	N/A	
	종사자규모: 5인 이하	N/A	N/A	0.654**	0.120	
	산업변수	도소매업	N/A	N/A	0.719	0.186
		음식숙박업	N/A	N/A	0.595*	0.180
		기타업종	N/A	N/A	0.997	0.180
	지역구분	경기/인천	0.659***	0.099	0.785	0.131
		부산/대구	0.794	0.139	0.866	0.171
		기타지역	0.597***	0.090	0.656**	0.113
Log likelihood		-2741.5427		-2230.5253		
Pseudo R-sqs		0.0307		0.0367		
표본		4,458		3,606		

*p<0.1, **p<0.05,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제4절 심층분석

1. 긴급 지원 사각지대 인식

본 절에서는 코로나19로 긴급 지원이 필요하지만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종속변수는 코로나19에 대응한 긴급 지원 제도와 관련하여 사각지대가 어느 정도로 존재한다고 인식하는지 조사한다. 조사 문항은 4단계로 구성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3 단계(① 전혀 없거나 별로 없음, ② 약간 있음, ③ 매우 많음)로 재구성하였다.²²⁾

이는 종속변수의 값이 증가할수록 긴급 지원의 사각지대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이 증가하므로 순서의 의미를 부여한 ordered probit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표본을 전체 근로자와 자영업을 각각 구분하여 긴급 지원에 대한 사각지대 인식 결정요인 분석을 시도하였고, 아래 <표 4-18>에 추정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전체 근로자 표본의 경우 나이가 증가할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긴급 지원 제도에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인식의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자는 미혼자보다 사각지대가 덜 존재할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종사상 지위(임금근로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긴급 지원의 사각지대 인식에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5인 미만 영세사업체 종사자의 경우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인식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2) 설문조사에서는 사각지대 존재여부 정도를 (1)전혀 없음, (2)별로 없음, (3)약간 있음 그리고 (4)매우 많음의 4단계로 구분하였으나, (1)전혀 없음에 응답한 표본이 소수인 관계로 (1)과 (2)에 답한 응답을 하나의 그룹으로 처리하였다.

다음으로, 자영업자 표본만을 분석했을 때 응답자의 개인 특성이나 다른 설명변수가 긴급 지원의 사각지대 인식에 미친 영향은 전체 근로자의 분석 결과와 유사하다. 다만, 여성 자영업자보다 남성 자영업 종사자의 경우 긴급 지원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인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8〉 긴급 지원 사각지대 인식 결정요인 분석

변수내용	전체 근로자		자영업자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나이	0.007***	0.002	0.007*	0.004
여성(기준: 남성)	-0.037	0.038	-0.195**	0.080
결혼여부(기준: 기혼)	-0.091*	0.047	-0.055	0.095
대출자(기준: 고졸이하)	0.226***	0.047	0.255**	0.099
자영업자	-0.053	0.060	N/A	N/A
특수고용 종사자	-0.039	0.064	N/A	N/A
기업존속연수	N/A	N/A	-0.005	0.005
종사자규모: 5인 이하	0.101*	0.055	0.011	0.116
산업변수				
도소매업	0.045	0.075	-0.009	0.168
음식숙박업	-0.014	0.083	-0.132	0.174
기타업종	0.043	0.057	0.060	0.171
지역구분				
경기/인천	-0.017	0.052	-0.102	0.111
부산/대구	-0.156**	0.064	-0.267**	0.131
기타지역	-0.192***	0.053	-0.393***	0.112
Log likelihood	-3705.2015		-949.17736	
Pseudo R-sqs	0.0089		0.0291	
표본	3,606		964	

*p<0.1, **p<0.05, ***p<0.01

주: 1) 종사상 지위 기준그룹은 임금근로자(상용직, 임시일용직)이며, 산업변수의 기준그룹은 제조업임.

2) 지역구분은 서울거주자가 기본그룹임.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소상공인 및 특수근로형태종사자를 대상으로 정부의 긴급 지원에 대한 사각지대 인식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2020년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으로는 ①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2020년 9월 신청 및 지급, 100만 원에서 200만 원), ② 소상공인 휴·폐업과 임대료 등 자금지원, 그리고 ③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재난지원금 등이 있다. 이에 비해 특수근로형태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대응 긴급 지원은 2020년 11월에 지급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있다.

먼저 ‘새희망자금’과 관련해서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인식이 여성보다 남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업장 존속기간이 길수록 낮게 나타났다.

〈표 4-19〉 긴급 지원 사각지대 인식 결정요인 분석: 자영업자(1)

변수내용	새희망자금		자금지원(임대료)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나이	0.003	0.004	-0.002	0.003
여성	-0.236***	0.079	-0.207***	0.077
결혼여부	0.027	0.086	0.118	0.085
대출자	-0.010	0.096	-0.068	0.092
기업존속연수	-0.006*	0.004	-0.000	0.004
종사자규모: 5인 이하	-0.145	0.103	-0.088	0.100
산업변수				
도소매업	0.018	0.150	0.270*	0.158
음식숙박업	-0.123	0.156	0.238	0.162
기타업종	0.008	0.149	0.305*	0.158
지역구분				
경기/인천	-0.107	0.099	0.025	0.096
부산/대구	-0.013	0.124	0.097	0.125
기타지역	-0.384***	0.104	-0.157	0.100
Log likelihood	-1082.292		-1145.841	
Pseudo R-sqs	0.0207		0.0105	
표본	964		964	

*p<0.1, **p<0.05, ***p<0.01

주: 1) 종사상 지위 기준그룹은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이며 제조업이 산업변수의 기본그룹임.

2) 지역구분의 경우 서울거주자가 기본그룹임.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중앙부처에서 시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에 있어서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인식은 여성보다 남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제조업보다 도소매업과 기타업종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지급한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사각지대 인식 역시 여성보다 남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업종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4-20〉 긴급 지원 사각지대 인식 결정요인 분석: 자영업자(2)

변수내용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	
	추정계수	표준오차
나이	0.001**	0.004
여성	-0.194**	0.077
결혼여부	0.206**	0.088
대출자	-0.027	0.097
기업존속연수	-0.005	0.004
종사자규모: 5인 이하	0.080	0.103
산업변수		
도소매업	-0.067	0.165
음식숙박업	-0.068	0.171
기타업종	0.015	0.164
지역구분		
경기/인천	-0.197**	0.098
부산/대구	-0.115	0.101
기타지역	-0.382***	0.104
Log likelihood	-1099.3489	
Pseudo R-sqs	0.0168	
표본	964	

*p<0.1, **p<0.05, ***p<0.01

주: 1) 종사상 지위 기준그룹은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이며 제조업이 산업변수의 기본그룹임.

2) 지역구분의 경우 서울거주자가 기본그룹임.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한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지급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한 사각지대 인식 분석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5인 미만 영세사업체에 종사하는 경우,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4-21〉 긴급 지원 사각지대 인식 결정요인 분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변수내용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추정계수	표준오차
나이	0.013**	0.005
여성	-0.067	0.105
결혼여부	-0.022	0.133
대졸자	-0.119	0.141
종사자규모: 5인 이하	0.237**	0.116
산업변수		
도소매업	0.243	0.395
음식숙박업	0.383	0.356
기타업종	0.302	0.307
지역구분		
경기/인천	0.040	0.135
부산/대구	-0.411**	0.181
기타지역	-0.241*	0.149
Log likelihood	-543.4421	
Pseudo R-sqs	0.0270	
표본	443	

*p<0.1, **p<0.05, ***p<0.01

주: 1) 종사상 지위 기준그룹은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이며 제조업이 산업변수의 기본그룹임.

2) 지역구분의 경우 서울 거주자가 기본그룹임.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2. 긴급 지원 부적정지출 인식

본 절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긴급 지원에서 부적정지출이 발생했다는 인식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때, 종속변수는 코로나19 대응 긴급 지원과 관련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을 4단계로 측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3단계(① 전혀 없거나 별로 없음, ② 약간 있음, ③ 매우 많음)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²³⁾

사각지대 분석과 같이 분석 표본은 전체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는 아래 <표 4-22>와 같다.

먼저, 전체 근로자 표본에서 고졸자보다 대졸자가 긴급 지원에 부정수급이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확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특수고용 종사자 간 부정수급 존재 여부 인식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음으로, 자영업자 표본을 분석했을 때도 대졸자의 부정수급 인지 여부가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다른 설명변수의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5인 미만 영세사업자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부정수급이 발생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추정되었다.

23) 설문조사에서는 부정수급 존재여부 정도를 (1) 전혀 없음, (2) 별로 없음, (3) 약간 있음 그리고 (4) 매우 많음의 4단계로 구분하였으나, (1) 전혀 없음에 응답한 표본이 소수인 관계로 (1)과 (2)에 답한 응답을 하나의 그룹으로 처리하였다. 앞의 복지 사각지대 분석과 마찬가지로 순서의 중요성을 고려한 ordered probit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4-22〉 긴급 지원 부정수급 인식 결정요인 분석

변수내용	전체근로자		자영업자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나이	0.011	0.002	-0.002	0.004
여성	0.044	0.039	0.036	0.078
결혼여부	-0.063	0.460	0.005	0.088
대졸자	0.197***	0.463	0.291***	0.097
자영업자	-0.043	0.613	N/A	N/A
특수고용 종사자	-0.040	0.615	N/A	N/A
기업존속연수	N/A	N/A	-0.002	0.005
종사자규모: 5인 이하	0.023	0.055	-0.223**	0.115
산업변수				
도소매업	-0.135*	0.072	-0.162	0.164
음식숙박업	-0.059	0.086	-0.121	0.172
기타업종	0.052	0.056	0.007	0.169
지역구분				
경기/인천	0.033	0.052	0.120	0.107
부산/대구	0.022	0.064	-0.029	0.130
기타지역	-0.077	0.052	-0.100	0.106
Log likelihood	-3628.6386		-939.67164	
Pseudo R-sqs	0.0067		0.0235	
표본	3,606		964	

*p<0.1, **p<0.05, ***p<0.01

주: 1) 종사상 지위 기준그룹은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이며 제조업이 산업변수의 기본그룹임.

2) 지역구분의 경우 서울 거주자가 기본그룹임.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정부의 긴급 지원에 대한 부정수급 인식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는 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2020년 9월 신청 및 지급, 100만 원에서 200만 원), ② 소상공인 휴폐업과 임대료 등의 자금지원, 그리고 ③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이 포함되었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2020년 11월에 지급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포함되었다.

‘새희망자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이 여성보다 남성이, 서울 보다 경기·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자영업자에서 낮게 나타났다. ‘자금지원’과 관련한 부정수급 인식에서도 남성이 여성보다는 높게 나타났으며, 5인 미만 영세업체 종사자의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도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4-23〉 긴급 지원 부정수급 인식 결정요인 분석: 자영업자(1)

변수내용	새희망자금		자금지원(임대료)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나이	-0.005	0.004	-0.003	0.004
여성	-0.143*	0.080	-0.239***	0.081
결혼여부	0.014	0.088	0.034	0.092
대출자	0.013	0.094	0.069	0.092
기업존속연수	0.003	0.004	0.003	0.004
종사자규모: 5인 이하	-0.120	0.024	-0.264***	0.100
산업변수				
도소매업	-0.101	0.103	0.021	0.153
음식숙박업	-0.253*	0.143	-0.024	0.160
기타업종	0.030	0.141	0.223	0.153
지역구분				
경기/인천	-0.158	0.099	-0.094	0.099
부산/대구	0.013	0.120	0.034	0.121
기타지역	-0.105	0.101	-0.031	0.103
Log likelihood	-1102.7283		-1133.8798	
Pseudo R-sqs	0.0127		0.0191	
표본	964		964	

*p<0.1, **p<0.05, ***p<0.01

주: 1) 종사상 지위 기준그룹은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이며 제조업이 산업변수의 기본그룹임.

2) 지역구분의 경우 서울거주자가 기본그룹임.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부정수급 분석에서는 지역별로 약간의 편차가 발생하였는데, 서울 지역 대비 경기·인천 지역과 대구·부산,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영업자의 부정수급 인식이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4-24〉 긴급 지원 부정수급 인식 결정요인 분석: 자영업자(2)

변수내용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	
	추정계수	표준오차
나이	-0.003	0.004
여성	-0.119	0.082
결혼여부	0.020	0.090
대졸자	0.080	0.098
기업준속연수	-0.001	0.004
종사자규모: 5인 이하	-0.215**	0.099
산업변수		
도소매업	-0.048	0.154
음식숙박업	-0.110	0.163
기타업종	0.118	0.155
지역구분		
경기/인천	-0.288***	0.100
부산/대구	-0.052	0.121
기타지역	-0.254**	0.102
Log likelihood	-1106.3183	
Pseudo R-sqs	0.0196	
표본	964	

*p<0.1, **p<0.05, ***p<0.01

주: 1) 종사상 지위 기준그룹은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이며 제조업이 산업변수의 기본그룹임.

2) 지역구분의 경우 서울거주자가 기본그룹임.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특수근로형태종사자에게 지급된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관련 부정수급 인식은 지역별로 편차를 보여주고 있는데, 서울 지역 외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자영업자의 부정수급 인식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4-25〉 긴급 지원 부정수급 인식 결정요인 분석: 특수고용종사자

변수내용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추정계수	표준오차
나이	0.009**	0.004
여성	-0.085	0.105
결혼여부	-0.223*	0.131
대출자	-0.001	0.137
종사자규모: 5인 이하	0.031	0.108
산업변수		
도소매업	-0.206	0.385
음식숙박업	0.304	0.345
기타업종	-0.145	0.224
지역구분		
경기/인천	-0.211	0.134
부산/대구	-0.404**	0.184
기타지역	-0.440***	0.147
Log likelihood	-555.88458	
Pseudo R-sqs	0.0164	
표본	443	

*p<0.1, **p<0.05, ***p<0.01

주: 1) 종사상 지위 기준그룹은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이며 제조업이 산업변수의 기본그룹임.

2) 지역구분의 경우 서울거주자가 기본그룹임.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제5절 소결

2019년 발생한 코로나19는 근로자 소득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특수근로형태종사자의 개인 소득 감소 폭이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양한 개인 특성을 통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금근로자보다 자영업자와 특수근로형태종사자의 개인 소득 감소 확률은 대략 30% 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남성 근로자 대비 여성 근로자의 개인 소득 감소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제조업 대비 음식·숙박업에서 코로나19 이후 소득감소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금융보험업과 과학기술 전문직과 서비스업종 종사자의 소득감소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5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한 응답자의 소득감소가 두드러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여파가 전체 국민 가운데에서도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음식·숙박업 종사자, 그리고 5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하지만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나이가 증가할수록, 여성자영업자인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미혼자의 경우 긴급 지원에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확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 가운데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각지대 인식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소상공인, 특수근로형태종사자를 대상으로 정부의 긴급 지원제도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② 소상공인 휴폐업과 임대료 등의 자금지원, ③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 그리고 특수고용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④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사각지대 인식을 조사하였다.

‘새희망자금’과 관련한 사각지대에 대한 인식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사업장의 존속기간이 길수록 낮게 나타났다. ‘자금지원’과 관련한 사각지대에 대한 인식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제조업 대비 도소매업과 기타업종 종사자의 사각지대 인식이 다소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사각지대 인식에서도 남성의 인식 확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업종 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지급된 ‘긴급고용안정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5인 이하 영세사업체 종사자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긴급 지원에서 부정수급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에 대한 인식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고졸자보다 대졸 응답자의 경우 긴급 지원에서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의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간 부정수급 인식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새희망자금’과 관련한 부정수급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보다 경기·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이 낮게 나타났다. ‘자금지원’과 관련해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5인 미만 영세사업체 종사자의 부정수급 인식 여부가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부정수급 인식에서도 지역별로 약간의 편차가 발생하였는데, 서울 지역 대비 경기·인천 지역과 대구/부산지역,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자영업자의 부정수급 인식이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수근로형태종사자에게 지급된 ‘긴급고용안정 지원금’과 관련한 부정수급 인식 역시 지역별로 편차를 보여주는데, 서울 외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자영업자의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포함)에 대해서 긴급 지원 방식에 대한 선호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5인 미만 영세사업자의 경우 금융지원 정책을 선호하고 있으며,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응답자들은 영업 제한 등으로 인한 피해지원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사적인 긴급 지원제도와 관련해서 지원대상(저소득층, 피해 그룹, 그리고 전 국민)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임금근로자보다 자영업 종사자의 경우 저소득층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반면에 특수근로형태종사자는 전 국민 지원을 선호하였다.

반면, 근로자 표본의 경우, 업종별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인 미만 영세사업자의 경우 저소득층 대상 지원을 다소 선호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긴급 지원제도의 지원대상과 지원 주체를 조사한 결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자영업 종사자의 경우 지방정부를 지목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직접적인 피해를 본 대상 표본의 경우, 기혼은 중앙이나 지방정부보다 민간이나 가족이 지원 주체가 돼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업종별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전 국민 대상 지원 주체 결정요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여성과 자영업자는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나 민간이 주체가 되길 선호하였다. 그리고 자영업자의 경우, 지원 주체가 중앙 혹은 지방정부보다 민간이나 가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한 다양한 계층, 특히 피해 규모가 크다고 판단되는 자영업자와 특수고용 종사자들의 피해 규모와 이들에 대해 정부에서 시행한 긴급 지원제도의 적절성과 공정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소득감소의 경제적 여파가 상대적으로 심했던 자영업자 혹은 특수고용 종사자 내에서 개인 특성이나 종사자가 속한 산업 혹은 지역별로 상이한 편차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피해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하는 일부 업종에 대한 집중적 지원 형태의 정책(targeted group support policy)은 그 효율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상대적으로 피해 규모가 큰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 종사자에 대한 지원 주체를 다양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정부 위주의 지원에서 지방정부 혹은 민간(기업이나 가족)들이 주도되는 긴급 지원이 더 폭넓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국민은 인식하고 있다.

정부의 다양한 긴급 지원정책에 대한 부정수급과 관련해서는 자영업자와 특수고용 종사자 간, 특히 5인 미만 영세업체 종사자의 경우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다.

향후 연구에서는 5인 미만 영세업체 종사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유용성(금융지원 정책을 선호)과 공정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5장

코로나19와 연령집단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연령집단별 생활 변화

제3절 연령집단과 긴급 지원

제4절 심층분석

제5절 소결

제5장 코로나19와 연령집단

제1절 분석 개요

1. 가구 특성의 변화

코로나19 위기는 모든 연령,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모든 측면에서 영향을 주었다. 특히, 청년은 코로나19 위기로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OECD, 2020; 함선유, 이원진, 김지원, 2021). 청년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고용정책에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위기 상황이 도래하면 정리해고보다 신규 채용을 중단한다. 이로 인해 대학교 졸업 이후 노동시장으로 이행해야 하는 청년은 일자리의 진입이 늦어지게 된다. 즉,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전환기에 놓여있는 청년들의 경우 구직 기간이 길어지거나, 불안정한 일자리에 갇히게 되는 등 부정적 영향을 경험할 수 있다(Churchill, 2021; Schmillen & Umkehrer, 2017; Lambovska, Sardinha, Belas, 2021).

불안정 일자리는 흔히 말하는 아르바이트라는 이름으로 임시직, 비정규직 등에 종사하게 되는 것이다. 불안정 일자리는 안정적 일자리로 이행하기 전 단계에서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경제위기 시기에는 불안정 노동지위를 가진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해고된다는 점에서 청년들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황수경 외, 2010). 또한 청년층이 종사하는 업종이 대면서비스에 집중된다는 점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상당할 수

있다(김종진 외, 2020; 남재욱, 서복경, 김영빈, 2020).

이러한 영향은 다른 가구원으로부터 지지와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1인 가구의 경우 한층 높을 수 있다. 이상립(2020)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수도권으로 순(純) 유입된 청년(19~34세)이 8만 6,661명으로 전체 순 입 인구인 8만 2,741명보다 많다. 이는 청년의 순(純) 유입만으로 수도권 전체의 순 유입을 넘어서는 숫자이다. 또한 경남, 대구, 부산, 전북 등이 순 유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의 주요 전입 사유는 '직업'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화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청년 1인 가구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대 1인 가구는 전체 1인 가구의 18.2% 수준이며, 30대 1인 가구는 16.8% 수준이다. 20대와 30대 1인 가구는 35% 수준으로 60세 이상 노인 1인 가구(33.6%)보다 더 많다(통계청, 2020b). 이에 따라 청년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다. 1인 가구는 가구구조의 특성상 경제적 측면이나 정서적 측면에서 다른 가구원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 단절과 고립, 사회통합의 제약 등 사회적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강은나, 이민홍, 2016; 이명진, 최유정, 이상수, 2014). 특히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고립으로 인한 우울감, 두려움, 건강 등의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이래혁, 2021; 이소영, 양영미, 윤지영, 2021; 이수영, 2019; 이지성, 2020).

그러나 청년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심층적인 연구는 많지 않다. 청년층의 코로나19 이후 고용 문제를 다루는 연구들은 일부 존재하나(김종진 외, 2020; 정세정, 2020; 남재욱 외, 2020), 이 연구들은 청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다른 연령 계층과 비교해서 청년층의 경험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기 어렵다.

본 절에서는 생애주기를 반영하여 연령집단을 정의하고, 청년집단에 초점을 두고 연령집단별로 코로나19 이후 경험한 차별적 변화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2. 가구 특성 정의

본 장에서 가구특성은 응답자의 연령특성과 가구원수에 초점을 두고 정의한다. 먼저, 연령집단은 19~34세(청년), 35~49세(장년), 50~64세(중년), 그리고 65세 이상(노년)으로 구분한다. 청년에 대한 정의는 「청년기본법」에 근거하며, 장년과 중년은 국립국어원 사전²⁴⁾과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정의하였다(이원진, 김현경, 오욱찬, 함선유, 한겨레, 2021; 함선유 외, 2021). 노년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만 65세 이상인 자를 노인으로 정의하였다.

조사자료에서 나타난 1인가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5-1>과 같다. 조사 표본에서 전체 대비 청년 비중은 22.1%이며, 장년은 32.3%, 중년 38%, 그리고 노년은 7.7%였다. 노년 응답자의 경우, 65세 이상 69세 이하의 표본만 활용되기 때문에 다른 집단에 비해 사례 수가 적다. 이는 본 조사가 경제활동참가자에 초점을 두고 설문이 기획되었기 때문에 70세 이상은 분석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70세 미만이 포함된 이유는 우리나라의 실질 은퇴 연령이 70세임²⁵⁾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24) 장년: 사람의 일생 중에서, 한창 기운이 왕성하고 활동이 활발한 서른에서 마흔 안팎의 나이(국립국어원 홈페이지, 표준국어대사전, 장년), 중년: 마흔 살 안팎의 나이. 또는 그 나이의 사람. 청년과 노년의 중간을 이르며, 때로 50대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국립국어원 홈페이지, 표준국어대사전, 중년).

25) 2017년 기준 남성의 실질 은퇴연령은 72.9세, 여성은 73.1세이다(OECD, 2019).

〈표 5-1〉 연령집단 구분

구분	비중	사례수
청년 (19-34세)	22.1	968
장년 (35-49세)	32.3	1,419
중년 (50-64세)	38.0	1,666
노년 (65세-69세)	7.7	336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1인 가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표본의 약 19%가 1인 가구로 제시되었다. 2020년 기준 장래가구추계 및 인구총조사에서 나타난 청년 1인 가구의 비중이 약 60%인데 반해 조사 표본에 포함된 청년 1인 가구의 비중은 31.3%로 절반 수준으로 제시된다.

다음으로, 장년 1인 가구의 비중은 22% 수준으로 장래가구추계 및 인구총조사에서 나타난 18%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중년의 경우는 약 9.5%로 장래가구추계 및 인구총조사에서 나타난 20%의 절반 수준이다. 인구총조사에서 나타난 65세 이상 69세 미만 노년가구 중 1인 가구는 27% 수준이며, 본 조사의 표본에서는 11%가 포함되었다.

이러한 조사 표본의 특성은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통계와 차이가 있으므로 분석 결과를 해석할 때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청년, 장년, 중년을 중심으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표 5-2〉 연령집단별 1인가구 비중

구분	해당 연령집단 대비	1인가구 전체 대비
청년 (19-34세)	31.3	37.3
장년 (35-49세)	22.2	38.7
중년 (50-64세)	9.5	19.4
노년 (65세-69세)	11.0	4.6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제2절 연령집단별 생활 변화

1. 소득·지출·부채 변화

코로나19 위기 이전(2019년)과 비교할 때 코로나19 위기 이후(2020년)에 가구소득과 개인 소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연령집단별로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가구소득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균등화 소득을 산출하여 비교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 활용된 자료는 가구소득을 구간으로 질문하기 때문에 이를 균등화 소득으로 전환하기 위해 구간 중위값을 활용하여 5분위수를 적용하였다.

먼저, 개인 소득의 분포를 살펴보면, 청년 가구의 절반 이상이 2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월 120만 원 이하 소득을 가진 경우는 36.5% 수준으로 노년 가구를 제외하면 가장 높다. 또한, 33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가진 비중은 10% 내외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현격히 낮음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장년층과 중년층은 청년층보다 소득 분포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년층과 중년층은 120만 원 이하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약 25~26%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중년층의 경우 400만 원 이상 소득을 가진 경우가 약 22.33%였다.

다음으로, 균등화소득의 분위수를 중심으로 가구소득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청년 가구는 전체 평균보다 1분위에 속해 있는 비중이 높았으며 약 23%가 1분위에 속해 있었다. 노년 가구를 제외하면 1분위에 속한 가구 비중이 가장 높았다. 반면, 4-5분위에 속하는 가구는 33% 수준으로 제시되어 중년 가구(42%) 다음으로 높았다. 즉, 개인 소득에 비해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청년 가구의 소득분위가 상당히 개선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3〉 연령집단 소득 분포

구분		청년	장년	중년	노년	합계
개인 소득	50만원~120만원	36.47	26.07	25.15	50.0	29.85
	121만원~190만원	17.46	13.04	13.27	10.42	13.9
	191만원~260만원	24.38	17.97	15.97	12.2	18.18
	261만원~330만원	11.57	14.59	11.88	11.61	12.67
	331만원~399만원	5.06	11.98	11.40	4.17	9.64
	400만원 이상	5.06	16.35	22.33	11.61	15.77
	전체	100	100	100	100	100
	Chi	294.5469***				
가구 소득	1분위	22.93	19.80	16.33	40.18	20.73
	2분위	20.56	22.83	18.13	16.67	20.07
	3분위	22.83	26.92	23.11	13.39	23.54
	4분위	19.42	18.6	27.19	16.07	21.85
	5분위	14.26	11.84	15.25	13.69	13.81
	전체	100	100	100	100	100
	Chi	155.2032***				

*p<0.1, **p<0.05,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연령집단별로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청년 전체를 기준으로 할 때 상용직에 종사하는 비중이 40.6%로 가장 높았으며, 임시일용직 종사자는 약 7.44%로 나타났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 종사자는 8.47%였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 종사자는 11.05%였다.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는 부가조사에서 나타나지만, 경제활동조사에서는 분류가 명확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임시일용직이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으로 분류된다(함선유 외 2021). 이를 고려하여 비중을 살펴보면, 상용직은 경제활동인구 조사보다 약 10%p 수준이 과소하게 표집되었으며, 임시일용직 역시 비

중이 낮다. 그러나 특고와 프리랜서를 임시일용의 범주에 포함하여 보면 그 격차는 감소한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본 조사가 이들을 의도적으로 전체 표본의 40%가 되도록 할당 표집하였으므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제시되었다.

〈표 5-4〉 연령집단별 종사상 지위(현재 기준)

	청년	장년	중년	노년	전체
상용직	40.6	47.85	35.71	17.26	39.3
임시/일용직	7.44	5.92	5.04	7.14	6.02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	8.47	10.15	12.42	11.01	10.71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	11.05	11.13	18.25	27.98	15.11
특수고용/프리랜서	15.81	9.8	7.68	6.25	10.05
실업자	5.27	5.78	4.08	2.68	4.78
비경제활동인구	11.36	9.37	16.81	27.68	14.04
합계	100	100	100	100	100
Chi	297.9613***				

*p<0.1, **p<0.05,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각 연령집단별로 코로나19 이후 소득 변화를 살펴보면 〈표 5-5〉와 같다. 먼저, 개인 소득을 살펴보면, 개인 소득이 가장 적게 감소한 집단은 청년집단으로 나타났다. 청년집단의 경우, 절반가량이 개인 소득이 감소했으며, 중장년층과 비교하면 감소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가구소득의 경우, 청년 가구의 53.72%가 코로나19 이전보다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해 다른 연령집단 가구보다 가구소득이 적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도 불안정 일자리 등으로 인해 소득 수준이 낮아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된 이후에도 소득 변화가 적었다고 해

석될 수 있다. 노년을 제외하고 개인 및 가구소득이 가장 많이 감소한 연령집단은 중년 가구로 제시되었다. 중년 응답자 중 개인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53.0%이며, 가구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56.96%로 나타났다.

〈표 5-5〉 연령집단별 소득 변화

		청년	장년	중년	노년	합계	
개인소득	증가	N	117	118	77	5	317
		%	12.09	8.32	4.62	1.49	7.22
	감소	N	480	724	883	203	2290
		%	49.59	51.02	53.0	60.42	52.18
	유지	N	371	577	706	128	1782
		%	38.33	40.66	42.38	38.1	40.6
가구소득	증가	N	105	102	81	4	292
		%	10.85	7.19	4.86	1.19	6.65
	감소	N	520	784	949	212	2465
		%	53.72	55.25	56.96	63.1	56.16
	유지	N	343	533	636	120	1632
		%	35.43	37.56	38.18	35.71	37.18
합계		968	1419	1666	336	4389	

*p<0.1, **p<0.05,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연령집단별로 소득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청년 가구의 소득 변화를 살펴보면, 청년1인 가구는 전체 가구보다 개인 소득의 변화를 더 크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1인 가구의 개인 소득은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중이 56.44%로, 절반 이상이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하였다. 전체 가구 중 청년 1인 가구를 제외한 가구는 51.86%가 소득감소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청년 연령집단 내에서는 다인 가구에 속한 청년은

52.94%가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청년 외 다른 연령집단의 1인 가구 중 소득감소를 경험한 가구 비중은 46.47%로 청년 1인 가구에 비해 소득감소를 적게 경험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가구소득의 경우, 청년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중 그 외 가구보다 소득의 변화를 적게 경험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가구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52.81%였고, 전체 가구 중 그 외 가구는 56.41%로 나타났다. 청년 연령집단 내에서는 다인 가구에 속한 청년은 52.35%가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해 청년 1인 가구와 차이가 크지 않았다. 다른 연령집단의 1인 가구가 소득감소를 경험한 비중은 54.14%로 청년 1인 가구에 비해 다소 높았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청년 가구의 경우, 가구원의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개인 소득에 비해 가구소득과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코로나19 이후 소득 변화는 가구 소득보다 개인 소득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장년 가구의 소득 변화를 살펴보면 <표 5-7>과 같다. 장년 1인 가구는 개인 소득의 변화를 상대적으로 적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년 1인 가구의 개인 소득은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중이 46.03%로 절반 이하가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 중 그 외 가구는 52.65%가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하였으며, 장년 연령집단 내에서는 다인 가구에 속한 장년 응답자는 59.44%가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해 장년 1인가구보다 소득감소를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장년 외 다른 연령집단의 1인 가구 중 소득감소를 경험한 가구 비중은 52.45%로 장년 1인 가구에 비해 높게 제시되었다.

가구소득의 경우, 장년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중 그 외 가구보다 소득의 변화를 적게 경험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장년 1인 가구의 경우, 가구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45.71%였고, 전체 가구 중 그 외 가구는

56.97%로 나타났다. 장년 연령집단 내에서는 다인 가구에 속한 장년은 56.83%가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해 장년 1인 가구와 차이가 크지 않았다. 다른 연령집단의 1인 가구가 소득감소를 경험한 비중은 57.97%로 장년 1인 가구에 비해 다소 높았다. 청년 가구에 비해 장년 가구는 부모 세대와 동거하는 비율이 낮아 개인 소득과 가구 소득의 차이가 작다.

〈표 5-6〉 연령집단별 소득 변화: 청년(19-34세)

(단위: 명, %)

소득 변화		전체가구		청년집단		1인 가구		
		그외	청년 1인	청년 다인	청년 1인	그외	청년 1인	
개인 소득	증가	N	283	34	42	34	83	34
		%	6.93	11.22	8.24	11.22	12.48	11.22
	감소	N	2119	171	270	171	309	171
		%	51.86	56.44	52.94	56.44	46.47	56.44
	유지	N	1684	98	198	98	273	98
		%	41.21	32.34	38.82	32.34	41.05	32.34
	합계	N	4086	303	510	303	665	303
		%	100	100	100	100	100	100
	Chi2		13.8035***		4.4330		8.5654*	
	가구 소득	증가	N	253	39	42	39	66
%			6.19	12.87	8.24	12.87	9.92	12.87
감소		N	2305	160	267	160	360	160
		%	56.41	52.81	52.35	52.81	54.14	52.81
유지		N	1528	104	201	104	239	104
		%	37.4	34.32	39.41	34.32	35.94	34.32
합계		N	4086	303	510	303	665	303
		%	100	100	100	100	100	100
Chi2		20.2858***		5.4195†		1.8881		

*p<0.1, **p<0.05,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표 5-7〉 연령집단별 소득 변화: 장년가구(35-49세 이상)

(단위: 명, %)

소득 변화		전체가구		장년집단		1인 가구		
		그외	장년 1인	다인	장년 1인	그외	장년 1인	
개인 소득	증가	N	282	35	41	35	83	35
		%	6.92	11.11	8.23	11.11	7.52	11.11
	감소	N	2145	145	296	145	579	145
		%	52.65	46.03	59.44	46.03	52.45	46.03
	유지	N	1647	135	161	135	442	135
		%	40.43	42.86	32.33	42.86	40.04	42.86
	합계	N	4074	315	498	315	1104	315
		%	100	100	100	100	100	100
	Chi2		9.9850**		13.9767***		6.2602*	
	가구 소득	증가	N	258	34	47	34	68
%			6.33	10.79	9.44	10.79	6.16	10.79
감소		N	2321	144	283	144	640	144
		%	56.97	45.71	56.83	45.71	57.97	45.71
유지		N	1495	137	168	137	396	137
		%	36.7	43.49	33.73	43.49	35.87	43.49
합계		N	4074	315	498	315	1104	315
		%	100	100	100	100	100	100
Chi2		18.9739***		9.7896**		17.7767 ***		

*p<0.1, **p<0.05,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중년 1인 가구는 청년 1인 가구와 마찬가지로 다른 가구에 비해 개인 소득의 변화를 더 크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 1인 가구의 개인 소득변화는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중이 62.03%였다. 이는 중년 1인 가구를 제외한 가구(51.81%)에 비해 약 10%p 정도 높은 수준이다. 중년 연령집단 내에서도 다인 가구에 속한 중년은 52.37%가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해 집단 내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1인 가구 중 소득감소를 경험한 중년의 가구는 52.06%로 다른 1인 가구에 비해서도 중년 1인 가구의 소득감소가 컸다.

가구 소득은 1인 가구가 다인 가구보다 소득의 변화를 적게 경험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중년 1인 가구의 가구소득 변화는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중이 전체 대비 61.39%가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 중 그 외 가구는 55.97%로 나타났으며, 중년 연령집단 내에서는 다인 가구에 속한 중년은 50.38%가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1인 가구 중 중년 가구가 소득감소를 경험한 비중은 61.39%로 제시되었다. 노년 가구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표본이 작아 유의성이 높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5-8) 연령집단별 소득 변화: 중년가구(50-64세 이상)

(단위: 명, %)

소득 변화		전체가구		중년집단		1인 가구		
		그외	중년 1인	다인	1인	그외	중년	
개인 소득	증가	N	310	7	69	7	70	7
		%	7.33	4.43	10.53	4.43	4.64	4.43
	감소	N	2192	98	343	98	785	98
		%	51.81	62.03	52.37	62.03	52.06	62.03
	유지	N	1729	53	243	53	653	53
		%	40.87	33.54	37.1	33.54	43.3	33.54
	합계	N	4231	158	655	158	1508	158
		%	100	100	100	100	100	100
	Chi2		6.8271*		7.7047*		5.9094†	
	가구 소득	증가	N	284	8	73	8	73
%			6.71	5.06	11.15	5.06	4.84	5.06
감소		N	2368	97	330	97	852	97
		%	55.97	61.39	50.38	61.39	56.5	61.39
유지		N	1579	53	252	53	583	53
		%	37.32	33.54	38.47	33.54	38.66	33.54
합계		N	4231	158	655	158	1508	158
		%	100	100	100	100	100	100
Chi2		2.0045		8.4884		1.5964		

*p<0.1, **p<0.05,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가구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득이 줄어든 이유에 대한 응답은 앞서 제시된 것과 마찬가지로 매출 감소로 제시되었는데, 연령집단별로 살펴보면, 중년(48.16%), 노년(48.11%)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근로시간 감소의 경우, 장년(22.32%)과 중년

(20.44%) 응답자에서 비중이 높았다. 사업장 휴폐업 및 유급/무급 휴직으로 가구소득이 줄어들었다고 응답한 연령계층은 청년층이 24.6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높았던 장년층(15.62%)에 비해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청년층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업종에 임금근로자로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직장의 휴폐업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경험한 반면, 중노년층은 자영업자로 매출 감소 등이 가구 소득 감소에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의미한다.

〈표 5-9〉 연령집단별 가구소득이 줄어든 이유(1순위)

(단위: %)

	청년	장년	중년	노년	합계
직장 또는 사업장 폐업	8.85	5.1	4.11	6.6	5.64
직장 또는 사업장 휴업	15.77	10.84	10.64	8.02	11.56
매출 감소	37.69	42.09	48.16	48.11	44.02
임대수입 감소	3.27	2.68	3.9	5.66	3.53
근로시간 감소	19.23	22.32	20.44	18.87	20.65
임금 체불	0.77	1.02	0.63	0.47	0.77
유급/무급 휴직	4.62	5.1	3.58	2.36	4.18
실직	9.81	10.84	8.54	9.91	9.66
합계	100	100	100	100	100
Chi2	49.9275***				

*p<0.1, **p<0.05,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아래 〈표 5-10〉은 코로나 전후로 지출 항목별 비중 변화의 연령집단별 차이를 중심으로 제시한 것이다. 식료품비와 통신비를 제외한 소비지출 및 비소비지출 항목에서 코로나19 전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특히 주거

비, 의료비 지출 항목이 증가했으며, 교육비, 교통비, 기타 소비지출은 감소하였다. 주거비와 교육비는 청년을 제외한 장년, 중년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의료비, 교통비, 기타 소비지출은 모든 연령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5-10〉 연령집단별 코로나19 전후 소비 변화: 소비지출

		청년	장년	중년	노년
주거비	코로나 이전	12.3	10.961	10.295	10.271
	코로나 이후	12.406	11.339	10.549	10.86
	차이	0.106	0.378	0.254	0.589
	t값	-0.5	-2.7***	-3.3***	-3.6***
교육비	코로나 이전	3.611	6.954	4.615	1.575
	코로나 이후	3.426	6.537	4.246	1.348
	차이	-0.185	-0.417***	-0.369***	-0.227*
	t값	0.95	4.5	5.75	1.85
의료비	코로나 이전	5.676	5.973	7.209	9.967
	코로나 이후	6.266	6.414	7.684	11.229
	차이	0.59	0.441	0.475	1.262
	t값	-3.6***	-3.55***	-5.35***	-5.3***
교통비	코로나 이전	7.95	7.143	7.333	7.423
	코로나 이후	7.418	6.768	6.925	7.125
	차이	-0.532	-0.375	-0.408	-0.298
	t값	2.8***	3.8***	5.55***	2.1**
기타 소비지출	코로나 이전	9.043	7.818	8.29	9.194
	코로나 이후	7.764	6.484	7.199	7.438
	차이	-1.279	-1.334	-1.091	-1.756
	t값	5.45***	7.65***	10.5***	7.25***
자료수		968	1419	1666	336

*p<0.1, **p<0.05, ***p<0.01

주: 코로나 전후 집단별 변화값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지출 항목만 제시함.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비소비지출을 살펴보면, 세금 및 사회보험료, 가구 간 이전지출, 부채상환, 그리고 저축 및 금융투자에서 코로나 전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세금 및 사회보험료 지출과 부채상환의 경우, 코로나 이후 지출이 증가했으나 가구 간 이전 지출 및 저축·금융투자의 경우 코로나 이후 지출이 감소하였다. 이는 모든 연령집단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5-11〉 연령집단별 코로나19 전후 소비 변화: 비소비지출

		청년	장년	중년	노년
세금 및 사회보험료	코로나 이전	6.773	8.001	8.861	8.857
	코로나 이후	7.149	8.305	9.309	9.438
	차이	0.376	0.304	0.448	0.581
	t값	-1.85*	-2.95***	-4.6***	-3***
가구 간 이전 지출	코로나 이전	3.815	4.377	4.538	3.539
	코로나 이후	3.467	4.623	4.607	3.643
	차이	-0.348	0.246	0.069	0.104
	t값	1.95*	-2.35**	-0.9	-0.65
부채상환	코로나 이전	4.545	5.3	5.422	4.58
	코로나 이후	7.06	6.525	6.891	6.708
	차이	2.515	1.225	1.469	2.128
	t값	-8.15***	-6.4***	-9.2***	-6.35***
저축 및 금융투자	코로나 이전	11.595	10.833	11.513	10.411
	코로나 이후	10.872	10.214	10.393	8.161
	차이	-0.723	-0.619	-1.12	-2.25
	t값	2.2**	2.85***	7.25***	6.25***

*p<0.1, **p<0.05,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코로나 이후 가장 부담되는 지출 1순위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식료품에 대한 부담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집단 간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청년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주거비 부담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임차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교통비와 통신비 역시 청년집단에서 부담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교육비 부담은 다른 집단보다 장년층이 높게 인식한다(7.89%). 이는 장년층의 경우 돌봄 등 자녀에 대한 지출 부담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세금 및 사회보험료는 중년층이 높다고 인식하였다.

〈표 5-12〉 연령집단별 코로나 이후 가장 부담되는 지출 비교

(단위: %)

	청년	장년	중년	노년	전체
식료품	36.26	37.0	36.97	38.1	36.91
주거비	17.05	13.53	11.22	11.31	13.26
교육비	3.62	7.89	5.46	1.19	5.51
의료비	6.4	6.27	6.96	14.29	7.18
교통비	4.86	3.17	2.22	2.38	3.12
통신비	4.96	3.45	3.12	1.19	3.49
기타소비지출	3.62	2.18	2.46	2.38	2.62
세금·사회보험료	6.51	10.36	14.11	12.8	11.12
이전지출	1.65	1.83	1.92	1.79	1.82
부채상환	11.26	10.85	11.7	11.61	11.32
저축 등	3.82	3.45	3.84	2.98	3.65
합계	100	100	100	100	100
Chi2	141.3875***				

*p<0.1, **p<0.05,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아래 <표 5-13>은 코로나 이후로 가구의 부채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부채가 증가한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를 각각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 이후 부채 수준이 증가한 집단은 청장년층이 각각 31.51%와 30.73%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중년층은 26.83%가 부채부담이 증가했다고 응답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약 10% 수준의 응답자는 부채가 오히려 감소했다고 응답했는데, 청장년층이 13% 수준으로 부채가 감소했다고 응답하였고, 중년층은 11% 수준이 부채가 감소했다고 응답하였다.

<표 5-13> 연령집단별 부채변화

(단위: %)

부채 변화	청년	장년	중년	노년	전체
증가	31.51	30.73	26.83	21.73	28.73
감소	13.02	13.46	10.74	9.52	12.03
변화 없음	55.48	55.81	62.42	68.75	59.24
합계	100	100	100	100	100
Chi2	32.7459***				

*p<0.1, **p<0.05,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연령집단별로 부채의 증가 이유를 살펴보면, 청년집단은 부채상환을 제외하는 경우 주거비가 부채 상승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임차 가구 비중이 높은 청년층의 경우, 주거비 마련이 코로나19 이후 가장 부담되는 지출일 뿐 아니라 부채가 증가한 주요한 요인이다. 장년 집단의 부채 상승 이유는 식료품과 교육비 지출에서 다른 집단과 차이를 보였다. 중년층은 다른 집단에 비해 부채상환으로 인한 부채증가의 상대적 비중이 높았으며, 세금 및 사회보험료 지출도 상대적으로 높게 제시되었다.

〈표 5-14〉 연령집단별 부채증가 이유

(단위: %)

	청년	장년	중년	노년	전체
식료품	15.74	19.95	14.77	13.7	16.73
주거비	24.59	14.68	14.32	13.7	16.89
교육비	4.59	6.42	5.37	1.37	5.31
의료비	3.93	5.5	7.38	12.33	6.19
교통비	2.62	2.52	0.67	1.37	1.82
통신비	1.64	0.23	0.45	0	0.63
기타소비지출	1.31	1.61	1.57	2.74	1.59
세금·사회보험료	9.18	8.94	13.2	13.7	10.79
가구간이전지출	0.33	2.06	2.68	0	1.74
부채상환	35.41	35.32	38.26	41.1	36.72
저축	0.66	2.75	1.34	0	1.59
합계	100	100	100	100	100
Chi2	63.4289 **				

*p<0.1, **p<0.05,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2. 주관적 생활 변화

연령집단별로 코로나19 이후 생활 변화를 살펴보면, 스트레스 증가는 모든 연령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평균점수는 2.74로 대체로 스트레스가 증가했다고 응답하였다. 조사된 항목 중 가장 크게 변화를 경험한 항목은 주변 사람과 갈등 증가였고, 가장 적게 경험한 항목은 가족 돌봄의 부담 증가였다. 연령집단별로 살펴보면, 중년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청년과 장년이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상 문제 발생, 우울감 증가, 주변 사람과 갈등 증가, 자살 충동 증가의 항목에서 유의하게 높은 응

답을 보였다. 즉, 청장년층은 중년층보다 정서적으로 더 부정적 변화를 경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장년층은 가족 돌봄의 부담 증가를 더 크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5〉 연령집단별 코로나19 이후 생활 변화

(단위: 점)

	청년	장년	중년 (기준)	노년	전체	F
경제적 어려움 증가	2.82***	2.76***	2.67	2.82***	2.74	8.081***
나와 가족의 건강상 문제 발생	2.82*	2.76***	2.67	2.82**	2.74	3.914**
가족 돌봄의 부담 증가	2.27	2.29***	2.21	2.32	2.26	24.345***
우울감 증가	2.41**	2.64***	2.40	2.41**	2.48	3.820**
스트레스 증가	2.76	2.77	2.68	2.79	2.74	0.93
주변사람들과의 갈등 증가	2.95***	3.00***	2.97	2.99	2.98	11.732***
자살 충동 증가	2.33***	2.35***	2.19	2.26	2.28	19.94

*p<0.1, **p<0.05,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코로나 이전 청년집단은 개인 소득에 있어서 다른 집단에 비해 취약했지만, 소득의 감소는 가장 적게 경험했다. 그러나 청년층의 부채는 가장 많이 증가했다. 소비지출에 있어서 청년 가구는 주거비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이후 부담이 더 증가했다. 정서적인 변화에서도 청년층과 장년층이 중년층보다 부정적인 변화를 더 크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3절 연령집단과 긴급 지원

1. 긴급 지원 수급 현황

연령집단별로 코로나19 이후 이루어진 긴급 지원의 수급률을 살펴보면, 아동돌봄쿠폰의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수급이 되기 때문에 장년층에서의 수급률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통신료 지원의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만16세~34세 청년 및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통신사에서 일괄 감면했기 때문에 수급률이 100%로 나타났다. 지자체 지원금의 경우, 중년층의 수급률이 48% 수준으로 가장 높았고, 긴급복지 지원금의 경우 청년층이 약 11%로 수급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제도의 경우, 노년을 제외하면 중년(18.61%)과 청년(17.77%) 가구에서 수급률이 장년 가구(13.1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경우 집합 제한 업종 및 집합 금지 업종, 일반업종에 지원된 사업으로 자영업 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응답자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과 소상공인지자체지원사업의 경우, 청년 응답자에 비해 중년 응답자의 수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 및 고용 관련 사업의 경우, 전반적으로 청년층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높은 수급률을 보였다.

〈표 5-16〉 연령집단의 긴급 지원 수급률

(단위: %)

		청년	장년	중년	노년	합계	Chi2
일반	아동돌봄쿠폰 등	5.58	25.72	3.78	1.79	11.12	456.6595***
	통신료지원	100	33.26	34.51	100	53.57	-
	지자체지원금	43.29	42.71	48.02	54.17	45.73	20.7142***
	긴급복지	10.74	6.62	5.76	8.04	7.31	23.9691***
소상공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7.77	13.18	18.61	27.38	17.34	42.7747** *
	임대료지원	8.16	2.96	3.3	9.52	4.74	59.7276***
	소상공인지자체 지원	11.88	8.53	8.4	8.04	9.18	10.9213*
실업 및 고용	청년특별구직	11.88	2.61	2.76	1.79	4.65	147.166***
	고용안정자금	13.95	6.84	5.64	2.98	7.66	75.4948***
	고용관련지자체 지원	7.33	2.68	1.74	2.08	3.3	65.2831***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8.47	4.44	3.36	2.38	4.76	41.0961***

*p<0.1, **p<0.05,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연령집단별 긴급 지원금 사용처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평소보다 생활비 지출에 사용한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연령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청년집단이 저축 및 투자(10.43%), 대출이나 빚 상환(17.98%), 주거비(14.26%)에 다른 집단에 비해 큰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소보다 생활비에 큰 비용을 지출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30.58%로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낮았다. 반면, 장년층과 중년층은 생활비로 지출했다는 응답이 각각 43.27%와 47.84%로 나타났으며, 중년층의 경우, 목돈이 들어 평소에 쓰지 못하던 곳에 지출했다는 응답이 16.21%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5-17〉 연령집단별 긴급 지원금 사용처

(단위: %)

	청년	장년	중년	노년	합계
저축, 투자	10.43	4.23	3.12	4.17	5.17
대출이나 빚 상환	17.98	15.36	13.27	14.58	15.08
주거비	14.26	9.94	7.14	5.06	9.46
공과금 납부	13.02	15.08	12.42	16.37	13.72
평소보다 생활비 지출 증가	30.58	43.27	47.84	44.35	42.29
목돈이 들어 평소에 쓰지 못하던 곳에 지출	13.74	12.12	16.21	15.48	14.29
합계	100	100	100	100	100
Chi2	177.5452***				

*p<0.1, **p<0.05,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2. 긴급 지원에 대한 사각지대 및 지원체계 인식

긴급 지원에 대한 사각지대 인식을 살펴보면, 장년층이 45.6%로 긴급 지원의 사각지대에 속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청년층(38.22%), 중년층(34.63%) 순서로 사각지대 인식 비율이 높았으며, 노년층이 사각지대 인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앞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장년층은 다른 집단에 비해 긴급 지원제도의 혜택을 적게 받은 집단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청년보다 수급률이 낮으며, 이들을 대상으로한 별도의 정책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들의 사각지대 인식은 높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표 5-18〉 연령집단별 긴급 지원 사각지대 인식

(단위: %)

	청년	장년	중년	노년	합계
그렇다	38.22	45.6	34.63	29.76	38.6
아니다	61.78	54.4	65.37	70.24	61.4
합계	100	100	100	100	100
Chi2	51.4908***				

*p<0.1, **p<0.05,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코로나19 전달체계 및 급여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청년층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전달체계 및 급여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년층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전달체계 및 급여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청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었음', '신청 절차가 간편함'에서 중년보다 장년층은 유의하게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청년층의 경우, '필요한 때에 지원이 이루어짐', '필요한 만큼 지원받음' 항목에서 중년층보다 유의하게 높은 인식을 보였다. 노년층은 '필요한 때에 지원이 이루어짐', '가계에 도움이 됨', '코로나19 방역에 도움이 됨' 항목에서는 중년보다 유의하게 높은 인식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전달체계 및 급여에 대한 인식은 장년층과 중년층이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청년층과 노년층은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표 5-19〉 연령집단별 코로나19 전달체계 및 급여에 대한 인식

(단위: 점)

	청년	장년	중년 (기준)	노년	F
신청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었음	2.94	2.87*	2.93	2.95	1.751
신청 절차가 간편함	3.03	2.95**	3.02	3.00	2.186*
필요한 때에 지원 이루어짐	2.89***	2.76	2.77	2.88**	5.788***
필요한 곳에 사용 가능	3.05	3.01	3.00	3.10**	1.927
필요한 만큼 지원 받음	2.73***	2.42	2.40	2.58***	29.153***
가계에 도움이 됨	3.04	3.01	2.99	3.09**	1.745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됨	3.02	3.01	3.04	3.04	0.313
국가 경제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됨	2.99	2.97	2.96	3.03	0.71
코로나19 방역에 도움이 됨	2.84	2.79	2.78	2.93**	2.704**

*p<0.1, **p<0.05, ***p<0.01

주: 청년집단을 기본집단으로 차이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3. 긴급 지원 부정수급 인식

부정수급 인식은 앞서 사각지대 인식 및 지원체계 인식과 유사하게 노년층과 청년층에서 부정수급이 적다는 응답을 보였으며, 부정수급이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한 집단은 장년층으로 나타났다. 청년집단의 경우, 부정수급이 매우 많다고 인식한 응답은 17.25%에 불과하였으나 장년층은 23.26%로 높게 나타났다.

〈표 5-20〉 연령집단별 부정수급 인식

(단위: %, 점)

	청년	장년	중년	노년	합계
전혀 없음	4.03	2.33	3.18	3.27	3.1
별로 없음	25.93	23.54	24.01	30.95	24.81
약간 있음	52.79	50.88	52.64	52.08	52.06
매우 많음	17.25	23.26	20.17	13.69	20.03
합계	100	100	100	100	100
평균점수	2.83	2.95	2.90	2.76	2.89
F	8.38***				

*p<0.1, **p<0.05,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연령집단별 부정수급 인식경로를 살펴보면,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이 37% 수준으로 가장 주요한 인식경로로 나타났다. 특히, 부정수급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장년층의 경우, 39.35%가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을 통해 부정수급 사례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접적으로 부정수급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청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변 사람들로 부터 부정수급이 많이 발생한다고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간접경로의 경우, 노년층이 가장 높게 제시되었으며 다음으로 중년층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을 통한 정보 경로는 청년층이 21.4%로 가장 높았다.

〈표 5-21〉 연령집단별 부정수급 인식경로

(단위: %)

	청년	장년	중년	노년	합계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을 통해 부정수급 사례를 접했다	34.51	39.35	37.35	37.1	37.39
주변에서 부정수급하는 사례를 직접 본 적이 있다	14.75	12.83	11.87	12.67	12.86
주변 사람들로 부터 부정수급이 많이 발생한다고 들은 적이 있다	27.73	32.98	35.94	41.63	33.6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 부정수급 사례를 접했다	21.39	13.31	13.19	7.69	14.6
기타	1.62	1.52	1.65	0.9	1.55
합계	100	100	100	100	100

*p<0.1, **p<0.05,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제4절 심층분석

1. 변수 설명

본 절에서는 앞서 기술통계로 제시한 여러 변수 간의 관계를 요약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코로나 전후로 연령집단별 차별적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소득감소 및 부채증가에 미친 영향, 긴급 지원 수급 여부에 미친 영향, 그리고 긴급 지원에 대한 사각지대 및 부정수급 인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이변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로짓이나 프로빗 분석을 활용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령특성과 1인 가구 여부를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 상호작용 모형을 함께 분석하기 위해 선형확률모형을 채택하여 활용한다. DeLeire(2004)에 따르면, 비선형모형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고자 할 때는 로짓이나 프로빗 모형의 상호작용항을 미분하여 한계효과가 불편추정치를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선형확률모형이 활용할 수 있다. 선형확률 모형은 로짓모형과 다르게 추정된 계수를 한계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분석에 활용된 변수에 대한 설명과 구체적인 측정 방법은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다.

180 사회복지 분야 사각지대 축소 및 부정정지출 관리 방안 연구-긴급 지원을 중심으로

〈표 5-22〉 회귀분석 변수 설명 및 측정

구분	변수 설명	측정
중속 변수	개인 소득감소 여부	소득 증가 및 변화 없음=0, 소득 감소=1
	가구소득감소 여부	소득 증가 및 변화 없음=0, 소득 감소=1
	부채증가 여부	부채 증가 및 변화 없음=0, 부채 감소=1
	긴급 지원 수혜 여부	조사된 재난지원금 10개 유형 중 하나도 받지 못한 경우=0, 어느 하나라도 받은 경우=1
	긴급 지원 사각지대 여부	코로나19 관련 정부 긴급 지원에서 자신이 사각지대에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0,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1
	긴급 지원 부정수급 인식 여부	코로나19 관련 긴급 지원에서의 부정수급 발생 정도에 대해 전혀없음/별로없음=0, 약간있음/매우많음=1
설명 변수	연령집단	장년집단을 기준으로 청년, 중년, 노년집단으로 구분
	성별	남성=0, 여성=1
	나이	만 나이
	혼인	미혼, 이혼, 사별=0, 배우자 있음=1
	대출여부	고출 이하=0, 대출 이상=1
	가구원 수	가구원 수
	균등화 가구소득	2020년 가구소득 평균이 199만원 이하인 경우를 준거집단으로 하여 200-299만원, 400-599만원, 600만원 이상을 중위수를 사용하여 제곱근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
	종사상 지위	1= 상용/임시일용 임금근로자, 2=고용주, 3=자영업, 4=특고
	사업장규모	5인 이상=0, 5인 미만= 1
	산업	제조업을 기준으로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기타업종*으로 구분 *기타업종=농림어업/광업, 전기/환경/건설업, 운수/창고업, 출판/영상/금융/보험/부동산업, 과학/기술/사업지원/임대업, 행정/국방, 교육서비스, 보건/복지서비스, 예술/스포츠
	지역구분	서울을 기준으로 인천/경기, 부산/대구/울산, 그 외 지역으로 구분
	도시구분	동 지역=0, 읍면 지역=1
	자녀 유무	자녀 없음=0, 자녀 있음=1

자료: 저자 작성

2. 연령집단별 소득 및 부채 변화

가. 소득

먼저 본 연구의 관심 변수인 연령집단 및 1인 가구 여부 변수의 결과를 보면, 가구소득 감소 및 청년 여부는 1인 가구와 상호작용 효과에서만 유의한 영향이 있었다. 이는 청년 1인 가구일 때, 가구소득이 상대적으로 덜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청년 1인 가구는 위기 이전에도 소득 수준이 낮고,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일자리에 처해 있어 이들의 소득 변화는 유의한 영향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인 가구 여부는 가구소득 감소의 기본모형과 개인 소득 감소에서 유의한 영향이 있었다.

이외에 응답자 성별, 자녀 유무, 가구소득, 종사상 지위, 산업 구분, 지역은 가구소득과 개인 소득 감소에 대한 영향이 있었다. 대체로 계수값의 규모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방향성에서 상당히 유사하다. 여성일 때 가구소득이 증가했으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소득감소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에서는 수도권 및 광역시 간의 차이는 없었고, 그 외 지역에서 가구소득 감소가 덜 나타난 것으로 제시되었다.

〈표 5-23〉 가구소득 감소 영향요인 분석: 연령집단

변수명		기본모형		상호작용모형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연령집단 (기준: 중년)	청년	-0.02	(0.025)	0.0002	(0.029)
	장년	-0.02	(0.021)	-0.005	(0.023)
	노년	0.03	(0.034)	0.04	(0.035)
1인 가구 여부		-0.048**	(0.037)	0.03	(0.047)
청년*1인			(0.029)	-0.10*	(0.057)
장년*1인				-0.10*	(0.055)
노년*1인				-0.05	(0.101)
여성		0.043***	(0.024)	0.041**	(0.016)
대출		-0.005	(0.016)	-0.004	(0.019)
유배우		0.009	(0.019)	0.02	(0.025)
자녀 여부		0.057**	(0.024)	0.048**	(0.023)
월평균 가구소득 (기준: 200만원 미만)	2분위	-0.057**	(0.022)	-0.058**	(0.027)
	3분위	-0.091***	(0.027)	-0.089***	(0.026)
	4분위	-0.191***	(0.026)	-0.189***	(0.027)
	5분위	-0.228***	(0.026)	-0.229***	(0.029)
종사상 지위 (기준:임금 근로자)	고용주	0.035	(0.029)	0.036	(0.030)
	자영업자	0.066*	(0.030)	0.065*	(0.035)
	특고	-0.061***	(0.035)	-0.062***	(0.023)
산업구분 (기준: 제조업)	도소매업	0.152***	(0.023)	0.153***	(0.031)
	음식숙박업	0.299***	(0.031)	0.296***	(0.025)
	기타업종	0.27***	(0.025)	0.27***	(0.026)
5인미만 사업장		0.009	(0.026)	0.01	(0.022)
지역구분 (기준: 서울)	인천경기	-0.024	(0.022)	-0.023	(0.021)
	부산대구울산	-0.04	(0.021)	-0.04	(0.025)
	기타지역	-0.055**	(0.025)	-0.055**	(0.022)
읍면지역		-0.015	(0.022)	-0.015	(0.029)
_cons		0.562***	(0.042)	0.562***	(0.042)
Observations		3563		3563	
R-squared		0.159		0.16	

*p<0.1, **p<0.05,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표 5-24〉 개인소득 감소 영향요인 분석: 연령집단

변수명		기본모형		상호작용모형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연령집단 (기준: 중년)	청년	-0.03	(0.024)	-0.03	(0.028)
	장년	-0.02	(0.021)	-0.01	(0.023)
	노년	0.02	(0.033)	0.02	(0.035)
1인 가구 여부		0.04**	(0.024)	0.08*	(0.047)
청년*1인				-0.02	(0.056)
장년*1인				-0.07	(0.054)
노년*1인				-0.01	(0.099)
여성		-0.03	(0.016)	-0.006	(0.016)
대출		0.007	(0.019)	0.017	(0.019)
유배우		0.061**	(0.024)	0.058**	(0.025)
자녀 여부		0.081***	(0.021)	0.074***	(0.022)
월평균 가구소득 (기준: 120만원 이하)	121만원 ~190만원	-0.087***	(0.026)	-0.086***	(0.026)
	191만원 ~260만원	-0.192***	(0.025)	-0.189***	(0.025)
	261만원 ~330만원	-0.211***	(0.029)	-0.209***	(0.029)
	331만원 ~399만원	-0.185***	(0.031)	-0.183***	(0.031)
	400만원 이상	-0.317***	(0.028)	-0.315***	(0.028)
종사상 지위 (기준:임금 근로자)	고용주	0.013	(0.029)	0.012	(0.029)
	자영업자	0.069**	(0.034)	0.067**	(0.034)
	특고	-0.093***	(0.022)	-0.094***	(0.022)
산업구분 (기준: 제조업)	도소매업	0.123***	(0.031)	0.124***	(0.031)
	음식숙박업	0.329***	(0.024)	0.329***	(0.024)
	기타업종	0.289***	(0.026)	0.29***	(0.026)
5인미만 사업장		0.019	(0.022)	0.018	(0.022)
지역구분 (기준: 서울)	인천경기	-0.042**	(0.021)	-0.042**	(0.021)
	부산대구울산	-0.051**	(0.024)	-0.052**	(0.024)
	기타지역	-0.06***	(0.021)	-0.061***	(0.022)
읍면지역		-0.026	(0.029)	-0.026	(0.029)
_cons		0.548***	(0.041)	0.563***	(0.042)
Observations		3563		3563	
R-squared		0.207		0.207	

*p<0.1, **p<0.05,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나. 부채

아래 <표 5-25>는 코로나19 이후 부채의 증가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연령집단 변수 및 1인 가구 여부를 독립변수로 포함하여 선형확률모형 분석을 실행한 결과이다. 인구사회학적 요인, 사업장 특성, 지역 등 변수를 통제했을 때 청년층의 경우, 중년층보다 부채가 유의하게 많이 증가하였으며, 노년층은 적게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1인 가구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다. 통제변수의 결과를 보면 앞서 소득이 높을수록 부채증가를 더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종사상 지위의 경우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에 비교해 부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산업에서는 제조업과 비교하여 음식숙박업과 기타업종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서울에 비교하였을 때 인천경기에서 부채가 증가한 비중이 높았고, 기타지역에서는 낮았다.

〈표 5-25〉 연령집단의 부채 증가 영향요인 분석

변수명		기본모형		상호작용모형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연령집단 (기준: 중년)	청년	0.06**	(0.024)	0.06**	(0.028)
	장년	0.03	(0.021)	0.03	(0.023)
	노년	-0.09***	(0.033)	-0.08**	(0.035)
1인 가구 여부		0.017	(0.029)	0.03	(0.047)
청년*1인				-0.01	(0.056)
장년*1인				-0.03	(0.054)
노년*1인			(0.024)	-0.06	(0.099)
여성		0.028*	(0.016)	0.029*	(0.016)
대출		0.034*	(0.019)	0.034*	(0.019)
유배우		0.071***	(0.024)	0.07***	(0.025)
자녀 여부		0.035	(0.022)	0.033	(0.022)
월평균 가구소득 (기준: 200만원 미만)	2분위	-0.072***	(0.026)	-0.072***	(0.026)
	3분위	-0.091***	(0.026)	-0.09***	(0.026)
	4분위	-0.124***	(0.026)	-0.124***	(0.026)
	5분위	-0.176***	(0.029)	-0.175***	(0.029)
종사상 지위 (기준:임금 근로자)	고용주	0.048	(0.030)	0.048	(0.030)
	자영업자	0.179***	(0.034)	0.178***	(0.034)
	특고	0.0001	(0.022)	0.0001	(0.022)
산업구분 (기준: 제조업)	도소매업	0.009	(0.031)	0.01	(0.031)
	음식숙박업	0.098***	(0.024)	0.098***	(0.024)
	기타업종	0.081***	(0.026)	0.082***	(0.026)
5인미만 사업장		0.01	(0.022)	0.01	(0.022)
지역구분 (기준: 서울)	인천경기	0.059***	(0.021)	0.059***	(0.021)
	부산대구울산	-0.006	(0.025)	-0.006	(0.025)
	기타지역	-0.056***	(0.022)	-0.055**	(0.022)
읍면지역		-0.019		-0.018	(0.096)
_cons		0.249***	(0.041)	0.252***	(0.042)
Observations		3563		3563	
R-squared		0.065		0.065	

*p<0.1, **p<0.05, ***p<0.01

주: 추정계수는 한계효과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다.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아래 <표 5-26>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를 주관적 지표로 측정한 것이다. 앞서 제시한 기술통계 분석에서 제시된 항목 중 자살 충동 증가와 스트레스 증가는 연령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²⁶⁾

먼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항목에서는 청년과 노년 집단이 중년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영향이 있었다. 1인 가구 여부는 유의한 영향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이들의 상호작용 효과 역시 유의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소득은 높을수록 경제적 어려움을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임금근로자보다 자영업자가 유의하게 경제적 어려움을 더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조업에 비해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했는데, 음식숙박업 종사자의 비중이 더 높았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이 그 외 사업장에 비해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했으며, 서울에 비교해 인천경기 지역과 기타지역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낮았다.

다음으로, 건강상의 문제에서는 청년과 노년 집단이 중년 집단과 비교해 유의하게 건강상 문제가 발생했다는 응답이 높았다. 1인 가구 여부는 유의한 영향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이들의 상호작용 효과 역시 유의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여성인 경우, 그리고 소득은 높을수록 건강상의 문제를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임금근로자보다 자영업자가 유의하게 건강 문제를 더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조업에 비교하여 음식숙박업 종사자의 건강상 문제를 경험한 비중이 더 높았다. 서울에 비교하였을 때 기타지역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증가하지 않았다.

26) 실제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연령집단은 유의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표 5-26〉 연령집단별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경제적 어려움 증가

변수명		기본모형		상호작용모형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연령집단 (기준: 중년)	청년	0.08***	(0.024)	0.08***	(0.029)
	장년	0.01	(0.021)	0.02	(0.023)
	노년	0.07**	(0.033)	0.08**	(0.035)
1인 가구 여부		-0.013	(0.029)	0.03	(0.047)
청년*1인				-0.02	(0.056)
장년*1인				-0.07	(0.054)
노년*1인			(0.024)	-0.11	(0.099)
여성		0.013	(0.016)	0.014	(0.016)
대출		0.002	(0.019)	0.002	(0.019)
유배우		0.026	(0.024)	0.025	(0.025)
자녀 여부		0.057***	(0.022)	0.053**	(0.022)
월평균 가구소득 (기준: 200만원 미만)	2분위	-0.065**	(0.026)	-0.066**	(0.026)
	3분위	-0.123***	(0.026)	-0.121***	(0.026)
	4분위	-0.23***	(0.026)	-0.228***	(0.026)
	5분위	-0.26***	(0.029)	-0.259***	(0.029)
산업구분 (기준: 제조업)	도소매업	0.021	(0.030)	0.021	(0.030)
	음식숙박업	0.089***	(0.034)	0.088**	(0.034)
	기타업종	-0.028	(0.022)	-0.028	(0.022)
종사상 지위 (기준:임금 근로자)	고용주	0.132***	(0.031)	0.133***	(0.031)
	자영업자	0.178***	(0.025)	0.177***	(0.025)
	특고	0.168***	(0.026)	0.169***	(0.026)
5인미만 사업장		0.06***	(0.022)	0.06***	(0.022)
지역구분 (기준: 서울)	인천경기	-0.039*	(0.021)	-0.039*	(0.021)
	부산대구울산	-0.027	(0.025)	-0.027	(0.025)
	기타지역	-0.089***	(0.022)	-0.087***	(0.022)
읍면지역		0.002		0.003	(0.097)
_cons		0.662***	(0.041)	0.67***	(0.042)
Observations		3563		3563	
R-squared		0.129		0.129	

*p<0.1, **p<0.05,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표 5-27〉 연령집단별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나와 가족의 건강상 문제 발생

변수명		기본모형		상호작용모형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연령집단 (기준: 중년)	청년	0.07***	(0.025)	0.07**	(0.030)
	장년	0.06***	(0.021)	0.06**	(0.024)
	노년	0.07*	(0.034)	0.05	(0.036)
1인 가구 여부		-0.009	(0.030)	-0.03	(0.048)
청년*1인				0.01	(0.058)
장년*1인				0.03	(0.056)
노년*1인				0.15	(0.102)
여성		0.03*	(0.025)	0.028*	(0.016)
대출		0.001	(0.016)	0.002	(0.020)
유배우		0.041*	(0.020)	0.044*	(0.026)
자녀 여부		0.021	(0.025)	0.021	(0.023)
월평균 가구소득 (기준: 200만원 미만)	2분위	-0.07***	(0.023)	-0.069**	(0.027)
	3분위	-0.12***	(0.027)	-0.12***	(0.027)
	4분위	-0.162***	(0.027)	-0.163***	(0.027)
	5분위	-0.173***	(0.027)	-0.173***	(0.030)
산업구분 (기준: 제조업)	도소매업	-0.025	(0.030)	-0.025	(0.031)
	음식숙박업	0.059*	(0.031)	0.06*	(0.035)
	기타업종	-0.053**	(0.035)	-0.052**	(0.023)
종사상 지위 (기준:임금 근로자)	고용주	0.026	(0.023)	0.026	(0.032)
	자영업자	0.098***	(0.032)	0.097***	(0.025)
	특고	-0.032	(0.025)	-0.032	(0.027)
5인미만 사업장		-0.011	(0.027)	-0.01	(0.023)
지역구분 (기준: 서울)	인천경기	-0.042*	(0.023)	-0.042*	(0.022)
	부산대구울산	-0.031	(0.022)	-0.032	(0.025)
	기타지역	-0.106***	(0.025)	-0.108***	(0.022)
읍면지역		-0.005	(0.022)	-0.007	(0.100)
_cons		0.485***	(0.042)	0.481***	(0.043)
Observations		3563		3563	
R-squared		0.051		0.051	

*p<0.1, **p<0.05,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가족 돌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했는지를 묻는 항목에서는 청년집단과 장년 집단이 중년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부담이 많이 증가하였다. 1인 가구 여부는 가족 돌봄을 제공하는 역할에 있어서는 유의하게 적은 영향이 있었으며, 이들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이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어린 자녀가 있는 장년층의 경우 부담이 더 많이 증가하였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소득분위가 4, 5분위의 경우 1분위에 비해 가족 돌봄 문제를 유의하게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금근로자보다 고용주와 특고 종사자가 유의하게 가족 돌봄 문제를 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조업보다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종사자가 가족 돌봄 문제를 경험한 비중이 더 높았다. 서울보다 비수도권 광역시 및 기타지역에서 가족 돌봄에서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낮았다.

코로나19 이후 우울감을 더 경험했는지 묻는 항목에서는 청년과 장년, 노년 집단이 중년 집단보다 우울감이 더 증가하였다. 그러나 상호작용모형에서는 노년층만 우울감이 더 증가했다고 응답하였다. 1인 가구 여부는 우울감 증가에 있어 유의한 영향이 없었으며, 상호작용 효과 역시 유의하지 않았다. 소득분위가 5분위의 경우 1분위에 비해 우울감 문제를 유의하게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우울감 문제를 더 경험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서울보다 영남지역 및 기타지역에서 우울감 증가를 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8〉 연령집단별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가족 돌봄의 부담 증가

변수명		기본모형		상호작용모형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연령집단 (기준: 중년)	청년	0.09***	(0.026)	0.08***	(0.030)
	장년	0.10***	(0.022)	0.10***	(0.024)
	노년	-0.01	(0.035)	-0.01	(0.037)
1인 가구 여부		-0.069***	(0.025)	-0.07	(0.049)
청년*1인				0.03	(0.059)
장년*1인				-0.03	(0.057)
노년*1인				0.03	(0.105)
여성		0.017	(0.017)	0.017	(0.017)
대졸		0.032	(0.020)	0.032	(0.020)
유배우		0.075***	(0.025)	0.071***	(0.026)
자녀 여부		0.215***	(0.023)	0.212***	(0.024)
월평균 가구소득 (기준: 200만원 미만)	2분위	-0.002	(0.028)	-0.002	(0.028)
	3분위	-0.03	(0.027)	-0.028	(0.027)
	4분위	-0.091***	(0.028)	-0.088***	(0.028)
	5분위	-0.1***	(0.030)	-0.097***	(0.030)
산업구분 (기준: 제조업)	도소매업	-0.103***	(0.031)	-0.104***	(0.031)
	음식숙박업	-0.024	(0.036)	-0.024	(0.036)
	기타업종	-0.095***	(0.023)	-0.095***	(0.023)
종사상 지위 (기준:임금 근로자)	고용주	0.086***	(0.033)	0.087***	(0.033)
	자영업자	0.105***	(0.026)	0.106***	(0.026)
	특고	0.041	(0.027)	0.042	(0.027)
5인미만 사업장		0.024	(0.023)	0.023	(0.023)
지역구분 (기준: 서울)	인천경기	-0.009	(0.022)	-0.009	(0.022)
	부산대구울산	-0.066**	(0.026)	-0.067**	(0.026)
	기타지역	-0.14***	(0.023)	-0.141***	(0.023)
읍면지역		0.023	(0.030)	0.023	(0.102)
_cons		0.551***		0.561***	(0.044)
Observations		3563		3563	
R-squared		0.109		0.109	

*p<0.1, **p<0.05,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표 5-29〉 연령집단별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우울감 증가

변수명		기본모형		상호작용모형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연령집단 (기준: 중년)	청년	0.06**	(0.025)	0.05	(0.030)
	장년	0.04*	(0.022)	0.04	(0.024)
	노년	0.06*	(0.034)	0.07*	(0.036)
1인 가구 여부		0.02	(0.025)	-0.01	(0.049)
청년*1인				0.05	(0.058)
장년*1인				0.03	(0.056)
노년*1인				-0.06	(0.103)
여성		0.09***	(0.016)	0.092***	(0.016)
대출		-0.005	(0.020)	-0.006	(0.020)
유배우		0.045*	(0.025)	0.037	(0.026)
자녀 여부		0.048**	(0.023)	0.052**	(0.023)
월평균 가구소득 (기준: 200만원 미만)	2분위	-0.021	(0.027)	-0.021	(0.027)
	3분위	-0.002	(0.027)	-0.003	(0.027)
	4분위	-0.038	(0.027)	-0.038	(0.027)
	5분위	-0.073**	(0.030)	-0.072**	(0.030)
산업구분 (기준: 제조업)	도소매업	0.023	(0.031)	0.022	(0.031)
	음식숙박업	0.049	(0.035)	0.049	(0.035)
	기타업종	-0.028	(0.023)	-0.028	(0.023)
종사상 지위 (기준:임금 근로자)	고용주	0.052	(0.032)	0.052	(0.032)
	자영업자	0.035	(0.025)	0.036	(0.025)
	특고	0.027	(0.027)	0.027	(0.027)
5인미만 사업장		0.041*	(0.023)	0.04*	(0.023)
지역구분 (기준: 서울)	인천경기	-0.012	(0.022)	-0.012	(0.022)
	부산대구울산	-0.044*	(0.026)	-0.044*	(0.026)
	기타지역	-0.088***	(0.023)	-0.087***	(0.023)
읍면지역		-0.081***	(0.030)	-0.08***	(0.030)
_cons		0.632***	(0.043)	0.635***	(0.043)
Observations		3563		3563	
R-squared		0.038		0.038	

*p<0.1, **p<0.05,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마지막으로, 주변사람과 갈등 정도에 대한 분석에서는 청년과 장년 집단이 중년 집단보다 유의하게 갈등이 많아졌다고 응답하였다. 상호작용 효과에서는 노년인 경우 유의하게 갈등이 더 증가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 주변과의 갈등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소득분위가 3분위 이상에서 1분위에 비해 주변과의 갈등을 유의하게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임금근로자보다 고용주와 자영업자가 유의하게 주변과의 갈등 문제를 더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인천 및 경기지역과 기타지역에 거주자들이 서울지역 거주자보다 주변과의 갈등 증가를 덜 경험하였다.

〈표 5-30〉 연령집단별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주변사람들과의 갈등 증가

변수명		기본모형		상호작용모형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연령집단 (기준: 중년)	청년	0.12***	(0.025)	0.14***	(0.030)
	장년	0.08***	(0.022)	0.08***	(0.024)
	노년	0.05	(0.035)	0.02	(0.037)
1인 가구 여부		-0.029	(0.025)	-0.03	(0.049)
청년*1인				-0.02	(0.058)
장년*1인				0.01	(0.056)
노년*1인				0.25**	(0.104)
여성		0.01	(0.016)	0.007	(0.017)
대출		0.013	(0.020)	0.015	(0.020)
유배우		0.021	(0.025)	0.03	(0.026)
자녀 여부		0.073***	(0.023)	0.067***	(0.023)
월평균 가구소득 (기준: 200만원 미만)	2분위	-0.043	(0.027)	-0.042	(0.027)
	3분위	-0.046*	(0.027)	-0.044	(0.027)
	4분위	-0.112***	(0.027)	-0.112***	(0.027)
	5분위	-0.121***	(0.030)	-0.12***	(0.030)
산업구분 (기준: 제조업)	도소매업	-0.007	(0.031)	-0.007	(0.031)
	음식숙박업	0.04	(0.036)	0.041	(0.036)
	기타업종	-0.051**	(0.023)	-0.05**	(0.023)
종사상 지위 (기준:임금 근로자)	고용주	0.094***	(0.032)	0.094***	(0.032)
	자영업자	0.124***	(0.026)	0.122***	(0.026)
	특고	0.019	(0.027)	0.018	(0.027)
5인미만 사업장		-0.01	(0.023)	-0.009	(0.023)
지역구분 (기준: 서울)	인천경기	-0.063***	(0.022)	-0.063***	(0.022)
	부산대구울산	-0.025	(0.026)	-0.026	(0.026)
	기타지역	-0.084***	(0.023)	-0.087***	(0.023)
읍면지역		-0.012	(0.030)	-0.016	(0.101)
_cons		0.44***	(0.043)	0.436***	(0.044)
Observations		3563		3563	
R-squared		0.05		0.05	

*p<0.1, **p<0.05,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간접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3. 긴급 지원 사각지대 및 부정수급 인식

가. 수급여부

아래 <표 5-31>은 가구특성과 긴급 지원 수급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선형확률모형 분석을 실행한 결과이다. 종속변수인 재난지원금 수급 여부는 실태조사에서 조사한 국가 및 지방정부의 코로나 관련 지원금 10개 중 모든 사람이 수급한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청년과 노년층이 수급한 통신비 지원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아동돌봄쿠폰,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 역시 자녀가 있는 경우만 수급할 수 있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일반시민이 수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및 외 표본수의 문제로 소상공인 지원제도와 실업 및 고용제도의 경우, 3개의 제도 중 1개라도 수급한 경우를 수급률로 추정하였다.

먼저, 지자체 긴급재난 지원금의 경우 중년보다 청년과 장년 집단의 지자체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작다. 또한 상호작용 모형에서는 장년 1인 가구는 지자체 재난지원금을 받을 확률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지자체 재난지원금을 받을 확률은 낮은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임금근로자보다 특고 종사자는 긴급 지원을 수급할 확률이 높았다. 또한 제조업 종사자보다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종사자들 및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들이 지자체 재난지원금을 수급할 확률이 높았다. 지역적으로는 서울보다 인천경기 및 부산, 울산, 대구 등 비수도권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수급률이 높았다.

〈표 5-31〉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

변수명		기본모형		상호작용모형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연령집단 (기준: 중년)	청년	-0.05**	(0.025)	-0.03	(0.030)
	장년	-0.07***	(0.022)	-0.08***	(0.024)
	노년	0.01	(0.035)	0.01	(0.037)
1인 가구 여부		-0.01	(0.025)	-0.01	(0.049)
청년*1인				-0.05	(0.059)
장년*1인				0.05	(0.056)
노년*1인				0.03	(0.104)
여성		-0.01	(0.017)	-0.011	(0.017)
대출		0.002	(0.020)	0.002	(0.020)
유배우		0.012	(0.025)	0.021	(0.026)
자녀 여부		0.032	(0.023)	0.036	(0.023)
월평균 가구소득 (기준: 200만원 미만)	2분위	-0.117***	(0.027)	-0.117***	(0.027)
	3분위	-0.086***	(0.027)	-0.089***	(0.027)
	4분위	-0.106***	(0.027)	-0.109***	(0.027)
	5분위	-0.098***	(0.030)	-0.102***	(0.030)
산업구분 (기준: 제조업)	도소매업	0.062**	(0.031)	0.064**	(0.031)
	음식숙박업	0.082**	(0.036)	0.083**	(0.036)
	기타업종	0.013	(0.023)	0.013	(0.023)
종사상 지위 (기준:임금 근로자)	고용주	-0.047	(0.032)	-0.048	(0.032)
	자영업자	0.009	(0.026)	0.008	(0.026)
	특고	0.106***	(0.027)	0.105***	(0.027)
5인미만 사업장		0.038*	(0.023)	0.04*	(0.023)
지역구분 (기준: 서울)	인천경기	0.349***	(0.022)	0.35***	(0.022)
	부산대구울산	0.114***	(0.026)	0.114***	(0.026)
	기타지역	0.035	(0.023)	0.034	(0.023)
읍면지역		0.051*	(0.030)	0.05*	(0.030)
_cons		0.311***	(0.043)	0.295***	(0.044)
Observations		3563		3563	
R-squared		0.114		0.115	

*p<0.1, **p<0.05,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긴급복지지원금의 경우 중년보다 청년집단의 긴급복지지원금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호작용 모형에서도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오히려 긴급복지지원금을 받을 확률이 낮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긴급복지지원금을 받을 확률은 낮은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임금근로자보다 자영업자는 긴급 지원을 수급할 확률이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들이 긴급복지지원금을 수급할 확률이 낮았다. 지역적으로는 서울보다 인천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수급률이 높았다.

소상공인 지원금의 경우 중년보다 청년집단의 소상공인 지원금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제시되었고 이는 상호작용 모형에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청년 1인 가구가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는 데는 유의한 효과가 없었다. 여성인 경우, 남성보다 소상공인 지원금 수급률이 높았으며 대졸자는 고졸자보다 수급률이 낮았다. 자녀가 있는 경우 수급률이 높았다. 또한,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을 확률은 낮은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임금근로자보다 자영업자는 소상공인 지원금을 수급할 확률이 높았다. 제조업보다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종사자가 소상공인 지원을 받을 확률이 높았으며, 지역적으로는 서울보다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수급률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실업 및 고용 관련 지원금의 경우 장년보다 청년집단의 지원금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상호작용 모형에서는 청년 1인 가구는 유의하게 낮았다. 여성인 경우, 남성보다 소상공인 지원금 수급률이 높았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 수급률이 높았다. 또한, 4분위와 5분위 가구는 1분위 가구보다 지원금을 받을 확률은 낮은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임금근로자보다 자영업자, 고용주, 특고 종사자는 소상공인 지원금을 수급할 확률이 높았다.

〈표 5-32〉 긴급복지지원금

변수명		기본모형		상호작용모형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연령집단 (기준: 중년)	청년	0.06***	(0.018)	0.05**	(0.021)
	장년	-0.01	(0.015)	0.00	(0.017)
	노년	0.02	(0.024)	0.03	(0.025)
1인 가구 여부		-0.002	(0.014)	0.01	(0.034)
청년*1인				0.01	(0.041)
장년*1인				-0.02	(0.039)
노년*1인				-0.05	(0.072)
여성		-0.003	(0.009)	-0.006	(0.009)
대출		-0.006	(0.011)	-0.004	(0.011)
유배우		0.013	(0.014)	0.025*	(0.015)
자녀 여부		0.036***	(0.013)	0.033**	(0.013)
월평균 가구소득 (기준: 200만원 미만)	2분위	-0.02	(0.015)	-0.021	(0.015)
	3분위	-0.04***	(0.015)	-0.04***	(0.015)
	4분위	-0.038**	(0.015)	-0.04***	(0.015)
	5분위	-0.042**	(0.017)	-0.045***	(0.017)
산업구분 (기준: 제조업)	도소매업	-0.001	(0.017)	0	(0.017)
	음식숙박업	-0.004	(0.020)	-0.004	(0.020)
	기타업종	-0.002	(0.013)	-0.001	(0.013)
종사상 지위 (기준:임금 근로자)	고용주	0.002	(0.018)	0.002	(0.018)
	자영업자	0.076***	(0.014)	0.073***	(0.014)
	특고	0.022	(0.015)	0.021	(0.015)
5인미만 사업장		-0.052***	(0.013)	-0.05***	(0.013)
지역구분 (기준: 서울)	인천경기	0.066***	(0.012)	0.067***	(0.012)
	부산대구울산	0.013	(0.014)	0.013	(0.014)
	기타지역	0.007	(0.013)	0.006	(0.013)
읍면지역		0.007	(0.017)	0.005	(0.057)
_cons		0.053**	(0.024)	0.042*	(0.024)
Observations		3563		3563	
R-squared		0.034		0.037	

*p<0.1, **p<0.05,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표 5-33〉 소상공인 지원

변수명		기본모형		상호작용모형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연령집단 (기준: 중년)	청년	0.099***	(0.017)	0.104***	(0.021)
	장년	-0.005	(0.016)	-0.008	(0.018)
	노년	0.025	(0.028)	0.025	(0.030)
1인 가구 여부		-0.001	(0.019)	0	(0.028)
청년*1인				-0.011	(0.037)
장년*1인				0.021	(0.042)
노년*1인				-0.006	(0.028)
여성		0.027**	(0.012)	0.027**	(0.012)
대출		-0.051***	(0.015)	-0.05***	(0.015)
유배우		0.027	(0.019)	0.031	(0.020)
자녀 여부		0.04**	(0.017)	0.039**	(0.017)
월평균 가구소득 (기준: 200만원 미만)	2분위	-0.061***	(0.020)	-0.062***	(0.020)
	3분위	-0.039*	(0.020)	-0.039*	(0.020)
	4분위	-0.066***	(0.020)	-0.066***	(0.020)
	5분위	-0.06***	(0.022)	-0.06***	(0.022)
산업구분 (기준: 제조업)	도소매업	0.059**	(0.023)	0.06***	(0.023)
	음식숙박업	0.167***	(0.027)	0.167***	(0.027)
	기타업종	-0.032*	(0.017)	-0.032*	(0.017)
종사상 지위 (기준:임금 근로자)	고용주	-0.007	(0.024)	-0.007	(0.024)
	자영업자	0.425***	(0.019)	0.424***	(0.019)
	특고	-0.006	(0.020)	-0.006	(0.020)
5인 미만 사업장		0.027	(0.017)	0.028	(0.017)
지역구분 (기준: 서울)	인천경기	0.046***	(0.016)	0.046***	(0.016)
	부산대구울산	0.011	(0.019)	0.011	(0.019)
	기타지역	0.043**	(0.017)	0.043**	(0.017)
읍면지역		0.013	(0.022)	0.013	(0.075)
_cons		0.089***		0.087***	(0.032)
Observations		3563		3563	
R-squared		0.344		0.344	

*p<0.1, **p<0.05,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표 5-34〉 실업 및 고용 관련 제도

변수명		기본모형		상호작용모형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연령집단 (기준: 중년)	청년	0.08***	(0.014)	0.09***	(0.017)
	장년	0.01	(0.012)	0.01	(0.014)
	노년	-0.04**	(0.019)	-0.03	(0.021)
1인 가구 여부		0.012	(0.018)	0.05	(0.028)
청년*1인				-0.02	(0.033)
장년*1인				-0.02	(0.032)
노년*1인				-0.06	(0.058)
여성		0.021*	(0.012)	0.02*	(0.012)
대출		-0.005	(0.014)	-0.004	(0.014)
유배우		0.025	(0.018)	0.036*	(0.019)
자녀 여부		0.029*	(0.016)	0.028*	(0.017)
월평균 가구소득 (기준: 200만원 미만)	2분위	0	(0.019)	-0.001	(0.019)
	3분위	-0.008	(0.019)	-0.01	(0.019)
	4분위	-0.042**	(0.019)	-0.045**	(0.019)
	5분위	-0.056***	(0.021)	-0.06***	(0.021)
산업구분 (기준: 제조업)	도소매업	0.011	(0.022)	0.013	(0.022)
	음식숙박업	-0.02	(0.025)	-0.02	(0.025)
	기타업종	0.015	(0.017)	0.015	(0.017)
종사상 지위 (기준:임금 근로자)	고용주	0.04*	(0.023)	0.04*	(0.023)
	자영업자	0.143***	(0.018)	0.141***	(0.018)
	특고	0.336***	(0.019)	0.335***	(0.019)
5인미만 사업장		-0.085***	(0.016)	-0.083***	(0.016)
지역구분 (기준: 서울)	인천경기	-0.019	(0.016)	-0.018	(0.016)
	부산대구울산	-0.029	(0.018)	-0.028	(0.018)
	기타지역	-0.007	(0.016)	-0.007	(0.016)
읍면지역		-0.014		-0.013	(0.072)
_cons		0.06**	(0.030)	0.049	(0.031)
Observations		3563		3563	
R-squared		0.128		0.129	

*p<0.1, **p<0.05,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나. 사각지대 인식

아래 <표 5-35>는 연령집단과 긴급 지원 사각지대 인식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선형확률모형 분석을 실행한 결과이다. 종속변수인 사각지대 인식 여부는 본인이 코로나19 관련 긴급 지원에서 사각지대에 있다고 인식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기본모형에서는 연령집단에 따라 긴급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호작용모형에서는 중년 집단보다 청년집단의 사각지대 인식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 가구인 경우는 다인 가구보다 사각지대 인식에 처해 있다는 인식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나 소득이 높은 경우에도 사각지대에 처해 있다는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보다 고용주, 자영업자, 특고 종사자 모두 본인이 긴급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인식이 높았으며, 산업에서는 제조업보다 음식숙박업 및 기타업종 종사자의 경우 본인이 사각지대에 처해 있다는 인식이 낮았다. 지역은 서울보다 인천경기 및 기타지역에서 사각지대에 처해 있다는 인식이 낮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표 5-35〉 사각지대

변수명		기본모형		상호작용모형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연령집단 (기준: 중년)	청년	-0.002	(0.026)	-0.05*	(0.028)
	장년	0.08	(0.022)	0.01	(0.023)
	노년	-0.07	(0.035)	-0.02	(0.035)
1인 가구 여부		-0.05**	(0.025)	-0.08*	(0.047)
청년*1인				0.04	(0.056)
장년*1인				0.04	(0.054)
노년*1인				0.04	(0.099)
여성		0.013	(0.017)	0.011	(0.017)
대출		0	(0.020)	0.002	(0.020)
유배우		-0.072***	(0.025)	-0.055**	(0.026)
자녀 여부		0.025	(0.023)	0.024	(0.024)
월평균 가구소득 (기준: 200만원 미만)	2분위	0.006	(0.028)	0.005	(0.028)
	3분위	-0.03	(0.027)	-0.032	(0.027)
	4분위	-0.101***	(0.028)	-0.105***	(0.028)
	5분위	-0.1***	(0.030)	-0.105***	(0.030)
산업구분 (기준: 제조업)	도소매업	-0.03	(0.031)	-0.028	(0.031)
	음식숙박업	-0.067*	(0.036)	-0.067*	(0.036)
	기타업종	-0.076***	(0.023)	-0.076***	(0.023)
종사상 지위 (기준:임금 근로자)	고용주	0.165***	(0.033)	0.164***	(0.033)
	자영업자	0.057**	(0.026)	0.054**	(0.026)
	특고	0.114***	(0.027)	0.112***	(0.027)
5인미만 사업장		0.055**	(0.023)	0.059**	(0.023)
지역구분 (기준: 서울)	인천경기	-0.115***	(0.022)	-0.114***	(0.022)
	부산대구울산	-0.006	(0.026)	-0.006	(0.026)
	기타지역	-0.083***	(0.023)	-0.084***	(0.023)
읍면지역		-0.01	(0.030)	-0.011	(0.102)
_cons		0.581***	(0.043)	0.563***	(0.044)
Observations		3563		3563	
R-squared		0.056		0.056	

*p<0.1, **p<0.05,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다. 부정수급 인식

아래 <표 5-36>은 연령집단과 긴급 지원 부정수급 인식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선형확률모형 분석을 실행한 결과이다. 종속변수인 부정수급 인식 여부 변수는 코로나19 관련 긴급 지원의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이다. 기본모형에서는 연령집단이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상호작용 모형에서는 장년 집단이 중년 집단보다 유의하게 부정수급 인식이 높았으며, 상호작용 효과에서는 청년 1인 가구가 중년 1인 가구에 비해 유의하게 부정수급 인식이 낮았다. 이는 연령집단에 따라 긴급 지원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이 달라짐을 시사한다. 여성은 부정수급 인식이 더 높았다. 5분위를 제외하고 소득이 높은 경우에도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인식이 1분위에 비해 더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표 5-36〉 부정수급

변수명		기본모형		상호작용모형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연령집단 (기준: 중년)	청년	-0.05	(0.024)	0.04	(0.030)
	장년	0.01	(0.021)	0.08***	(0.024)
	노년	-0.01	(0.033)	-0.07*	(0.037)
1인 가구 여부		-0.049**	(0.024)	0.00	(0.049)
청년*1인				-0.12**	(0.059)
장년*1인				-0.01	(0.057)
노년*1인				0.02	(0.105)
여성		0.029*	(0.016)	0.029*	(0.016)
대졸		0.055***	(0.019)	0.054***	(0.019)
유배우		-0.056**	(0.024)	-0.06**	(0.025)
자녀 여부		-0.02	(0.022)	-0.017	(0.022)
월평균 가구소득 (기준: 200만원 미만)	2분위	0.051*	(0.026)	0.051*	(0.026)
	3분위	0.069***	(0.026)	0.068***	(0.026)
	4분위	0.061**	(0.026)	0.06**	(0.026)
	5분위	0.032	(0.029)	0.032	(0.029)
종사상 지위 (기준:임금 근로자)	고용주	-0.001	(0.030)	-0.001	(0.030)
	자영업자	0.004	(0.034)	0.005	(0.034)
	특고	0.024	(0.022)	0.024	(0.022)
산업구분 (기준: 제조업)	도소매업	-0.051*	(0.031)	-0.052*	(0.031)
	음식숙박업	-0.034	(0.024)	-0.033	(0.024)
	기타업종	-0.013	(0.026)	-0.013	(0.026)
5인미만 사업장		0.021	(0.022)	0.02	(0.022)
지역구분 (기준: 서울)	인천경기	0.028	(0.021)	0.027	(0.021)
	부산대구울산	0	(0.024)	0	(0.025)
	기타지역	-0.011	(0.022)	-0.011	(0.022)
읍면지역		-0.045	(0.029)	-0.045	(0.096)
_cons		0.683***	(0.041)	0.681***	(0.042)
Observations		3563		3563	
R-squared		0.016		0.016	

*p<0.1, **p<0.05,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제5절 소결

이 장의 목적은 코로나 전후로 연령집단에 따라 생활 변화와 긴급 지원 수급 경험, 그리고 긴급 지원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연령집단에 따라 서로 다른 노동시장 진입 및 생애주기를 경험하고 있어,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을 차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청년의 경우, 전반적으로 소득 수준은 낮으나 코로나 전후의 소득 변화를 크게 경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채의 측면에서는 청년이 중년보다 부채가 유의하게 많이 증가했다고 응답하였다. 청년층의 부채가 가장 많이 증가한 이유는 부채상환 외에 주거비(25.6%) 때문이다. 특히 주거비 부담의 경우, 장년(14.68%)과 중년(14.32%), 노년(13.7%)보다 약 10%포인트가량 높은 수준을 보인다. 또한,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면서 가장 부담되는 지출에서도 식료품 다음으로 청년은 주거비 부담이 높다고 응답해 주거비 관련한 지원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코로나19 이후 주관적 인식에서는 청년집단이 중년집단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우울감, 건강상 문제, 주변사람과의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지원제도에 대한 수급률은 지자체 긴급 지원금을 제외하고, 긴급복지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실업 및 고용 관련 지원에서 청년층의 수급이 더 높았다. 지자체의 긴급 지원제도의 경우, 청장년보다는 중년과 노년이 더 많이 수급했다. 이는 현재 긴급 지원이 일정 부분 청년층을 지원하는 기제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청년층의 사각지대 인식이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것도 이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부정수급 인식에 대해서는 장년층이 일관되게 다른 연령층에 비해 부

정적인 경향을 보여주는데, 이는 앞서 기술통계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직간접경험에서 비롯된 인식의 결과이기보다는 언론 등에서 접한 간접 정보에서 비롯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와 관련해 최근 청년 특별 대책에서 제안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실제 청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청년의 소비지출은 주거비 지출이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이고,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면서 주거비 지출이 높게 증가한 상황에서 주거비 부담을 감소시키는 정책적 대응은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발표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60%로 설정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중위소득 46%)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2021). 청년집단은 중·노년 집단보다 주거 마련 기회가 제한된 상황에서 임차 가구의 비중이 높고 주거비 부담이 크다는 것을 감안하여 보다 보편적 접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제6장

코로나19와 고용 지위 변화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종사상 지위 변화와 생활 변화

제3절 종사상 지위 변화와 긴급 지원

제4절 심층분석

제5절 소결

제 6장 코로나19와 고용 지위 변화

본 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로 노동시장에서 종사상 지위 변동을 경험했는지에 따라 집단 구분을 시도하고, 이들이 경험한 경제적·정서적·관계적 변화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소득·지출·부채와 같은 객관적 지표로 측정 가능한 가계 생활 변화와 더불어 주관적 응답에 기반한 우울감·스트레스·주관적 건강 상태 및 타인과의 관계 변화 등을 조사한다. 더 나아가 코로나19 전후로 종사상 지위를 유지한 집단과 지위가 하락한 집단 사이에서 재난지원금 수급과 긴급 지원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도 분석한다. 종사상 지위의 변화는 이중노동시장을 가정하여 내부 또는 외부 노동시장에서 코로나19 이후로 서로 간 이동이 있는지로 판단한다. 제1절에서는 개인의 종사상 지위가 유지, 상승 또는 하락했는지 분류를 시도한다. 이후 분석에서는 이렇듯 서로 다른 고용 지위 변화를 경험한 집단들을 대상으로 생활 변화 및 정부의 재난지원금 수급과 이에 대한 인식을 비교해본다.

제1절 분석 개요

1. 이중노동시장과 종사상 지위

이중노동시장은 분절적 노동시장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널리 사용되며,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 또는 기업 내부노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

으로 나누어진다(장지연, 정이환, 전병유, 이승렬, 조성재, 강성태, 2019). 이중노동시장 이론은 “노동시장이 고임금-고용안정의 1차 노동시장(내부노동시장)²⁷과 저임금-고용불안의 2차 노동시장으로 구분되고 서로 다른 조정 원리(할당과 경쟁)가 적용된다”고 설명한다(Doeringer & Piore, 1971; 전병유, 황인도, 박광용, 2018, p.2에서 재인용). 따라서 일반적으로 내부노동시장(또는 1차 노동시장)이 ‘좋은 일자리’로, 외부노동시장(또는 2차 노동시장)은 주변적인 일자리로 여겨진다. 세계화와 함께 유연화된 노동시장은 표준적 고용관계에서 배제된 취약한 노동자 집단을 양산하게 되었고, 현대의 이중노동시장이론은 이렇듯 취약한 주변 노동자를 설명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장지연 외, 2019). 표준적 고용관계란 ‘사회적으로 보편화된 제도나 규범의 적용을 받는 고용관계’를 말한다(장지연 외, 2019, p. 12). 예컨대 내부노동시장은 표준적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대기업 근로자, 정규직, 화이트칼라 종사자 등으로 대표되며, 외부노동시장 근로자로는 보편적 규범이 잘 적용되지 않는 서비스업 종사자, 판매원, 학습지교사,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준이 노동시장의 내부/외부를 구분하는 절대적인 방법은 아니며, 다양한 방식으로 이중노동시장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Rueda(2005)는 노동시장 지위 접근을 취하며 어느 한 시점의 고용상 지위를 바탕으로 내부자와 외부자 구분을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고용 보호를 받는 안정적인 고용상태를 누리는 정규직 노동자들은 내부자로 분류되는 반면 ‘실업자와 비정규직(비자발적인 기간제 노동자, 비자발적인 기간제 노동자들)은 외부자’로 분류될 수 있다(정승국, 2021, p. 8).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정승국(2021)은 내부자를 정규직으로, 외부자는

27) 이중노동시장은 ‘노동자를 시장의 경쟁으로부터 차단하여 보호하는 제도인 내부노동시장에 포함되느냐 여부’를 이중구조를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다(전병유, 황인도, 박광용, 2018. p.2).

비정규직과 실업자로 정의한 바 있다. 그의 분류 및 정의에 따르면 정규직은 '종사상 지위가 상용직, 고용관계가 직접고용, 근로시간 형태는 전일제, 근로계약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근로가 가능한 노동자'를 의미한다. 동시에 비정규직은 '종사상 지위가 임시일용직, 고용관계는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시간형태는 시간제, 근로계약 기간은 정해져 있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는 노동자'로 분류하였다(정승국, 2021, p. 9). 특히 중소기업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특히 취약한 한국 노동시장 특성을 고려하여 내부자를 대기업 정규직으로 한정하며, 종업원 규모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은 외부자에 포함하였다.

내부노동시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내부자/외부자의 추정 규모는 달라지겠지만, 기존 연구들은 우리나라에 이중화된 내부/외부 노동시장이 분명히 존재함을 실증적으로 규명해오고 있다(이호연, 양재진, 2017; 황수경, 2003). 본 연구 역시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이중구조로 분절된 것으로 가정하고, 코로나19 이후 내부노동시장에서 외부노동시장으로의 이동이 있었던 사람들을 찾아 이들의 생활 변화 및 긴급 지원 수급 관련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종사상 지위에 따라 내부자와 외부자를 구분한 다음, 고용 지위 변동이 있었는지를 다음과 같이 세 유형으로 다시 분류한다. 내부노동시장에 속했던 사람이 코로나19 이후 외부노동시장으로 이동했다면 고용 지위가 하락한 것으로, 반대로 외부노동시장에서 내부로 이동한 경우에는 노동 지위가 상승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동시에 코로나19 전후로 종사상 지위에 변동이 없다면 고용 지위를 유지한 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2. 종사상 지위 변화 측정

본 장에서 종사상 지위 변화는 ‘귀하의 현재 직업(종사상 지위)은 무엇인가요?’, ‘2019년 12월(코로나 이전)에도 귀하의 직업은 현재와 동일했나요?’, 동일하지 않았다면 ‘2019년에 귀하의 직업(종사상 지위)은 무엇이었나요?’의 세 문항을 활용하였다. 해당 문항에서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의 7개 항목으로 조사하였다.

전술하였듯이 서구 국가에서 노동시장 분절은 표준적 근로조건 밖에 있는 노동자(즉, 비정규 노동자)의 증가 현상을 가리킨다. 그래서 비정규직 여부에 관한 정보가 주어지는 경우 외부노동시장에 속하는 사람, 혹은 내부-외부 간 이동을 측정하는 것이 간단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분석에 활용하는 실태조사 자료는 비정규직 여부가 조사되지 않았고, 선행연구에서 비정규직 측정을 위해 고려한 고용계약 유형, 기업 규모, 사회보험 혜택 정보를 활용하는데도 제약이 있어 종사상 지위 변수만을 이용하여 고용 지위 변동을 추적한다. 즉, 상용직은 내부 노동시장에 속한 것으로, 임시/일용직은 외부노동시장에 속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실 한국 노동시장의 분절 양상은 상용-임시일용직 구분보다 더욱 복잡하여, 다른 종사상 지위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장지연 외, 2019). 이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비임금근로자를 분석에 포함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서구 노동시장과 다르게 자영업자 비중 상당히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금재호, 2012). 또한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는 서구와 비교했을 때 고학력의 비율이 낮고, 생계형 저학력 자영업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이들의 노동 지위가 선진국에 비해 열악하다는 것 또한 특징이다

(김우영, 2009, p. 240). 저임금노동-영세자영업-미취업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이 관찰된다는 것 또한 자영업자의 취약한 노동 경로를 반영하므로(장지연 외, 2019), 노동시장 내부와 외부 간 이동 분석에서 이들을 제외하는 것은 한계일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은 임금근로자들보다 비임금근로자 집단에 더 큰 충격이 되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포함한 지위 변동 분석이 중요하다. 결국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비임금근로자들도 분석에 포함하였다.

자영업자를 포함하려면 이들의 이질적 속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예컨대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학력 수준이 낮은 경향이 있지만, 고용주의 대졸자 비중은 높다(김우영, 2009). 고용주는 인적자본 수준이 높고 자본과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며, 고임금 상용직 근로자 간 지위 변동이 빈번하게 관찰되는 현상(금재호, 2009) 또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구분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구분하는 것으로 자영업자의 이질성을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고용주는 저임금 근로의 위험이 낮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된 비중이 상용직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관찰된다(노대명 외, 2020). 반면 자영업자는 고용주, 상용직보다 소득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가입 비율도 현저하게 낮았다(노대명 외, 2020, pp. 86-9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용주를 상용직과 유사하게 내부 노동시장에 속한 것으로, 고용주가 없는 자영업자를 외부 노동시장에 속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구분은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고용원이 있었던 자영업자(고용주)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변화한 것까지 추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자료로 활용하는 실태조사는 종사상 지위 범주로 특고/플랫폼노동자를 따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별도의

지정이 필요하다. 최근 연구들에서 정형화된 고용계약 방식을 벗어난 노동자들로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유형의 근로자에 대한 불안정성을 조명해오고 있으므로(김승래, 2021; 남재욱, 2021), 이들을 외부노동시장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요컨대 본 연구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논의를 바탕으로 내부/외부 노동시장 일자리를 구분하고 내부에서 외부로 이동한 경우, 또는 어떤 지위든 미취업으로 이동한 경우를 고용 지위가 하락한 것으로 정의한다. 고용 지위가 하락한 집단의 특성을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 고용 지위를 계속 유지하거나 상승한 집단도 비교집단으로 함께 설정하였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 내부 노동시장에서 고용 지위가 유지된 사람은 ‘내부 유지’, 외부노동시장에서 지위 변동이 없었던 사람은 ‘외부 유지’로 각각 구분하였다. 외부노동시장에서 내부노동시장으로 이동한 경우, 혹은 미취업에서 취업으로 이동한 경우는 고용 지위가 상승한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측정한 고용 지위 변동은 <표 6-1>과 같이 요약된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 계속 미취업(실업 또는 비경제활동)으로 응답한 사람들은 분석 기간 중 근로 경험이 없어 본 연구의 관심 대상이 아니므로 분석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표 6-1> 종사상 지위 변화 정의 및 측정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	내부	외부	미취업	
				실업	비경제활동
내부 (상용직, 고용주)		내부유지	하락	하락	하락
외부 (임시일용, 자영업, 특고/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상승	외부유지	하락	하락
미취업	실업	상승	상승	-	하락
	비경제활동인구	상승	상승	-	-

자료: 저자 작성

종사상 지위 변수만 이용하여 내부/외부 노동시장을 구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다른 연구들에서는 노동시장의 외부자를 구분할 때 기업 규모나 고용계약 유형, 임금,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도 함께 고려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고임금 노동자들이 대체로 정규직이고, 사회보험 가입률이 높고, 저임금은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은 비정규직이라는 점에서(이호연, 양재진, 2017) 정규직/비정규직의 구분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

데이터의 제약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보험과 임금, 정규/비정규 고용 형태 등 고용의 질적인 측면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약이 있음을 밝힌다. 또한 상용직과 고용주가 이질성이 있는 것 역시 한계일 수 있다. 그러나 내부/외부 노동시장 일자리를 동질적으로 구성하여 이들의 규모를 정확하게 추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 지위가 악화된 집단을 찾기 위한 목적의 분류이므로, 데이터의 제약하에서 변동을 포착하기에 단순하고 적절한 접근이라고 판단된다.

몇 가지 제약점이 있긴 하지만, 위와 같은 방식의 고용 지위 변화 분류는 코로나19 전후로 서로 다른 노동 경로를 지닌 집단들 사이의 생활 변화 및 재난지원금 수급을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다음에서는 종사상 지위 변화를 토대로 정의된 내부 유지, 외부 유지, 고용 지위 상승, 고용 지위 하락 집단을 분석자료로부터 도출해보고 각 집단의 규모와 속성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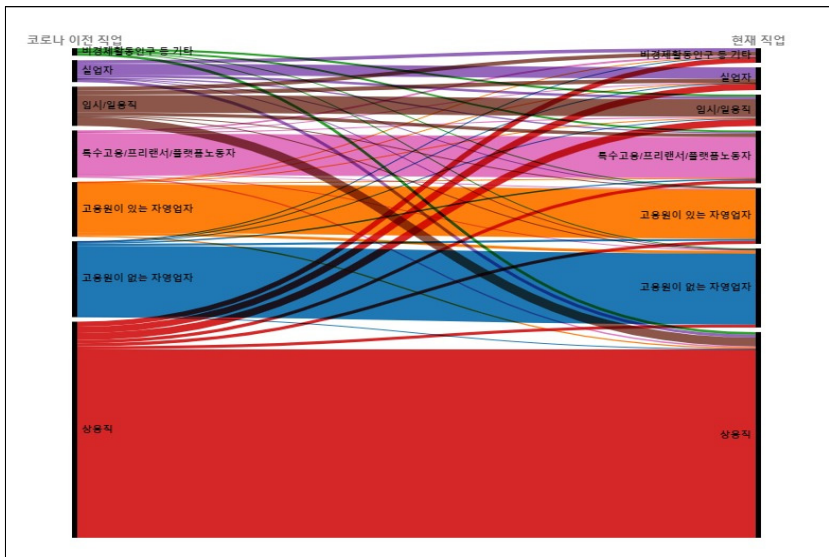
3. 종사상 지위 변화 현황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에서 조사 완료된 응답자 중 코로나 전후로 계속 미취업 상태였던 사람과 70세 이상 인구를 제외하고 3,876명이 분석 대상으로 포함되었다.²⁸⁾ 아래 그림은 코로나 전후로 종사상 지위 변

화를 요약해주는 생키 다이어그램(sankey diagram)이다. 두 시점 모두 상용직 비중이 가장 높고, 고용주와 자영업자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전후로 계속 미취업인 사람은 분석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 및 실업자 비중이 전체 조사 완료 표본에 비해 낮을 수 있다.

먼저 아래 그림에서 코로나 이전 상용직이었던 사람이 코로나 이후 임시/일용,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으로 이동한 것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상용직 일부는 자영업 또는 고용주로 종사상 지위가 변했다. 임시/일용에서 상용직으로의 이동 또한 관찰된다.

[그림 6-1] 종사상 지위 변화 요약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28) 본 장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 충격이 자영업자들에게 컸고, 중고령 자영업자들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분석 대상을 70세 미만으로 확대하였다. <부표 3-2>에 제시된 바와 같이, 60세 미만과 70세 미만으로 분석 대상을 각각 다르게 적용해도 노동 지위 변화는 큰 차이가 없지만, 70세 미만 표본에서 상용직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자영업자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6-1〉의 정의에 따라 종사상 지위 변화를 경험한 집단을 유형화한 결과는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코로나 전후로 내부 또는 외부노동시장에서 고용을 유지한 집단이 다수를 차지한 가운데(각각 52.32%, 32.12%), 전체 분석 표본의 9.34%는 고용 지위가 하락하였고, 6.22%는 고용 지위가 상승한 것으로 분류되었다.

코로나 이전 종사상 지위별로 변화를 추적해보면, 임시/일용근로자 중에서 고용 지위가 하락한 집단의 비중이 20.67% 가장 높게 확인된다. 임시/일용근로자의 경우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으로의 이동이 고용 지위 하락으로 측정된 것을 고려하면, 사회적 재난과 함께 고용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노동시장을 떠나게 되는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상용직 근로자도 11.37%는 코로나19 이후 내부노동시장을 벗어나며 고용 지위가 악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영업자 중에서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7.86%가 코로나 이후 노동시장 지위가 악화되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중에서 ‘하락’으로 분류된 사람은 거의 드물고 대부분 외부노동시장에서 종사상 지위를 유지했다. 코로나로 인한 노동시장 충격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더욱 컸음을 시사한다.

〈표 6-2〉 코로나 이전 종사상 지위별 집단 구분 결과

(단위: 명, %)

코로나 이전 지위		내부유지	외부유지	상승	하락	Total
상용직	N	1,606	-	-	206	1,812
	%	88.63	-	-	11.37	100
임시/일용직	N	-	180	81	68	329
	%	-	54.71	24.62	20.67	100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	N	422	-	-	36	458
	%	92.14	-	-	7.86	100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	N	-	609	21	6	636
	%	-	95.75	3.3	0.94	100
특수고용/프리 랜서/플	N	-	361	17	17	395
	%	-	91.39	4.3	4.3	100
실업자	N	-	95	60	29	184
	%	-	51.63	32.61	15.76	100
비경제활동인구	N	-	-	62	-	62
	%	-	-	100		100
Total	N	2,028	1,245	241	362	3,876
	%	52.32	32.12	6.22	9.34	100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표 6-3〉은 집단별 인적 특성과 거주지역별 분포를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먼저 성별 비중을 비교해보면, 내부 유지, 외부 유지, 상승 집단에서 남성의 비중이 더 높고, 하락 집단에서 여성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 충격에서 여성이 더욱 취약했음을 시사한다.

학력의 경우 내부 유지와 상승 집단에서 석박사 이상 및 대졸 집단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외부 유지 집단에서는 고졸 이하 집단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확인된다.

혼인상태별로 비교해보면, 내부 유지 집단에서는 유배우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상승 집단에서는 미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반면에 외부 유지 및 하락 집단에서는 미혼과 이혼/사별 집단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지역별로 차이를 보면, 내부 유지 집단에서는 동 지역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외부 유지와 하락 집단에서는 읍면 지역 거주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6-3〉 종사상 지위 변화 집단별 인적·지역 특성 비교

(단위: %, 명)

구분		내부유지	외부유지	상승	하락	전체
성별	남성	59	56.22	53.11	45.3	57
	여성	40.68	43.78	46.89	54.7	43
학력	고졸이하	20.36	34.78	24.48	27.35	25.9
	대졸	70.17	60.16	67.63	66.02	66.41
	석사이상	9.47	5.06	7.88	6.63	7.69
혼인상태	미혼	29.04	41.45	53.53	41.16	35.68
	유배우	67.85	49.08	41.08	51.66	58.64
	이혼/사별	3.11	9.48	5.39	7.18	5.68
권역구분	서울	24.46	21.69	19.5	25.97	23.4
	인천경기	30.37	28.59	34.02	29.56	29.95
	부산대구울산	15.98	16.71	20.75	18.51	16.74
	기타지역	29.19	33.01	25.73	25.97	29.9
지역구분	동지역	92.7	89.88	92.12	90.33	91.54
	읍면지역	7.3	10.12	7.88	9.67	8.46
전체 (N)		100 (2,028)	100 (1,245)	100 (241)	100 (362)	100 (3,876)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집단별로 연령과 가구원 수에서 차이 또한 관찰된다. 상승 집단의 평균 연령이 가장 낮고, 외부 유지 집단의 평균 연령이 가장 높고, 그 뒤를 이어 하락 집단의 연령이 높다. 평균 가구원 수를 비교해보면, 내부 유지 집단이 3.02명으로 다른 집단보다 가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확인된다.

〈표 6-4〉 종사상 지위 변화 집단별 평균 연령, 가구원 수 비교

(단위: 세, 명)

		내부유지	외부유지	상승	하락	전체
연령	평균	46.08	47.57	40.24	46.65	46.25
	표준편차	11.86	13.44	12.89	13.70	12.74
가구원수	평균	3.02	2.57	2.75	2.80	2.84
	표준편차	1.23	1.25	1.36	1.21	1.26
N		2,028	1,245	241	362	3,876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가구 구성에 따른 차이를 비교해보면(〈표 6-5〉), 전체적으로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가운데, 외부 유지와 상승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1인 가구의 비중이 더 높다. 또 외부 유지와 하락 집단에서 부부 2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 밖에도 내부 유지 집단에서 한부모가구의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이 두드러진다.

〈표 6-5〉 종사상 지위 변화 집단별 가구 구성 비교

(단위: 명, %)

가족 구성	내부유지	외부유지	상승	하락	Total
1인 가구	15.63	25.78	24.9	17.4	19.63
부부 2인	11.98	16.22	10.79	16.57	13.7
부부 2인+자녀	59.71	41.2	45.23	44.2	51.42
한부모+자녀	4.78	8.51	8.3	10.77	6.76
조부모+ 부모+자녀	4.14	2.01	3.32	2.76	3.28
조부모+ 손자녀	0.25	0.56	0	0.28	0.34
조부모+ 한부모+자녀	0.35	0.4	0.83	0.55	0.41
기타	3.16	5.3	6.64	7.46	4.46
전체 (N)	100 (2,028)	100 (1,150)	100 (241)	100 (144)	100 (3,563)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종사상 지위 변화를 경험한 서로 다른 집단은 일하는 사업장 규모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표 6-6〉).²⁹⁾ 내부 유지와 상승 집단에서 5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율이 75%를 넘고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비율은 낮다. 반면 하락 집단의 절반 정도와 외부 유지 집단의 65% 정도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9) 분석에 활용한 실태조사는 코로나19 이전 일자리의 사업장 규모를 질문하지 않았고, 현재 일자리에 대한 사업장 규모만 조사하였다. 따라서 여기서 조사된 사업장 규모는 현재 일자리를 의미한다. 해당 문항에 응답한 사람들만 분석에 포함하면서 유효케이스 수가 전체 분석 표본 수보다 감소하였다.

〈표 6-6〉 종사상 지위 변화 집단별 현재 사업장 규모 분포 비교

(단위: %, 명)

	내부유지	외부유지	상승	하락	전체
5인 미만	20.32	64.61	24.9	50	36.12
5인 이상	79.68	35.39	75.1	50	63.88
전체 (N)	100 (2,028)	100 (1,150)	100 (241)	100 (144)	100 (3,563)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지금까지 코로나 전후로 노동시장에서 종사상 지위를 유지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이 서로 다른 속성을 지녔음을 이해했다. 이어지는 분석에서는 사회적 재난과 함께 서로 다른 노동시장을 경험한 집단들이 경제적 측면과 정서적, 관계적 측면에서도 서로 다른 생활 변화를 경험했는지, 노동시장 지위 변동에서 더욱 취약성을 보인 집단이 긴급 지원을 수급했는지, 이들의 긴급 지원에 대한 사각지대 및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를 심층적으로 다룬다.

제2절 종사상 지위 변화와 생활 변화

1. 소득·지출·부채 변화

이 절에서는 사회적 재난의 여파로 노동시장에서 지위 변동을 경험한 사람들에 초점을 맞추어 개인 소득, 가구소득, 가구지출, 가구 부채 상황 및 가구의 건강 상태, 돌봄 여건, 정서 상태, 타인과의 관계 변화 등 전반적인 생활 변화를 살펴본다.

먼저 아래 〈표 6-7〉은 코로나19 이전(2019년)과 비교할 때 코로나19

이후(2020년)에 개인 소득과 가구소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종사상 지위 변화 집단별로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전체 분석 대상 중에서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집단별로 개인 소득 감소 비율보다 가구소득 감소 응답 비율이 소폭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내부 유지 집단에서 소득감소 비율이 개인 소득과 가구소득 모두 절반 이하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하락 집단의 경우 모두 각 수치가 80% 이상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외부 유지 집단의 경우 하락 집단보다 소득이 감소한 비율은 낮지만 거의 70%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소득감소 폭은 알 수 없지만, 고용 지위가 하락한 집단과 외부노동시장에 남아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소득감소가 만연했음을 시사한다. 노동시장 여건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지위가 상승한 것으로 분류된 집단도 소득감소를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집단에서도 상당수가 소득감소를 보고했는데, 54.36%는 개인 소득의 감소에, 59.34%는 가구소득의 감소에 응답했다.

분석 대상 중 코로나19 이전의 개인 소득을 유지한 사람은 37% 수준이며, 이전과 같은 수준의 가구소득을 유지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35% 정도로 나타났다. 내부 유지 집단의 경우 전체 평균보다 다소 높은 48.57%, 44.48%가 각각 개인 소득, 가구소득을 유지했다. 반면, 하락 집단의 경우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5% 정도만 이전의 소득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하락 집단은 노동시장에서 지위 변동의 충격으로 인해 이전 소득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다수가 소득감소의 위험에 빠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6-7〉 종사상 지위 변화 집단별 소득 변화

(단위: 명, %)

소득 변화		내부유지	외부유지	상승	하락	Total	
개인 소득	증가	N	180	60	53	8	301
		%	8.88	4.82	21.99	2.21	7.77
	감소	N	863	849	131	297	2,140
		%	42.55	68.19	54.36	82.04	55.21
	유지	N	985	336	57	57	1,435
		%	48.57	26.99	23.65	15.75	37.02
	Total	N	2,028	1,245	241	362	3,876
		%	100	100	100	100	100
	Chi2		401.2194***				
	가구 소득	증가	N	171	51	40	9
%			8.43	4.1	16.6	2.49	6.99
감소		N	955	867	143	297	2,262
		%	47.09	69.64	59.34	82.04	58.36
유지		N	902	327	58	56	1,343
		%	44.48	26.27	24.07	15.47	34.65
Total		N	2,028	1,245	241	362	3,876
		%	100	100	100	100	100
Chi2		297.3773***					

*p<0.1, **p<0.05,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실태조사에서 가구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득이 줄어든 이유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하였다. 아래 〈표 6-8〉은 이들이 1순위로 응답한 이유를 관심 집단별로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먼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이유로는 매출 감소가 꼽혔다. 매출 감소는 내부 유지(47.12%), 외부 유지(56.86%), 상승(32.17%) 집단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으며, 집단 전체에서도 46.15%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반면에 하락 집단에서는 실직(35.35%)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매출 감소(18.52%)는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다음으로 근로시

간 감소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는데, 각 집단에서 고르게 약 17~23%의 비율을 차지했다. 직장 또는 사업장 휴업 또한 각 집단별로 약 7~14%의 응답률을 보여,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6-8〉 가구소득이 줄어든 이유 1순위

(단위: %)

	내부유지	외부유지	상승	하락	Total
직장 또는 사업장 폐업	3.98	3.34	15.38	13.13	5.66
직장 또는 사업장 휴업	14.03	10.84	12.59	7.74	11.89
매출 감소	47.12	56.86	32.17	18.52	46.15
임대수입 감소	3.77	3.46	1.4	1.68	3.23
근로시간 감소	23.25	17.3	20.28	17.17	19.98
임금 체불	0.84	0.23	1.4	0.67	0.62
유급/무급 휴직	5.03	1.27	6.29	5.72	3.76
실직	1.99	6.69	10.49	35.35	8.71
Total	100	100	100	100	100
Chi2	490.38***				

*p<0.1, **p<0.05,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아래 〈표 6-9〉에는 코로나 전후로 지출 항목별 비중 변화에 집단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항목만 제시되었다. 즉, 식료품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사회보험료, 부채상환, 저축 관련 지출 비중 변화에서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결과에 따르면, 모든 집단에서 세금/사회보장, 부채상환 항목에서 지출이 증가했지만, 기타소비지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집단간 지출 비중 변화량에는 통계적 차이가 있다.

식료품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저축 항목은 집단별로 증가/감소의 양상이 다소 다르다. 예컨대, 식료품비 지출 비중의 경우 내부 유지 집단에서 코로나 이후로 증가했지만, 나머지 세 집단에서는 감소했다. 또한 상승 집단은 의료비 비중 감소와 함께 교통비, 통신비의 증가를 경험했지만, 이와는 반대로 나머지 세 집단에서 의료비는 증가했고 교통비, 통신비 비중이 감소했다.

이 밖에도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수준에서 모든 집단의 주거비 지출 비중이 증가했고 교육비, 기타 소비지출은 감소한 것이 확인되었다.

〈표 6-9〉 코로나 전후 증상상 지위 변화 집단별 지출 변화

(단위: %, %p)

		내부유지	외부유지	상승	하락	F
식료품	코로나 이전	24.13	26.92	28.63	28.48	16.09
	코로나 이후	24.70	26.33	27.96	26.84	5.32
	차이	0.57	-0.59	-0.67	-1.64	8.85***
의료비	코로나 이전	6.27	6.93	5.99	7.34	6.03
	코로나 이후	6.74	7.55	5.65	8.95	15.46
	차이	0.47	0.62	-0.34	1.62	10.49***
교통비	코로나 이전	7.30	7.50	7.58	7.94	1.62
	코로나 이후	7.03	7.08	7.62	6.79	1.22
	차이	-0.27	-0.42	0.05	-1.15	5.81***
통신비	코로나 이전	6.45	7.05	6.91	7.53	7.15
	코로나 이후	6.46	7.07	6.04	7.59	8.97
	차이	0.02	0.02	-0.87	0.06	4.80***
세금/ 사회보 협료	코로나 이전	8.37	8.30	6.80	7.68	4.70
	코로나 이후	8.56	9.01	7.31	8.24	4.04
	차이	0.20	0.71	0.51	0.56	3.23**
부채 상환	코로나 이전	5.39	5.30	5.26	4.54	0.98
	코로나 이후	6.88	7.84	6.97	6.22	2.65
	차이	1.49	2.54	1.71	1.68	4.70***
저축	코로나 이전	12.99	9.93	9.78	9.04	20.72
	코로나 이후	11.81	8.47	9.99	8.80	19.22
	차이	-1.19	-1.46	0.21	-0.25	4.26***

*p<0.1, **p<0.05, ***p<0.01

주: 코로나 전후 집단별 변화값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지출 항목만 제시함.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아래 <표 6-10>은 코로나 이후 가장 부담되는 지출 1순위에 대한 응답 비율을 비교하고 있다. 내부 유지 집단은 상대적으로 식료품, 교육비, 부채상환에 대한 지출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외부 유지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눈에 띄게 높은 응답률을 보이는 지출 항목은 없으나, 상승/하락 집단보다 식료품비와 부채상환에 대한 부담을 더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상승 집단은 다른 세 집단보다 주거비, 교통비, 기타 소비지출이 부담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하락 집단의 경우 '유지' 집단보다 주거비 부담의 비중이 더 크고, 의료비, 통신비, 세금·사회보험료, 가구 간 이전 지출 항목에서 부담된다는 비율도 가장 높았다. 요컨대 다수가 소득감소를 경험한 하락 집단에게서 생활비 지출에 대한 어려움 또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보고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표 6-10> 종사상 지위 변화 집단별 코로나 이후 가장 부담되는 지출 비교

(단위: %)

	내부유지	외부유지	상승	하락	전체
식료품	36.59	36.14	33.61	31.22	35.76
주거비	10.5	15.98	19.09	17.96	13.49
교육비	7.3	4.34	3.32	3.31	5.73
의료비	6.61	7.23	6.22	10.22	7.12
교통비	3.16	3.45	4.56	2.49	3.28
통신비	3.7	2.33	4.15	4.42	3.35
기타소비지출	2.81	2.73	4.56	2.49	2.86
세금·사회보험료	11.24	11.65	9.54	12.15	11.35
이전지출	1.97	1.2	2.07	2.76	1.81
부채상환	12.23	11.73	11.2	9.12	11.71
저축 등	3.9	3.21	1.66	3.87	3.53
Total	100	100	100	100	100
Chi2	81.011***				

*p<0.1, **p<0.05,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아래 <표 6-11>, <표 6-12>는 코로나 이후로 가구의 부채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부채가 증가한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를 각각 보여주고 있다.

먼저 <표 6-11>에 따르면, 전체 분석 대상 중에서 코로나 이후 부채 수준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부채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30% 수준으로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종사상 지위 변화에 따라 구분한 집단별로 부채변화도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된다. 내부 유지 집단에서 부채가 증가한 비율이 28.06%로 가장 낮고, 외부 유지 집단에서 부채증가 비율이 32.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가 하락한 집단도 31.77%로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부채 증가 경험을 나타냈다.

<표 6-11> 종사상 지위 변화 집단별 부채변화

(단위: %)

부채 변화	내부유지	외부유지	상승	하락	Total
증가	28.06	32.93	32.78	31.77	30.26
감소	12.43	9.64	19.09	16.3	12.31
변화 없음	59.52	57.43	48.13	51.93	57.43
Total	100	100	100	100	100

Chi2 34.9506***

*p<0.1, **p<0.05,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내부 유지 집단을 제외하고 다른 세 집단은 30% 수준에서 유사한 비율로 부채의 증가를 경험했는데, 이들 사이에서 부채의 증가를 초래한 주된 이유는 다소 상이하다. 다른 집단과 비교했을 때 종사상 지위가 하락한 집단의 부채 상승 이유는 주로 식료품과 주거비 지출 비중 증가로부터 기인하는 반면, 내부 유지 집단은 교육비 지출로 인해 부채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선 분석 결과에서 내부 유지 집단이 상대적으로 교육비 지출을 더 많이 하면서 지출 부담도 더 많이 느꼈다는 것을 상기하면(〈표 6-9〉), 이 집단에서 교육비의 무게감이 상당함을 짐작할 수 있다. 외부노동시장 유지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채상환에 대한 응답이 높고, 상승 집단에서는 세금 및 사회보험 부담으로 인한 부채의 증가 응답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표 6-12〉 집단별 부채증가 이유

(단위: %)

부채 변화	내부유지	외부유지	상승	하락	Total
식료품	13.88	19.27	17.72	22.61	16.88
주거비	16.70	16.59	18.99	23.48	17.48
교육비	8.08	3.17	1.27	3.48	5.46
의료비	6.50	5.12	3.80	6.09	5.80
교통비	2.28	1.46	0.00	0.87	1.71
통신비	0.70	0.73	0.00	0.87	0.68
기타소비지출	1.23	2.20	0.00	1.74	1.53
세금·사회보험료	10.02	9.02	18.99	7.83	10.06
가구간이전지출	2.11	1.46	0.00	1.74	1.71
부채상환	36.03	40.24	37.97	30.43	37.08
저축	2.46	0.73	1.27	0.87	1.62
Total	100	100	100	100	100
Chi2	48.7579**				

*p<0.1, **p<0.05,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2. 주관적 생활 변화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는 소득·지출·부채 변화뿐만 아니라 가구의 전반적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돌봄 부담, 우울감, 스트레스, 갈등, 자살 충동이 코로나 이후로 증가하였는지 그 수준도 질문하였다.

아래 표는 영역별 평균 점수를 집단별로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조사되었고 각각 1~4의 값으로 코딩되었다. 따라서 문항별 평균 점수를 구하면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에서 어려움이 더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래 <표 6-13>은 코로나 이후 생활 변화에 관해 조사된 7개 영역에 대해 집단별 평균을 제시하고 있다. 집단별 평균 차이 검정 결과에서 보듯이 모든 영역에서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점은 종사상 지위가 하락한 집단에서 ‘주변 사람과 갈등 증가’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평균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특히 하락 집단에서 경제적 어려움 증가와 스트레스 증가 영역의 평균 점수가 3점 이상으로 높은데, 이들 집단이 경제적·정서적 측면에서 모두 취약함을 짐작하도록 해준다.

<표 6-13> 코로나19 이후 생활 변화

(단위: 점)

	내부유지	외부유지	상승	하락	Total	F
경제적 어려움 증가	2.62	2.93	2.84	3.09	2.78	58.15 ***
나와 가족의 건강상 문제 발생	2.23	2.25	2.42	2.45	2.27	11.02 ***
가족 돌봄의 부담 증가	2.49	2.42	2.61	2.66	2.49	9.19 ***
우울감 증가	2.70	2.74	2.84	2.92	2.74	8.8 ***
스트레스 증가	2.93	3.02	3.02	3.10	2.98	7.36 ***
주변사람들과의 갈등 증가	2.25	2.31	2.49	2.42	2.30	10.25 ***
자살 충동 증가	1.98	2.01	2.17	2.26	2.03	14.75 ***

*p<0.1, **p<0.05,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지금까지 분석을 통해 코로나 이후 종사상 지위가 하락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확인하였다. 이들 집단에서 소득감소를 경험한 비중은 80% 이상으로 상당히 높고, 경제적 어려움이 증가하였다는 데 동의하는 수준도 가장 높았다. 이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지위가 하락한 이 집단이 주관적 건강 상태가 가장 나쁘고, 주변 사람과 갈등 수준도 높으며, 우울감과 스트레스 정도 또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 충격에 따라 지위 하락을 경험한 사람들이 전반적인 생활 영역에서 높은 취약성을 나타내므로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다음 절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와 지자체의 긴급 지원이 노동시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은 하락 집단에 적절한 도움을 주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제3절 종사상 지위 변화와 긴급 지원

1. 긴급 지원 수급 현황

긴급 지원 실태조사에서 재난지원금 수급 여부와 관련하여 총 11개 유형의 지원금을 조사하였다. 이 중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분석 대상의 수급 비율이 100%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 절의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가 분석한 10가지 유형의 재난지원금 목록과 집단별 수급 비율은 아래 <표 6-14>에 제시되어 있다.

실업·고용 관련 지자체 지원금을 제외하면 모든 유형의 재난지원금 수급에 집단별 차이가 확인된다. 전반적으로 외부 유지 집단에서 전체 평균보다 높은 재난지원금 수급률을 보이고, 종사상 지위가 하락한 집단은 다

른 집단에 비해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지원 혜택을 받은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강조하고 싶은 점은, 하락 집단은 코로나와 함께 노동의 불안정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고용 관련 지원금의 대상에서도 대부분 배제되었다는 것이다. 예컨대 하락 집단의 고용안정자금 수급 비율은 내부노동시장에서 지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한 집단의 수급 비율인 4%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하락 집단에서 소득감소를 경험한 비중이 80% 이상인 점을 다시 상기할 때, 이들은 코로나와 함께 노동 지위 감소, 소득감소, 재난지원금의 배제 등 복합적인 불이익에 노출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6-14〉 긴급 지원 유형별 수급 비율

(단위: %)

		내부 유지	외부 유지	상승	하락	Total	Chi2
일 반 국 민 대 상	보육료	15.53	7.15	10.79	5.52	11.61	67.78 ***
	통신료지원	49.75	54.3	60.58	59.94	52.84	21.94 ***
	지자체지원금	42.55	52.13	48.55	43.09	46.05	30.37 ***
	긴급복지	6.85	8.84	9.13	5.52	7.51	7.37 *
소 상 공 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4.94	29.4	13.28	10.77	19.09	129.71 ***
	임대료지원	6.07	4.42	5.81	3.87	5.31	5.88
	소상공인지자체 지원	8.73	12.85	9.96	7.46	10.01	17.48 ***
실 업 · 고 용 관 련	청년특별구직	4.64	5.46	8.71	4.42	5.13	8.03 **
	고용안정자금	4.09	16.87	10.37	3.87	8.57	10.01 **
	고용관련지자체 지원	4.59	5.86	7.05	4.7	5.16	4.55

*p<0.1, **p<0.05,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국가나 지방정부로부터 받은 재난지원금은 집단별로 다른 곳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내부 유지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평소보다 생활비 지출에 사용했다는 응답 비율이 높지만, 외부 유지 집단은 주거비에 사용했다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상승 집단의 경우 대출이나 빚 상환 또는 공과금 납부를 위해 사용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하락 집단은 ‘목돈이 들어 평소에 쓰지 못하던 곳에 지출’했다는 비중이 다른 집단보다 높은 것이 특징이다. 집단별로 변화된 생활 여건에 따라 각각 다른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6-15〉 긴급 지원 사용처

(단위: %)

	내부 유지	외부 유지	상승	하락	Total
저축, 투자	5.57	4.18	6.64	4.7	5.11
대출이나 빚 상환	14.69	17.03	20.33	16.02	15.92
주거비	8.43	13.09	10.37	9.39	10.14
공과금 납부	12.62	15.1	18.67	14.09	13.93
평소보다 생활비 지출	45.17	36.22	31.12	39.23	40.87
목돈이 들어 평소에 쓰지 못하던 곳에 지출	13.51	14.38	12.86	16.57	14.04
Total	100	100	100	100	100
Chi2	58.3595***				

*p<0.1, **p<0.05,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2. 긴급 지원에 대한 인식

종사상 지위가 하락한 집단이 긴급 지원의 사각지대에 속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외부 유지, 상승 집단 순서로 사각지대 인식 비율이 높으며, 내부노동시장에서 지위를 유지한 집단의 사각지대 인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가 하락한 집단이 사회적 재난의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충격을 가장 크게 받은 집단이라고 할 수 있으나, 위의 결과에서 보듯이 여러 유형의 긴급 지원에서 수혜 대상이 되지 못하면서 사각지대 인식 또한 높게 나타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6-16〉 긴급 지원 사각지대 인식

(단위: %)

	내부유지	외부유지	상승	하락	Total
그렇다	33.38	43.86	43.15	52.76	39.16
아니다	66.62	56.14	56.85	47.24	60.84
Total	100	100	100	100	100
Chi2	69.6562***				

*p<0.1, **p<0.05,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긴급 지원 실태조사는 코로나19 긴급 지원에 대한 평가를 묻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즉 해당 문항에 대해 점수가 낮을수록 각 질문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고 높은 점수는 긍정적인 평가를 의미한다.

아래 〈표 6-17〉은 관심 집단별로 평균 점수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

며, 모든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별 인식 차이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종사상 지위가 하락한 집단의 평균 점수가 모든 영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는 종사상 지위가 하락한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전반적으로 긴급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이 집단에서 비교적 평균 점수가 높았던 문항은 ‘필요한 곳에 사용 가능’, ‘신청 절차의 간편함’이었다. 반면에 하락 집단에서 ‘필요한 양만큼 지원받음’ 문항의 평균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들이 재난지원금 수급 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피해 극복에 필요한 수준의 지원도 받지 못하였다는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다른 집단들 역시 재난지원금의 지원 양에 대한 항목의 평균 점수가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다른 평가 항목보다 지원 금액에 대한 상대적 만족도가 낮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6-17〉 코로나19 지원금에 대한 평가

(단위: 점)

	내부유지	외부유지	상승	하락	F
신청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었음	2.87	2.85	2.83	2.66	6.8***
신청 절차가 간편함	2.97	2.90	2.88	2.80	5.7***
필요한 때에 지원 이루어짐	2.70	2.80	2.72	2.55	9.44***
필요한 곳에 사용 가능	2.98	2.99	3.00	2.84	3.7**
필요한만큼 지원 받음	2.40	2.40	2.48	2.28	2.86**
가계에 도움이 됨	2.97	2.98	2.95	2.79	5.51***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됨	2.97	2.96	3.00	2.80	4.55***
국가 경제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됨	2.91	2.93	2.97	2.66	11.54***
코로나19 방역에 도움이 됨	2.66	2.73	2.71	2.56	3.84***

*p<0.1, **p<0.05,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3. 긴급 지원 부정수급 인식

코로나19 관련 긴급 지원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한 정도는 ‘전혀 없음’, ‘별로 없음’, ‘약간 있음’, ‘많이 있음’의 4점 척도로 조사했다. 종사상 지위가 하락한 것으로 분류된 집단에서 부정수급이 ‘전혀 없음’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고, 동시에 ‘매우 많음’으로 응답한 비율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당 문항의 평균 점수 또한 하락 집단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런 결과는 종사상 지위가 하락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우리 사회에 긴급 지원 관련 부정수급이 더욱 만연하다는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6-18〉 부정수급 인식

(단위: %, 점)

	내부유지	외부유지	상승	하락	Total
전혀 없음	3.3	2.97	3.32	1.66	3.04
별로 없음	23.18	28.11	21.99	25.97	24.95
약간 있음	52.96	50.52	56.85	49.17	52.06
매우 많음	20.56	18.39	17.84	23.2	19.94
Total	100	100	100	100	100
평균점수	2.91	2.84	2.89	2.94	2.89
F	2.52*				

*p<0.1, **p<0.05,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제4절 심층분석

1. 모델설명

본 절에서는 앞서 기술통계로 제시한 여러 변수의 관계를 요약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코로나 전후로 종사상 지위 변화를 경험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다항로짓 분석을 시작으로, 종사상 지위 변화가 소득감소와 부채증가에 미친 영향, 긴급 지원 수급 여부에 미친 영향, 그리고 긴급 지원에 대한 사각지대 및 부정수급 인식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일련의 프로빗 분석을 실행한다. 프로빗 분석에는 서로 다른 종속변수를 활용하지만, 독립변수(종사상 지위 변화 집단)와 통제변수는 같다. 분석에 활용된 변수에 대한 설명과 구체적인 측정 방법은 <표 6-19>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대상은 코로나 전후로 근로 경험이 있는 70세 미만 인구로, 최종 분석에 3,563명이 포함되었다.

238 사회보장 분야 사각지대 축소 및 부정정지출 관리 방안 연구-긴급 지원을 중심으로

〈표 6-19〉 회귀분석 변수 설명 및 측정

구분	변수 설명	측정
종속 변수	소득감소 여부	소득 증가 및 변화 없음=0, 소득 감소=1
	부채증가 여부	부채 증가 및 변화 없음=0, 부채 감소=1
	긴급 지원 수혜 여부	조사된 재난지원금 10개 유형 중 하나도 받지 못한 경우=0, 어느 하나라도 받은 경우=1
	긴급 지원 사각지대 여부	코로나19 관련 정부 긴급 지원에서 자신이 사각지대에 있지 않 다고 응답한 경우=0,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1
	긴급 지원 부정수급 인식 여부	코로나19 관련 긴급 지원에서의 부정수급 발생 정도에 전혀없음/별로없음=0, 약간있음/매우많음=1
설명 변수	종사상 지위 변화 집단	내부 유지를 준거 집단으로 외부 유지, 상승, 하락으로 구분함. *종사상 지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을 위한 다항로지 분석에서 해당 변수는 종속변수로 활용됨.
통제 변수	성별	남성=0, 여성=1
	나이	만 나이
	혼인	미혼, 이혼 사별=0, 배우자 있음=1
	대출여부	고졸 이하=0, 대출 이상=1
	가구원 수	가구원 수
	가구소득	2020년 가구 소득 평균 199만원 이하인 경우를 준거집단으로 200-299만원, 400-599만원, 600만원 이상으로 구분함.
	사업장규모	5인 미만= 1, 5인 이상=0
	산업	제조업을 기준으로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기타업종*으로 구분함. *기타업종=농림어업/광업, 전기/환경/건설업, 운수/창고업, 출판/영 상/금융/보험/부동산업, 과학/기술/사업지원/임대업, 행정/국방, 교 육서비스, 보건/복지서비스, 예술/스포츠
	지역구분	서울을 기준으로 인천/경기, 부산/대구/울산,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함.
	도시구분	동지역=0, 읍면지역=1

자료: 저자 작성

2. 종사상 지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래 <표 6-20>은 종사상 지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실행한 다항로짓분석 결과를 상대위험도로 제시하고 있다. 각 모형은 내부 유지 집단보다 해당 집단에 속하게 될 상대적 위험도를 나타내며, 값이 1보다 큰 경우 설명변수는 종속변수에 대해 정(+)의 영향을, 1보다 작은 경우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내부노동시장을 유지하는 것보다 외부노동시장에서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을 높이는 변수는 연령, 산업, 사업장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제조업보다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기타업종에서,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할수록 내부 유지보다 외부 유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대졸자인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내부 유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상승 집단의 경우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제조업보다 기타업종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할수록 상대적으로 이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커진다. 반면, 연령, 유배우, 월평균 가구소득 변수는 상승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증가할수록,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일수록, 제조업보다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기타업종에서 고용 지위의 하락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유배우, 200만 원 이상 소득 변수는 하락 집단에 속할 위험을 낮추는 요인으로 확인된다. 지역 변수가 하락 집단에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서울보다 기타지역에서 모두 하락 집단에 속할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0〉 종사상 지위 변화 영향요인 분석(기준집단: 내부 유지)

변수명		외부유지	상승	하락
나이		1.013***	0.977***	1.015*
여성		0.943	1.122	1.105
대졸		0.632***	0.788	1.35
유배우		0.523***	0.544***	0.461***
월평균 가구소득 (기준: 200만원 미만)	200-399만원	0.4***	0.542***	0.371***
	400-599만원	0.322***	0.345***	0.194***
	600만원 이상	0.229***	0.197***	0.099***
가구원 수		1.043	1.151**	1.361***
산업구분 (기준: 제조업)	도소매업	3.78***	0.933	1.251
	음식숙박업	2.261***	0.751	1.199
	기타업종	5.703***	1.714***	1.736*
5인미만 사업장		6.405***	1.555**	3.664***
지역구분 (기준: 서울)	인천경기	0.891	1.389	0.624**
	부산대구울산	0.954	1.506*	0.464**
	기타지역	0.955	1.052	0.52***
읍면지역		1.177	1.117	0.872
Log likelihood		-2959.622		
Pseudo R-sqs		0.1674		
표본		3563		

*p<0.1, **p<0.05, ***p<0.01

주: 상대위험도(Relative Risk)가 제시됨.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이상의 논의는 코로나 전후로 노동시장에서 비교적 안정된 고용 지위를 유지한 집단에 비해 다른 집단이 갖는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사전적 분석으로써 의미가 있다. 이어지는 분석에서는 이렇듯 서로 다른 유형의 노동 시장 경험이 생활 변화, 긴급 지원 수급 및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이후 분석에서는 다항로지분분석에서 활용된 설명변수는 통제변수로, 종속변수는 설명변수로 활용된다.

3. 종사상 지위 변화가 생활 변화에 미친 영향

제2절에서 기술통계로 제시했던 가계 상황과 정서적 변화에 주목하여 종사상 지위 변화가 개인 소득 및 가구소득 감소 여부, 부채증가 여부, 우울감 및 스트레스 증가에 미친 영향을 차례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전 분석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생활 변화를 소득, 지출, 부채 변화 등 가계 지표를 통해 확인하였으나 가구 단위의 총 지출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 활용에 제약이 있어 이 절의 회귀분석에서는 소득과 부채 변수만을 다루기로 한다.

가. 소득

실태조사에서 개인 소득과 가구소득이 감소했는지를 별도의 문항으로 질문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두 문항을 모두 활용하여 종사상 지위 변화가 소득감소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소득이 감소했으며 1의 값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부여하여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종속변수가 이분형 변수이므로 각각 프로빗분석을 실행하였고 분석 결과는 아래 <표 6-21>에 제시되었다.

먼저 본 연구의 관심 변수인 종사상 지위 변화 변수의 결과를 보면, 내부 유지 집단보다 외부 유지, 상승, 하락 집단 모두 가구소득과 개인 소득의 감소를 경험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큰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하락 집단의 경우 다른 두 집단에 비해 계수값이 더 크다는 점에서 소득감소의 위험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혼인, 가구소득, 가구원 수, 산업 구분, 사업장 규모 변수의 경우 가구소득과 개인 소득감소에 대한 영향은 계수값의 규모에 다소 차이는 있지

만, 방향성에서 상당히 유사하다. 전반적으로 혼인, 가구소득 200-399만원 구간,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5인 미만 사업장 변수는 소득 감소에 정(+)의 관계를 보인다. 반면, 가구소득 400만 원 이상 구간, 기타업종은 소득감소 위험과 부(+)의 관계로 확인된다.

읍면지역의 경우 소득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부산·대구·울산지역, 기타지역이 서울보다 가구소득 및 개인 소득 감소의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1> 소득감소 여부 영향요인 분석

변수명		가구소득		개인소득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노동 지위 변화 (기준: 내부유지)	외부유지	0.171***	0.021	0.2***	0.021
	상승	0.117***	0.032	0.119***	0.033
	하락	0.284***	0.031	0.328***	0.030
나이		0.001	0.001	0.0005	0.001
여성		0.037**	0.018	0.022	0.018
대출		-0.007	0.022	0.01	0.022
유배우		0.061**	0.024	0.102***	0.025
월평균 가구소득 (기준: 200만원 미만)	200-399만원	0.043***	0.008	0.025***	0.009
	400-599만원	-0.085***	0.029	-0.113***	0.029
	600만원 이상	-0.148***	0.031	-0.193***	0.031
가구원 수		-0.245***	0.031	-0.26***	0.031
산업구분 (기준: 제조업)	도소매업	0.108***	0.031	0.091***	0.032
	음식숙박업	0.187***	0.033	0.211***	0.034
	기타업종	-0.048**	0.025	-0.081***	0.025
5인미만 사업장		0.107***	0.021	0.139***	0.021
지역구분 (기준: 서울)	인천경기	-0.036	0.024	-0.057**	0.025
	부산대구울산	-0.053*	0.028	-0.076***	0.029
	기타지역	-0.066***	0.025	-0.075***	0.025
읍면지역		-0.033	0.033	-0.049	0.034
Log likelihood		-2181.0007		-2137.4328	
Pseudo R-sqs		0.1034		0.1305	
표본		3563		3563	

*p<0.1, **p<0.05, ***p<0.01

주: 추정계수는 한계효과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나. 부채

아래 <표 6-22>는 코로나19 이후 부채증가 여부를 종속변수로 노동 지위 변화를 독립변수로 포함하여 프로빗분석을 실행한 결과이다.

인구사회학적 요인, 사업장 특성, 지역 등 변수를 통제했을 때 노동 지위 변화에 따라 구분한 세 집단을 나타내는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외부 유지, 상승, 하락 집단은 모두 내부 유지 집단보다 코로나 이후 부채가 증가한 경향이 있지만, 기준집단과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모델에 포함된 통제변수의 결과를 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득이 증가할수록,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서울보다 기타지역에서 부채증가를 경험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낮아진다. 혼인,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5인 미만 사업장, 인천경기 지역 변수들은 부채증가 위험과 유의미한 정(+)의 관계로 나타났다.

〈표 6-22〉 부채 증가 여부 영향요인 분석

변수명		추정계수	표준오차
노동 지위 변화 (기준: 내부유지)	외부유지	0.023	0.020
	상승	0.031	0.033
	하락	0.038	0.042
나이		-0.003***	0.001
여성		0.025	0.016
대출		0.032	0.019
유배우		0.085***	0.021
월평균 가구소득 (기준: 200만원 미만)	200-399만원	0.021***	0.008
	400-599만원	-0.048**	0.024
	600만원 이상	-0.076***	0.025
가구원 수		-0.144***	0.024
산업구분 (기준: 제조업)	도소매업	0.078**	0.032
	음식숙박업	0.221***	0.038
	기타업종	0.01	0.023
5인미만 사업장		0.061***	0.020
지역구분 (기준: 서울)	인천경기	0.057***	0.022
	부산대구울산	-0.01	0.025
	기타지역	-0.056**	0.022
읍면지역		-0.027	0.029
Log likelihood		-2094.3437	
Pseudo R-sqs		0.0462	
표본		3563	

*p<0.1, **p<0.05, ***p<0.01

주: 추정계수는 한계효과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다. 우울감, 스트레스

아래 <표 6-23>은 코로나19 이후 우울감, 스트레스가 증가했는지를 종속변수로 하고 노동 지위 변화를 독립변수로 포함하여 프로빗분석을 각각 실행한 결과이다.

먼저 종사상 지위 변화와 우울감 증가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외부 유지 집단이 내부 유지 집단보다 우울감 증가를 경험할 가능성이 3.4% 정도 높고, 하락 집단은 6.5% 정도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상승 집단은 내부 유지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스트레스 증가를 경험할 가능성에 관한 분석 결과에서는 상승 집단과 하락 집단이 내부 유지 집단에 비해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표 6-23〉 우울감 및 스트레스 증가 여부 영향요인 분석

변수명		우울감		스트레스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노동 지위 변화 (기준: 내부유지)	외부유지	0.034**	0.017	0.012	0.021
	상승	0.028	0.026	0.094***	0.035
	하락	0.065*	0.031	0.108**	0.044
나이		0.001	0.001	-0.004***	0.001
여성		0.04***	0.014	0.006	0.017
대졸		0.037**	0.018	0.008	0.021
유배우		0.016	0.019	0.056**	0.022
월평균 가구소득 (기준: 200만원 미만)	200-399만원	0.014**	0.007	0.037***	0.008
	400-599만원	0.01	0.021	-0.081***	0.025
	600만원 이상	0.004	0.024	-0.084***	0.027
가구원 수		-0.048*	0.026	-0.156***	0.026
산업구분 (기준: 제조업)	도소매업	-0.003	0.026	0.033	0.032
	음식숙박업	0.071**	0.026	0.089**	0.037
	기타업종	-0.033*	0.019	-0.05**	0.024
5인미만 사업장		0.037**	0.017	0.046**	0.021
지역구분 (기준: 서울)	인천경기	0.011	0.019	-0.075***	0.022
	부산대구울산	0.03	0.021	-0.032	0.026
	기타지역	-0.021	0.020	-0.086***	0.022
읍면지역		-0.041	0.027	-0.013	0.031
Log likelihood		-1769.0521		-2249.2131	
Pseudo R-sqs		0.0231		0.034	
표본		3563		3563	

*p<0.1, **p<0.05, ***p<0.01

주: 추정계수는 한계효과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4. 종사상 지위변화와 긴급 지원 수급 및 인식

가. 수급여부

아래 <표 6-24>는 종사상 지위 변화와 긴급 지원 수급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프로빗 분석을 실행한 결과이다. 종속변수인 재난지원금 수급 여부는 실태조사에서 조사한 국가 및 지방정부의 코로나 관련 지원금 10개 유형 중 하나라도 수급했는지를 측정하였다. 이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제외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내부 유지 집단보다 외부 유지 집단이 코로나 관련 긴급 지원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9% 정도 높게 나타난다. 상승 집단도 긴급 지원 수급 가능성이 4.8% 정도 더 높다. 이들 두 집단의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종사상 지위가 하락한 집단의 경우 내부 유지 집단과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와 함께 고용 지위 측면에서 불리함 또는 피해를 본 하락 집단이 비교적 안정된 고용을 유지한 집단과 긴급 지원 혜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결과는 제도가 잘 작동했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이끈다.

〈표 6-24〉 긴급 지원 수급 여부 영향요인 분석

변수명		추정계수	표준오차
노동 지위 변화 (기준: 내부유지)	외부유지	0.091***	0.013
	상승	0.048**	0.02
	하락	0.028	0.026
나이		-0.005***	0.001
여성		0.04***	0.012
대출		-0.023	0.014
유배우		-0.034**	0.017
월평균 가구소득 (기준: 200만원 미만)	200-399만원	0.052***	0.006
	400-599만원	-0.059***	0.022
	600만원 이상	-0.026	0.022
가구원 수		-0.055**	0.025
산업구분 (기준: 제조업)	도소매업	0.048**	0.018
	음식숙박업	0.093***	0.016
	기타업종	0.006	0.016
5인미만 사업장		0.01	0.015
지역구분 (기준: 서울)	인천경기	0.096***	0.013
	부산대구울산	0.05***	0.015
	기타지역	0.002	0.016
읍면지역		0.016	0.02
Log likelihood		-1432.1344	
Pseudo R-sqs		0.1125	
표본		3,563	

*p<0.1, **p<0.05, ***p<0.01

주: 추정계수는 한계효과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나. 사각지대 인식

아래 <표 6-25>는 종사상 지위 변화와 긴급 지원 사각지대 인식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프로빗 분석을 실행한 결과이다. 종속변수인 사각지대 인식 여부는 본인이 코로나19 관련 긴급 지원에서 사각지대에 있다고 응답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전후로 어떤 노동 경로를 경험했는지에 따라 본인이 긴급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외부노동시장에서 고용 지위를 유지한 집단과 고용 지위가 상승한 두 집단은 내부노동시장에서 고용을 유지한 집단에 비해 사각지대에 있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7% 정도 높다.

특히 코로나 전후로 종사상 지위가 하락한 집단의 경우는 본인이 긴급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안정된 고용을 유지한 집단보다 24.6%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기술통계 분석에서도 강조되었던 점인데, 본인의 노동 지위 변동으로 인해 취약성이 증가하여 긴급 지원의 수요가 강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실질적인 수혜자는 소수에 불과했으므로 사각지대에 대한 인식 또한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6-25〉 긴급 지원 사각지대 응답 여부 영향요인 분석

변수명		추정계수	표준오차
노동 지위 변화 (기준: 내부유지)	외부유지	0.069***	0.021
	상승	0.069**	0.035
	하락	0.246***	0.043
나이		-0.002**	0.001
여성		0.015	0.017
대출		0.004	0.021
유배우		-0.036	0.023
월평균 가구소득 (기준: 200만원 미만)	200-399만원	0.021***	0.008
	400-599만원	0.03	0.026
	600만원 이상	-0.041	0.028
가구원 수		-0.105***	0.028
산업구분 (기준: 제조업)	도소매업	-0.024	0.031
	음식숙박업	-0.057	0.034
	기타업종	-0.068***	0.024
5인미만 사업장		0.058***	0.021
지역구분 (기준: 서울)	인천경기	-0.114***	0.022
	부산대구울산	0	0.026
	기타지역	-0.075***	0.023
읍면지역		-0.01	0.031
Log likelihood		-2284.8424	
Pseudo R-sqs		0.0357	
표본		3563	

*p<0.1, **p<0.05, ***p<0.01

주: 추정계수는 한계효과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다. 부정수급 인식

아래 <표 6-26>은 종사상 지위 변화와 긴급 지원 부정수급 인식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프로빗 분석을 실행한 결과이다. 종속변수인 사각 지대 인식여부 변수는 코로나19 관련 긴급 지원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며, 설문조사에서 부정수급이 ‘약간 있음’, ‘매우 많음’에 응답하면 1, ‘전혀 없음’, ‘별로 없음’에 응답하면 0의 값을 부여하였다.

종사상 지위 변화에 따라 구분한 집단 변수의 경우 외부 유지 집단 변수만 유의미하였고 상승, 하락 집단의 결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외부 유지 집단의 경우 내부 유지 집단보다 긴급 지원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한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4.5%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서 연령, 성별, 학력, 혼인, 소득 변수가 부정수급 인식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고졸 이하보다 대졸자가,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집단일수록 긴급 지원에서 부정수급이 있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더 컸다. 반면 기혼자일수록 부정수급이 없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있다.

〈표 6-26〉 긴급 지원 관련 부정수급 인지 여부 영향요인 분석

변수명		추정계수	표준오차
노동 지위 변화 (기준: 내부유지)	외부유지	-0.045**	0.02
	상승	0.007	0.032
	하락	-0.038	0.042
나이		0.001*	0.001
여성		0.03*	0.016
대졸		0.054***	0.02
유배우		-0.064***	0.021
월평균 가구소득 (기준: 200만원 미만)	200-399만원	0.013*	0.007
	400-599만원	0.066***	0.023
	600만원 이상	0.056**	0.025
가구원 수		0.039	0.026
산업구분 (기준: 제조업)	도소매업	-0.003	0.029
	음식숙박업	-0.01	0.033
	기타업종	0.03	0.022
5인미만 사업장		0.024	0.019
지역구분 (기준: 서울)	인천경기	0.028	0.021
	부산대구울산	0.001	0.025
	기타지역	-0.006	0.022
읍면지역		-0.043	0.03
Log likelihood		-2086.3758	
Pseudo R-sqs		0.0131	
표본		3563	

*p<0.1, **p<0.05, ***p<0.01

주: 추정계수는 한계효과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 원자료.

제5절 소결

이 장의 목적은 코로나 전후로 노동시장에서 지위 변동을 경험한 사람들의 생활 변화와 긴급 지원 수급 경험, 그리고 긴급 지원에 대한 인식을 비교분석하는 것이었다. 먼저 코로나 전후로 근로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종사상 지위 변동을 추적한 결과 이들의 서로 다른 노동 경로에 따라 내부유지, 외부유지, 상승, 하락 네 집단으로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이들의 구성비는 각각 52.3%, 32.1%, 6.2%, 9.3%로 확인되었다.

코로나 전후로 내부노동시장에서 고용 지위를 유지한 집단은 상대적으로 소득감소도 적고 우울감, 스트레스 증가 수준이 낮았다. 반면 종사상 지위가 하락한 집단의 경우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것을 분석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이들 집단에서 소득감소를 경험한 비중도 매우 높았고 우울감 및 스트레스, 타인과의 갈등 영역에서 어려움 증가 수준이 가장 높아 다차원적인 취약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렇듯 종사상 지위가 하락한 취약한 집단이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계층에게 가장 먼저 지급되었어야 할 긴급 지원 혜택에서 오히려 더욱 소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집단은 다수의 긴급 지원 혜택에서 수급 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소득감소도 적었던 집단과 비교했을 때 긴급 지원 수급 가능성에 유의미한 차이도 관찰되지 않았다.

더욱이 고용 지위의 하락을 경험한 집단에게서 긴급 지원에 대한 부정적 시각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본인이 사각지대에 있다는 인식도 높고, 긴급 지원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런 결과는 우리나라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도한 사회보장의 접근 방식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 최영준 외(2020)는 다른

북유럽, 서유럽 국가들과 다르게 코로나 위기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접근을 ‘보편적 시민지원형’으로 분류한 바 있다. 이 유형은 대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 지급(긴급재난지원금)이 가장 큰 특징이다.³⁰⁾ 우리나라는 대국민 재난지원금 이외에도 실업 및 고용과 관련하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소상공인 휴·폐업비, 임대료 등 자금 지원 등 다방면에 걸쳐 적극적 지원책을 폈다.

그러나 본 장의 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노동시장에서 불이익을 경험한 취약계층 혹은 위기 가구에 적절한 도움이 되었는지 효과에는 의문이 있다. 최영준 외(2020)도 재난지원금 수급 현황 분석에서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자신이나 가족 중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람 중 81.7%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그는 여러 유형의 고용 관련 지원 제도가 시행되었음에도 소수의 소상공인 또는 근로자만 수혜 대상으로 포함하면서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결국 우리나라의 코로나 관련 긴급 지원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더욱 무게를 두면서 노동시장에서 직접 피해를 경험한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의 충격은 자영업자들 이외에도 주로 서비스업, 여성, 청년, 임시일용, 고졸 이하로 대표되는 취약계층이 흡수하면서 이들의 고용감소가 두드러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정한나, 윤정혜, 박세정, 황성수, 박비곤, 2021). 본 연구의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종사상 지위가 악화된 집단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주로 고용원이 있었던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5인 미만 영세사업장 종사자, 여성, 학력 수준이

30) 기존의 보편적 사회보장 시스템을 더욱 확장시키는 접근을 택한 스웨덴, 핀란드(복지국가 확장형)와, 근로시간 단축, 휴가제도 확대 등 일자리 유지를 위해 노력한 영국, 프랑스, 독일의 접근과 차별성을 지닌다(최영준 외, 2020).

낮은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사람들로 분류되므로, 노동시장 내 취약계층들에 대해 선제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책이 필요했을 것이란 아쉬움은 남는다. 특히 고용안정지원금이나 구직지원금 등 실업·고용 관련 긴급 지원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급자 수 또는 취약계층 내 수급 비율이 상당히 낮았다는 점에서 이들 제도가 실질적으로 위기 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상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고용 지위가 하락한 집단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지원에 대한 인식/평가가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났고, ‘적절한 때’ ‘적절한 양만큼’ 지원되었다는 문항에 동의하는 수준이 가장 낮았다.

적절한 때 긴급 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위기에 처한 누구든 도움이 필요할 때 자신의 고용 상태 변화에 따른 피해 상황을 간단하게 입증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는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종사자, 자영업자, 실업자 등 다양한 유형의 불안정한 집단이 존재한다. 이들 중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노동시장 위기에서 더 열악한 집단을 식별하기란 쉽지 않다.

어느 한 집단(예컨대, 소상공인)에게만 집중하면 다른 유형의 취약한 집단들이 긴급 지원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노동시장에서 고용 지위가 하락한 집단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누구든 노동시장에서 피해를 경험한 사람’으로 지원대상을 넓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긴급한 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급여 신청에서 지급까지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또한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위한 충분한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생계급여의 최저 보장 수준 이상의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전염병으로 인해 불안정성이 더욱 커진 노동시장에서 종사상 지위가 하락한 집단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와 우울감도 증가하였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정책은 소득 보전을 넘어 심리방역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도 강조되어야 한다.



제7장

가계동향조사를 통해본 코로나19와 긴급 지원 영향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분석 내용 및 방법

제3절 분석 결과

제4절 소결

제 7 장

가계동향조사를 통해본 코로나19와 긴급 지원 영향³¹⁾

제1절 분석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장은 코로나19와 긴급 지원의 영향을 실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2020년 2월부터 급속히 확산된 코로나19의 경제적 타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14조 2천억 원 규모의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이하 1차 재난 지원금)을 편성하고 5월부터 8월 사이에 전국의 모든 가구에 지급하였다. 1차 재난지원금은 가구의 소득이나 보유 재산액과 무관하게 가구원 수만을 고려해 모든 가구에 지급되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1인 가구의 경우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의 경우 100만 원이었다. 이 지원금은 취약계층에 속한 약 270만 가구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5월 4일부터 지급되었고, 일반 가구에는 5월부터 8월 까지 별도의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지급되었다.³²⁾

다수의 연구는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의 성과를 측정했기 때문에 주

31) 본 장은 이우진, 강창희, 우석진. (2021)이 적용한 추정 방법론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2020년 4분기까지 확장한 내용이다.

32) 1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수단은 가구별로 약간 상이하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가구의 경우에는 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됐지만, 일반가구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신청자가 원하는 형태로 지급되었다. 현금 이외의 형태로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2020년 8월 31일까지 사용되어야 하고, 이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는 금액은 고용보험기금에 귀속되도록 설계되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병원/약국 등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대형마트, 백화점이나 유흥주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되었다.

로 2020년 가계동향조사의 2/4분기와 3/4분기 자료를 활용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 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예, 이우진, 강창희, 우석진, 2021).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에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감소된 소비를 진작시켜 급속한 경기침체를 방지하려는 의도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코로나19 두 번째 유행(8월)과 세 번째 유행(12월)에 대응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과도 맞닿아 있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상위 88%로 제안하였다. 이는 고소득층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원금이 소비로 전환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 외, 2020). 다수의 해외사례도 경제위기 시 소비 진작을 위한 지원이 이뤄진 적이 있으며, 이러한 지원이 모두 소비로 전환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소비로 연결된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미국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2008년 2월 Economic Stimulus Act를 제정해 약 1억 3천만 명의 납세자들에게 각각 최소 300달러(1인 가구)에서 최대 1,200달러(기혼 가구)의 Economic Stimulus Payment를 지급하였다(Jonathan, et al., 2013; Shapiro & Slemrod, 2009). 일본은 1999년에 15세 이하의 아동을 보유한 가구와 노인가구들에 각각 약 2만엔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였고, 2009년에는 (연령 및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약 1만 2천엔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Hsieh et al., 2010). 대만에서도 2009년 모든 국민들에게 약 110(미국)달러 상당의 쇼핑 바우처를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한 적이 있다(Kan et al., 2017). 정부 소득 지원금의 소비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위의 각 국가의 지원정책에서 지급한 소득 증가분이 소비로 연결된 정도를 추

정한다.

다수 연구는 코로나19와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실증하면서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제공한 신용카드 사용액 정보를 통해 가구의 소비액을 측정하였다. 그런데 가구의 소비는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현금, 체크카드, 상품권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신용카드의 소비액만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특정 기간에 발생한 가구 총소비액 중 일부분만을 포함하고 있다. 즉 신용카드가 아닌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한 소비액은 제외되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선행연구들이 추정한 1차 재난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은 가구의 총소비액 정보를 활용하는 다른 연구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가구 소비액의 일부만을 포함하고 있는 위의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가구의 총소비액 정보를 조사하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미시자료를 활용해 1차 재난지원금이 가구 총소비액 및 항목별 소비액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다. “가계동향조사”는 통계청이 매년 분기별로 약 4,500~6,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통계조사로서, 이 조사는 표본 가구의 분기별 3개월 평균 총소득과 총소비액 및 소득과 소비의 여러 구성항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계동향조사” 자료는 2020년 2분기에서 4분기 사이에 발생한 가구의 총소비액 변동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액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2019년과 2020년의 분기별 “가계동향조사” 미시 자료의 가구소득과 가구 소비액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1차 재난지원금이 2020년 2분기에서 4분기의 가구 총소비액과 소비항목별 소비액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다. 이를 통해 1차 재난지원금 편성 금액 중 어느 정도가 실제 소비로 연결되었는지를 추정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고찰

이태석, 김미루, 오윤해, 이영욱, 권형준, 이승은 외(2020)에서 행정안전부의 수탁과제로 수행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연구Ⅱ」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체 가구에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소비 진작 효과, 경영안정 효과, 현금 수급 가구의 소비 진작 효과 측면에서 살펴 보았다. 이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금액 및 지급 가구의 약 80%를 포괄하는 신용(체크)카드와 현금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 실태를 분석하고, 거시경제지표, 체감경기지표, 인허가자료 등 공개 자료와 신용(체크)카드 매출자료, 현금 수급 가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 하였다(이태석 외, 2020, p. 1).

특히 긴급재난지원금이 2020년 4월 30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수정 의결 이후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상품권, 현금 등 다양한 지급수단으로 제공되었으며, 지급기한인 8월24일까지 2,216만 가구에서 14.2조 원이 지급되었다. 이 연구는 긴급재난지원금이 5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최종지급액의 약 98%가 지급 완료되었으며, 소비 추적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의 최종 지급금액의 약 60%가 5월에 소비되었으므로, 긴급재난지원금의 거시적 효과는 주로 2분기인 5월과 6월에 발생했다고 가정 하였다(이태석 외, 2020, p. 29).

이 연구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 방법 중 신용(체크)카드 매출을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다. 즉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용(체크)카드로 활용된 BC, 신한, 국민, 농협, 롯데, 삼성, 현대, 하나의 8개 카드사의 합산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 가능 업종과 사용 불가 업종의 매출액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후 2주와 전년 동기 2주를 비교하는 이중차분(Difference in Difference, DID)을 활용하여 긴

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의 카드 매출이 사용 불가 업종의 카드 매출액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의 매출 증대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이태석 외, 2020, p. 2).

다음으로, 가계의 경제 상황과 지출행태 조사 결과인 소비자동향지수(CSI, Consumer Survey Index)와 가계지출 행태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 행정안전부 지방행정데이터의 인허가 자료를 활용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이 경영안정에 미친 효과를 살펴보았다(이태석 외, 2020, p. 65).

그 결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체감경기지표의 급격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추이를 보였으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체감 경기를 개선하고 인허가업종의 휴·폐업률 안정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태석 외, 2020, pp. 2-3).

다만, 6개월 이후의 생활형편을 묻는 생활형편전망지수가 전국적으로 통상의 증가율 수준을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비지출 전망에서도 여행지출전망이 가장 비관적이나 교육과 의료비 지출 전망이 예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당시 코로나19의 영향이 이렇게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이태석 외, 2020, p. 65).

마지막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가구(전체 가구의 13.1%)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 내역을 조사하였다(이태석 외, 2020, p. 90). 일반적인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을 통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없이 5월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이태석 외, 2020, p. 89).

조사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아 2020년 9월14일부터 18일까지 전화조사로 이뤄졌다. 설문조사의 목표표본 수는 1,500가구이고, 설문조사를 수행할 시군구와 각 시군구별 표본 가구는 집락추출법으로 추출하였다. 시군구에는 표본추출지침을 전달하여 해당 시군구에서 지침에 따라 할당된 표본 수에 맞게 표본 가구를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추출된 표본 가구에 대해서는 시군구 단위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전화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고, 응답이 작성된 설문지를 연구진이 취합하여 데이터화하였다(이태석 외, 2020, pp. 91-92).

설문조사는 세 영역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영역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 현황으로, 품목별 지출현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조사했다는 특징이 있다. 두 번째 영역은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문항이며, 세 번째 영역은 가구와 가구원 일반사항이다(이태석 외, 2020, pp. 158-164).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긴급재난지원금의 주된 사용 용도는 소비지출이 93.7%이고, 저축이 3.8%, 빚 상환이 1.8%로 나타났다. 특히 식료품, 가정생활용품 등을 구매했다는 응답이 90.3%로 가장 높았으며, 보건 의료비, 외식, 의류와 서적 등 구매순으로 나타났다(이태석 외, 2020, p.3).

이 연구는 코로나19로 보편적 위험에 처한 전 국민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다양한 정책 수단 중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라는 점에서 분석 범위는 협소하나, 8개 카드사의 합산자료를 분석한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소비효과를 살펴본 최초의 연구이며, 저소득 취약계층인 현금수급 가구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통해 소비행태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연구는 김을식 외(2020)가 경기연구원 고유과제로

수행한 「재난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 연구」이다. 이 연구는 코로나19와 재난지원금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가구의 주거, 가계, 고용, 소득, 소비, 지원금과 가구원 인식 등의 설문을 설계하고, 온라인 패널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코로나19의 영향을 고용과 소득, 소비 영향으로 구분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소비 진작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김을식 외(2020)는 수도권 거주자에 대해 설문 조사하였다. 그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의 총소득이 변화한 가구는 수도권 기준으로 38.4%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영향에도 가구의 총소득이 증가한 가구는 1.5%이나, 감소한 가구(36.9%)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감소한 가구의 코로나19 이전 대비 소득감소의 비율은 30.6%로 나타났다. 소득의 증가와 불변까지 포함한 총소득 변화는 -10.4%로 나타났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하여 가구의 소비지출이 변화한 가구는 수도권 전체 기준으로 47.0%로 나타났다. 지출이 증가한 가구는 11.1%이나, 감소한 가구(35.9%)가 더 높게 나타났다(김을식 외, 2020).

한편, 재난지원금의 순 소비 효과(한계소비성향)는 수도권 전체의 경우 29.1%로 나타났다. 한계소비성향은 재난지원금이 클수록 높게 나타났고 아동 인구가 있는 가구의 경우 정부지원금이 기존 교육 지출을 대체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김을식 외, 2020).

여유진 외(2021)는 전국 단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전후로 1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상태에 상당한 변화가 발견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고용 지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전체 취업자의 28.5%가 코로나19로 인해 단축 근로, 휴직, 실직, 휴업, 폐업 중 한 가지 이상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영향은 특수형태근로자(64.8%)와 자영자(39.9%), 임시·일용직

(35.5%)에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코로나19는 개인과 가구소득에도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의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던 2020년 4월을 기준으로 볼 때, 휴·실직 등의 경험이 있는 취업자의 근로소득이 평균 4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영자 소득은 32.7%, 특수형태근로자의 소득은 29.5% 감소하였다. 반면에 소득 5분위별 소득 증감률을 확인한 결과, 1분위를 제외한 모든 소득분위에서 소득이 10% 이상 감소했다. 이는 1분위가 노동시장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미취업 고령자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여유진 외, 2021).

3. 코로나19와 긴급 지원

2020년 2월에 발생한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각종 지원금을 가구와 개인을 대상으로 지급하였다. <표 7-1>은 2020년에 정부가 실시한 주요 소득지원 및 고용지원 정책들을 요약한 것이다. 이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2020년 2분기에는 아동돌봄쿠폰(1.54조 원), 저소득층 소비쿠폰(1.24조 원),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14.2조 원), 지역고용 특별지원(0.23조 원), 제1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2.77조 원) 등의 지원정책들이 시행되었다.

2020년 3분기에는 통신비지원정책(1.54조 원)이 시행되었다. 2020년 4분기에는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7.8조 원), 새희망자금(2.46조 원), 아동특별돌봄지원금(1.3조 원), 제2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1.41조 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들이 시행되었다.

본 장에서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2020년에 지급한 각종 지원금이 가구의 소득과 소비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고자

한다. 사업별 정부지원금의 자세한 내역과 사업별로 지원금을 수령한 가구 및 개인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사업별로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로 한정된다. 이 자료는 개별 사업별로 효과성을 측정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도, 가계동향조사는 부처별로 취합된 행정통계를 제외하고, 2020년 지급된 정부지원금의 규모를 가구 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국내 거의 유일한 자료이다.

2020년의 정부지원금은 가계동향조사의 소득 항목 중 “사회수혜금”으로 분류된다. 다만, 가계동향조사는 분기별로 “사회수혜금”의 총액을 조사할 뿐, 사회수혜금의 세부 항목과 항목별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구의 사회수혜금을 활용한다고 해도 지원사업별로 가구가 수급한 구체적 금액은 알 수 없고, 단지 각종 지원사업으로부터 수급한 지원금 총액만을 파악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의 제약으로 인해 우리는 개별 사업별 효과성 분석은 시행하지 못하고, 정부지원금 총액이 가구의 소득과 소비에 미친 영향만을 추정할 수 있다.

본 장에서 우리는 가계동향조사의 2019년과 2020년의 분기별 미시자료를 사용해 2020년의 각종 정부지원금 총액이 가구의 소득과 소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표 7-1〉 2020년에 시행된 각종 지원정책들

번호	지원사업명	지원대상	분기	시행월	예산 (조원)	단위당 지원액
1	아동돌봄쿠폰	7세 미만 아동 209만 가구	2	4~5월	1.54	아동당 40만원
2	저소득층 소비쿠폰	저소득층 169만 가구	2	4~7월	1.24	2인 가구 68~88만원
3	1차 긴급재난지원금	모든 가구	2	4~8월	14.2	4인 가구 100만원
4	지역고용 특별지원	영세 휴직 근로자 12만, 특고 14만	2	4~5월	0.23	개인당 100만원
5	1차 긴급고용안전 지원금	특고, 자영자, 휴직자 149만	2	6~8월	2.77	1인당 150만원
6	통신비 지원	2000만명	3	9월	0.4	1인당 2만원
7	위기가구 긴급생활 지원	위기 가구 88만	4	12월	0.4	4인 가구 100만원
8	2차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377만, 취약계층 89만, 아동가구 532만	4	9~11월	7.8	-
9	1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전지원	법인 택시 기사 8만	4	10월	0.08	1인당 70~150만원
10	아동특별돌봄지원금	미취학/초등학생 630만	4	9~10월	1.3	1인당 15~20만원
11	2차 긴급고용안전 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70만	4	9~11월	1.41	1인당 70~150만원
12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청년 20만	4	9~12월	0.1	1인당 50만원
13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근로자 13만	4	9~12월	0.05	부부 최대 150만원
14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224만	4	9~11월	2.46	1인당 100~200 만원
15	폐업접포 재도전 장려금	소상공인 32만	4	9~12월	0.5	1인당 50만원

자료: 저자 작성

제2절 분석 내용 및 방법

1. 데이터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는 1년에 4회 분기별로 조사 대상 가구(조사차수에 따라 약 4,500~6,500여 가구)의 소득과 소비에 관한 상세한 내역, 그리고 가구주 및 가구원들의 인적 특성과 경제활동상태를 조사한다.

먼저 가구의 총소득은 크게 정상소득과 비정상소득으로 구분된다. 정상소득은 다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이전소득(공적 이전소득 및 사적 이전소득)으로 구성된다. 비정상소득은 비경상적이고 일시적인 수입 항목으로서, 경조소득, 퇴직수당, 보험금 수령액 등으로 구분된다.

2020년 2분기부터 확산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가구들에 지급한 각종 정부지원금은 가계동향조사에서 정상소득의 공적 이전소득 항목 중 사회수혜금에 포함된다. 따라서 본 장의 통계분석에서는 가구의 사회수혜금을 핵심 처치변수(treatment variable)로 설정한다.

또한 분기별로 조사되는 가구의 사회수혜금은 해당 분기에 가구가 수령한 각종 정부지원금의 총액만을 포함한다. 따라서 2020년 시행된 정부의 각종 소득지원 사업별로 코로나19 소득지원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기는 불가능하다.

본 연구는 2020년 2/4분기와 3/4분기, 4/4분기 각각에 대해서 분석한 후, 2/4~4/4분기를 통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본 장에서는 2/4~4/4분기 통합 시계열 분석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당초 2020년 8월까지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은 9월까지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인한 여윗돈이 4/4분기에 소비로 전환되었을 가능성까지 고려해

서 살펴보는 데 초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이 분기별 소비 효과를 보는 데 초점이 아니라 긴급재난지원금 전체의 소비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2. 분석 방법

가. 이중차분법

2020년 코로나19에 대응해 지급한 정부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아래 <표 7-2>에 제시된 것과 같은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을 적용한다.

<표 7-2> 처치의 구분

연도	분기		차분
	1분기(1~3월)	2분기(4~6월)	
2019년	가셀 [처치 없음]	다셀 [처치 없음]	다-가: [분기 효과]
2020년	나셀 [코로나19A]	라셀 [코로나19B +정부지원금]	라-나: [코로나(19B-19A)효과 +정부지원금 효과 +분기효과]
차분 [20년-19년]	나-가: [코로나19A 효과 +연도효과]	라-다: [코로나19B 효과 +정부지원금효과 +연도효과]	(라-나)-(다-가): [코로나(19B-19A)효과 +정부지원금 효과]

자료: 저자 작성

<표 7-2>에서 셀들에 대한 차분을 적용해 정부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첫째, 차분 값 [나-가]는 1분기를 대상으로 한 차분이므로, 성과변수에 적용한 차분 값 [나-가]은 통상적인 연도효과와 코로나

19A의 효과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

둘째, 차분 값 [라-다]는 2분기를 대상으로 한 차분이므로, 성과변수에 적용한 차분 값 [라-다]는 통상적인 연도효과, 코로나19B의 효과 및 정부 지원금의 효과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중차분법의 핵심 가정으로서 우리는 ‘[가정 1] 연도효과와 공통추세(common trends)’를 가정한다. [가정 1]에 의하면, 1분기의 연도효과와 2분기의 연도효과는 동일하다.

셋째, [가정 1]이 성립할 때, 성과변수에 대한 이중차분 값 [(라-다)-(나-가)]는 [(코로나19B의 효과-코로나19A의 효과)+정부지원금의 효과]를 포함하고 있다. 이하에서 우리는 (코로나19B의 효과- 코로나19A의 효과)을 축약해 ‘코로나(19B-19A) 효과’라고 부른다.

이 때, 성과변수에 따라 이중차분 값 [(라-다)-(나-가)]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 첫째, 성과변수로 “가구 총소득”을 사용하는 경우, [(라-다)-(나-가)]는 [코로나(19B-19A)의 효과+정부지원금의 효과]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2020년에 지급된 정부지원금이 가구 총소득에 미친 순수한 영향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중차분 값으로부터 코로나(19B-19A)가 가구 총소득에 미친 영향 부분을 제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가구 총소득에서 사회수혜금을 제외한 값을 ‘획득소득’이라고 정의한다. 즉, 가구 획득소득=가구 총소득-사회수혜금으로 구성된다. 정부지원금은 사회수혜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획득소득에 대한 이중차분 값 [(라-다)-(나-가)]는 오직 코로나(19B-19A)의 효과 부분만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한 ‘코로나(19B-19A)의 효과’ 추정치를 이용해 ‘정부지원금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둘째, 성과변수로서 “사회수혜금”을 사용하는 경우 [(라-다)-(나-가)]는 정부지원금의 효과를 측정한다. 2020년에 지급한 코로나19 대응 정부지원금은 사회수혜금에 포함되고 코로나(19B-19A)는 정부지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구의 '총소득=획득소득+사회수혜금'이 성립하므로, 사회수혜금의 이중차분 값은 곧 코로나19 대응 정부 지원금이 가구 총소득에 미친 영향을 측정한다. 마찬가지로 원리로, 획득소득에 대한 이중차분 값은 '코로나(19B-19A)'가 가구 총소득에 미친 영향을 측정한다.

셋째, 성과변수로 "가구 소비지출액"을 사용하는 경우, [(라-다)-(나-가)]는 [코로나(19B-19A)의 효과+정부지원금의 효과]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 위에서 '코로나(19B-19A)의 효과'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아래의 [가정 2]를 도입해야 한다. [가정 2: 코로나19 효과의 동질성]은 코로나19A와 코로나19B가 가구의 소비지출액에 미친 효과의 크기는 동일하다는 가정이다.

2020년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이 1분기보다는 2분기에 더 컸던 점을 고려할 때, [가정 2]는 비현실적일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B-19A)의 실제 효과가 음수인 경우, [가정 2]를 통해 우리는 정부지원금이 가구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의 하한(lower bound)을 구할 수 있다. 코로나(19B-19A)의 실제 효과가 음수라면, 정부지원금이 가구 소비에 미친 효과는 이중차분 값 [(라-다)-(나-가)]보다는 더 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다수의 연구는 1분기와 2분기 사이에 가구소득과 소비지출액을 비교함으로써 2020년 2분기 정부지원금의 소득효과와 소비 효과를 추정하였다. 동일한 이중차분법을 1분기와 3분기의 가구소득과 소비를 대상으로 적용해볼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2020년 3분기 정부지원금의 소득효과와 소비효과가 추정된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이중차분법을 1분기와 4분기의 가구소득과 소비를 대상으로 적용해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2020년 4분기 정부지원금의 소득효과와 소비 효과를 추정하는 것이다.

나. 이중변동 추정법(Change-in-changes)

위에서 적용한 이중차분법은 각 셀의 평균을 기반으로 처치효과 추정치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상치(outliers)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과 소비 이상치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소득과 소비의 수준 값에 자연로그를 취해 사용하기도 한다.

이 경우 소득과 소비의 수준 값을 이용해 구한 한계소비성향(=소비 증가분/소득 증가분) 추정치와 자연로그 값을 이용해 구한 한계소비성향 추정치가 서로 다를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차이의 정도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기도 한다. 한계소비성향을 측정하는 성과변수로서 소득과 소비의 수준을 사용해야 하는지 혹은 자연로그 값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소득과 소비의 함수 형태에 대해 민감하지 않고 이상치의 존재에 대해서도 강건한(robust) 특성을 보이는 대안적인 추정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변동 추정법(change-in-changes)을 활용하고자 한다.

Athey and Imbens(2006)는 성과변수의 평균을 비교하는 이중차분법을 성과변수의 분포 전체로 확장하는 이중변동법을 제안하였다. 앞서 살펴본 ‘공통 추세의 가정(가정1)’이 이중차분법의 핵심적인 가정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중변동법의 핵심적인 가정은 아래의 ‘집단 내 시간 불변성(time invariance within groups)’ 가정이다.

[가정 3: 집단 내 시간 불변성] 처치가 적용되지 않는 가상적인 상황일 때, 처치집단 성과의 누적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CDF)의 시점 간 차이는 통제집단 성과의 누적분포함수의 시점 간 차이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이를 통해 이중변동법은 관측된 성과의 누적분포

함수의 시점 간 변동으로부터 시간효과를 제거함으로써 처치가 성과의 누적분포함수 및 분위값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다.

이중변동법은 기본적으로 순위(rankings)에 기반을 둔 추정법이므로, 이중차분법과는 달리 성과변수의 함수 형태 및 이상치에 대해 강건한 특성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성과변수 분포의 중앙에 해당하는 $q = 0.5$ 분위(즉, 중앙값)에서 처치의 분위 효과를 계산하기로 한다. 중앙값에서 계산한 이중변동 추정치는 평균값 비교에 기반을 둔 이중차분 추정치에 대응하기 때문이다.

제3절 분석결과

1. 1분기와 통합 2~4분기를 비교하는 분석

본 연구에서는 1분기와 통합 2~4분기를 비교함으로써 2020년 2~4분기 전체 정부지원금이 2~4분기 전체 기간의 가구 소비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고자 한다. 이는 다수의 연구에서 정부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은 2~4분기까지 분기별로 약간씩 상이하게 나타났고, 정부지원금을 수급한 가구들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소득을 즉각적으로 소비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즉 정부지원금을 수급한 가구들이 일정한 시차를 두고 서서히 소득 증가분을 사용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20년 2~4분기의 전체 정부지원금이 2~4분기 전체 기간 동안 가구 소비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다. 이를 위해 2~4분기 전체를 처치 후 시점(post-treatment period)으로 설정한 후 2020년 정부지원금의 통합 2~4분기 한계소비성향을 추정한다.

이를 통해서 2~4분기 전체 9개월 동안의 월평균 소비 증가분을 계산한다. 즉 월평균 소비 증가분에 9를 곱하면, 정부지원금을 통해 증가한 2020년 전체의 소비 증가분이 도출되는 것이다.

2~4분기 전체 9개월 동안의 월평균 소비 증가분을 추정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2~4분기 전체 9개월 동안의 월평균 소득 증가분도 계산할 수 있다. 월평균 소득 증가분에 9를 곱하면, 정부지원금에 통해 증가한 2020년 전체의 소득 증가분이 도출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0년 전체의 소비 증가분/2020년 전체의 소득 총액)을 계산함으로써 2020년 정부지원금의 전체 한계소비성향을 도출할 수 있다.

위 식의 분자와 분모에 공통으로 9가 곱해짐으로, 우리는 (통합 2~4분기 월평균 소비 증가분/통합 2~4분기 월평균 소득 증가분) 식을 계산함으로써 2020년 정부지원금의 통합 2~4분기 한계소비성향을 도출한다.

통합 2~4분기의 월평균 소득과 소득 변동분 및 정부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을 추정한 결과는 <표 7-3>에 제시되어 있다. 이 때 A열은 2020년 통합 2~4분기 소득의 변동을 보여준다. 통합 2~4분기 소득의 변동분은 총소득의 변동분에서 획득소득의 변동분을 차감한 수치이다. 이중변동법 1 추정치에 의하면, 2020년 정부지원금은 통합 2~4분기의 월평균 소득을 144천 원 정도 증가시킨다.

같은 표의 B열을 살펴보면, 2020년 통합 2~4분기 가구의 총 소비액은 정부지원금으로 인해 월평균 113~128천 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통합 2~4분기의 한계소비성향은 약 0.781~0.887 정도임을 알 수 있다.

같은 표의 C~E열은 세부 소비항목별로 통합 2~4분기 소비의 변동분을 제시한다. C열에서 핵심 비내구재 소비는 2020년 통합 2~4분기에 월평균 77~98천 원 정도 증가한다. 이 증가분은 가구 총 소비 증가분의 약

67~85 퍼센트 정도에 해당한다. 이는 통합 2~4분기 동안 가구 소비 증가가 주로 핵심 비내구재 소비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D열에서 준 비내구재 소비는 월평균 19~34천 원 정도 증가하였다. E열에서 내구재 소비는 월평균 0~1천 원 정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 변동분은 통계적으로 0을 기각하지 않는다.

〈표 7-3〉 1분기와 통합 2~4분기 기준, 가구의 소득, 소비 및 세부 소비항목의 연도별·분기별 변화

(단위: 천원)

	A. 소득	B. 소비지출	C. 핵심 비내구재	D. 준 비내구재	E. 내구재
가. 1분기					
2019년		2,545	1,363	778	403
2020년		2,380	1,314	682	383
[20년-19년]		-165	-49	-96	-21
나. 통합 2~4분기					
2019년		2,465	1,372	653	439
2020년		2,408	1,368	606	434
[20년-19년]		-57	-4	-47	-6
다. 이중차분법 (DID)	24	108	45	48	15
-MPC	—	0.279	0.116	0.124	0.039
(t-값)		(2.11)	(1.88)	(2.43)	(0.40)
라. 이중변동법1 (CIC1)	26	95	81	35	-1
-MPC	—	0.274	0.232	0.102	-0.004
(t-값)		(2.29)	(4.13)	(2.48)	(0.21)
마. 이중변동법2(CIC2)	—	82	55	23	-3
-MPC		0.237	0.159	0.067	-0.008
(t-값)		(2.52)	(3.42)	(1.66)	(0.34)

자료: 가계동향조사(2020년 1/4~4/4분기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함).

〈표 7-4〉는 세부 소비항목별로 통합 2~4분기의 소비 변동분을 추정한다. 여기에서도 한계소비성향(MPC)은 통합 2~4분기의 월평균 소득 증

가분 144천 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먼저 핵심 비내구재를 보면, 2020년의 정부지원금은 통합 2~4분기의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액을 월평균 28~35천 원, 의류·신발 소비액을 월평균 19~21천 원, 주거·수도·광열 소비액을 월평균 11~13천 원, 음식·숙박 소비액을 월평균 15~20천 원 정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내구재를 살펴보면, 2020년 정부지원금은 통합 2~4분기 가정·가사 소비액을 월평균 10천 원 정도 증가시켰다. 반면에, 교통 소비액은 약 14~15천 원 정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표 7-4〉 1분기와 통합 2~4분기 기준, 주요 세부 소비 항목의 연도별·분기별 변화

(단위: 천원)

	핵심 비내구재				내구재	
	1. 식료품	2. 의류/ 신발	3. 주거/ 수도	4. 음식/ 숙박	5. 가정 /가사	6. 교통
가. 1분기						
2019년	331	135	321	335	118	285
2020년	358	97	318	300	104	279
[20년-19년]	27	-37	-3	-36	-14	-6
나. 통합 2~4분기						
2019년	333	140	263	349	115	299
2020년	388	125	275	326	134	291
[20년-19년]	55	-15	12	-23	19	-7
다. 이중차분법(DID)	28	22	16	12	33	-1
-MPC	0.216	0.173	0.122	0.095	0.257	-0.008
(t-값)	(5.79)	(6.78)	(1.86)	(2.24)	(5.32)	(0.04)
라. 이중변동법1(CIC1)	35	21	11	20	10	-15
-MPC	0.246	0.143	0.076	0.139	0.070	-0.105
(t-값)	(6.64)	(8.79)	(2.86)	(2.64)	(6.76)	(3.81)
마. 이중변동법2(CIC2)	28	19	13	15	10	-14
-MPC	0.192	0.132	0.091	0.103	0.071	-0.100
(t-값)	(6.11)	(6.40)	(3.69)	(3.22)	(6.25)	(3.42)

자료: 가계동향조사(2020년 1/4~4/4분기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함).

〈표 7-5〉는 〈표 7-3〉~〈표 7-6〉의 분석 대상 전체 표본을 가구주의 교육 수준별로 세분화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먼저 패널 A는 중졸 이하인 가구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a)열의 소득 추정치(이중변동법1)에 의하면, 2020년 정부지원금은 통합 2~4분기 가구 월평균 소득을 116천 원 정도 증가시켰다. (b)열에 의하면, 중졸 이하 가구의 통합 2~4분기 소비액은 월평균 140~172천 원 정도 증가하였다. 따라서 통합 2~4분기 한계소비성향은 약 1.210~1.486 정도임을 알 수 있다. (c)열에 의하면, 이들 가구의 통합 2~4분기 핵심 비내구재 소비는 월평균 77~90천 원 정도로 증가하였다. 이 항목의 증가분은 전체 소비액 증가분의 약 51~60 퍼센트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패널 B는 가구주 학력이 고졸인 가구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a)열에 의하면, 2020년 정부지원금은 통합 2~4분기 가구 월평균 소득을 173천 원 정도 증가시켰다. (b)열에 의하면, 고졸 가구의 통합 2~4분기 소비액은 월평균 106~196천 원 정도 증가하였다. 따라서 통합 2~4분기 한계소비성향은 약 0.610~1.129 정도로 나타났다. (c)열에 의하면, 이들 가구의 통합 2~4분기 핵심 비내구재 소비는 월평균 68~81천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소비액 증가분의 약 47~69 퍼센트 정도에 해당한다.

패널 C는 가구주 학력이 초대졸인 가구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a)열에 의하면, 2020년 정부지원금은 통합 2~4분기 가구 월평균 소득을 231천 원 정도 증가시킨다. (b)열에 의하면, 초대졸 가구의 통합 2~4분기 소비액은 월평균 235~259천 원 정도 증가하였다. 그러므로 이들 가구의 통합 2~4분기 한계소비성향은 약 1.020~1.121 정도이다. (c)열에 의하면, 이들 가구의 통합 2~4분기 핵심 비내구재 소비는 월평균 140~148천 원 정도 증가하였다. 이는 전체 소비액 증가분의 약 38~58

퍼센트 정도를 차지한다.

마지막으로, 패널 D는 가구주 학력이 대졸 이상인 가구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a)열에 의하면, 2020년 정부지원금은 통합 2~4분기 가구 월평균 소득을 127천 원 정도 증가시킨다. 대졸 이상 표본의 소득 변동에 대한 이중변동법1 추정치는 중간값 주위에서 상당한 변동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변동법1의 추정치 대신 이중차분법 추정치 127천 원을 대졸 이상 표본의 통합 2~4분기 소득변동분으로 간주한다.

(b)열에 의하면, 대졸 이상 가구의 통합 2~4분기 소비액은 월평균 118~123천 원 정도 증가하였다. 따라서 이들 가구의 통합 2~4분기 한계 소비성향은 약 0.930~0.970 정도이다. (c)열에 의하면, 이들 가구의 통합 2~4분기 핵심 비내구재 소비는 월평균 78~99천 원 정도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소비액 증가분의 약 66~80 퍼센트에 해당한다.

280 사회복지장 분야 사각지대 축소 및 부정적지출 관리 방안 연구-기금 지원을 중심으로

〈표 7-5〉 1분기와 통합 2~4분기 기준, 주요 세부 소비 항목의 연도별·분기별 변화: 교육수준별 표본

(단위: 천원)

	패널 A. 중졸 이하			패널 B. 고졸		
	a. 소득	b. 소비지출	c. 핵심 비내구재	a. 소득	b. 소비지출	c. 핵심 비내구재
가. 1분기						
2019년		1,468	878		2,498	1,361
2020년		1,351	800		2,260	1,310
[20년-19년]		-117	-78		-238	-51
나. 통합 2~4분기						
2019년		1,397	841		2,314	1,313
2020년		1,460	879		2,268	1,306
[20년-19년]		63	38		-46	-7
다. 이중차분법(DID)	117	180	116	134	193	44
-MPC	—	1.542	0.993	—	1.437	0.329
(t-값)		(3.49)	(4.64)		(2.99)	(1.33)
라. 이중변동법1(CIC1)	116	172	90	173	106	68
-MPC	—	1.486	0.779	—	0.610	0.391
(t-값)		(4.78)	(4.61)		(2.20)	(2.87)
마. 이중변동법2(CIC2)	—	140	77	—	196	81
-MPC		1.210	0.661		1.129	0.468
(t-값)		(5.28)	(4.05)		(4.58)	(3.34)

자료: 가계동향조사(2020년 1/4~4/4분기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함).

(표 7-5) 1분기와 통합 2~4분기 기준, 주요 세부 소비 항목의 연도별·분기별 변화: 교육수준별 표본(계속)

(단위: 천원)

	패널 C. 초대졸			패널 D. 대졸 이상		
	a. 소득	b. 소비지출	c. 핵심 비내구재	a. 소득	b. 소비지출	c. 핵심 비내구재
가. 1분기						
2019년		2,663	1,463	76	3,217	1,635
2020년		2,607	1,419	98	3,010	1,584
[20년-19년]		-55	-44	22	-207	-52
나. 4분기						
2019년		2,567	1,425	88	3,080	1,590
2020년		2,612	1,499	237	2,952	1,604
[20년-19년]		45	74	149	-129	14
다. 이중차분법(DID)	147	100	118	127	78	65
-MPC	—	0.678	0.802	—	0.617	0.515
(t-값)		(0.88)	(2.71)		(0.90)	(1.69)
라. 이중변동법1(CIC1)	231	235	148	-6	118	78
-MPC	—	1.020	0.640	—	0.930	0.615
(t-값)		(2.34)	(3.15)		(1.53)	(1.71)
마. 이중변동법2(CIC2)	—	259	140	—	123	99
-MPC		1.121	0.608		0.970	0.776
(t-값)		(2.32)	(2.41)		(2.12)	(3.13)

자료: 가계동향조사(2020년 1/4~4/4분기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함.)

제4절 소결

본 장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2019년과 2020년 분기별 미시 원자료를 이용해 2020년 코로나19 대응 정부지원금이 가구소득과 소비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장의 분석을 통해 도출한 정부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 추정치(이중변동법1 추정치 기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록 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2020년 정부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은 2분기의 경우 0.421, 3분기의 경우 0.399, 4분기의 경우 0.274로서 2020년의 후반부로 갈수록 한계소비성향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가구들이 받은 정부지원금의 절반 정도를 해당 분기에 소비하고 나머지는 시차를 두고 소비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2020년 통합 2~4분기 전체의 한계소비성향은 0.781로, 2020년에 가구에 지급된 전체 100만 원의 정부지원금 중 4분기까지 약 781천원 정도가 소비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수치는 2020년 정부지원금의 상당 부분이 소비로 연결되었음을 시사한다. 반면에, 2020년에 수행된 분기별 분석에서는 한계소비성향이 과소로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가구주 학력별로 한계소비성향을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각 분기에 공통으로 중졸 이하 및 초대졸 가구의 한계소비성향이 대체로 높고 서로 유사하게 나타난다. 고졸과 대졸 이상 가구의 한계소비성향은 서로 유사하고, 중졸 및 초대졸 가구에 비해서는 낮다.

통합 2~4분기를 기준으로 할 때, 가구주 학력별 한계소비성향은 중졸 가구의 경우 1.486, 고졸 가구의 경우 0.610, 초대졸 가구의 경우 1.020, 대졸 이상 가구의 경우 0.930 정도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학력을 가구 유동성 제약의 대리변수로서 해석할 때, 2020년

정부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 추정 결과는 가구의 유동성 제약이 심할수록 한계소비성향이 높을 것이라는 이론적 예측을 지지하는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전체 표본의 한계소비성향 추정치와 비교할 때 중졸 이하 가구의 한계소비성향은 높고, 고졸 가구의 한계소비성향은 낮다. 즉 가구주의 교육 수준별 한계소비성향이 일정한 패턴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표 7-6〉 2020년 정부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 추정치(이중변동법1) 요약

분석 표본 \ 시점	A. 2분기	B. 3분기	C. 4분기	D. 통합 2~4분기
전체 표본	0.421	0.399	0.274	0.781
중졸 이하	0.651	0.457	0.458	1.486
고졸	0.468	0.266	0.177	0.610
초대졸	0.635	0.575	0.345	1.020
대졸 이상	0.370	0.463	0.179	0.930

주: A, B, C 각 분기별 분석은 부록 3에 예시하였으며, 본 연구는 D만 수록하였음.
자료: 가계동향조사(2020년 2/4~4/4분기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함.)

제2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장에서 계산한 한계소비성향 추정치는 한계소비성향 참값(true value)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가정 2: 코로나19 효과의 동질성]에 의해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2020년 매분기에 서로 같다고 가정했다. 만약 2~4분기 코로나19B의 경제적 충격이 1분기 코로나19A의 충격에 비해 큰 경우, 현재의 한계소비성향 추정치는 한계소비성향 참값의 하한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도 가계동향조사의 2020년 자료에 가구들이 수급한 정부지원금 정보가 정확히 반영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 2020년 정부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은 국내외 선행연구들이 제시하는 수치들에 비해 그리 낮지 않다.

이우진, 강창희, 우석진(2021)이 국내외 선행연구의 한계소비성향을 요약한 바에 의하면, 본 장에서 추정한 2020년 정부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은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추정치의 중간 정도 또는 중간보다 큰 부분에 위치한다.

반면에 본 장에서 추정한 한계소비성향은 Johnson, Jonathan, and Nicholas(2006)가 미국의 2001년 연방소득세 환급액의 한계소비성향을 추정한 결과와 대체로 유사하다. Johnson et al.(2006)에 의하면, 2001년의 연방소득세 환급금의 3개월 기준 (비내구재 소비) 한계소비성향은 0.2~0.4, 6개월 기준 (비내구재 소비) 한계소비성향은 약 0.666 정도로 나타났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8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 제언

제 8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1. 결과 요약

본 연구는 다년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보장 분야 사각지대 축소 및 부적정지출 축소를 위한 모니터링틀에 근거하여 코로나19 긴급 지원을 분석하는데 연구의 초점이 있다. 코로나19가 지속 중인 상황에서 긴급 지원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사회재난이라는 점과 메르스를 경험한 우리 사회가 감염병으로 인한 대응체계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없는지를 찾는 데 의의를 두었다.

먼저 2장에서는 코로나19로 촉발된 사회적 재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정책 대응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여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공적연금으로 구성된 1차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 재난의 원인이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과 상이하여 1차 사회안전망을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다만, 고용보험을 통하여 적극적인 고용유지를 지원하고 실업급여를 완화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

한편, 정부는 1차 사회안전망을 확보하지 못한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갑작스러운 소득의 상실에 대응하여 한시적 긴급복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재난에 대응하는 3차 사회안전

망으로 코로나19 긴급 지원을 실시하였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국제금융위기와 같은 경제 위기 상황으로 간주함으로써 고용안 전망과 소득안전망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사람의 비말로 인해 전염되는 감염병으로 「재난관리기본법」에 근거한 사회재난으로 포함되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금지 및 영업 제한 등의 행정 권한을 시행하였으나 가장 취약한 집단의 돌봄안전망은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다.

제3장은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 조사를 설명한다. 조사표는 2장에서 살펴본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에 근거하며, 선행연구에서 수행한 조사표를 참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연령집단, 종사상 지위, 종사상 지위의 변화(하락) 등 긴급 지원에서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제4장에서 6장에서는 이들 집단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4장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인 자영업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임금근로자(상용직 및 임시일용직)보다 자영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인 소득이 감소할 확률이 약 30%로 나타났고, 제조업보다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경우 개인 소득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들 집단 내에서 개인 특성이나 종사자가 속한 산업 혹은 지역에 따른 편차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하는 일부 업종에 대한 집중적 지원방식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을 뜻한다.

5장에서는 서로 다른 노동시장 진입 및 생애주기를 경험하고 있는 연령집단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청년은 전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으나, 코로나 전후의 소득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수 청년이 주거비로 인한 부담이 있으며, 이는 부채를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청년은 코로나19 이후 우울감, 건강상 문

제, 주변 사람과의 갈등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코로나19 이전에도 고용취약계층으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6장에서는 코로나19 전후로 노동시장에서 지위 변동을 경험한 사람들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코로나19 전후 노동시장 지위는 내부 유지 집단 52.3%, 외부 유지 32.1%, 상승 6.2%, 하락 9.3%로 나타났다. 내부노동시장에서 고용 지위를 유지한 집단만 소득감소도 적고, 우울감이나 스트레스의 증가 수준도 낮다. 반면에 종사상 지위가 하락한 집단은 소득감소와 우울감 및 스트레스, 타인과의 갈등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집단은 다수의 긴급 지원 혜택에서 오히려 수급 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긴급 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사상 지위가 악화된 집단은 고용원이 있던 자영자, 임시일용직, 5인 미만 영세사업장 종사자, 여성, 저학력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및 불안정 고용상황에 있던 고용취약계층이었다.

7장에서는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코로나19에 대한 긴급 지원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1차 4.30., 2차 9.22.)은 2020년 8월 말까지 사용하도록 기간을 제한하였고,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7월 말에서 9월 말까지로 이용 기간이 다양했다. 정부지원금을 수급한 가구들은 일시적으로 증가한 소득을 즉각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2020년에 지급된 정부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을 분석한 결과, 2분기 0.421, 3분기 0.399, 4분기 0.274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0년 통합 2~4분기 전체의 한계소비성향은 0.781로 정부지원금의 상당 부분이 소비로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연구결과의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구축해온 사회안전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작동된 사회안전망은 지난 25년 동안 계속 대상을 확대하고 급여를 확대해왔으나, 더 적극적인 1차 안전망으로써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국제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위기에서 고용안전망과 고용대책은 노사 합의로 경영 부담과 소득감소라는 고통은 분담하되 고용은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자영자, 특고·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이 더 큰 고통을 받았지만,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그다지 촘촘하지 못했다.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로 전환하고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12개 직종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2022년에는 대리운전과 퀵서비스를 추가할 계획이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다만,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적용방안을 수립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촘촘한 준비가 필요하다. 되는 만큼, 와 임시·일용직 등에 대해 현실성 있는 이와 함께 자영업자와 임시·일용직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둘째,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증에 대한 3차 사회안전망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재난관리법」에서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재난을 포함하였지만, 기존의 법은 자연재해를 중심으로 제정되어 사회재난과 관련한 사항은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초기에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써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상당한 논의

가 새롭게 대두되었고, 대상 선정기준과 지급방식과 관련한 정책 결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더하여 「재난기본법」과 「긴급복지법」의 관계, 「재난기본법」에 근거한 피해보상의 지원 등에서 추가경정 예산 요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슈를 제기한다. 먼저 코로나19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국제금융위기와 유사한 경제위기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각종 고용지표와 거시경제 지표들이 하락했으나,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국제금융위기와 같은 대량 실업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코로나19 대응이 경제위기에 초점을 맞춰 기존의 고용안전망과 소득안전망을 중심으로 작동하면서 긴급 지원은 상당히 복잡했으며 체감도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부처별·사업별로 기존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긴급 지원 체계를 확보하면서 전달체계의 복잡성으로 인한 비신청 사각지대(Type I a)까지 양산하였다. 무엇보다도 신종 감염병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 앞에서 고용과 소득으로 한정된 지원은 또 다른 한계를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코로나19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3차 안전망을 구축한다면 기존 제도들과의 정합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메르스 때 확진자의 방문으로 인해 문을 닫았던 병원과 약국은 「재난기본법」에 근거하여 피해보상을 받았다. 이는 비말을 통한 개인 간 감염 우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 및 금지에 대한 행정 권한을 발동할 때도 똑같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대한 피해보상 역시 확진자가 다녀간 병·의원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정부의 지침에 따라 영업 제한 및 영업 금지를 준수했던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보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92호)」의 개정 이후 논의를 시작하였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재난기본법」에 따른 피해보상이 아니라 부처별·사업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향후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따른 또 다른 재난이 발생할 때 코로나19와 같은 논의를 반복하게 할 우려가 있다.

셋째, 우리 사회의 돌봄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는 메르스와 달리 비말을 통한 감염의 우려가 컸으므로 사람들의 모임이나 집합을 지양하였다. 이에 따라 직장과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방식이 전면적으로 제한되고, 국민의 발이 되어 준 지하철·버스·택시·철도 등의 이용도 감소하였다.

이와 함께 생존을 위해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은 붕괴 수준에 이르렀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요양 시설과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졌고,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방문하는 요양보호사나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발길도 끊어졌다. 학교는 문을 닫았고, 돌봄 공백은 고스란히 가족에게 전가되었다.

돌봄안전망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해법은 소득지원으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전략이 가구소득을 증가시키고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돌봄 공백을 메울 수는 없다. 또한 신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오히려 저임금 일자리로 전락하고 민간에게 위임하는 방향으로 가속화되었다.

넷째, 무엇보다도 신종 감염병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구 사회적 위험과 신 사회적 위험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최영준, 2011), 오늘날 우리가 경험한 코로나19는 고용안전망과 소득안전망, 돌봄안전망이 한꺼번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이전까지의 사회적 위험과 같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이전의 신구와 완전히 다른 사회적 위험이라면, 이에 대한 대응 역시 보다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제2절 정책제언

1. 신종감염병에 대응하는 재난관리체계의 실행성 강화

다수의 연구자들이 복지국가를 논할 때, 구 사회적 위험(old social risk)과 신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을 비교한다. 전후 남성생계부양자모델에 근거하여 생계부양자가 실업, 노령, 질병, 장애 등으로 소득 능력을 상실했을 때 현금 이전을 통해 국민의 삶을 보장했던 것이 구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정책 대응이다.

이에 비해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고 가족 구조의 불안정성이 증가하자 가정 내 돌봄을 사회화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신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정책 대응이 제기되었다.

물론 구 사회적 위험과 신 사회적 위험이 완전히 서로 다른 것이라고 구분하기는 어렵다. 최영준(2011)은 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집단이 구 사회적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구 사회적 위험과 신 사회적 위험 사이에 중첩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표 8-1〉 사회적 위험 비교

	구 사회적 위험(old social risks)	신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
원인	산업화	탈산업화
내용	실업, 노령,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한 소득 능력의 상실	고용구조의 변화(제조업→서비스업),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의 증가, 가족구조의 불안정성 증가, 고용의 비표준화
대상	남성부양노동자(male-breadwinner)	청년층, 여성, 저숙련 노동자
정책	현금이전(transfer)에 초점	사회서비스에 초점

자료: Huber and Stephens. (2006); Bonoli. (2007)

올리히벡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위험 사회(risk society)로의 전환을 제안한다(김병섭, 김정인, 2016; 올리히 벡, 2008). 올리히 벡은 사회가 발전할수록 위험 사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안전’의 가치가 ‘평등’의 가치보다 중요해지고, 위험은 지역과 계층과 관계없이 평준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때 위험은 자연재해나 전쟁 같은 불가항력적 재난이 아니라, 정치·경제·사회적인 환경과 결합하여 나타나는 재난을 뜻한다. 기존의 사회복지제도가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과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였다면, 삶의 편리를 위해 우리 스스로 만든 ‘만들어진 위험(manufactured risk)’에 대응하는 느슨한 사회적 연대로써 사회적 재난에 대응한 긴급 지원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올리히 벡, 2008).

〈표 8-2〉 재난 비교

구분		유형	
재 난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사회 재난	인적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국가기반체계 마비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가축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피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해외재난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	

자료: Alexander. (2002)를 활용하여 재구성.

본 연구에서는 감염병 등으로 인한 사회재난에 대한 3차 안전망으로써 긴급 지원제도를 대상화하고, 사회적 재난에 대응하는 느슨한 연대의 긴급 지원 제도화를 제안한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안전법」제3조(정의)에 근거하여 사회재난이 발생한 때, 국민에게 재난을 선포(같은 법 제36조)하며 이에 근거하여 긴급구조를 실시할 수 있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발생한 경우, 긴급구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긴급 지원을 결정할 수 있고, 이때 긴급 지원을 위해서는 패스트트랙을 통한 긴급 지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한다.

긴급 지원은 긴급 구조(제51조), 응급 지원(제63조), 손실보상(제64조), 치료 및 보상(제65조) 등을 포함하며, 제3차 사회안전망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한 긴급복지와 「재해구호법」에 근거한 재해구호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불필요한 긴급 지원의 남용으로 인한 예산 부담을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 지원의 편성 및 발동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 등을 기준으로 대량의 실업과 일반 국민의 소득감소 수준, 거시 경제 지표의 급격한 하락, 대내 고용지표의 급격한 하락 등의 조건을 마련할 수 있다.

둘째, 현재 「재난안전법」은 자연재해를 중심으로 “피해”와 “복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피해를 본 국민(개인)이 복구 시점까지 혹은 감염병이 완치될 때까지 지원해야 할 긴급 지원에 대한 정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메르스 이후 신종 감염병이 사회적 재난으로 포함된 만큼 법 전반에 걸쳐 자연재해 중심의 조항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피해를 본 국민에 대한 “최저 수준의 삶을 보장”하는 정부의 책임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

현재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재난에서 위기 대응은 질병관리청의 실무 매뉴얼을 따른다. 이는 「재난안전법」제34조의 5(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등을 통해 재난에 대비하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제3조(정의) 혹은 제4조(국가 등의 책무)에 “재난피해를 본 국민이 재난 상황이 종결되

는 때까지 정부는 최저 수준의 삶을 보장”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긴급 지원의 급여 수준의 근거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고용보험 가입자에 대한 산전후휴가 급여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산전후휴가 급여에 차이가 있다. 특히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은 월 5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와 유사하게 코로나19에 대한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긴급 지원의 기준 금액이 개인 단위 월 5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때 눈여겨볼 기준은 우리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기준이다. 우리나라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 같은 법 제2조11호는 “기준 중위소득”을 규정하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법제처 홈페이지, 2021.12.15.).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매년 8월에 다음 해의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여 공표한다. 예를 들어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0년 8월 7일에 제정되었다(법제처 홈페이지, 2021.12.15.).

2021년 기준 1인 가구의 중위소득 100%는 1,827,831원이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의 대상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인 548,349원이다. 물론 이러한 기준 금액은 정부가 긴급 지원에 활용한 50만 원과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핵심 가치를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재난 시 긴급하게 지원되는 소득지원의 1인당 기준 단가는 최저생활 보장 수준을 준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표 8-3〉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 기준

(단위: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생계급여 선정기준(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의료급여 선정기준(40%)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0).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0호)을 참조하여 저자 재작성.

(https://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CONT_SEQ=358911에서 2021.11.15. 인출.)

넷째, 긴급 지원이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지급 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기준의 엄격성을 지양하고, 보편적으로 지원한 후 차년도에 세금을 통한 환수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메르스 당시 확진자가 다녀간 병원과 약국에 대한 손실보상 역시 매우 터디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초기 마스크 구매로 인한 약국 방문 및 확진자 병원 방문에 대한 손실보상은 매우 빠른 속도로 이뤄졌다.

이에 비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보상은 매우 더딘 속도로 이뤄졌다. 행정 명령을 통한 영업금지 및 영업 제한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액을 산출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와 소비 진작이 계속 엇갈리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즉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확진자가 증가하고, 확진자가 증가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특히 피해보상에 대한 확신이 없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를 호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이에 더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소득 증빙에 대한 한계도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 국민 실시간 소득 파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근본적으로 「재난안전법」에 근거한 국가 재난 사태 시 “선 지원-후 징수” 방안을 제안한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은 선제적인 지원은 일시적인 개인 소득감소와 가구소득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소득이 유지”되거나 “소득이 증가”한 집단은 이러한 지원이 불필요하다.

만약 선 지원 후 차년도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제도화한다면, 신청자는 불필요한 신청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제공자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유발하는 것도 차단할 수 있다. 또한 아동수당계좌, 스쿨뱅킹계좌, 기초연금수급계좌 등 행정 편의에 의한 재정낭비 요인도 일부 제한할 수 있다.

물론 “후 징수”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세금을 통한 환수는 전전년도 세금과 비교하여 가구소득이 감소하면 유예되며, 필요하지 않았는데 긴급 지원을 받은 때에만 부과되는 것을 원칙으로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재난 상황의 전달체계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방역을 담당하는 조직이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그것이다. 형식상으로 방역 최고 책임은 방대본이지만, 세 개의 전달체계 간 엇박자를 낼 때도 있다. 그동안 「재난안전법」에서 다뤘던 자연재해와 달리 사회적 재난에 대한 전달체계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거시경제와 소비 진작 등을 해소하는 것이 같은 법 제2조(기본이념)의 취지와 맞다.

2. 생애주기 돌봄안전망 구축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사회안전망의 취약성을 여러 가지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으며,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의 모색의 계기를 제공하였다. “복지국가”라는 측면에서 “완전한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재구조화”를 주장하는 학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기존의 사회보장제도가 갖는 ‘대상 선정기준’과 ‘보충성의 원칙’, ‘사회보험 의무가입’ 등과 같은 원리들이 겉으로는 ‘완전한 사회보장체계를 갖춘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무수히 많은 ‘사각지대’를 포함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특히 산업화 시대에는 실업이나 노령, 장애 등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구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장 지위를 잃은 사람에 대한 소득보장이 중요한 화두였으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맞벌이가구의 증가 등(신 사회적 위험)으로 탈산업화시대에는 유아교육 및 보육,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돌봄과 같은 사회서비스의 확대가 중요해졌다. 우리 사회는 이 두 가지 모두에서 선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多)부처 사업으로 인한 칸막이를 조정할 타이밍을 놓친 상황에서 기후 변화 및 감염병 등의 새로운 종류의 사회적 위험에 직면한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19는 소득보장의 취약성(자영자, 저임금 대인서비스 일자리, 노동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청년 등)과 돌봄서비스의 취약성(가족 돌봄을 위한 충분한 휴가, 노인, 장애인, 아동에 대한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감염병 우려에 대한 공공부문의 록다운 등)이 결합하여 나타난다.

그러나 IMF 이후 잔여적인 성격의 생활보호법이 권리로써 인식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전환된 것과 같이 소득 중심으로 구성된 사회안전망과 별개로 돌봄안전망으로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회보장

기본법」에는 “사회서비스”로 제시되어 있는데, 보편적으로 제공(예, 교육)되거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주택이나 문화여가 프로그램 등 비현금성 급여”를 통칭한다. 그러나 저출산고령사회에서 돌봄서비스는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필수서비스로 전환된다는 측면에서 ‘사회서비스 안전망’이 아니라 ‘돌봄안전망’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코로나19는 비말에 의해 개인 간에 전파되는 신종 감염병이다. 이것이 메르스와 다른 점은 가벼운 기침이나 재채기에도 감염이 되기 때문에 개인 단위의 위생 및 방역 체계(예, 손씻기와 마스크)를 마련하는가 하면, 국가적 차원에서 학교와 사회복지시설의 휴원·휴업을 명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의무화했으며, 다중이용시설의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과 영업 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하였다.

이러는 동안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한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은 공백 상태로 남겨졌다. 간혹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로 재택근무나 가족돌봄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여 가족 내 돌봄 공백을 완화한 경우도 발생하였으나,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고용평등증진사업의 접근성 정도에 따라 돌봄 공백의 차이는 크다. 문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부양인구가 돌봄을 제공한 근로연령인구보다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염병으로 촉발된 생애주기별 돌봄안전망 구축의 역사적 과제이다. 돌봄 안전망은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돌봄이 필요한 모든 부양자에 대해서는 가정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가족돌봄 휴가 등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적절한 급여를 지

급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재택근무와 원격근무를 위한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둘째, 가정 돌봄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 재가 돌봄서비스와 시설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고령자의 경우 재가 돌봄서비스를 통해서 노인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입소를 예방할 수 있다. 영유아 및 아동의 경우 시설을 이용한 돌봄서비스가 우선되는데, 아동 발달에 대한 조기 개입과 사회성 함양 등의 이유이다.

재가 돌봄서비스와 시설 돌봄서비스와 같은 사회적 돌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에서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 특히 노년부양비와 유소년부양비 간의 상쇄관계를 고려하고,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 인구의 감소를 고려한다면 부처별·사업별 전달체계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돌봄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우리 사회가 지역단위에서 록다운(lockdown)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지역에서는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필수서비스”를 명문화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과 규제 방안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필수서비스는 의식주에 필요한 서비스와 이동이 포함된다. 지역단위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필수서비스가 끊어지지 않고 제공되기 위해서는 필수서비스 인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은 공적 책무를 갖게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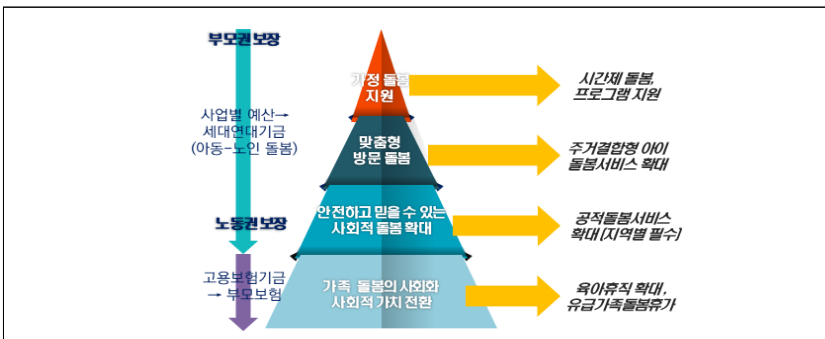
즉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가 휴교하고 학원 등이 휴원했을 때 온라인 수업을 지원하고 가가호호 안부 확인과 도시락을 배달하는 돌봄서비스는 대표적인 필수서비스이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곧 돌봄서비스의 질과 연계되고, 사회적 돌봄서비스의 확충은 가정 내 돌봄 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사회 전반의 효율적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반면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교와 경찰서, 병원 등의 필수서비스는 반드시 30% 이상 공

급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방역 현장에 나가 있는 의사와 간호사 등 필수 인력 역시 한 아이의 부모이자 한 부모의 자녀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필수서비스란,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와 책무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한 지역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는 경제위기로 여겨지며 소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아동돌봄쿠폰과 비대면학습지원과 같은 소득지원은 중산층 이상의 가구에서 구매력을 증진시켰지만, 돌봄이 필요하나 돌봄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저소득층에게는 오히려 돌봄의 사각지대를 초래하였다. 즉 돌봄안전망의 붕괴를 소득안전망으로 메우는 방식이 코로나19에서 이뤄졌다. 사실 이러한 예산 배정은 익숙하다.

코로나19 이후 우리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돌봄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소득지원은 가계의 한계소비성향을 높일 수는 있으나, 사람이 사람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공백을 메울 수는 없다. 자연 재난이나 사회재난이 발생할 때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필수서비스가 차질없이 제공될 수 있는 돌봄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그림 8-1] 아동돌봄안전망



자료: 저자 작성

3. 청년 주거지원정책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거정책은 크게 임대 주택 입주 지원과 임차료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LH가 직접 건설하는 청년 건설임대와 행복주택, LH가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하여 임대하는 매입 혹은 전세를 통해 임대하는 청년 매입임대가 있다. 한편, 기존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하여 청년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 임대도 있다(김강산, 2021, p.8).

이에 반해 청년 공공지원 민간 임대는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마지막으로 공공기숙사는 대학생의 거주를 위해 건설한 원룸형 기숙사 및 매입한 다가구주택을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김강산, 2021, p.8).

지난 3년 간 청년 대상 임대주택 공급이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청년들은 민간 임대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표 8-4〉 청년 대상 임대주택 공급 실적

(단위: 만호)

구분	2018	2019	2020	2021.상반기
합계	3.8	4.8	5.2	2.1
청년 건설임대 (행복주택 포함)	1.2	1.1	1.4	0.5
청년 매입임대	0.3	0.5	0.7	0.4
청년 전세임대	0.8	1.3	1.4	0.6
청년 공공지원민간임대	1.5	1.9	1.7	0.6

주: 건설임대-준공기준, 매입·전세임대-입주기준, 공공지원민간임대-부지확보기준.
 자료: 김강산. (2021). 청년 주거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 NARS 현안분석, 제216호. 국회입법조사처.
 p. 8.

이로 인해서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일반가구보다 높고,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계속 증가하는 현실이다. 청년 가구의 구입 당시 주택 가격 대비 금융기관 대출금(LTV)의 비율은 2020년 46.3%로 일반가구(37.2%)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 가구 비율 역시 74.8%로 일반가구(63.9%)보다 높다. 반면에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과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각각 5.5배 및 16.8%로 일반가구(5.5배, 16.6%)와 유사하다.

〈표 8-5〉 청년가구 주거비 부담

(단위: %, 배)

구분		LTV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이 부담된다고 느끼는 가구 비율	자가 PIR (중위수 기준)	임차 RIR (중위수 기준)
청년가구	2017	45.7	80.8	5.0	18.8
	2018	45.6	84.3	5.1	20.1
	2019	46.3	76.3	5.0	17.7
	2020	46.3	74.8	5.5	16.8
일반가구	2017	38.2	66.0	5.6	17.0
	2018	37.8	70.7	5.5	15.5
	2019	38.1	65.0	5.4	16.1
	2020	37.2	63.9	5.5	16.6

주: 국토교통부, 2020년 주거실태조사 자료임.
 자료: 김강산. (2021). 청년 주거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 NARS 현안분석, 제216호. 국회입법조사처.
 p. 5.

임차료 지원정책은 이러한 민간 임대시장에서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국토부의 주거급여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월세 수당 등이 있다.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5% 이하를 수급 조건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 계층의 비중은 적다. 지

방정부의 월세 수당은 지자체별로 편차가 있지만 대체로 중위소득 120~150% 수준에서 지원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대부분 지자체에서 생애 1회에 만 34세 혹은 만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기존의 대출 프로그램이나 공공분양에 초점이 있었던 주거 지원에서 저소득 청년의 주거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보장성 차원에서는 지방정부의 기준보다 포괄 범주가 높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1년 정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임차 급여는 목표로 하는 소득계층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일관성이 존재하지 않아 정책대상이 명확성이 떨어진다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상설정의 일관성 및 소득 기준 완화를 통해 보장성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불안이 장기화됨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행복주택을 중심으로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을 늘리고 있는데, 매입임대주택의 수급 기준을 완화하여 청년층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주거급여의 보장성 확대에 대한 고려 역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최초로 단독 주거를 형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 임대차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불법 또는 불공정 행위를 하는 임대인이나 부동산 중개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저 주거 기준 미달의 주거환경을 임차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임대하는 임대인에게 제재 조치를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강신욱, 허선, 정호원. (200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 분석.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은나, 이민홍. (2016). 우리나라 세대별 1인가구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2016. 04).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지원, 최혜진, 임완섭, 황안나, 안 영, 조동훈, 김우성. (2020). 사회보장 분야 사각지대 축소와 부적정 지출 관리 방안 연구 - 방과후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고용노동부. (2019).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 세종: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2021).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세종: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일자리정책평가과. (2021),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 및 제14차 고용위기대응반 개최. (2021.05.25.)-심의 안건 ② 코로나19 대응 고용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 관계부처 합동. (2009). 민생안정 긴급 지원 대책(2009.03.12.).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210374에서 2021.11.10. 인출.
- 관계부처 합동. (2020).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1)- 사업재개, 신규창출, 채용-(2020.05.14.).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0-3. 정책정보포털 POINT.
https://policy.nl.go.kr/search/searchDetail.do?rec_key=SH2_PL C20200250754에서 2021.10.20. 인출.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2020).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2020.03.17.).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https://www.opm.go.kr/flexer/view.do?ftype=hwp&attachNo=97233>에서 2021.10.01. 인출.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2021). 청년세대 코로나 위기 극복·격차해소·미래

도약 지원을 위한 반값 등록금 실현 등 청년특별대책 87개 과제 발표
(2021.08.25.).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https://www.opm.go.kr/flexer/view.do?ftype=pdf&attachNo=109593>에서 2021.10.01. 인출.

국정신문. (2002). 우리나라 사회안전망-IMF 한파 겪으며 역할개선 부각-국민연
금시대 열고 고용보험 확대(2002.10.2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archive/governmentView.do?newsId=148747493>에서 2021.11.10. 인출.

국회예산정책처. (2020).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서울: 국회예산
정책처.

금재호. (2009). 자영업 이탈과 노동시장 성과에 관한 연구. 2009 경제학 공동학
술대회 자료집, pp. 197-229.

금재호. (2012). 자영업 노동시장의 변화와 특징. 노동리뷰. pp. 57-75.

기든스. (2009). 기후변화의 정치학. 홍욱희 옮김. 에코리브르.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 예산정책과, 조세분석과. (2015). 메르스 극복·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추경 12조 원을 포함하여 총 22조 원 수준의 재정보강 추진
(2015.07.0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064554>에서 2021.11.10. 인출.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 예산정책과, 행정예산과, 복지예산과, 재정정책과.
(2020).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확정(2020.04.30.). KDI 경제
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00266&topic=>
[eiec](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00266&topic=)에서 2021.11.10. 인출.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 (2020).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2020.09.22.). KDI 경제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05273>에서
2021.11.10. 인출.

- 김강산. (2021). 청년 주거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 NARS 현안분석. 제216호. 국회입법조사처.
- 김경혜. (2009). 경제위기 시대의 사회안전망: 정책대상과 정책방향. 서울도시연구, 10(3), pp. 23-36.
- 김교성. (2017). 외환위기 20년, 소득보장정책의 발전과 한계. 한국사회정책, 24(4), pp. 151-184.
- 김민찬. (2021). 작년 재난지원금 받은 근로소득자 16만명이 513억원 기부 (2021.09.08.). MBC 뉴스.
https://imnews.imbc.com/news/2021/econo/article/6299266_34887.html에서 2021.10.01. 인출.
- 김병섭, 김정인. (2016). 위험사회와 관료책임-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6(4), pp. 379-407. 서울행정학회.
- 김상균, 최일섭, 최성재, 조흥식, 김혜란. (2005). 사회복지개론(개정판). 서울: 남출판.
- 김승래. (2021). 디지털 전환시대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보호방안. 법학연구, 21(2), pp. 1-30.
- 김영란. (2018). 위험사회학-위험의 프리즘: 위험의 생산·분배·대응. 도서출판 나눅.
- 김우영. (2009). 자영업자의 이질성과 취약자영계층에 대한 정책과제. 200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pp. 230-269.
- 김을식, 강정한, 조무상, 김숙영, 송준모, 유정균, ..., 박민지. (2020). 재난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 연구: 코로나19 및 재난지원금의 영향. 경기: 경기연구원.
- 김종진, 김영민, 김영록, 연시영, 임아현, 장지혜, 최경은. (2020). 코로나19와 청년노동실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유니온센터.
- 김태완, 전지현. (2009). 경제위기 이후 정책적 노력과 빈곤 및 불평등 변화. 보건복지포럼. 통권150호. pp. 20-3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남재욱, 서복경, 김영빈. (2020).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청년층 이행경로 영향

연구. 서울: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pp. 1-205.

남재욱. (2021).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상황과 일자리 만족도에 관한 연구. 노동 정책연구, pp. 101-133.

노대명, 정세정, 곽윤경, 이지혜, 임지영, 이호근. (2020). 고용형태 다변화에 따른 사회보장 패러다임 재편방안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사정위원회. (200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합의문(2009.2.23.). 대한민국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662929>
에서 2021.10.15. 인출.

문혜진, 구인회, 김진석, 손병돈, 우석진, 함선유, 양다연. (2020).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성과평가 연구. 서울: 서울시복지재단.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2020a). 코로나19 위기 대응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한다!(2020.3.20.).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53657&page=1에서
2021.05.31. 인출.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2020b). 2020년 긴급복지 완화기준, 2021년 3월까지 계속 적용한다.(2020.12.3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30253>에서 2021.05.31. 인출.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2021).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폐지(2021.9.30.).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8041에서
2021.05.31. 인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2021a). 공백없는 돌봄 지원을 위한 '2021년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 시행(2021.01.19.). 대한민국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3>

- 2573에서 2021.05.31. 인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아동복지정책과. (2020). 긴급돌봄 및 아동 특별돌봄 지원 현장 점검(2020.09.28.).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97&CONT_SEQ=360101&SEARCHKEY=DEPT_NM에서 2021.05.31. 인출.
- 보건복지부. (2003). 중산서민층 생활안정대책 추진.(2003.5.30.).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5). 2015 메르스백서. 세종: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유진, 오선정, 송경호, 류재린, 김상현, 김을식, ..., 이지완. (2021).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및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 평가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오윤섭, 함영진, 강지원, 이세미, 이규환, 하현상, ..., 박상철. (2016). 부정수급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사회보장 모니터링-사회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울리히 벡. (2008). 위험에 처한 세계: 비판이론의 새로운 과제. 사회와 이론. 12, pp. 7-36.
- 윤강재.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통해 살펴본 감염병과 공공보건의료. 보건의료 ISSUE & FOCUS, 제377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윤동열, 주무현, 고혜원, 김유빈, 김지운, 정동열, ..., 김승석. (2021). 고용보험기금 사업 효율화 방안 검토. 기획재정부·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 이동훈, 김지운, 강현숙. (2016). 메르스(MERS) 감염에 대해 일반대중이 경험한 두려움과 정서적 디스트레스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35(2), pp. 355-383. 한국심리학회.
- 이래혁. (2021). 코로나19 불안과 스트레스의 관련 요인: 인구학적 특성 및 거주지역 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6), pp. 71-80.
- 이명진, 최유정, 이상수. (2014). 1인 가구의 현황과 사회적 함의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27(1), pp. 229-253.

- 이상림. (2020). 청년인구 이동에 따른 수도권 집중과 지방 인구 위기, 보건·복지 Issue&Focus 395호, pp. 1-9,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6743>에서 2021.10.01. 인출.
- 이석원, 손호성, 김미곤, 박현정, 변재관, 김성아, ..., 신은영. (2020).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사업 효과성 평가 연구. 전주: 전주시·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 이소영, 양영미, 윤지영. (2021). 코로나 19 로 인한 부정적 변화와 자존감, 인터넷 중독의 관계: 20, 30 대 청년을 중심으로. 한국중독범죄학회보, 11(2), pp. 81-106.
- 이수영. (2019). 첫 일자리로의 이행기간이 청년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우진, 강창희, 우석진. (2021). 2020년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 소비에 미친 영향. 2021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 이원진, 김현경, 오욱찬, 함선유, 한겨레. (2021). 1인 가구 사회보장 욕구 및 수급 현황 분석. 세종: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지성. (2020). 코로나 19 시대, N 포 세대의 '두려움'과 '혐오'에 대한 윤리적 과제. 기독교사회윤리, 48, pp. 107-133.
- 이태석, 김미루, 오윤해, 이영욱, 권형준, 이승은, ..., 한영은. (2020).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연구Ⅱ. 세종: 행정안전부·한국개발연구원.
- 이현주, 정은희, 김문길, 전지현. (2020). 가구소득에 대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과 정책과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호연, 양재진. (2017). 퍼지셋 분석을 통해 본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불안정 노동자. 한국정책학회보, 26(4), pp. 65-104.
- 임완섭, 김태완, 강지원, 이아영, 김혜승, 고경표, ..., 이규환. (2018). 사회보장제도 수급 적격성 제고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모니터링-주거복지(주거급여 중심) 분야를 중심으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임완섭, 오윤섭, 김문길, 황주희, 윤여선, 김명중, ..., 이규환. (2017). 사회보장제

- 도 수급자 선정 적격성 제고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모니터링-공공부조 제도(소득 보장)를 중심으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임완섭, 황남희, 정은희, 이아영, 정용문, 윤여선, ..., 최은혜. (2019). 사회보장 분야 사각지대 축소와 부적정 지출 관리 방안 연구 - 노인에 대한 공공부조 제도를 중심으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인선. (2020). “한눈에 보는 사스 vs 메르스 vs 코로나19(2020.02.27.)”. 헬스 경향.
<http://www.k-health.com/news/articleView.html?idxno=47418>
 에서 2021.07.12. 인출.
- 장지연, 정이환, 전병유, 이승렬, 조성재, 강성태. (2019).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통합적 노동시장정책 패러다임.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재정경제부. (2001). IMF 외환위기 극복과 우리경제의 향후과제. 서울: IMF 극복 기자간담회.
- 전병유, 황인도, 박광용. (2018).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정책대응: 해외사례 및 시사점. BOK 경제연구 제2018-40호. 서울: 한국은행.
- 정세정. (2020). 청년의 일 실태와 정책 함의. 보건복지포럼, 2020(6), pp. 19-32.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승국. (2021). 노동시장의 내부자는 외부자와 다른 정책 선호를 갖는가?: 가구 효과 분석. 산업관계연구, 31(1), pp. 1-22.
- 정한나, 윤정혜, 박세정, 황성수, 박비곤. (2021). 코로나19가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진천: 한국고용정보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정홍준. (2020). 코로나19, 사회적 보호 사각지대의 규모와 대안적 정책방향. 고용·노동브리프, 제97호(2020-04).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주무현. (2010). 고용유지제도 전달체계와 개선방안 연구. 지역고용연구, 2(1), pp. 20-45.
- 진상현. (2010). 기든스 역설에 빠진 세계에 대한 가이드북. 환경사회학연구 ECO, 14(1), pp. 197-207. 한국환경사회학회.
- 최영준, 최정은, 김지현, 조원희, 노혜상, 한선희. (2020). 국내외 사회보장 지원

정책 분석 연구. 서울: 복지국가연구센터·보건복지부.

최영준. (2011). 위험 관리자로서의 복지국가: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이론적 이해. *정부학연구*, 17(2), pp. 31-57.

한영혜. (2020). WHO, 결국 사상 세 번째 '팬데믹' 선언... "코로나 통제가능".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728084>에서 2021.11.9.인출

함선유, 이원진, 김지원. (2021). 코로나19의 확산과 청년노동시장 변화.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수경, 윤윤규, 조성재, 전병유, 박경로, 안주엽. (2010). *경제위기와 고용*.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황수경. (2003). 내부자 (Insiders) 노동시장과 외부자 (Outsiders) 노동시장의 구조 분석을 위한 탐색적 연구. *노동정책연구*, 3(3), pp. 49-86.

Alexander. (2002). From civil defence to civil protection-and back again. *Disaster Prevention and Manage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11(3), pp. 209-213.

Athey, Susan and Guido W. Imbens (2006), Identification and Inference in Nonlinear Difference-in-Differences Models, *Econometrica*, 74(2), pp. 431-497.

Bonoli. (2007). Time Matter: Postindustrialization, New Social Risks, and Welfare State Adaptation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0(5), pp. 495-520.

Churchill, B. (2021). COVID-19 and the immediate impact on young people and employment in Australia: A gendered analysis. *Gender, Work & Organization*, 28(2), pp. 783-794.

DeLeire, T. (2004). *A note on calculating difference in differences using probit models versus linear probability models*. Michigan State University.

- Doeringer, P. & Piore, M.J. (1971). *Internal labor markets and manpower adjustment*. New York: DC Heath and Company.
- Hsieh, Chang-Tai, Satoshi Shimizutani and Masahiro Hori. (2010). Did Japan's shopping coupon program increase spending?,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4(7-8), pp. 523-529.
- Huber & Stephens. (2006). *Combating Old and New Social Risks*.
<https://huberandstephens.web.unc.edu/wp-content/uploads/sites/12348/2016/06/NSR-05.pdf>에서 2021.11.10. 인출.
- Johnson, David S., Jonathan Parker and Nicholas Souleles (2006), Household Expenditure and the Income Tax Rebates of 2001, *American Economic Review*, 96(5), pp. 1589-1610.
- Jonathan Parker, Nicholas Souleles, David Johnson and Robert McClelland. (2013), Consumer Spending and the Economic Stimulus Payments of 2008, *American Economic Review*, 103(6), pp. 2530-2553.
- Kan, Kamhon, Shin-Kun Peng and Ping Wang. (2017). Understanding Consumption Behavior: Evidence from Consumers' Reaction to Shopping Vouchers.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9(1), pp. 137-153.
- Lambovska, M., Sardinha, B., & Belas, J. (2021). Impact of Covid-19 Pandemic on the Youth Unemployment in the European Union. *Ekonomicko-manazerske spektrum*, 15(1), pp. 55-63.
- OECD. (2019). *Statistics on Average Effective Age of Retirement(1970-2018)*.
<https://www.oecd.org/employment/emp/average-effective-age-of-retirement.htm>에서 2021.10.01. 인출.
- OECD. (2020). *OECD Employment Outlook 2020: Worker Security and the Covid-19 Crisis*. Paris: OECD Publishing.

https://www.oecd-ilibrary.org/employment/oecd-employment-outlook-2020_1686c758-en에서 2021.10.01. 인출.

- Rueda, D. (2005). Insider-outsider politics in industrialized democracies: the challenge to social democratic parti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9(1), pp. 61-74.
- Shapiro, M. D., & Slemrod, J. (2009). Did the 2008 tax rebates stimulate spending?. *American Economic Review*, 99(2), pp. 374-79.
- Schmillen, A., & Umkehrer, M. (2017). The scars of youth: Effects of early-career unemployment on future unemployment experience.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56(3-4), pp. 465-494.

〈웹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021). 고용안전망.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safety/list12.do>에서
2021.11.29. 인출.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2020). 코로나19 경제지원-비상경제회의.

<https://www.moef.go.kr/sns/2020/emgncEcnmyMtg.do?slideCnt=04&category1=infograp#05>에서 2021.07.05. 인출.

대한민국정책브리핑 홈페이지. 코로나19 경제대책.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72965>에서 2021.11.29. 인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0%90%EC%97%BC%EB%B3%91%EC%9D%98%20%EC%98%88%EB%B0%A9%20%EB%B0%8F%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에서
2021.10.14. 인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연혁.

<https://www.law.go.kr/l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8%B4%EA%B8%89%EB%B3%B5%EC%A7%80%EC%A7%80%EC%9B%90%EB%B2%95#undefined>에서 2021.12.15. 인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고용보험법. [시행 2021.7.1.] [법률 제17859호, 2021.1.5., 일부개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A0%EC%9A%A9%EB%B3%B4%ED%97%98%EB%B2%95>에서 2021.5.31. 인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국가재정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 18585호, 2021. 12. 21., 일부개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C%9E%AC%EC%A0%95%EB%B2%95>에서 2021.5.31. 인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약칭: 기초생활보장법).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25호, 2021. 7. 27., 일부개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8%B0%EC%B4%88%EC%83%9D%ED%99%9C%EB%B3%B4%EC%9E%A5%EB%B2%95>에서 2021.8.4. 인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327호, 2021. 7. 27., 일부개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8%B4%EA%B8%89%EB%B3%B5%EC%A7%80%EC%A7%80%EC%9B%90%EB%B2%95>에서 2021.8.4. 인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긴급복지지원법.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6730>에서 2021.11.15. 인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0. 8.] [법률 제18292호, 2021. 7. 7., 일부개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C%83%81%EA%B3%B5%EC%9D%B8%20%EB%B3%B4%ED%98%B8%20%EB%B0%8F%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에서 2021.8.4. 인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약칭: 재난안전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98호, 2020. 12. 22., 일부개정].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C%EB%82%9C%20%EB%B0%8F%20%EC%95%88%EC%A0%84%EA%B4%80%EB%A6%AC%20%EA%B8%B0%EB%B3%B8%EB%B2%95>에서 2021.8.4. 인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재해구호법. [시행 2020. 7. 30.] [법률 제 16881호, 2020. 1. 29., 일부개정].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C%ED%95%B4%EA%B5%AC%ED%98%B8%EB%B2%95>에서 2021.5.31. 인출.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0).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0호).
- https://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CONT_SEQ=358911에서 2021.11.15. 인출.
- 복지로 홈페이지. (2021). 한시 생계지원.
-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zzza/intgSearch/moveTWZZ01000M.do>에서 2021.03.10. 인출.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2021). 정책정보, 감염병위기대응, 신종감염병관리, MERS.
- <https://www.kdca.go.kr/contents.es?mid=a20301020709>에서 2021.11.29. 인출.
- 통계청. (2018). 경제활동인구조사.
- https://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1/3/2/index.board에서 2021.09.21. 인출.
- 통계청. (2020a). 경제활동인구조사.
- https://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1/3/2/index.board에서 2021.09.21. 인출.
- 통계청. (2020b). “2020 통계로 보는 1인가구, (2020. 12. 08.)”.
-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

de=read&aSeq=386517에서 2021.10.01. 인출.

통계청. (2021a). 2021년 11월 고용동향.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3/2/index.board?bmode=read&aSeq=252691&pageNo=16&rowNum=10&amSeq=&sTarget=&sTxt=에서 2021.10.01. 인출.

통계청. (2021b). 2020년 일자리행정 통계 결과.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3/1/index.board에서 2021.10.01. 인출.

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https://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1/4/3/index.board에서 2021.09.21. 인출.

<DATA>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홈페이지). 가계동향조사.

<https://mdis.kostat.go.kr/infoData/detailData.do?statsConfmNo=101006&nPage=4>에서 2021.09.21. 인출.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홈페이지).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s://mdis.kostat.go.kr/infoData/detailData.do?statsConfmNo=101004&nPage=3>에서 2021.09.21. 인출.



[부록 1] 선행 조사 문항 비교

문항	본 조사		비교 조사
		척도	
SQ1. 일반현황			
1) 성	① 남성 ② 여성		①, ②, ③
2) 학력	① 고졸 이하 ② 대졸 ③ 석박사 이상		②, ③
3) 시도	17개 시도		①, ②
4) 지역구분	① 동 지역 ② 읍면 지역		①, ②
SQ2. 연령	(주관식)		①, ②, ③
SQ3. 가족형태	① 1인가구		③
	② 부부2인		③
	③ 부부 2인+자녀		③
	④ 한부모+자녀		③
	⑤ 조부모+부모+자녀		③
	⑥ 조부모+손자녀		③
	⑦ 기타		③
1) 가족구성원 수	① 전체 가구원 수		①, ②, ③
	② 만65세 이상 노인 수		①, ②, ③
	③ 만18세 미만 아동 수		①, ②, ③
	④ 등록장애인 수		
2) 혼인상태	① 미혼		②
	② 배우자 있음		②
	③ 이혼·사별		②
SQ4. 현재 직업 (종사상 지위)	① 상용직		①, ③
	② 임시·일용직		③
	③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③
	④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③
	⑤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③
	⑥ 실업자		③
	⑦ 비경제활동인구 등 기타		③
1) 2019년 동일 여부	① 동일하였음		
	② 동일하지 않음		
2) 2019년 직업 (종사상 지위)	① 상용직→상용직		②
	② 상용직→임시·일용직		
	③ 상용직→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④ 상용직→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⑤ 상용직→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⑥ 상용직→실업자		
	⑦ 상용직→비경제활동인구 등 기타		

322 사회복지장 분야 사각지대 축소 및 부정정지출 관리 방안 연구-긴급 지원을 중심으로

문항	본 조사		비교 조사
	척도		
3) 현재 산업분류	① 농림어업, 광업	①	①
	② 제조업	①	①
	③ 전기, 환경, 건설업	①	①
	④ 도소매, 운수, 숙박·음식점업	①	①
	⑤ 출판·영상, 금융·보험, 부동산업	①	①
	⑥ 과학·기술, 사업지원, 임대업	①	①
	⑦ 서비스업	①	①
	⑧ 그 외	①	①
4) 종사자 규모	① 1~4명	①	①
	② 5~9명	①	①
	③ 10~29명	①	①
	④ 30~49명	①	①
	⑤ 50~99명	①	①
	⑥ 100~299명	①	①
	⑦ 300명 이상	①	①
	⑧ 공무원(중앙, 지자체)		
SQ5.주택 형태	① 자기집	②	②
	② 전세	②	②
	③ 보증금 있는 월세(반전세 포함)	②	②
	④ 보증금 없는 월세	②	②
	⑤ 무상 주택, 무상 사택 등	②	②
	⑥ 기타	②	②
A1. 2020년 가구소득	(월평균, 세전소득 기준)	①, ②, ③	
A2. 2019년과 비교 가구소득 변화	① 증가함		①, ③
	② 감소함		①, ③
	③ 변화 없음		①, ③
1) 가구소득감소액	월 평균(단위: 만원)		
2) 가구소득감소 사유	① 직장 또는 사업장 폐업	①, ②	①, ②
	② 직장 또는 사업장 휴업	①	①
	③ 매출 감소(영업제한, 집합금지 등)	①, ②	①, ②
	④ 임대수입 감소	①	①
	⑤ 근로시간 감소	①, ②	①, ②
	⑥ 임금 체불		
	⑦ 유급/무급 휴직		
	⑧ 실직	①, ②	①, ②
3) 소득 충당	① 줄어든 소득에 맞춰 생활	①, ③	①, ③
	② 예적금 및 보험 등 활용	①, ③	①, ③
	③ 은행에서 대출	①, ③	①, ③
	④ 은행이 아닌 곳에서 빚	①, ③	①, ③
	⑤ 친인척 등 도움	①, ③	①, ③
	⑥ 정부지원금으로 충당	③	③
	⑦ 기타	①, ③	①, ③

문항	본 조사		비교 조사
	척도		
A3. 2020년 개인소득	(월평균, 세전소득 기준)		①, ②, ③
A4. 2019년과 비교	① 증가함		②
개인소득 변화	② 감소함		①, ②, ③
	③ 변화 없음		②, ③
1) 개인소득감소액	월 평균(단위: 만원)		③
2) 개인소득감소	① 직장 또는 사업장 폐업		①, ③
사유	② 직장 또는 사업장 휴업		①, ③
	③ 매출 감소(영업제한, 집합금지 등)		①, ③
	④ 임대수입 감소		①
	⑤ 근로시간 감소		③
	⑥ 임금 체불		③
	⑦ 유급/무급 휴직		③
	⑧ 실직		①, ③
A5.가구 지출 구성(2019년)	아래 2020년과 동일		
A5.가구 지출 구성	① 식료품(외식비 포함)		③
(2020년)	② 주거비(월세, 관리비 등)		③
	③ 교육비(보육료 포함)		③
	④ 의료비		③
	⑤ 교통비		③
	⑥ 통신비		③
	⑦ 기타소비지출		③
	⑧ 세금 및 사회보험료		
	⑨ 가구 간 이전지출		
	⑩ 부채상환		
	⑪ 저축 및 금융 투자		
1) 지출 부담	① 식료품(외식비 포함)		①, ②
	② 주거비(월세, 관리비 등)		①
	③ 교육비(보육료 포함)		①, ②
	④ 의료비		①, ②
	⑤ 교통비		②
	⑥ 통신비		②
	⑦ 기타소비지출		①
	⑧ 세금 및 사회보험료		
	⑨ 가구 간 이전지출		
	⑩ 부채상환		①
	⑪ 저축 및 금융 투자		
A6.2019년과 비교	① 증가함		③
가족부채 변화	② 감소함		③
	③ 변화 없음		③

324 사회보장 분야 사각지대 축소 및 부정정지출 관리 방안 연구-긴급 지원을 중심으로

문항	본 조사		참조
	척도		비교 조사
1) 부채 증가 원인	① 식료품(외식비 포함)		
	② 주거비(월세, 관리비 등)		③
	③ 교육비(보육료 포함)		③
	④ 의료비		③
	⑤ 교통비		
	⑥ 통신비		
	⑦ 기타소비지출		
	⑧ 세금 및 사회보험료		
	⑨ 가구 간 이전지출		
	⑩ 부채상환		③
	⑪ 저축 및 금융 투자		
A7. 긴급 지원 수혜 (2020년)	① 국가긴급재난지원금		②, ③
	② 아동돌봄쿠폰 등		②
	③ 이동통신요금지원		③
	④ 지자체긴급재난지원금(일반주민)		②
	⑤ 긴급복지지원금		
	⑥ 소상공인새희망자금		②, ③
	⑦ 소상공인휴폐업비, 임대료 등		②
	⑧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손실보상)		②
	⑨ 청년특별구직지원금		
	⑩ 긴급고용안정지원금		②, ③
	⑪ 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금		
	⑫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고용 관련)		②

문항	본 조사		비교 조사
	척도		
B1.사업장 시작년도			
B2.매출감소 실했던 분기 (2020년)	① 1분기		
	② 2분기		
	③ 3분기		
	④ 4분기		
B3.사업장 매출변화	① 증가함		
	② 감소함		
	③ 변화 없음		
1) 매출 감소 비율	월 평균(단위: 전년 대비 %)		
B4.사업장 비용 구성비 (2019년)	① 재료비		
	② 인건비		
	③ 임대료		
	④ 수수료		
	⑤ 기타		
B4.사업장 비용 구성비 (2020년)	① 재료비		②
	② 인건비		②
	③ 임대료		
	④ 수수료		
	⑤ 기타		②
1) 사업장 비용 중 지출 부담	① 재료비		
	② 인건비		
	③ 임대료		
	④ 수수료		
	⑤ 기타		
B5.사업장 순 소득 변화	① 증가함		②
	② 감소함		②
	③ 변화 없음		②
1) 순소득 변화	월 평균(단위: 전년 대비 %)		
B6. 월 임대료	(단위: 만원)		
B7. 순 소득(월)	(단위: 만원)		
B8. 지원금 사용 용도 (비율)	① 인건비		
	② 임대료		
	③ 생활비		
	④ 기타		
B9. 선호하는 지원	① 사업장 고용 유지 지원		
	② 영업제한 등으로 인한 피해 지원		
	③ 임대료 인하 및 지원		
	④ 저금리(금리우예) 대출 등 금융지원		①

326 사회보장 분야 사각지대 축소 및 부정정지출 관리 방안 연구-긴급 지원을 중심으로

문항	본 조사		비교 조사
	척도		
C1. 심리 및 생활 변화	① 경제적 어려움		③
	② 나와 가족의 건강상 문제		③
	③ 가족 돌봄의 부담 증가		②, ③
	④ 우울감 증가		③
	⑤ 스트레스 증가		③
	⑥ 주변사람들과의 갈등 증가		③
	⑦ 자살 충동 증가		
1) 경제적 어려움 경험한 대상	① 월세를 밀린 적 있음		③
	② 대출금, 관리비 등을 연체한 적 있음		
	③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 구매 못함		
2) 돌봄 부담 증가	① 학교가 등교하지 않아 자녀 돌봄		③
	② 학교가 온라인 수업 진행		
	③ 방과후 돌봄 시설 운영 중단		③
	④ 방과후 가정 방문 돌봄서비스 중단		③
	⑤ 기타		
3) 돌봄 부담에 대한 대응	① 일을 하지 않는 가족 전담		②, ③
	② 일을하는 가족이 휴직 휴가 등 사용		②, ③
	③ 부모, 형제 등 가족의 도움		②, ③
	④ 시설/기관의 긴급 돌봄 대체		②, ③
	⑤ 개인으로 돌봄 종사자 고용		②, ③
	⑥ 기타		②, ③
C2. 긴급 지원의 사각지대 인식	① 전혀 없음		
	② 별로 없음		
	③ 약간 있음		
	④ 매우 많음		
1) 사각지대 우선순위	① 공적 이전에 의존하는 저소득층		
	② 돌봄이 필요한 가정 내 아동·노인·장애인		
	③ 시설에서 돌보는 아동·노인·장애인		
	④ 교육기회가 제한된 학생		
	⑤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진 청년		
	⑥ 집합금지 등으로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		
	⑦ 기업 운영이 제한된 고용주		
2) 긴급 지원정책의 사각지대	①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		
	② 긴급복지지원금		
	③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④ 소상공인 휴·폐업비, 임대료 등 지원		
	⑤ 지역 소상공인 대상 지자체 지원금		
	⑥ 청년특별구직지원금		
	⑦ 긴급고용안정지원금		
	⑧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⑨ 고용 안정 및 실업 관련 지자체지원금		

문항	본 조사		비교 조사
		척도	
C3. 본인의 사각지대 인식	① 예 ② 아니오		
1) 사각지대 인식의 근거	① 자적요건에는 미달하지만 열악 ② 신청했지만 미승인 ③ 신청하지 않음 ④ 지원은 받았으나, 불충분 ⑤ 기타		
C4. 부정수급 인식	① 전혀 없음 ② 별로 없음 ③ 약간 있음 ④ 매우 많음		
1) 부정수급 인지 경로	①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 ② 주변에서 직접 보았음(직접경험) ③ 주변에서 들은 적 있음(간접경험) ④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 동영상 ⑤ 기타		
2) 제도별 부정수급 인식	①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 ② 취약계층 긴급복지지원금 ③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④ 소상공인 휴·폐업비, 임대료 등 지원 ⑤ 소상공인 대상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 ⑥ 청년특별구직지원금 ⑦ 긴급고용안정지원금 ⑧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⑨ 고용안정 및 실업 관련 지자체 지원금		
C5. 정부 긴급 지원	① 신청 정보를 쉽게 얻었다 ② 신청 절차가 간편했다 ③ 필요한 때(시점) 지원이 이뤄졌다 ④ 필요한 곳(사용처)에 사용했다 ⑤ 필요한 만큼(금액) 지원이 이뤄졌다 ⑥ 가계에 도움이 되었다 ⑦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 ⑧ 국가 경제의 소비 진작에 도움됐다 ⑨ 코로나19 방역에 도움이 됐다	③ ②, ③ ②, ③ ②, ③ ③ ③	
C6. 재난 지원에 대한 정부 지원 인식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①
C7. 비상사적인 긴급 지원에 대한 지원	① 질병, 주택화재 등 개인 및 기업 ② 고용재난, 대규모 산불, 태풍 등 ③ 메르스, 코로나19 등		
C8. 비상사적인 긴급 지원 우선순위	① 저소득층 ②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대상 ③ 전 국민		①, ②

주: ① 이현주 외. (2020). 가구소득에 대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과 정책과제.
 ② 최영준 외. (2020). 국내의 사회보장 지원정책 분석 연구.
 ③ 문혜진 외. (2020).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성과평가 연구.
 ④ 이석원 외. (2020).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사업 효과성 평가 연구.

[부록 2]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표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국가 정책 연구기관으로, 보건복지정책의 현안을 분석하고 이에 근거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응하여 정부가 지급한 긴급 지원(예, 긴급복지지원,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고용안정 지원금 등)의 지급 실태와 도움 정도를 파악하고, 긴급 지원에 대한 효과 및 영향, 인식 등을 조사하여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 발생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이를 위해 일반 국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해 코로나19 전후 소득 및 지출의 변화와 긴급 지원 지급 여부 및 인식 등을 조사하는 「긴급 지원 실태 및 인식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온라인 조사로, 응답에는 약 30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입력 후 익명처리(성명과 연락처, 주소 등 개인식별정보를 모두 삭제 또는 비식별화 처리)된 파일의 형태로 보관하며, 연구의 최종결과물(연구보고서, 마이크로데이터 등) 작성 시에도 개인식별이 가능하지 않도록 자료를 처리합니다.

연구의 결과물(연구보고서, 마이크로데이터 등)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공공데이터의 제공)에 의해 개인정보 비식별화 절차를 거친 이후 공개될 수 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이라도 응답하기 불편한 내용은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언제라도 동의를 철회하고 연구 참여를 중단하셔도 되며, 이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도 없을 것입니다.

본 조사가 정부정책 수립과 추진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귀하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하고 솔직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연구책임자 : 미래전략연구실 ○○○ 부연구위원(044-287-8154)

담당: 미래전략연구실 ○○○ 연구원(044-287-8417)

[연구 참여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항목]

코로나 19 긴급 지원 지급여부, 도움 정도, 긴급 지원의 효과 및 영향, 제도에 대한 인식 등

[개인정보 수집 목적]

코로나 19 긴급 지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 수립 및 개선방안 모색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간 동안에 한하여 보유 및 이용됩니다. 다만,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보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위 사항에 따라 조사 사실을 충분히 설명 받고 숙지하였으며, 조사 참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2021년 월 일

조사대상자 :

일반 현황

SQ1. 응답자 일반 현황

1)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2) 최종학력	① 고졸 이하	② 대졸	③ 석박사 이상
3) 시도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4) 지역구분	① 동 지역 ② 읍면 지역		

SQ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 20대 미만은 조사에서 제외함.

SQ3. 귀하의 가족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현재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을 중심으로 응답해주세요.

① 1인 가구	② 부부 2인	③ 부부 2인+자녀	④ 한부모+자녀
⑤ 조부모+부모+자녀	⑥ 조부모+손자녀	⑦ 조부모+한부모+자녀	⑧ 기타

SQ3-1. 귀하가 현재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은 몇 명입니까? (본인 포함)

① 전체 가구원 수	② 만65세 이상 노인 수	③ 만18세 미만 아동 수	④ 등록장애인 수
명	명	명	명

SQ3-2. 귀하의 혼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① 미혼	② 배우자 있음	③ 이혼·사별
------	----------	---------

330 사회보장 분야 사각지대 축소 및 부정정지출 관리 방안 연구-긴급 지원을 중심으로

SQ4. 귀하의 현재 직업(종사상 지위)은 무엇인가요?

임금노동자	① 상용직	②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③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④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기타종사자	⑤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방문교사 등)	
그 외	⑥ 실업자 (지난 4주 동안 일할 의사와 능력은 있지만 일을 하지 못한 경우)	⑦ 비경제활동인구 등 기타 (주부, 군인, 학생 등 취업도 실업도 아닌 경우와 무급가족종사자 등 포함)

SQ4-1. 2019년 12월(코로나 이전)에도 귀하의 직업(종사상 지위)은 현재와 동일했나요?

① 동일하였음	② 동일하지 않음
---------	-----------

[if SQ4-1=②] SQ4-2. 2019년에 귀하의 직업(종사상 지위)은 무엇이었나요?
(SQ4의 보기 참조)

①~⑦ 중 기입

[if SQ4=①~⑤] SQ4-3. 귀하의 현재 직업은 다음의 산업 분류 중 어디에 속하나요?

대분류(①~⑧)	소분류(㉠~㉡)
① 농림어업, 광업	소분류 조사 안함
② 제조업	소분류 조사 안함
③ 전기, 환경, 건설업	소분류 조사 안함
④ 도소매, 운수, 숙박·음식점업	㉠ 도소매업 ㉡ 운수, 창고업 ㉢ 숙박, 음식점업
⑤ 출판·영상, 금융·보험, 부동산업	소분류 조사 안함
⑥ 과학·기술, 사업지원, 임대업	소분류 조사 안함
⑦ 서비스업	㉣ 행정, 국방 등(공무원만) ㉤ 교육서비스(공공, 민간) ㉥ 보건, 복지서비스(공공, 민간) ㉦ 예술, 스포츠 등(공공, 민간)
⑧ 그 외	소분류 조사 안함

[if SQ4=①~⑤] SQ4-4. 귀하가 현재 다니고 있는 사업장의 종사자 규모는 어떻게 되시나요?

① 1~4명	② 5~9명	③ 10~29명	④ 30~49명
⑤ 50~99명	⑥ 100~299명	⑦ 300명 이상	⑧ 공무원(중앙, 지자체)

SQ5.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자기집	② 전세	③ 보증금 있는 월세 (반전세 포함)
④ 보증금 없는 월세	⑤ 무상 주택, 무상 사택 등	⑥ 기타

332 사회보장 분야 사각지대 축소 및 부정정지출 관리 방안 연구-긴급 지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이후 가계 소득과 지출 변화

문1. 2020년 한 해 동안 귀하가 속한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얼마인가요? 세금공제 전 총소득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긴급 지원을 제외한 가구소득을 응답해주세요.)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199만원	③ 200만원~299만원	④ 300만원~399만원
⑤ 400만원~499만원	⑥ 500만원~599만원	⑦ 600만원~699만원	⑧ 700만원 이상

문2. 코로나19 이전(2019년)과 비교할 때 코로나19 이후(2020년)에 귀하가 속한 가구의 소득은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① 증가함(문3으로 이동)	② 감소함	③ 변화 없음
----------------	-------	---------

[if 문2=②] 문2-1. 귀하의 가구소득은 코로나19 이전(2019년)과 비교할 때 얼마나 줄어 들었나요?

(월 평균 소득의 감소한 금액을 만원 단위로 적어주세요)

월 평균	만원
------	----

[if 문2=②] 문2-2. 귀하의 가구소득이 줄어든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구소득이 줄어든 이유의 크기를 고려하여 3순위까지 선택)

항목	1순위	2순위	3순위
① 직장 또는 사업장 폐업			
② 직장 또는 사업장 휴업			
③ 매출 감소(영업제한, 집합금지 등)			
④ 임대수입 감소			
⑤ 근로시간 감소			
⑥ 임금 체불			
⑦ 유급/무급 휴직			
⑧ 실직			

[if 문2=②]

문2-3. 코로나19로 줄어든 가구의 소득을 어떻게 충당하고 계시나요? 보충되는 소득의 크기를 고려하여 우선순위로 2가지만 선택해주세요.

내용	1순위	2순위
① 줄어든 소득에 맞춰 절약하며 생활하고 있다.		
② 예금이나 적금, 민간보험 등 모아뒀던 돈을 사용하고 있다.		
③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다.		
④ 은행이 아닌 곳에서 빚을 내서 사용하고 있다.		
⑤ 친인척이나 친구, 지인이 도와주어서 생활하고 있다.		
⑥ 정부지원금(긴급복지지원, 긴급재난지원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⑦ 기타		

문3. 2020년 한 해 동안 귀하의 월 평균 개인 소득은 얼마인가요? 세금공제 전 총소득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긴급 지원을 제외한 개인소득을 응답해주세요.)

① 50만원 이하	② 51만원~85만원	③ 86만원~120만원	④ 121만원~155만원
⑤ 156만원~190만원	⑥ 191만원~225만원	⑦ 226만원~260만원	⑧ 261만원~295만원
⑨ 296만원~330만원	⑩ 331만원~365만원	⑪ 366만원~399만원	⑫ 400만원 이상

문4. 코로나19 이전(2019년)과 비교할 때 코로나19 이후(2020년)에 귀하의 개인 소득은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① 증가함(문5로 이동)	② 감소함	③ 변화 없음
---------------	-------	---------

[if 문4=②]

문4-1. 귀하의 개인 소득은 코로나19 이전(2019년)과 비교할 때 얼마나 줄어들었나요?(월 평균 소득의 감소한 금액을 만원 단위로 적어주세요)

월 평균	만원
------	----

334 사회보장 분야 사각지대 축소 및 부정정지출 관리 방안 연구-긴급 지원을 중심으로

[if 문4=②]

문4-2. 귀하의 개인 소득이 줄어든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가지만 선택)

① 직장 또는 사업장 폐업	② 직장 또는 사업장 휴업
③ 매출 감소(영업제한, 집합금지 등)	④ 임대수입 감소
⑤ 근로시간 감소	⑥ 임금 체불
⑦ 유급/무급 휴직	⑧ 실직

문5.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귀하가 속한 가구의 월 평균 지출 항목의 구성비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각 년도별 100%를 기준으로 작성)

구분	지출 항목	코로나19 이전 (2019년 월 평균)	코로나19 이후 (2020년 월 평균)
소비 지출	① 식료품(외식비 포함)	%	%
	② 주거비(월세, 관리비 등)	%	%
	③ 교육비(보육료 포함)	%	%
	④ 의료비	%	%
	⑤ 교통비	%	%
	⑥ 통신비	%	%
	⑦ 기타소비지출 (오락·문화, 의료·신발, 가정용품· 가사서비스, 기타)	%	%
비소 비지 출	⑧ 세금 및 사회보험료	%	%
	⑨ 가구 간 이전지출 (부모·자녀 용돈 등)	%	%
	⑩ 부채상환 (대출, 카드론 등)	%	%
	⑪ 저축 및 금융 투자 (연금보험, 주식 등 포함)	%	%
합계		100%	100%

① 식료품: 곡물, 빵류, 떡류, 육류, 유제품, 채소, 조미식품, 비주류 음료, 외식비 등
② 주거비: 월세, 주거관리비(주택수선비 포함), 상하수도료, 전기료, 난방비 등
③ 교육비: 정규교육, 어린이집, 학원이나 보습교육(사교육), 기타교육 등의 서비스 등
④ 의료비: 의약품, 외래의료서비스, 입원서비스, 치과 서비스 등
⑤ 교통비: 차량유지비(연료비, 수리비 등)나 대중교통비 등(자동차구입비 제외)
⑥ 통신비: 통신장비(전화기기), 통신서비스(일반전화요금, 휴대전화요금, 인터넷 이용료) 등
⑦ 기타 소비지출: 오락·문화, 의료·신발, 가정용품·가사서비스, 숙박, 담배 등
⑧ 세금 및 사회보험료: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기타 세금, 공적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보험료 등
⑨ 가구 간 이전지출: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부모·자녀·친지 등에게 보낸 현금 및 현물지출
⑩ 부채상환: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 대환대출 등)의 원금 상환 및 이자지급액
⑪ 저축 등: 적립식 및 예치식 저축 및 펀드, 저축성 보험, 주식 투자 등

문5-1.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은 무엇인가요? (문5의 보기 중에서 선택)

1순위	2순위
①~⑪중 선택	①~⑪중 선택

문6. 귀하의 가족은 코로나19 이전(2019년)과 비교할 때 가족의 부채에 변화가 있습니까?

① 증가함	② 감소함(문7로 이동)	③ 변화 없음(문7로 이동)
-------	---------------	-----------------

[if 6=①]

문6-1. 귀하 가족의 부채가 증가한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문5의 보기 중에서 선택)

1순위	2순위
①~⑪중 선택	①~⑪중 선택

코로나19 긴급 지원 수혜 현황

문7. 귀하와 귀하의 가족이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로부터 지원받은 항목을 모두 응답해주세요.

	항목	수급여부	금액
일반 국민 대상	① 국가 긴급재난지원금(1차, 2020년 5월 지급, 전 국민 대상) (예,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원)	① 받지 않음	(다음 항목)
		② 받음	만원
	② 아동돌봄쿠폰,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2020년 9월~10월 지급) (미취학 및 초등학교 자녀 1인당 20만원, 중학생 1인당 15만원)	① 받지 않음	(다음 항목)
		② 받음	만원
	③ 이동통신요금 지원(2020년 10월 중 9월분 요금에서 차감) (만16~34세, 만65세 이상 2만원)	① 받지 않음	(다음 항목)
	② 받음	만원	
	④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①에 추가로 지급) (2020년 기준, 시도 및 시군구 주민 대상, 합계)	① 받지 않음	(다음 항목)
		② 받음	만원
	⑤ 긴급복지지원금 (지방자치단체 별도 신청)	① 받지 않음	(다음 항목)
		② 받음	만원
소상공인	⑥ 소상공인 새희망자금(2020년 9월 신청 및 지급, 사업주) (일반 100만원, 집합제한업종 150만원,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① 받지 않음	(다음 항목)
		② 받음	만원
	⑦ 소상공인 휴·폐업비, 임대료 등 자금 지원	① 받지 않음	(다음 항목)
		② 받음	만원
	⑧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 (2020년 기준, 시도 및 시군구 소상공인 대상)	① 받지 않음	(다음 항목)
		② 받음	만원
실업 및 고용 관련	⑨ 청년특별구직지원금(2020년 9월 신청, 11월말 지급)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 50만원)	① 받지 않음	(다음 항목)
		② 받음	만원
	⑩ 긴급고용안정지원금(2020년 9월 신청, 11월 지급)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1차 수급자 50만원, 신규신청자 150만원)	① 받지 않음	(다음 항목)
		② 받음	만원
	⑪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2020년 10월 신청, 11월 지급) (실직, 휴·폐업 위기가구 40~100만원)	① 받지 않음	(다음 항목)
		② 받음	만원
	⑫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 (고용안정 등 일 관련 지원)	① 받지 않음	(다음 항목)
		② 받음	만원

문7-1. 코로나19로 인해 정부가 지급한 현금을 주로 어떻게 사용하셨습니다?

① 저축(통장 잔고 늘어남), 투자(주식 등)	② 대출이나 빚 상환(카드빚, 이자 지급 포함)
③ 주거비(월세, 이사비 등)	④ 공과금(수도세, 전기료, 난방비 등) 납부
⑤ 평소보다 생활비 지출을 늘림	⑥ 목돈이 들어 평소에 쓰지 못하던 데에 지출

코로나19 이후 지출 현황(자영업자 추가 질문)

※ 귀하의 종사상 지위는 고용주입니까?(SQ4=③,④확인)

① 예(→문8로 이동)	② 아니오(→문17로 이동)
--------------	-----------------

문8. 귀하의 현재 사업장의 시작년도는 언제입니까?

()년

문9. 2020년 한 해 중 매출감소가 가장 심했던 시기(분기)는 언제입니까?

① 1분기	② 2분기	③ 3분기	④ 4분기
-------	-------	-------	-------

문10. 코로나19 이전(2019년)과 비교할 때 코로나19 이후(2020년)에 귀하의 사업장 매출은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① 증가함(문11로 이동)	② 감소함	③ 변화 없음
----------------	-------	---------

[if 문10=②] 문10-1. 코로나19 이전(2019년)의 사업장 매출을 100이라고 한다면, 코로나19 이후(2020년) 매출은 대략 어느 정도 되십니까?

(예, 10% 정도 증가하였으면 110%, 5% 정도 감소하였으면 95%, 비슷하면 100%)

월 평균	%
------	---

338 사회복지 분야 사각지대 축소 및 부정정지출 관리 방안 연구-기금 지원을 중심으로

문11. 코로나19 이전(2019년)과 코로나19 이후(2020년) 귀하 사업장의 총 비용의 구성비를 작성해주세요.(각 년도별 100%를 기준으로 작성)

구분	비용 항목(경비)	코로나19 이전 (2019년 월 평균)	코로나19 이후 (2020년 월 평균)
총 비용	① 재료비	%	%
	② 인건비(급여, 사회보험료, 직원 복리후생비)	%	%
	③ 임대료	%	%
	④ 수수료 (플랫폼 이용료, 배달수수료, 카드수수료 등)	%	%
	⑤ 기타(교통통신비, 세금 등)	%	%
합계		100%	100%

문11-1.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은 무엇인가요? (문11의 보기에서 선택)

1순위	2순위
①~⑤중 선택	①~⑤중 선택

문12. 코로나19 이전(2019년)과 비교할 때, 코로나19 이후(2020년)에 사업장의 순 소득은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① 증가함(문13으로 이동)	② 감소함	③ 변화 없음
-----------------	-------	---------

[if 문12=②]

문12-1. 코로나19 이전(2019년) 귀하의 사업장의 연간 순 사업소득을 100이라고 한다면, 코로나19 이후(2020년) 순 사업소득은 대략 어느 정도 되십니까?(앞서 매출 기준으로 응답한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준인가요?)

월 평균	%
------	---

문13. 2020년 기준 귀하의 사업장의 월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보증금 제외)

월 임대료	만원
-------	----

※ 월 임대료가 없는 경우 0원으로 작성함.

문14. 2020년 기준 귀하의 사업장 순 소득은 월 평균 얼마입니까?

월 평균 순 소득	만원
-----------	----

※ 순 소득이란, 총 매출액에서 총 비용을 감한 것임.

[if 문7=⑥,⑦,⑧,⑩,⑪,⑫]

문15.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 하셨나요? 전체를 100이라 두고 비율로 응답해주세요.

사용 용도	사용 비율
① 사업장 인건비	%
② 사업장 임대료	%
③ 개인 가구를 위한 생활비	%
④ 기타	%
전체	100%

문16.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지원제도 중 선호하는 정책은 무엇인가요?(1가지만 선택)

① 사업장 고용 유지 지원(사회보험료 경감 등 포함)	② 영업제한 등으로 인한 피해 지원
③ 임대료 인하 및 지원	④ 저금리(금리우예) 대출 확대를 포함하는 금융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심리 및 생활 변화

문17. 2020년 작년 한해, 코로나19로 인해 아래 항목별로 귀하에게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는지 응답해 주세요.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커졌다	①	②	③	④
2) 코로나19로 인해 나와 가족의 건강상 문제가 생겼다	①	②	③	④
3) 코로나19로 인해 가족 돌봄의 부담이 커졌다	①	②	③	④
4) 코로나19로 인해 우울감이 커졌다	①	②	③	④
5) 코로나19 이후 스트레스가 커졌다	①	②	③	④
6) 코로나19 이후 주변사람들과 갈등이 잦아졌다	①	②	③	④
7) 코로나19 이후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졌다	①	②	③	④

[if 문17의 1)=③,④]

문17-1.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경우) 귀하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2020년 작년 한해,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구분	응답문항	
1) 월세를 밀린 적이 있다	① 예	② 아니요
2) 대출금, 관리비 등을 연체한 적이 있다	① 예	② 아니요
3)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① 예	② 아니요

[if SQ3-1=③>0, 문17의 3)=③,④]

문17-2. (만 18세 미만 가족구성원이 있는데, 돌봄 부담이 증가한 경우) 귀하의 돌봄 부담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1개만 선택)

- ① 학교가 등교하지 않아 학기 중 자녀가 집에 있었기 때문에
- ② 학교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여 집에서 자녀가 공부하는 걸 지켜봐야했기 때문에
- ③ 방과후에 이용하던 돌봄 기관, 학원 등이 운영하지 않아서
- ④ 방과후에 집으로 찾아오는 돌봄서비스(예, 아이돌봄서비스)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 ⑤ 기타

[if SQ3-1=③>0, 문17의 3)=③,④]

문17-3. (만 18세 미만 가족구성원이 있는데, 돌봄 부담이 증가한 경우) 귀하는 (가족) 돌봄 부담의 증가를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 ① 일을 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이 돌봄을 전담
- ② 일을 하는 가족 구성원이 휴가, 휴직, 유연근무, 재택근무를 활용해 대처
- ③ 부모, 형제 등 따로 사는 가족의 도움
- ④ 돌봄이 가능한 시설/기관의 긴급 돌봄으로 대체
- ⑤ 개인적으로 돌봄 종사자를 고용
- ⑥ 기타

코로나19 긴급 지원에 대한 인식

문18. 귀하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긴급 지원에서 “도움이 필요하지만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소외 계층(사각지대)”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없음
- ② 별로 없음
- ③ 약간 있음
- ④ 매우 많음

[if 문18=③,④]

문18-1. 코로나19와 관련한 긴급 지원에서 “도움이 필요하지만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소외 계층(사각지대)”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우선순위를 기입)

	순위
① 공적 이전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저소득층	
② 돌봄이 필요한 아동·장애인·노인 가구(가정 돌봄)	
③ 시설에서 돌보고 있는 아동·장애인·노인(시설 돌봄)	
④ 사회적 거리두기로 교육 기회가 제한된 학생	
⑤ 경제활동 위축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진 청년	
⑥ 집합금지 등으로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	
⑦ 사회적 거리두기로 원활한 기업 운영이 제한된 고용주	

342 사회복지장 분야 사각지대 축소 및 부정정지출 관리 방안 연구-긴급 지원을 중심으로

문18-2. 다음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추진한 긴급 지원정책입니다. 귀하께서는 각 제도별로 소의 계층(사각지대)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항목	전혀 없음	별로 없음	약간 있음	매우 많음	모름
일반	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 (2020년 기준, 시도 및 시군구 주민 대상, 합계)	①	②	③	④	⑤
	② 취약계층에서 신청하는 긴급복지지원금	①	②	③	④	⑤
소상공인	③ 소상공인 새희망자금(2020년 9월 신청 및 지급, 사업주) (일반 100만원, 집합제한업종 150만원,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①	②	③	④	⑤
	④ 소상공인 휴·폐업비, 임대료 등 자금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⑤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 (2020년 기준, 시도 및 시군구 소상공인 대상)	①	②	③	④	⑤
실업 및 고용 관련	⑥ 청년특별구직지원금(2020년 9월 신청, 11월말 지급)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 50만원)	①	②	③	④	⑤
	⑦ 긴급고용안정지원금(2020년 9월 신청, 11월 지급)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1차 수급자 50만원, 신규신청자 150만원)	①	②	③	④	⑤
	⑧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2020년 10월 신청, 11월 지급) (실직, 휴·폐업 위기가구 40~100만원)	①	②	③	④	⑤
	⑨ 고용 안정 및 실업 관련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	①	②	③	④	⑤

문19. 귀하는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긴급 지원에서 본인이 사각지대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문20으로 이동)
-------	-----------------

[if 문19=①]

문19-1. 귀하께서 사각지대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항
① 자격요건에는 미달하지만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② 자격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하여 신청했지만 수급 받지 못했다
③ 자격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하지만 신청하지 않았다
④ 긴급 지원을 받은 적이 있지만 그 수준이 충분하지 않았다
⑤ 기타()

문20. 귀하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긴급 지원에서 부정수급이 어느 정도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없음 ② 별로 없음 ③ 약간 있음 ④ 매우 많음

[if 문20=③,④]

문20-1. 귀하는 코로나19 관련 긴급 지원에서 부정수급을 어떻게 인지하게 되었습니까?

문항
①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을 통해 부정수급 사례를 들은 적이 있다
② 주변에서 부정수급하는 사례를 직접 본 적이 있다
③ 주변 사람으로부터 부정수급이 많이 발생한다고 들은 적이 있다
④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 부정수급 사례를 본 적이 있다
⑤ 기타()

344 사회복지장 분야 사각지대 축소 및 부정정지출 관리 방안 연구-긴급 지원을 중심으로

문20-2. 다음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의 긴급 지원입니다. 각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부정수급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항목	전혀 없음	별로 없음	약간 있음	매우 많음	모름
일반	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 (2020년 기준, 시도 및 시군구 주민 대상, 합계)	①	②	③	④	⑤
	② 취약계층에서 신청하는 긴급복지지원금	①	②	③	④	⑤
소상 공인	③ 소상공인 새희망자금(2020년 9월 신청 및 지급, 사업주) (일반 100만원, 집합제한업종 150만원,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①	②	③	④	⑤
	④ 소상공인 휴·폐업비, 임대료 등 자금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⑤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 (2020년 기준, 시도 및 시군구 소상공인 대상)	①	②	③	④	⑤
실업 및 고용 관련	⑥ 청년특별구직지원금(2020년 9월 신청, 11월말 지급)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 50만원)	①	②	③	④	⑤
	⑦ 긴급고용안정지원금(2020년 9월 신청, 11월 지급)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1차 수급자 50만원, 신규신청자 150만원)	①	②	③	④	⑤
	⑧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2020년 10월 신청, 11월 지급) (실직, 휴·폐업 위기가구 40~100만원)	①	②	③	④	⑤
	⑨ 고용 안정 및 실업 관련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	①	②	③	④	⑤

문21. 귀하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의 긴급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1) 신청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2) 신청 절차가 간편했다	①	②	③	④	⑤
3) 필요한 때(시점)에 지원이 이뤄졌다	①	②	③	④	⑤
4) 필요한 곳(사용처)에 사용할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5) 필요한 만큼(금액) 지원이 이뤄졌다	①	②	③	④	⑤
6) 가계에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7)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8) 국가 경제의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9) 코로나19 방역에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문22. 귀하는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자연적·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

문23. 다음은 비상사적인 긴급 지원이 필요한 상황을 작성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매겨주시고, 누가 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선택해주세요.

346 사회보장 분야 사각지대 축소 및 부정정지출 관리 방안 연구-긴급 지원을 중심으로

구 분	우선순위	누가 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① 중앙 정부	② 지방 정부	③ 민간	④ 가족
1) 질병, 주택화재, 사업장 화재 등 개인, 기업이 경험한 재난 및 위기		① 중앙 정부	② 지방 정부	③ 민간	④ 가족
2) 고용재난, 대규모 산불, 태풍 등 국지적 위기 및 자연재해					
3) 메르스, 코로나19 등 사회 재난 및 위기					

문24. 다음은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사적인 긴급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을 작성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대상부터 우선순위를 매겨주시고, 누가 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작성해주세요.

구 분	우선순위	누가 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① 중앙 정부	② 지방 정부	③ 민간	④ 가족
1) 저소득층		① 중앙 정부	② 지방 정부	③ 민간	④ 가족
2)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대상					
3) 전 국민					

[부록 3]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한 분기별 분석 예시

〈부표 3-1〉 1분기와 2분기 정부지원금이 세부 소비항목에 미친 영향 비교

(단위: 천원)

	A. 소비지출	B. 비소비지출	C. 핵심 비내구재	D. 준 비내구재	E. 내구재
가. 1분기					
2019년	2,545	914	1,363	778	403
2020년	2,380	885	1,314	682	383
[20년-19년]	-165	-29	-49	-96	-21
나. 2분기					
2019년	2,357	834	1,308	664	385
2020년	2,385	796	1,360	584	440
[20년-19년]	28	-38	52	-79	56
다. 이중차분법 (DID)	193	-9	101	16	76
-MPC	0.608	-0.027	0.317	0.051	0.240
(t-값)	(3.52)	(0.29)	(4.24)	(0.77)	(2.26)
라. 이중변동법1 (CIC1)	135	-11	102	18	4
-MPC	0.421	-0.034	0.317	0.055	0.011
(t-값)	(2.56)	(0.63)	(4.47)	(1.22)	(0.53)
마. 이중변동법2 (CIC2)	142	-21	101	9	4
-MPC	0.469	-0.068	0.334	0.030	0.014
(t-값)	(4.04)	(1.21)	(5.76)	(0.73)	(0.62)

348 사회보장 분야 사각지대 축소 및 부정정지출 관리 방안 연구-긴급 지원을 중심으로

<부표 3-2> 1분기와 3분기 중 소비 항목의 연도별 분기별 변화

(단위: 천원)

	핵심 비내구재				내구재	
	1. 식료품	2. 의류/신발	3. 주거/수도	4. 음식/숙박	5. 가정/가사	6. 교통
가. 1분기						
2019년	331	135	321	335	118	285
2020년	358	97	318	300	104	279
[20년-19년]	27	-37	-3	-36	-14	-6
나. 3분기						
2019년	348	111	251	354	110	308
2020년	407	96	263	335	131	271
[20년-19년]	59	-15	12	-19	21	-36
다. 이중차분법 (DID)	32	22	16	17	35	-30
-MPC	0.087	0.087	0.043	0.047	0.097	-0.082
(t-값)	(4.97)	(5.68)	(1.44)	(2.04)	(4.30)	(0.92)
라. 이중변동법1 (CIC1)	33	16	13	26	8	-10
-MPC	0.101	0.049	0.042	0.079	0.025	-0.030
(t-값)	(3.70)	(5.33)	(2.58)	(2.44)	(4.31)	(1.63)
마. 이중변동법2 (CIC2)	23	12	15	16	9	-8
-MPC	0.072	0.038	0.045	0.048	0.027	-0.026
(t-값)	(4.17)	(4.37)	(3.51)	(2.52)	(3.84)	(1.48)

〈부표 3-3〉 가구소득의 분위별 이중변동1 추정치: 가구주 학력 대졸 이상 가구

(단위: 천원)

분위 \ 비교 분기	A. 1분기 v. 2분기	B. 1분기 v. 3분기	C. 1분기 v. 4분기	D. 1분기 v. 통합 2~4분기
평균값	328	41	11	125
q40	310	100	65	129
q41	347	73	91	163
q42	389	90	93	182
q43	386	71	14	109
q44	329	25	-43	130
q45	384	34	65	195
q46	478	-20	77	175
q47	450	-12	107	126
q48	320	-91	4	98
q49	406	-123	-115	105
q50	381	-54	-149	-6
q51	345	-77	-50	57
q52	294	-4	-59	111
q53	338	72	-45	98
q54	328	47	-19	128
q55	297	62	21	167
q56	363	42	-3	200
q57	398	86	-38	92
q58	349	74	25	186
q59	438	79	23	161
q60	477	73	4	124

자료: 저자 작성.

간행물 회원제 안내

회원제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국제사회보장리뷰」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회원 종류

전체 간행물 회원

120,000원

보건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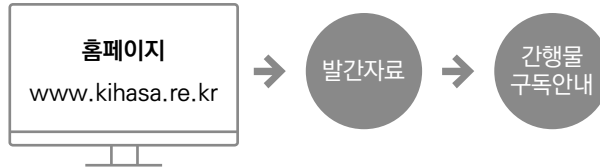
사회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정기 간행물 회원

35,000원

가입방법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한국경제서적(총판) 02-737-7498
- 영풍문고(종로점) 02-399-5600
- Yes24 <http://www.yes24.com>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